지식행정 용어해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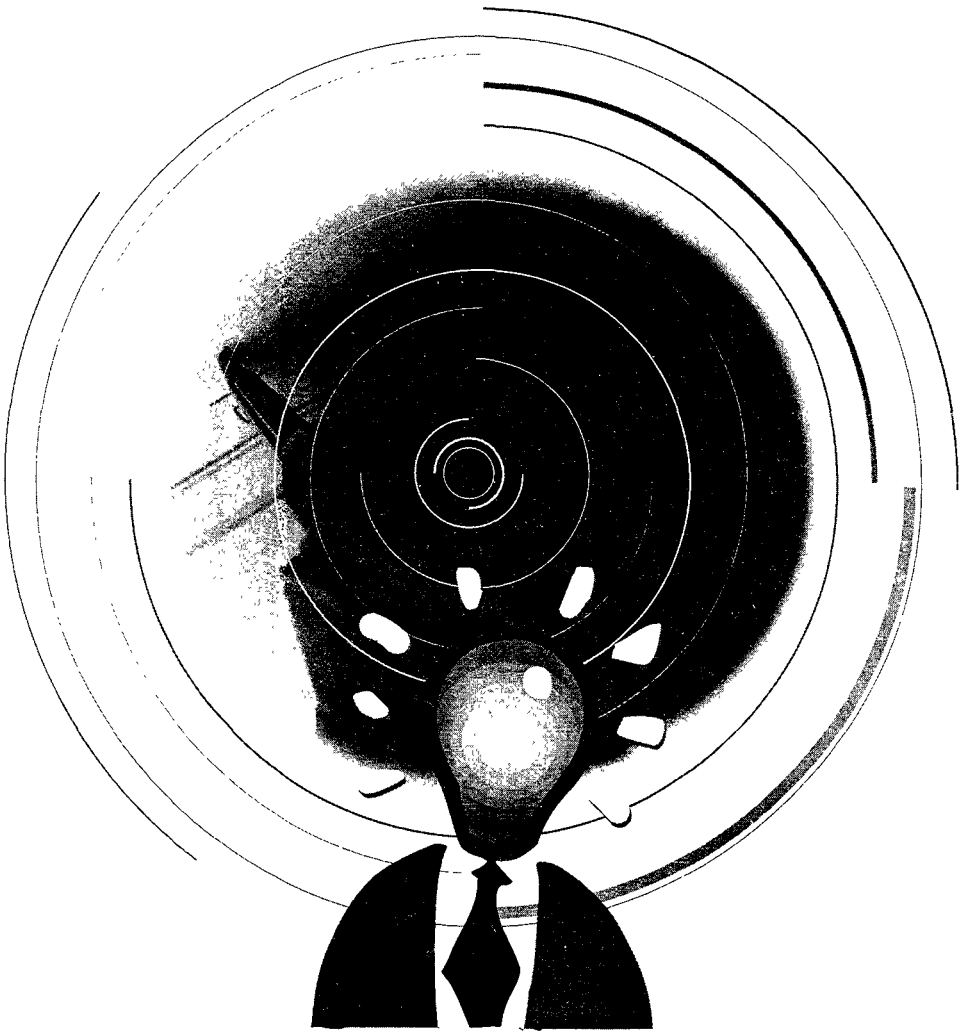
1999.11



경기도

지식행정 용어해설집

1999. 11



경기도

일 러 두 기

1. 각 표제어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했으며, 그 다음에 영문 알파벳 순으로 수록했다.

2. 각 표제어는 한글, 한자, 영어를 함께 기록했고 한자는 (　)안에 넣어 표시했다.

3. 내용상 또는 유사한 표제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①, ②.... 로 나누어 설명했다.

4. 외국어의 한글표기는 원칙적으로 교육부 제정 표기법에 따랐으나, 통일된 표기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일반에 쓰이고 있는 표기를 따랐다.

5. 특별히 시사성이 있거나 주의를 요하는 용어는 ➡가 가리키는 쪽의 하단에 박스를 둘러 설명했다.

6. 화살표(→)다음의 용어는 표제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용어이거나 관련된 용어이므로 해당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머 리 말

정보화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조류는 우리의 삶 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모습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IMF로 대변되는 우리의 경제현실은 우리가 쓰는 생활용어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로 매일같이 쏟아지는 생소한 낱말과 새로운 용어들은 우리를 실로 당혹스럽게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지식행정 용어해설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설집은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신 지식 · 정보산업 관련 용어와 경제용어,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용어, 목표관리시스템, 벤처기업, 전자상거래 용어 등 시사적인 용어들을 모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해설집이 내용구성이나 설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을 수행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충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9. 11.

편 집 자 씀

차 례

ㄱ

가격선도 ---------- 19
가격파괴 ---------- 19
가격협정 ---------- 19
가계소득 ---------- 19
가능교통용량 -------- 19
가도시화 ---------- 19
가동률 ---------- 20
가득률 ---------- 20
가등기효력 ---------- 20
가로비품 ---------- 20
가변차선제 ---------- 20
가상기업 ---------- 21
가상대학 ---------- 21
가상현실 ---------- 21
가속차선 ---------- 21
가십 ---------- 21
가압류 ---------- 21
가이드라인 ---------- 21
가정도우미 ---------- 2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22
가중치 ---------- 22
가처분 ---------- 22
가트 ---------- 22
각하 ---------- 23
간선도로 ---------- 23
간접보조금 ---------- 23
감가상각비 ---------- 23
감리 ---------- 23
감모상각 ---------- 23
감보 ---------- 23
감보율 ---------- 23
감성지수 ---------- 24
강연회 ---------- 24
강제집행 ---------- 24
강제징수 ---------- 25
개발교통량 ---------- 25
개발권이양제도 ------ 25
개발부담금 ---------- 26
개발손실 ---------- 26
개발이익 ---------- 26
개발이익환수법 ------ 26
개발차관 ---------- 26
개발촉진지역 -------- 27
개별공시지가 -------- 27
개산급 ---------- 27
개회·개의·산회·폐회 - 27
거대도시 ---------- 27
거점개발론 --------- 28
거점도시개발 -------- 28
거주여권 ---------- 28
건설공채 ---------- 28
건설산업 ---------- 28
건축사 ---------- 29
건축선 ---------- 29
건축설비 ---------- 29
건축용지율 --------- 29
건축제한 ---------- 29
건축폐기물 --------- 29
건폐율 ---------- 29
검토보고 ---------- 30
게리맨더링 ---------- 30
격자형가로망 ---------- 30
결산 ---------- 30
결산잉여금 ---------- 30
결손처분 ---------- 31
결정고시 ---------- 31
결합재무제표 ---------- 31
경관녹지 ---------- 31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 31
경기동향지수 ---------- 31
경기벤처펀드 ---------- 31
경기엔젤마트 ---------- 32
경기엔젤클럽 ---------- 32
경기으뜸이 ---------- 32
경기종합지수 ---------- 33
경로연금 ---------- 33
경륜 ---------- 33
경상거래 ---------- 33
경상수지 ---------- 34
경상이익 ---------- 34
경상지출 ---------- 34
경성뉴스 ---------- 34
경수로 ---------- 34
경전철 ---------- 34
경제5단체 ---------- 35
경제수역 ---------- 35
경제지표 ---------- 35
경제특구 ---------- 36
경제활동인구 ---------- 36
경제협력개발기구 ------ 36

경직성 경비 --------- 36
경찰위원회 ---------- 36
경화 ---------- 36
계류 ---------- 36
계면활성제 ---------- 37
계속비 ---------- 37
계약보증금 ---------- 37
계약서 ---------- 37
계정 ---------- 37
계층제의 원리 ------- 37
계획단위개발 -------- 38
계획예산제 ---------- 38
고객만족경영 -------- 38
고령화사회 ---------- 39
고선명 텔레비전 ----- 39
고속도로 ---------- 40
고수부지 ---------- 40
고엽제 ---------- 40
고용보험제 ---------- 40
고용허가제 ---------- 41
고용촉진훈련 -------- 41
고유사무 ---------- 41
고유재산 ---------- 42
고정자산 ---------- 42
고충처리 ---------- 42
공공근로사업 -------- 42
공공부문 ---------- 42
공공요금 ---------- 42
공공재 ---------- 43
공공주차장 ---------- 43
공권력 ---------- 43
공기업 ---------- 43
공동구 ---------- 43
공동규제수역 -------- 44
공동변상책임 -------- 44
공동시설세 ---------- 44
공동처리방식 -------- 44
공동화 현상 --------- 44
공무원직장협의회 ---- 45
공법인 ---------- 45
공보 ---------- 45
공사감리 ---------- 45
공소권없음 ---------- 45
공소시효 ---------- 45
공시지가 ---------- 46
공업단지 ---------- 46
공업배치기본계획 ---- 46
공업센서스 ---------- 46
공업소유권 ---------- 46
공업유치지역 -------- 46
공업지대 ---------- 47
공업지역 ---------- 47
공영개발 ---------- 47
공영주택 ---------- 47
공원묘지 ---------- 47
공원보호구역 ------- 47
공유수면 ---------- 48
공익근무요원제도 ---- 48
공익기업 ---------- 48
공익사업 ---------- 48
공전 ---------- 48
공정거래법 ---------- 48
공중권 ---------- 49
공중보건의 ---------- 49
공증 ---------- 49
공증인 ---------- 49
공직자윤리법 -------- 49
공채 ---------- 50
공청회 ---------- 50
공해수출 ---------- 50
공화국 ---------- 51
과년도수입 ---------- 51
과년도지출 ---------- 51
과대도시 ---------- 51
과목해소 ---------- 51
과밀도시 ---------- 51
과밀부담금제 ---------- 52
과밀억제권역 ---------- 52
과세시가표준액 -------- 52
과세적부심사제 -------- 52
과세특례제도 ---------- 52
과세표준 ---------- 53
과실송금 ---------- 53
과오납금 ---------- 53
관거 ---------- 53
관광도시 ---------- 53
관광특구 ---------- 54
관료제 ---------- 54
관리무역 ---------- 54
관리통화제도 ---------- 55
관변단체 ---------- 55
관성효과 ---------- 55
관세율 ---------- 55
관세할당제도 ---------- 55
관용여권 ---------- 55
광역교통계획 ---------- 55
광역도로 ---------- 56
광역도시계획 ---------- 56
광역버스 ---------- 56
광역철도 ---------- 56
광역행정 ---------- 56
광우병 ---------- 56
광천수 ---------- 57
교차로 ---------- 57
교통계획 ---------- 57
교통공해 ---------- 57
교통관제센터 --------- 57
교통량 조사 ---------- 57
교통섬 ---------- 57
교통세 ---------- 57
교통영향평가 --------- 58

교통유발부담금 ----- 58
교통체계종합관리 --- 58
교통혼잡비용 ------- 58
교통환경지구 ------- 58
구내교환기 --------- 59
구상권 ------------ 59
구제금융 ---------- 59
구조조정 ---------- 59
구조조정기금 ------- 59
국고보조금 --------- 59
국고채무부담행위 --- 60
국내총생산 -------- 60
국민생활지표 ------- 61
국민소득 ---------- 61
국민소환 ---------- 61
국민연금 ---------- 61
국민총생산 -------- 61
국민총지출 -------- 62
국민투자기금 ------- 62
국세조사 ---------- 62
국영사업 ---------- 62
국정감사권·조사권 - 62
국제개발금융기구 --- 63
국제관리통화 ------- 63
국제노동기구 ------- 63
국제수지 ---------- 63
국제자본시장 ------- 63
국제지방자치체연합 -- 64
국제통화기금 ------- 64
국제표준화기구 ----- 64
국제화 ------------ 64
국제환경협약 -------- 64
국제회의용역업 ------ 64
국지분산도로 -------- 64
국지오염 ---------- 65
국채 --------------- 65
국토계획/국토건설종합계획 - 65
국토이용관리법 ------ 65
국토조사 ---------- 65
국토종합개발 -------- 66
군립공원 ---------- 66
군사분계선 --------- 66
굴절차선 ---------- 66
권위 --------------- 66
권한 --------------- 66
권한위임 ---------- 67
궤도 --------------- 67
귀속재산 ---------- 67
귀책사유 ---------- 67
규모의 경제 --------- 67
규정 --------------- 67
규정 --------------- 68
규제법정주의 -------- 68
국제영향분석 -------- 68
규제일몰제 --------- 68
규제행정 ---------- 68
규칙 --------------- 68
균형성장이론 -------- 69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69
그룹웨어 ---------- 69
그린 네트워크 ------- 69
그린라운드 --------- 69
그린마케팅 --------- 70
그린벨트 ---------- 70
그린아파트 --------- 70
그린에너지 --------- 70
그린GNP ---------- 70
그린카 ------------ 70
그린피스 ---------- 71
근거리통신망 -------- 71
근로소득세 --------- 71
근로자파견제 -------- 71
근린공원 ---------- 71
근린광장 ---------- 71
근린생활권 ---------- 71
근린생활시설 --------- 72
근린주구 ---------- 73
근저당 ------------- 73
글로벌 ------------- 73
금융선물거래 --------- 74
금융소득종합과세 ------ 74
금융실명제 ---------- 74
금전신탁 ---------- 75
금치산자 ---------- 75
급속여과 ---------- 75
급수관 ------------ 75
급수전 ------------ 75
기각 -------------- 75
기간 -------------- 75
기간산업 ---------- 76
기관대립형 ---------- 76
기관위임사무 --------- 76
기금 -------------- 76
기내배양 ---------- 77
기본설계입찰 --------- 77
기사실명제 ---------- 77
기소유예 ---------- 77
기소편의주의 --------- 77
기속처분 ---------- 77
기속행위 ---------- 77
기술이전 ---------- 77
기술지향계획 --------- 78
기억장치 ---------- 78
기업결합 ---------- 78
기업내 벤처 ---------- 79
기업인턴 ---------- 79
기조연설 ---------- 79
기준지가 ---------- 79
기준지가고시제 ------- 80
기폭 -------------- 80
기획 -------------- 80

긴급수입제한·회색지대조치 - 80
긴급통화 ---------- 81

ㄴ

나노 ---------- 82
나대지 ---------- 82
나이로비 선언 ------ 82
낙후지역 ---------- 82
남북협력기금 --------- 83
내면화 ---------- 83
내부위임 ---------- 83
내셔널 미니엄 ------ 83
내셔럴 트러스트 ---- 83
내용증명 ---------- 84
네거티브 리스트 ---- 84
네거티브 소득세 ---- 84
네티즌 ---------- 84
노동권 ---------- 84
노동기본권 -------- 85
노동생산성 --------- 85
노동조합 ---------- 85
노사정위원회 ------- 85
노사협의회 --------- 85
노하우 ---------- 86
녹색GNP ---------- 86
녹색상품 ---------- 86
녹색혁명 ---------- 86
녹조류 ---------- 87
녹지지역 ---------- 87
농공단지 ---------- 87
농공지구 ---------- 87
농어민후계자 ------- 87
농어촌특별세 ------- 87
농지개량조합 -------- 88
농지개발촉진지역 ---- 88
뇌물 ---------- 88
누진세 ---------- 88
뉴 NICS ---------- 89
뉴 라운드 ---------- 89
뉴 타운 ---------- 89
니치 마케팅 --------- 89
님비현상 ---------- 89

ㄷ

다가구주택 ---------- 91
다국간 섬유협정 ----- 91
다국적기업 ---------- 91
다세대주택 ---------- 91
다운사이징 ---------- 92
다이옥신 ---------- 92
다중방송 ---------- 92
다중프로그래밍 ------ 93
다핵도시 ---------- 93
단가계약 ---------- 93
단기외채 ---------- 93
단말교통 ---------- 93
단수여권 ---------- 93
단식부기 ---------- 93
단열콘크리트 ------- 94
단체수의계약제도 ---- 94
단체위임사무 -------- 94
단체자치 ---------- 94
단체협약 ---------- 94
단핵도시 ---------- 95
담당관 ---------- 95
대결 ---------- 95
대기오염물질 -------- 95
대기오염예보제 ------ 95
대기오염원 ---------- 96
대런던계획 ---------- 96
대륙붕 ---------- 96
대선거구 ---------- 97
대안 ---------- 97
대안학교 ---------- 97
대위변제 ---------- 97
대집행 ---------- 97
대차대조표 ---------- 98
대체기술 ---------- 98
대형쓰레기 ---------- 98
덤핑관세 ---------- 98
데드라인 ---------- 98
데스크 ---------- 98
데시벨 ---------- 99
데이터뱅크 ---------- 99
데이터베이스 ---------- 99
델파이방법 ---------- 99
도급 ---------- 99
도로반사경 ---------- 100
도립공원 ---------- 100
도매물가지수 --------- 100
도미노이론 ---------- 100
도선업 ---------- 100
도시개발예정구역 ----- 100
도시경관 ---------- 101
도시경제권 ---------- 101
도시계획 ---------- 101
도시계획구역의 지구지정 - 101
도시계획시설 --------- 102
도시계획위원회 ------- 102
도시공원 ---------- 102
도시교통 ---------- 102
도시교통권 ---------- 103
도시국가 ---------- 103
도시권 ---------- 103
도시권행정협의회 ---- 103
도시기본계획 -------- 104
도시미기후 ---------- 104

도시병리 ---------- 104
도시사막화 -------- 104
도시산업 ---------- 104
도시선언 ---------- 105
도시설계 ---------- 105
도시재개발 -------- 105
도시철도 ---------- 106
도시형공업 -------- 106
도시화 ----------- 106
도심재개발사업 ---- 106
도심지·부도심지 -- 107
도이모이정책 ------ 107
도장폐수 --------- 107
독립채산제 ------- 107
독회 ------------ 107
돈 세탁 ---------- 108
동남아국가연합 ---- 108
동선계획 ---------- 108
동선체계 ---------- 108
동심원이론 -------- 108
동아시아 경제협의체 - 109
동의 ------------- 109
동조과잉 --------- 109
디마케팅 --------- 109
디지털TV -------- 110
디지털 전화 ------ 110
디폴트 선언 ------ 110
디플레이션 ------- 110

ㄹ

라멘구조 ---------- 111
라이프 사이클 ------ 111
랜드 코퍼레이션 ---- 111
러쉬아워 ---------- 111
런던 금시장 ------- 112
런던형 스모그 ------ 112
레벨 ------------- 112
레임 덕 ---------- 112
레포츠 공원 -------- 112
로열티 ----------- 112
로타리 교차 -------- 112
리노베이션 --------- 112
리눅스 ----------- 113
리사이클링 시스템 -- 113
리스 ------------- 113
리스크 매니지먼트 --- 114
리얼오디오 --------- 114
리엔지니어링 ------- 114
리우 환경협약 ------ 114
리조트 ----------- 114
리콜제 ----------- 114
리히터 진도 -------- 115
링크 ------------- 116

ㅁ

마이크로컴퓨터 ----- 117
마찰적 실업 -------- 117
맞춤훈련 ---------- 117
매립처분 ---------- 117
매연 ------------- 117
매장물 ----------- 117
매출원가 ---------- 118
매칭펀드 ---------- 118
매트릭스 ---------- 118
매트릭스조직 ------- 118
매판자본 ---------- 119
맨 파워 ---------- 119
맨홀 ------------- 119
머천다이징 --------- 119
멀티미디어 --------- 119
명령통일의 원리 ------ 120
명목국민소득 --------- 120
명목임금 ---------- 120
명시이월 ---------- 120
명예퇴직제 ---------- 120
명의신탁 ---------- 120
모노컬쳐 경제 -------- 120
모니터 ----------- 120
모뎀 ------------ 121
모라토리엄 ---------- 121
목적세 ----------- 121
목표관리 ---------- 122
목표관리시스템 ------- 123
몬트리올 의정서 ------ 123
무과실책임주의 ------- 124
무등록 공장 ---------- 124
무역금융 ---------- 124
무역외수지 ---------- 124
무역의존도 ---------- 125
무임승차 ---------- 125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 125
무체재산권 ---------- 125
무형고정자산 --------- 125
무형문화재 ---------- 126
문화재 ----------- 126
물가지수 ---------- 126
물류 ------------ 126
물적 행정행위 -------- 127
뮤튜얼펀드 ---------- 127
미관지구 ---------- 127
미나마타병 ---------- 127
미시경제 ---------- 128
민간위탁 ---------- 128
민원조사역 ---------- 128
민원 후견인제 ------- 128
민자유치 ---------- 128
민족자본 ---------- 129

민통선 ---------- 130
밀레니엄버그 ------ 130

ㅂ

바이러스 ---------- 131
바이오 산업 ------- 131
바이트 ---------- 131
바코드 ---------- 131
바터무역 --------- 131
반납금 ---------- 132
반덤핑법 --------- 132
반도체 ---------- 132
반복민원 --------- 132
반송슬러지 -------- 132
밤비바캣 ---------- 132
방류수면 ---------- 132
방류처분 ---------- 132
방사선가로망 ------ 133
방사성물질 -------- 133
방사환상형 -------- 133
방재지구 ---------- 133
방진시설 ---------- 133
방호벽 ---------- 133
방호시설 --------- 133
방호책 ---------- 133
방화벽 ---------- 133
방화지구 ---------- 134
배기가스 ---------- 134
배수 ---------- 134
배수관 ---------- 134
배수펌프장 -------- 134
배출부과금제도 ----- 135
백서 ---------- 135
뱅크 론 ---------- 135
버블현상 ---------- 135
버스 우선차선 ------ 135
버스 전용차선 ------ 135
번안 ---------- 135
벌쳐캐피탈 --------- 135
벌크시멘트 --------- 136
벌킹 ---------- 136
법률부조 ---------- 136
법인 ---------- 136
법인세 ---------- 136
법정관리 ---------- 137
법정대리 ---------- 137
베드 타운 --------- 137
베세토 벨트 -------- 137
벤처기업 ---------- 137
벤처 캐피털 -------- 137
벤처 펀드 ---------- 138
벤치마킹 ---------- 139
벨로드롬 ---------- 139
변복조기 ---------- 139
변속구간 ---------- 140
변형시간근로제 ----- 140
별정직 공무원 ------ 140
병행수입제 --------- 140
보고통제 ---------- 140
보도 ---------- 140
보류지 ---------- 140
보복관세 ---------- 141
보세가공무역 ------- 141
보안림 ---------- 142
보육시설 ---------- 142
보전 ---------- 142
보정적 재정정책 ---- 142
보조공간 ---------- 142
보조기관 ---------- 142
보존 ---------- 142
보존재개발 --------- 143
보존재산 ---------- 143
보존지구 ---------- 143
보호무역주의 ------- 143
복수여권 ---------- 144
복식부기 ---------- 144
복지 ---------- 144
복지국가 ---------- 144
복지부동 ---------- 144
복합관세 ---------- 144
복합민원 ---------- 145
복합사회 ---------- 145
복합영농 ---------- 145
봉건도시 ---------- 145
부가가치 ---------- 145
부가가치세 ---------- 146
부가가치통신망 ------- 146
부관 ---------- 146
부담금 ---------- 146
부당 ---------- 146
부대입찰제 ---------- 146
부도방지협약 --------- 147
부동산신탁 ---------- 147
부동산실명제 --------- 147
부동산투자신탁 ------- 147
부메랑효과 ---------- 148
부분감사 ---------- 149
부생식물 ---------- 149
부영양화 ---------- 149
부유물질 ---------- 149
부유분진 ---------- 149
부의, 상정 ---------- 149
부작위 ---------- 150
부재자투표 --------- 150
북마크 ---------- 150
분담금 ---------- 150
분양권 전매 --------- 150
분임출납원 ---------- 151

불공정거래행위 ---- 151
불균형성장이론 ---- 152
불량주거지 -------- 152
불량지구 --------- 152
불연성쓰레기 ----- 152
불쾌지수 --------- 152
브라우저 --------- 152
브레인 스토밍 ----- 153
블루 라운드 ------- 153
블록경제 ---------- 153
블루벨트 ---------- 153
블루칩 ----------- 153
비메모리 반도체 --- 154
비공식적 조직 ----- 154
비과세소득 -------- 154
비교우위 ---------- 154
비례대표제 -------- 155
비용편익분석 ------ 155
비자 ------------- 155
비자금 ----------- 155
비즈니스 인큐베이트 - 155
빅딜 ------------- 156
빈지 ------------- 156

ㅅ

사고이월 ---------- 157
사단법인 ---------- 157
사력댐 ----------- 157
사린 ------------- 157
사용료 ----------- 157
사이버대학 --------- 157
사증란 추가 -------- 158
사회간접자본 ------- 158
사회간접자본시설 ---- 158
사회개발 ---------- 159
사회보장 ---------- 159
사회복지 ---------- 160
사회지표 ---------- 160
삭도 ------------- 160
산림보전지구 ------- 160
산성비 ----------- 160
산업공동화 --------- 160
산업기술연수생 ----- 161
산업도시 ---------- 161
산업재해 ---------- 161
산업평화상 --------- 162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 - 162
산회 ------------- 162
삶의 질 ---------- 162
삼림욕 ----------- 162
상계관세 ---------- 162
상세계획 ---------- 162
상수도보호구역 ----- 162
상수처리 ---------- 163
상업지역 ---------- 163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 163
생력산업 ---------- 163
생력화 ----------- 164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164
생물학적 처리 ------ 164
생산녹지지역 ------- 164
생태계 ----------- 164
생태계 연결지대 ---- 164
생활보호대상자 ----- 164
생활오수 ---------- 165
서머타임 ---------- 165
서버/클라이언트 ---- 165
선거공영 ---------- 165
선거구제 ---------- 166
선결처분 ---------- 166
선매권 ----------- 166
선형도시 ---------- 166
성과주의 예산제 ------ 167
성업공사 ---------- 167
성장거점전략 --------- 167
성장관리권역 --------- 168
성장산업 ---------- 168
세계무역기구 --------- 168
세계은행 ---------- 168
세계잉여금 ---------- 168
세계화 ----------- 169
세금징수유예 --------- 169
세미나 ----------- 169
세미텔 ----------- 169
세외수입 ---------- 170
센서스 ----------- 170
셰어웨어 ---------- 170
소득세 ----------- 170
소멸시효 ---------- 170
소비성향 ---------- 171
소비자물가지수 ------- 171
소액주주운동 --------- 171
소요량증명서 --------- 171
소프트산업 ---------- 171
소프트웨어 ---------- 172
속개 ------------ 172
손실배상 ---------- 173
손실보상 ---------- 173
손익분기점 ---------- 174
손해배상 ---------- 174
수경재배 ---------- 174
수도권정비계획 ------ 175
수익자부담 --------- 175
수익증권 ---------- 175
수입선 다변화제도 --- 175
수정안,대안,번안 ----- 176
수질개선부담금 ------ 176
수질기준 ---------- 176

수출드라이브 ------ 177
수출면장 ---------- 177
수출신용장 -------- 177
수출자유지역 ------ 177
순세계잉여금 ------ 178
순환출자 ---------- 178
슈퍼 301조 -------- 178
스모그현상 -------- 178
스캐너 ----------- 179
스태그플레이션 ---- 179
스톡 옵션제 ------- 179
스프롤현상 -------- 179
슬러지 ----------- 179
슬럼 ------------- 179
승환시설 ---------- 180
시뮬레이션 -------- 180
시방서 ----------- 180
시삽 ------------- 180
시설원예 --------- 180
시효 ------------- 180
시효중단 ---------- 181
신경제 5개년계획 --- 181
신드롬 증후군 ----- 181
신디케이트 -------- 181
신삼고 ----------- 181
신 샌드위치증후군 -- 181
신생아 ----------- 181
신 슈퍼 301조 ----- 182
신용보증 --------- 182
신용장 ----------- 182
신지식인 ---------- 182
신지식공직자 ------ 182
신축·증축·개축·재축 -- 183
신토불이 ---------- 183
실리콘밸리 -------- 184
실버산업 ---------- 184
실버타운 ---------- 184
실버프로그램 ------- 184
실비요양시설 ------- 185
실시설계 ---------- 185
실시설계입찰 ------- 185
실업률 ----------- 185
실업자 ----------- 185
실질GNP ---------- 185
심사보고 ---------- 185
심사분석 ---------- 185
심사청구 ---------- 185
심의 ------------- 186
심포지엄 ---------- 186
싱크탱크 ---------- 186
쌍무투자협정 ------- 186
쓰레기종량제 ------- 186

ㅇ

아노미현상 --------- 187
아동복리 ---------- 187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 18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 -- 187
아웃소싱 ---------- 187
아크로폴리스 ------- 187
액화석유가스 ------- 188
액화천연가스 ------- 188
야간인구 ---------- 188
야계사방 ---------- 188
양액재배 ---------- 188
양키본드 ---------- 189
양키본드시장 ------- 189
양해각서 ---------- 189
어메니티 ---------- 189
어음부도율 --------- 189
어음할인 ---------- 190
언론중재위원회 ----- 190
업그레이드 ---------- 190
업무지구 ---------- 190
업무편람 ---------- 190
에코브리지 --------- 190
에코폴리스 --------- 191
엘니뇨현상 ---------- 191
엘리엇 파동이론 ------ 191
엠바고 ------------ 192
엥겔계수 ---------- 192
여성「1366」 -------- 193
여성고용할당제 ------- 193
여행증명서 --------- 193
역도시화 ---------- 193
역세권 ----------- 193
역외금융 ---------- 193
역전층 ----------- 194
연금기금 ---------- 194
연금제도 ---------- 194
연담도시권 ---------- 194
연대변상책임 -------- 195
연립주택 ---------- 195
연면적 ----------- 195
연석 ------------ 195
연안어장 ---------- 195
연착륙 ----------- 195
열병합발전 ---------- 195
엽관제 ----------- 196
영기준예산 ---------- 196
영상회의시스템 ------ 197
영유아 ----------- 197
영조물 ----------- 197
예규 ------------ 198
예방적 통제 -------- 198
예산 보정 ---------- 198
예산단가 ---------- 198
예산의 이용 -------- 198
예산의 이월 -------- 198

예산의 이체 ------- 198
예산의 전용 ------- 198
예산총계주의 ------ 199
오수 ------------- 199
오염자 부담의 원칙 - 199
오존 ------------- 199
오존경보제 -------- 199
오존층 ----------- 199
오퍼 ------------- 199
오프 더 레코드 ---- 200
온라인 시스템 ----- 200
온라인 처리 ------- 201
온실효과 ---------- 201
옴부즈만 제도 ----- 201
옹벽 ------------- 201
외교관여권 -------- 201
용도구역 ---------- 201
용도지구 ---------- 202
용도지역 ---------- 202
용적율 ----------- 202
용존산소량 ------- 202
우루과이라운드 ---- 202
우선주 ----------- 203
우회생산 --------- 203
운동·휴양지구 ---- 203
워치콘 ----------- 203
워크 아웃 -------- 204
원스톱/논스톱서비스 - 204
원천징수 ---------- 204
웹 --------------- 205
웹디자이너 -------- 205
웹 브라우저 ------- 205
웹 사이트 --------- 205
위생매립 ---------- 205
위성도시 ---------- 206
윈윈 전략 --------- 206
유러달러 ---------- 206
유러머니 ---------- 206
유러터널 ---------- 207
유망중소기업 ------- 207
유통업무단지 ------- 207
유회, 공전 -------- 207
은행 지로제 -------- 207
의결·결의,부대결의 - 208
의결권 ----------- 208
의료보험 ---------- 208
의료보호 ---------- 208
의사일정 ---------- 208
의안 ------------- 208
의제21 ----------- 209
의존재원·자주재원 -- 209
이동오염원 -------- 209
이따이이따이병 ----- 209
이벤트 ----------- 209
이상기상 ---------- 210
이송 ------------- 210
이슈 ------------- 210
이전가격 ---------- 210
이전소득 ---------- 210
이중과세방지협정 ---- 211
이차보전 ---------- 211
인구의 역류현상 ---- 211
인큐베이터 -------- 211
인터넷 ----------- 211
인터체인지 -------- 212
인텔리젼트빌딩 ----- 212
인트라넷 ---------- 212
인프라스트럭처 ---- 212
일몰법 ----------- 212
일반특혜관세제도 -- 212
일시차입금 -------- 212
일조권 ----------- 214
임금가이드라인 ---- 214
임팩트 론 -------- 214
입법예고제 ---------- 214

ㅈ

자기자본비율규제 ----- 215
자료와 정보 -------- 215
자바 -------------- 215
자산재평가 ---------- 215
자연녹지지역 -------- 216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 216
자연휴식년제 -------- 216
자율경영팀 ---------- 217
자율권 ------------ 217
자전거도 ---------- 217
자전거 보행자도 ------ 218
자정능력 ---------- 218
자치권 ------------ 218
자치입법권 ---------- 218
자치재정권 ---------- 218
자치조직권 ---------- 218
자치행정 ---------- 219
자치행정권 ---------- 219
자활보호 ---------- 219
작황지수 ---------- 219
잠재성장력 ---------- 219
잠재실업 ---------- 219
잡종재산 ---------- 219
장인메달 ---------- 219
장제보호 ---------- 220
재개 ------------- 220
재개발사업 ---------- 220
재결 ------------- 220
재량권일탈·재량권남용 ---- 220
재량행위 ---------- 220
재무제표 ---------- 221
재산세 ---------- 221

재심의청구 -------- 221
재의 ---------- 221
재정력지수 -------- 221
재정투융자 -------- 222
재택근무 ---------- 222
재택전자민원처리제 - 222
적조현상 ---------- 222
적출물 ---------- 222
전도자금 --------- 222
전세권 ---------- 223
전세등기 ---------- 223
전용회선 ---------- 223
전원도시 ---------- 223
전자게시판 -------- 223
전자상거래 -------- 224
전자서명 ---------- 224
전자우편 ---------- 224
전자정부 ---------- 224
전환사채 ---------- 225
절대농지 ---------- 225
접경지역지원특별법 - 225
접도구역 ---------- 225
정기회 ---------- 225
정리해고제 -------- 225
정보공개제도 ------ 226
정보산업 ---------- 226
정보인프라스트락처 - 227
정보초고속도로 ---- 227
정보화사회 -------- 227
정보화책임관 ------- 227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 227
정수지 ---------- 227
정족수 ---------- 227
정지시거 ---------- 228
정차대 ---------- 228
정책델파이 -------- 228
정책분석 ---------- 228
정체성 ---------- 228
정크본드 ---------- 228
정회,속개,휴회,재개 -- 229
제동반응시간 ------- 229
제로베이스예산 ----- 229
제4차산업/제5차산업 - 229
제3섹터 ---------- 229
제안설명,검토보고,심사보고 - 230
제2금융권 ---------- 231
제2의 산업혁명 ----- 231
제품차별화 --------- 231
조류 ---------- 231
조리 ---------- 231
조세의 소멸시효 ---- 231
조직관리 ---------- 232
종가세 ---------- 232
종량제 ---------- 232
종업원 지주제도 ---- 232
종주도시 ---------- 232
종합병원 ---------- 233
종합소득세 --------- 233
종합재산세 --------- 233
종합정보통신망 ----- 233
종합토지세 --------- 233
주가수익비율 ------- 234
주가지수 선물거래 -- 234
주간보호시설 ------- 234
주거전용지역 ------- 234
주거지역 ---------- 234
주거환경개선 ------- 234
주당 순이익 -------- 236
주력업종제 --------- 236
주민간담회 --------- 236
주민발안 ---------- 236
주민자치 ---------- 236
주민투표 ---------- 236
주민헌장 ---------- 236
주요호수수질보전환경기준마련 -- 236
주전산기 ---------- 237
주차 ---------- 237
주택임대차보호법 ----- 237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 238
주택할부금융제 ------- 238
주파수 공용통신 ------ 239
주행세 ---------- 239
준농림지 ---------- 239
준비예금제도 --------- 239
준설 ---------- 239
준예산 ---------- 239
중금속 ---------- 240
중복민원 ---------- 240
중수도 ---------- 240
중심업무지구 --------- 240
중앙집권 ---------- 240
지가검증제도 --------- 241
지구계획 ---------- 241
지능아파트 ---------- 241
지리정보시스템 ------- 241
지방공기업 ---------- 241
지방공사 ---------- 241
지방양여세 ---------- 241
지방의회의 권한 ------ 242
지방자치 ---------- 242
지방자치단체조합 ----- 242
지방재정자립도 ------- 243
지방채 ---------- 243
지방행정 ---------- 243
지방행정기관 ------- 243
지방행정정보은행 ---- 243
지불준비제도 -------- 243
지상권 ---------- 244
지속가능한 개발 ----- 244
지식 ---------- 244
지식경영 ---------- 245

지식국가 ---------- 245
지식기반경제 ------ 246
지식기반산업 ------ 246
지식인 ---------- 246
지식정부 ---------- 247
지식집약형 산업 --- 248
지식행정 ---------- 248
지역격차 ---------- 248
지역계획 ---------- 248
지역사회 ---------- 249
지역지구제 -------- 249
지역총생산 -------- 249
지역협력연구센터 -- 250
지장물 ---------- 250
지적공부 ---------- 250
지적소유권 -------- 250
지주회사 ---------- 250
지체상금 ---------- 250
지출원인행위 ------ 251
지출확인관 -------- 251
지하경제 ---------- 251
지혜경영 ---------- 251
직무감찰 ---------- 252
직불카드 ---------- 252
직업공무원제 ------ 252
직업안내사업 ------ 252
직위해제 --------- 252
직장폐쇄 --------- 253
진돗개 하나 ------- 253
질문 ---------- 253
질의 ---------- 253
집적이익 --------- 253
집적회로 --------- 254
집행기관 --------- 254
징계 ---------- 254
징수유예 ---------- 255

ㅊ

차관 ---------- 256
차광식재 ---------- 256
차단녹지 ---------- 256
차량총중량 --------- 256
차별관세 ---------- 256
차선 ---------- 256
참여연대 ---------- 257
철회 ---------- 257
첨단산업 ---------- 257
청문 ---------- 257
청원 ---------- 258
체비지 ---------- 258
초고속정보통신망 --- 258
초관리경영론 ------- 258
초상권 ---------- 259
최고 ---------- 259
최대전력 ---------- 259
최소시장접근 ------- 259
최저임금 ---------- 259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 259
축산폐수정화시설 --- 259
출납원 ---------- 260
출력장치 ---------- 260
출연 ---------- 260
출자총액 제한 ------ 260
취락지역 ---------- 260
취소 ---------- 260
취수댐 ---------- 261
취업인증제 --------- 261
취업자·실업자 ----- 261
측구 ---------- 261
치매 ---------- 261
친권 ---------- 261
침사지 ---------- 262
침상도시 ---------- 262
침전지 ---------- 262
침출수 ---------- 262

ㅋ

카르텔 ---------- 264
카운셀링 ---------- 264
칼럼 ---------- 264
컨베이어 시스템 ------ 264
컨벤션 산업 ---------- 264
컨벤션 ---------- 264
컨설턴트 ---------- 266
컨셉트 ---------- 266
컨소시엄 ---------- 266
컴퓨터 마인드 -------- 266
케이블 세대 ---------- 267
코리아펀드 ---------- 267
코스닥 ---------- 267
콘너베이션 ---------- 267
콘도미니엄 ---------- 268
콘테이너수송 --------- 268
콜드체인 ---------- 269
콤비나트 ---------- 269
클레임 ---------- 269
클린 산업 ---------- 269
클린펀드 ---------- 269

ㅌ

탁도 ---------- 271
태스크 포스시스템 ----- 271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271
턴키베이스방식 ------ 271
테마파크 ---------- 271
테일러시스템 -------- 272

테크노마트 -------- 272
테크노폴리스 ------ 273
텔넷 ---------- 274
텔레뱅킹 민원서비스 -- 274
텔리데모크라시 ---- 274
토구 ---------- 274
토양개량제 -------- 274
토지공개념 -------- 274
토지구획정리사업 -- 275
토지수용 ---------- 275
토지수익연계채권 --- 275
토초세 ---------- 276
통솔범위의 원리 --- 276
통합지출관 -------- 276
투자보장협정 ------ 276
투자분석 --------- 276
투자심사 ---------- 276
특별교부금 -------- 277
특별다수의결 ------ 277
특별대책지역 ------ 277
특별지방자치단체 --- 277
특별지방행정기관 --- 277
특별청소지역 ------ 277
특정폐기물 -------- 278
특정폐기물처리시설 - 278

ㅍ

파급효과 ---------- 279
파킨슨의 법칙 ----- 279
패널토의 --------- 279
패러다임 ---------- 279
패리티 지수 -------- 280
패키지 투어 -------- 280
페이징 시스템 ------ 280
폐기,계류,이송 ------ 280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제 - 280
폐치분합 ---------- 280
폐회 ---------- 281
포괄수가제 --------- 281
포럼 ---------- 281
포털사이트 -------- 281
포트폴리오 --------- 281
폭파해체공법 ------- 281
표결 ---------- 282
표준지공시지가 ----- 282
푸드뱅크 ---------- 282
품질인증마크 ------- 282
풍치지구 ---------- 283
프라임타임 --------- 283
프레온 가스 -------- 283
프로토콜 ---------- 284
플러그인 ---------- 284
피드백 ---------- 284

ㅎ

하구언 ---------- 285
하도급 ---------- 285
하드웨어 ---------- 285
하이테크 공해 ------ 285
하이퍼 인플레 ------ 286
하자 ---------- 286
한계기업 ---------- 286
한계자원 ---------- 286
한국경영자총협회 ---- 286
한국공업규격 ------- 286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286
한정치산자 --------- 287
합류관거 ---------- 287
핫 뉴스, 스폿뉴스 --- 287
핫 라인 ---------- 287
핫 머니 ---------- 287
핫 미디어, 쿨 미디어 -- 287
해상도 ---------- 288
해직청구 ---------- 288
해커 ---------- 288
행정과목 ---------- 288
행정규제 ---------- 288
행정대집행 ---------- 288
행정서비스헌장 ------- 288
행정재산 ---------- 288
행정처분 ---------- 289
행정처분의 부관 ------ 289
행정통제 ---------- 289
행정협의회 ---------- 289
허가 ---------- 290
헤지펀드 ---------- 290
호프만식 계산법 ------ 290
호환성 ---------- 290
혼잡비용 ---------- 291
혼잡세 ---------- 291
홈페이지 ---------- 291
홍보 ---------- 291
화상회의 ---------- 291
화학적 산소요구량 ---- 291
환경개선부담금제 ----- 291
환경권 ---------- 291
환경보전도시 --------- 292
환경영향평가제 ------- 292
환경오염유발부담금제 - 293
환경호르몬 ---------- 293
환매 ---------- 293
환승시설 ---------- 293
환지 ---------- 293
활성슬러지 --------- 294
활성오니법 ---------- 294
활성탄 ---------- 294
회기 ---------- 294

회기계속의원칙 ---- 294
회기불계속의원칙 -- 294
회보 ---------- 295
후순위채권 -------- 295
훈령 ---------- 296
휴회 ---------- 296
희석법 ---------- 296

A

ADB ---------- 297
AFTA ---------- 297
APEC ---------- 297
ARS ---------- 297
ASEAN ---------- 298
ASEM ---------- 298
ATM ---------- 299

B

BBS ---------- 300
BESETO --------- 300
BIS ---------- 300
BIT ---------- 300
BK ---------- 301
BLT ---------- 301
BOD ---------- 301
BOO ---------- 301
BOOT ---------- 301
BOT ---------- 301
bps ---------- 302
BR ---------- 302
BTO ---------- 302

C

CALS ---------- 303
CATV ---------- 303
CB ---------- 304
CBD ---------- 304
CCTV ---------- 304
CDMA ---------- 304
CD ---------- 304
CD-ROM ---------- 304
CEO ---------- 304
CIO ---------- 305
CIP ---------- 306
COD ---------- 306
CPX ---------- 306

D

DI ---------- 307
DID ---------- 307
DM광고 ---------- 307
DO ---------- 307
DR ---------- 307
DRG ---------- 307
DVD ---------- 307

E

EAEC ---------- 309
EDI ---------- 309
E-MAIL ---------- 309
EPS ---------- 309
EQ ---------- 309
Escrow ---------- 309
ESSD ---------- 309

F

FRB ---------- 310

G

GD마크 ---------- 311
GDP ---------- 311
GIS ---------- 311
GNE ---------- 311
GNP ---------- 311
GR ---------- 311
GRDP ---------- 311
GSP ---------- 311
GTR ---------- 311

H

HTML ---------- 312

I

IAEA ---------- 313
IBRD ---------- 313
IC카드 ---------- 313
ID카드 ---------- 313
ILO ---------- 313
IMF ---------- 314
IP ---------- 314
IP주소 ---------- 315
IR ---------- 315
ISDN ---------- 315
ISO ---------- 316
ISO9000 ---------- 316
ISO14000 ---------- 316
ISP ---------- 317
IULA ---------- 317

J

J턴 현상 ---------- 318

K

KEDO ---------- 319
KOSPI 200 -------- 319
KRRC ---------- 319
KT마크 ---------- 319

L

LAN ---------- 321
L/C ---------- 321
LNG ---------- 321
LPG ---------- 321

M

M&A ---------- 322
MBO ---------- 322
MIS ---------- 322
MLA ---------- 323
MMF ---------- 323
MP3 ---------- 324
MS-DOS --------- 324
MS-WINDOWS --- 324

N

NAFTA ---------- 325
NASDAQ --------- 325
NGO ---------- 325
NI ---------- 326
NMS ---------- 326

O

OA기기 ---------- 327
OECD ---------- 327
OHP ---------- 327
OJT ---------- 328
OPEC ---------- 328
O-157 ---------- 328

P

PCS ---------- 329
PDA ---------- 329
PER ---------- 329
PFI ---------- 329
PIMBY현상 -------- 330
POS시스템 --------- 330
PP카드 ---------- 330
PPM ---------- 330
PUD ---------- 330

Q

QC ---------- 331

R

RAM ---------- 332
R&D ---------- 332
ROM ---------- 332
RRC ---------- 332

S

SI ---------- 333
SOC ---------- 333
SOHO ---------- 333

T

TCP/IP ---------- 334
TDR ---------- 334
TQC ---------- 334
TQM ---------- 335
TRS ---------- 335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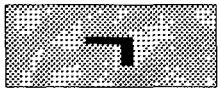
UPS ---------- 336
UR ---------- 336
URL ---------- 336

V

VAN ---------- 337

W

WTO ---------- 338



가격선도(價格先導) 과점화(寡占化)된 시장에서 주도적인 한 대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먼저 결정하면 다른 기업들도 모두 이에 따라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 예컨대 A사가 먼저 가격을 공표하면 잇달아 제2위인 B사도 이에 따르고 제3위의 C사도 보조를 맞추게 되는 경우. 그러나 이것은 기업간에 일정한 판매가격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담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협정이 아니며, 이 점에서 카르텔과 다르다.

가격파괴(價格破壞) 저코스트 저마진을 기본으로 하는 디스카운트업체(전문할인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공장직거래방식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가격을 시중가격보다 20~50%까지 싸게 판매하는 것을 지칭. 이제까지는 제조업체들이 공급자 우위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내가격을 주도해 왔으나, 전문할인점들이 기존의 가격체제를 파괴함에 따라 제조업체 위주의 상품 유통 체계가 깨어지는 것. 세계시장의 단일화, 생산기지의 세계화 추세가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가격파괴 현상은 우리 나라와 미국,일본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전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가격협정(價格協定) 동일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협정을 맺어 가격을 정하는 일.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경쟁이 심해질때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확보하고자 취해지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어 소비자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가계소득(家計所得) 가족들이 일하여 얻은 근로수입, 장사를 하여 얻은 사업수입, 집세·지세·이자·배당금등으로 얻은 재산수입 등을 합한 가족의 총소득.

가능교통용량(可能交通容量) 실제의 도로 및 교통조건과 함께 어느 시간중에 차선 또는 차도의 일단면(두 방향 2차선 도로에서는 양방향)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최대수. 시간단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1시간당의 교통량으로 나타낸다.

가도시화(假都市化) 시장경제에 쓰이는 가수요에서 유래된 표현으로서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팽창현상. 가도시화는 도시의 성장과정이 선진공업국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산업발달에 따른 농촌 노동인구의 흡인작용에 의한다기보다 농촌경제의 파탄에 의한 이농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같은 현상을 인구의 압출

현상이라 한다. 즉 도시의 경제기반 없이 농촌실업자의 증가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현상.

가동률(稼動率) 조업률(操業率)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설비 가동비율에 대한 그 생산능력을 100으로 하여 %로 나타낸것. 가령 가동률이 80%라면 10대의 설비 중 8대의 설비가 완전 가동되고 있다는 것임.

가득률(稼得率) 가공무역에서 자국으로 순수하게 입금되는 외화획득비율, 즉 한 국가의 총수출액 중에서 실제로 가득한 외화에 대한 백분율. 외화가득률은 자국의 원자재를 많이 사용해서 생산한 상품일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또 가공도가 높을수록 가득률도 높아지므로 부품의 자급도 향상 등 국산품 대체가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득률은 FOB수출가격-CIF원자재가격/FOB수출가격×100으로 계산하고 있다. 여기서 FOB(free on board)란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을 말하고,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란 운임 보험료 부담조건을 지칭한다.

가등기효력(假登記 效力) 가등기는 순위보전(順位保全)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예컨대 A로부터 B로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은 다음 A로부터 C로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있고 그 뒤에 A에게서 B로 넘어가는 본등기가 있으면 B는 C에 우선한다. 또 A를 위한 저당권(抵當權)설정 가등기가 있고 이어서 B를 위한 저당권 설정 본등기가 있은 다음 A를 위한 저당권 설정 본등기가 있으면 B의 저당권 순위는 A보다 후순위가 된다.

가로비품(街路備品) 가로등, 벤치, 표지판, 버스정류장, 매점, 식품, 기타 가로의 장비,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라서 가로는 보도를 희생하여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보도는 지하공간에 공공시설(전화, 상·하수도)의 수용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여 최근에는 이와같은 공공시설물의 증가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형편이다.

가변차선제(可變車線制) 도로의 효율적 이용, 교통소통의 원활화,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보통 대도시내 교통혼잡구간(예 : 병목현상이 심한 교량구간)에서 사용, 도로는 원래 좌우 동일차선제를 유지하나 대도시내에서는 교통시간(출퇴근시간)에 따라 좌우차선의 교통용량이 큰 차이를 보여 그 구간 유출입 차량의 상대적 소통효율이 떨어져 교통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

서 좌우 차선수를 시간, 교통량에 맞게 조절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차량통행이 많은 쪽의 차선수를 늘리고 적은 쪽을 줄이는것. 이 가변차선제의 통행신호 방식으로는 표지판식, 신호등식, 이동 가설물식의 3가지가 있으며, 차선색은 황색선으로 한다.

가상기업(Virtual Corporation)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기업형태로,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사무실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떠올려지지만 사무실이 없이도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업형태를 가상기업이라 부른다.

가상대학(Cyber University) 가상대학은 학교에 가지 않고 캠퍼스 밖에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해 원격수업을 받아 실제로 학교생활을 하듯 원격으로 강의를 듣고 가상도서관에 가서 관련서적을 찾아보며 토론과 대화도 사이버 공간에서 나눌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컴퓨터에서 멀티미디어 기술을 응용하여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이다. 영화를 감상하는 관람객은 단순히 허구의 세계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만 가상현실의 세계에서는 컴퓨터 화면속에 창조된 허구의 환경에 들어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완공하기 전이라도 가상현실에 의한 모델을 통해 완성된 이후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시스템이나 병석을 떠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마치 산책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등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가속차선(加速車線) 본차선에 합류하는 차량의 속도를 안전하게 합류할 수 있는 속도로 가속시키기 위한 변속차선.

가십(Gossip) 가십은 원래 험담이나 루머 등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말하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스트레이트로 처리하기 힘든 흥미거리·뒷이야기·험담·낙수·스케치 등을 함축성 있게 처리한 기사로 사용하고 있다.

가압류(假押留)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전, 채권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이나 그 집행을 하는 처분.

가이드라인(Guide-Line) 도로표지, 지침, 판단기준,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의 지도방침을 나타내는 말. 임금과 물가의 결정에 있어 정부가 과거의 생산성 상승률 수

지를 가이드 포스트(guide-post)로 표시하여, 임금·물가의 상승이 국민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민간기업과 노동조합을 지도하는 이 정책은 뉴 이코노믹스(new economics)에 입각한 코스트 푸시(cost push) 인플레의 억제를 위한 소득정책의 하나로 1960년대 호황기에는 퇴색하였으나 오일 쇼크 이후 인플레문제가 고질화되자 서구 각국에서 부활되고 있다.

가정(家庭)도우미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직접 대상가정을 방문, 목욕·용변수발, 식사시중, 편지써주기, 책읽어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가정도우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이제까지 자원봉사자에 의해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가정봉사활동이 활성화돼 노인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가중치(加重値) 웨이트(weight) 또는 평량치라고도 부르며 일반적으로는 평균치를 산출할 때 각 개별치에 부여되는 중요성. 이 중요성을 무엇에 의하여 측정하는가, 그 결과가 어떤 뜻의 평균을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이 가중치의 문제점이다. 한 사업의 시행결과를 심사분석할 때 그 사업의 내용별, 과정별 중요도가 가중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 수치에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가처분(假處分)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등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 보전을 위해 해당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에 의한 타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假定的)으로 행해지는 처분, 가압류(假押留)와 더불어 보전소송(保全訴訟)의 일종.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수출입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다각적인 교섭을 통해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1948년에 발족된 국제경제협정. 관세, 무역 등 물자교류면에서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유일한 기구로 2차대전 후의 국제무역은 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무역장벽을 해소하려는 이 협정에 있어서도 제19조에 "예측 되지 않은 사정으로 특정 외국상품이 자국내의 상품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가트 의무를 면제한다" 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각하(却下) 일반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으로 형식적인 요건 (요식행위)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그 안건심리를 거절하는 것. 따라서 안건심리의 결과, 청구의 이유 또는 제소(提訴)의 이유가 없다고 불용인(不容認)의 판결 또는 결정을 행하는 기각(棄却)과 다르다.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되는 이의신청, 소원, 소송, 기타 민원 신청 등에는 각하, 기각, 인정의 3가지 중 어느하나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각하의 경우는 불비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 또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간선도로(幹線道路) 지역 혹은 도시내에 있어서 골격적인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설계속도가 높고 도로폭은 대량의 교통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간접보조금(間接補助金) 국가외의 자(者)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또는 일부로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표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間接補助事業)이라 한다.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Depreciation) 공장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가치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사용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감가되며 그 기간마다 일부 가치가 생산물에 이전된다는 견해에서 각 기간의 비용으로 할당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내용연수(耐用年數)로 나누어 일정한 계산방법에 의거 배분함으로써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 계상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리(監理) 건축주가 시공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일.

감모상각(減耗償却) 광산의 매몰광물처럼 천연자원의 채굴이나 채취에 의하여 마침내 고갈하는 감모성 자산의 상각을 말한다.

감보(減步) 시행지구내 모든 토지 소유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종전의 토지 면적에 비하여 환지의 면적이 다소 감소하는데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의미한다.

감보율(減步率)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주들에

게 일정률의 토지를 공출받는데, 이때 공출 받는 토지의 비율.

감성지수 ➡ p24 하단

강연회(Workshop) Work와 Shop의 합성어로 일터·작업장을 의미하며, 참가자에게 전문가가 조언을 주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주적인 토론과 실습을 시키는 방식의 강습회를 말하며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연사로 내세워 정책을 설명케 함으로써 정책실무자는 연설내용으로부터 정책대안도 도출하고, 아울러 다수의 청중 및 공중에게 정책에 대한 호의와 지지를 유도할 수 있음.

강제집행(强制執行) 민사소송법에서 판결로서 확정한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행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또는 행정법에서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주체가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시키는 일을 말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채권, 부동산 등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채무자의 최저생활보호와 국가재정보호라는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압류를 금하고 있다. 즉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기술자 등의 직업상 필요한 물건, 법률상 부양료, 봉급생활자 월급의 2분의 1, 구호사업에서 받은

감성지수(感性指數, emotional intelligence;EQ)

감성지수는 지능지수(IQ)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지수'를 뜻한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만의 저서 「감성지수」(emotional intelligence)에서 유래됐지만 타임즈가 이 책을 특집으로 소개하면서 'EQ'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기업과 학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감성지수는 지능만을 검사하는 지능지수와는 달리 조직에서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들 간에 얼마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팀워크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가를 평가하고 있어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일본IBM은 감성지수를 바탕으로 직속상관뿐 아니라 동료와 부하직원도 평가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관리직의 인사고과에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물론 감성지수의 객관성 확보가 문제시되고 있지만, 멀지않아 채용이나 승진에서 학력이나 지능보다 감성지수가 더욱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계속수입 등은 압류할 수 없다.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 즉 현금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강제징수(强制徵收) 조세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 강제징수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재산압류→공매처분→충당처분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독촉은 납기를 경과하여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그 납기를 촉구하고 그 지정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행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촉절차를 결(缺)한 체납처분은 무효이다. 채무자가 독촉장에 지정 한 납기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처분의 목적재산의 견적가격이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며 이로써 그 채무는 소멸한다.

개발교통량(開發交通量) 토지이용의 변화와 개발에 의해 새로이 발생하는 교통량. 특히 자동차교통량은 고속도로 등을 새로이 개통할 경우 새로운 교통을 유발하게 된다.

개발권이양제도(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개발권 이양제도는 토지소유권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기법. 개발권이양제도는 재산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여 토지에서 분리된 개발권을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추가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이때 개발권의 지표로는 보통 용적률과 호수밀도가 사용되며 다른 필지로 이전할 수 있는 용적률이나 호수밀도는 지역제로 정해진 개발 허용한도 가운데 미이용 부문(법정 용적률과 현재 이용 용적률의 차이)이 됨. 이 제도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개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음. 물론 일단 개발권을 매각해 버리면 그 대지 내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개발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개발이 불가. 개발권 이양제도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뉴욕시에서 고안되어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도시의 고밀도 지역에서 역사적 구조물의 보존을 위해 사용되다가, 점차 교외나 농촌지역의 농지 혹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습지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법으로 제안되고 있음. 개발권 이양제도는 역사적 건축물이나 자연환경을 위한 보존지역과 개발이 요구되는 특정 지역에서 유용함. 개발권 이양제도는 기존의 토지나 건축물의 보존가치와 상관없이, 지역제에서 허용된 용

도와 규모로 개발할 수 있다는 기존 용도 지역제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시장 주도형 도시 개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 그리고 공공이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유재산의 보호, 즉 토지 소유자 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됨.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개발이익을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개발손실(開發損失) 개발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 도시개발은 그 대상지의 지가상승 등 개발이익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공사에 따른 건물붕괴, 개발에 따른 강제이주, 도로에 의한 소음공해 등이 그것이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평가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손실은 개발이익 보다 적게 또는 상쇄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이익(開發利益) 도시계획·도로·철도·수도 등 공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변의 지가(地價)가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 그 지가상승으로 생기는 이익 부분. 이것을 기업(起業)이익이라고도 하는데, 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불로소득(不勞所得)이므로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미이용지세(未利用地稅), 개발부담금, 토지증가세 등 새로운 세제(稅制)에 의한 개발이익의 흡수가 거론된다. 최근에는 공공사업의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동시에 땅값이 뛰므로 「토지수용법」등을 적용하여 수용지(收用地)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당시의 지가에 둔 것도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수 있다.

개발이익환수법(開發利益還收法)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른 땅값'(개발이익)중의 50%를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는 내용으로 90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 뒤의 땅값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의 땅값을 뺀 후 개발비용 및 정상 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금액. 개발규모 1,000평 이상의 도시계획·토지형질변경·토지구획정리·택지개발·도심재개발·관광사업 등이 해당된다.

개발차관(開發借款)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장기융자의 하나. 이것은 1951년에 제정되었던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에 의거한 개발차관기금(DLF)의 후신(後身)으로 미국대외원조법(FAA)중의 경제원조 분야인 국제개발법 (AID : 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AID차관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대외원조 공여방식이 원조에서 차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DLF 및 이의 후신인 AID차관은 미국 대외원

조의 주종이 되고 있다.

개발촉진지역(開發促進地域) 산림지, 잡종지, 기타 이용도가 낮은 토지로서 토지의 기능과 적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상태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초지·대지·공장용지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산급(概算給) 미확정 금액의 채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략의 계산에 의하여 경비를 지급하는 경비지급의 한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러한 지급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개산급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하는 점에 있어서는 선금급과 같으나 금액이 미확정인 점에 있어서 양자는 구별된다. 즉, 선금급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일단 확정된 것을 미리 지급하는 것임에 반하여 개산급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당초부터 미확정이고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산급할 수 있는 경비는 여비·운임·용선료·소송비용·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부담금·교부금과 보조금등이다.

개회·개의·산회·폐회(開會·開議·散會·閉會) **개회**는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로 표현하고 있다. 즉, 1회기에 있어서 전체로서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것과 구별하여 **개의**는 회기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뜻하며 "제○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등의 형식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산회**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종료하고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산회를 선포하지 않으면 24:00에 자동으로 산회의 효력이 발생하며 **폐회**는 개회의 반대개념으로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뜻하나 회기종료일도 산회를 선포하므로 별도의 폐회 선포는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즉, 폐회는 예정되었던 회기를 끝마치는 것을 말한다.

거대도시(巨大都市, Metropolis)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대와 막대한 인구증가는 전

세계를 통해서 다수의 거대도시를 형성했다. 이러한 도시에는 종래의 단순한 대도시란 호칭에 대해서 metropolis란 말이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다. metropolis는 대체적으로 ① 100만인 이상의 규모를 가진다. 그러나, 100만인 이상의 도시 중에는 metropolis가 아닌 것도 있다. 국부적인 지역에 대해서만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아무리 그 면적과 인구가 커도 metropolis로서 분류되지 않는다. ② metropolis는 단순히 지방적·전국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London, New York, Paris는 metropolis의 예다. ③ metropolis는 성장하여 지역(region)이 되고, 동시에 큰 주변지역, 즉 대도시권에 대해서 도시적 기능을 수행한다. ④ 위성도시를 포함한다.

거점개발론(據點開發論) 국토의 공간적 구성면에서 볼 때 지역특성과 정책목표 때문에 모든 지역이 똑같이 발전할 수 없다. 즉 자연조건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방은 그 발전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낙후지역의 효과적 개발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점이나 지방도시에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그 지역 성장의 교두보를 삼자는 것이다. 1950년대 프랑스의 페록스(Perroux)가 지역개발 전략으로 성장거점 개발론을 주장한바 있다.

거점도시개발(據點都市開發) 입지조건을 감안해서 거점도시를 설정하여 이 도시를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개발의 효과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불균형성장지역 즉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개발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거주여권(居住旅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국외이주를 신고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자, 거주지국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발급하는 여권임

건설공채(建設公債) 국가가 도로·철도등 건설·개량사업이나 전원(電源)개발사업 등 건설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채. 이에 대해 일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경상수입이 일시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채를 적자공채라고 한다.

건설산업(建設産業) 기업으로서 그 영업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 이 산업의 중심업종은 건설업이며 건축물 부품의 전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와 이를 조립하는 전문하청업자도 있다. 보다 좁은 뜻의 정의로는 직접적인 건설공사, 건축물의 유지보수, 주요설비의 개축공사업등이 된다. 클라크 교수의 산업분류에는 서비스업으로 3차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건축사(建築士)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者)를 말하고,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토목·전기·기계·화공·통신·환경관리·에너지·국토개발 또는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건축사보(建築士補)라 한다.

건축선(建築線) 장래 건축물을 도로에 접근하여 건축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선.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排水)·배수(配水)·환기·난방·냉방·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

건축용지율(建築用地率) 일정지역에 있어서 토지면적에 대하여 건축용지가 차지하는 비율. 시가지에서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교통용지가 증가하여 건축용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건축제한(建築制限) 건축물의 구조체, 사용하는 재료, 건축공법등에 대한 제한. 이들은 법령으로 채택되거나 계약조건으로 명기된다. 건축제한의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양식·건축비용·사용자재·부지내에서의 건물의 위치·도로로 부터 건물까지의 거리·높이 또는 깊이에 대한 설계조건·건물의 용도에 대한 규제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좀 더 강화하여 공원·주차장·기타 택지분양 등을 허가할 때 생활환경의 쾌적성등에 대한 내용도 건축규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축폐기물(建築廢棄物) 고층빌딩 건설에 의한 도시 재개발, 고속도로 교량 공사 등에 의해 잔토는 물론 건설폐재, 폐플라스틱, 금속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데 이를 건축폐기물이라 한다. 최근, 매립할 장소가 부족하게 되어 불법적인 투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이것은 하천을 오염시키며 악취, 가스 등 각종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건폐율(建蔽率) 대지(垈地)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이 비율.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킨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건폐율이
① 綠地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② 住居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③ 工業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④ 商業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⑤ 地域의 지정이 없는 區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이어야 한다.

검토보고(檢討報告) → 제안설명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일반적으로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의해 선거구를 결정하는것. 즉 반대당이 강한 지역을 억지로 분할하거나 자기당에게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결합시켜 당선을 획책하는 것. 이는 1812년 게리(Gerry E)가 매사추세스 주지사로 있을때 자기 당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선거구를 부자연한 모양으로 구획하여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샐라맨더(salamander : 불속에 산다는 전설의 불도마뱀)과 비슷했던데서 유래된 말이다.

격자형가로망(格子型街路網) 도시의 골격구성은 도로 패턴에 의하여 짜여지게 된다. 오랜 역사를 두고 발달하여 온 도시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제도와 기술발전, 즉 생활수단, 특히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그 구성형태가 변하여 왔다. 격자형이란 가로망의 체계를 바둑판처럼 정형(正型)으로 배열한 패턴이다. 도시 토지이용이나 교통소통면에서 비효율적이고 획일성으로 단조로운 단점이 있으나 중세이후 도시계획에 가장 많이 이용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결산(決算) 1회계년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과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에 의하여 수입·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를 의미. 국가재정에 관한 입법부의 통제·감독은 예산의 심의와 함께 예산집행의 실질적인 결산의 검사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결산제도는 예산제도와 함께 근대 재정입헌주의에 있어서 두개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예산에 관한 입법부의 의도가 충실히 실현되었는가의 여부는 결산에 의하여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1회계년도 동안에 있어서의 국가재정의 집행실적과 국가의 활동상황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명시하는 결산은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로써 국가의 재정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결산과 예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은 그 성립후에 전년 도로부터의 이월, 예비비의 지출 등이 있으며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 연도에서의 이월 등도 있기 때문이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실적이므로 예산집행이 완결되어야 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4조 제1항은 "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산은 회계검사기관의 검사 확인과 국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확정되며 그 효과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책임이 해제 된다.

결산잉여금(決算剩餘金)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한 결과 남은 잉여금(剩餘金). 잉여금의 처리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은 타 법률에 의한 처리 이외에는 이월액(移越額)을 공제한 잔액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년

도의 세입으로 하거나 국채의 원리금(元利金)또는 차입금(借入金)의 상환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산의 확정은 다음 회계년도의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잉여금의 처리는 다음 회계년도의 추가경정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결손처분(缺損處分)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말미암아 이미 부과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행정처분. 결손처분의 사유는 ①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②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조세가 소멸시효에 해당될 때 ④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확 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 ⑤기타 개별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이다.

결정고시(決定告示) 도시기본 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고 시장·군수가 일반인에게 고시하는 것으로서 계획수립이 완료되지만 도시(재정비)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결정고시라 한다. 결정이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법기관(건설교통부장관)의 판결인 동시에 명령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계획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諸表) ➡ p32 하단

경관녹지(景觀綠地)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므로서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KRRC) 지역특성에 맞는 집중육성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토록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대학 및 기업체가 재원을 지원·운영함

경기동향지수(景氣動向指數)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한다. 경기변동 요인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나타나 점차 경제전반에 확산 파급되어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경기를 측정·예측하는 수단. 작성방법은 계절변동과 불규칙요인이 제거된 계열을 가지고 전월(前月)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총계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예컨대 20개의 대표계열 중 10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동향 지수는 50%로 나타난다. 경기동향지수는 현재 미국·일본·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 주요 선진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부터 한국은행이 매월 작성하고 있다.

경기벤처펀드(Kyonggi Venture Fund) 참신한 아이디어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시설확장 등 성장에 필요한 규모있

는 자금의 직접 투자와 함께 경영지원 등을 통해 육성한 후 코스닥 등에 상장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투자조합으로 여기서 올린 수익은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나눠주는 것. 투자조합의 운영은 일정한 담보를 요건으로 융자하여 금리 마진을 획득하는 기존 금융과는 달리 무담보 주식투자 등을 원칙으로 하며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 법률"에 기초한 신기술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를 둔 창업 투자회사를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엔젤마트(Kyonggi Angel Mart) 경기엔젤클럽을 통하여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엔젤(개인 투자자)을 대상으로 자기 기업의 사업현황과 계획을 설명하는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경기엔젤클럽(Kyonggi Angels Club) 벤처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운영하는 벤처기업 개인투자가들의 모임.

※ 일반적인 엔젤클럽의 의미 :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유자에게 장래성과 기술력을 보고 투자하여 성장을 한 다음 수익을 얻는 개인 투자가들의 모임

경기으뜸이(京畿으뜸이) 경기으뜸이는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주고 근로의 소중함을 되살리기 위해 한 분야에서 독특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諸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30대 그룹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재표로 모든 국내외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과거에는 계열사끼리 통합해 단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만든 연결재무제표 방식을 써왔으나 이 방식을 대상 기업의 범위가 작고 누락되는 계열사가 있어 그룹 전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의 지분율만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결합재무제표는 회사 간의 출자자본 비율만으로 작성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IMF 사태 이후 결합재무제표의 전격적인 도입을 추진하여 99년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기업들이 작성해야 할 재무재표는 전체 계열사와 금융업, 비금융업 등 3개부문이며 그 종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결합자본변동표 등 4가지이다. 그리고 계열사간 내부지분율과 상호빚보증 현황 및 계열사간 담보제공과 상호자금 대차관계를 매트릭스 형태의 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외계열사 지분총액과 매출·매입 거래는 총액만을 표시하면 된다.

자를 대상으로 인기도와는 상관없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발굴 인증패를 수여하고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자랑스런 경기인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3대 이상가업을 계승해 발전시킨 사람 △투철한 직업의식 및 탁월한 직능을 소유한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률적이며 타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베푼 사람을 대상으로 발굴한다. 경기으뜸이로 발굴되면 인증패 수여를 비롯 무형문화재 가치가 있는자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종합지수(景氣綜合指數, composite index;CI)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로, 각종 경제지표들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합성해 작성하며 1981년 3월 통계청에서 편제한 이래 매월 작성되고 있다. 전월에 대한 경기종합지수의 증감률이 정(+)일 경우에는 경기상승을, 부(-)일 경우에는 경기하강을 나타낸다. 또한 그 증감률의 크기에 의해 경기변동의 진폭까지 알 수 있으므로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은 물론 변동속도까지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전환점에 대한 시차 정도에 따라 선행(先行)·동행(同行)·후행(後行) 종합지수의 3개군으로 구분된다. 이들 경제종합지수들은 경제시계열의 변동요인 중 계절 및 불규칙 변동요인이 제거된 추세·순환변동치로 작성되고 있다.

경로연금(敬老年金)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연금혜택 부여

경륜(競輪, Cycle Racing) 경마와 거의 같은 도박성이 강한 레저스포츠. 다만 말이 자전거로 바뀌고 벨로드롬이란 특수한 자전거 경주용 트랙이 필요한 점이 다르다. 전세계에서 경마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만 경륜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일본·이탈리아·미국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1년 관계법이 제정되고, 92년 10월 시행령을 공포,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이며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자전거공업발전기금, 기타 공익사업 등에 쓰고 있다.

경상거래(經常去來)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이외의 부분. 곧 상품매매·서비스 수수·물물교환 증여 따위를 말함. 국내경제거래를 국제수지로 계상할 때에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어 전자를 경상계정에 후자를 자본계정에 넣는다.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 물물교환, 증여등이며 거래대상이 되는 것은 ①수출품, 수입품, 물물교환의 물품 ②비화폐용 금(金) ③외국여행비 ④해상·항공운임, 용선료, 항만수입 등 ⑤보험료 ⑥이자, 배당금 등의 투자수익 ⑦수수료 등 상업 이윤 ⑧공관

비 등 정부출비 ⑨통신료 ⑩그밖의 서비스, 이중에서 ①과②의 수지를 무역수지, 기타를 무역외수지라고 한다.

경상수지(經常收支) 한 국가의 대외 거래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로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를 합한 것. 보통 국제수지적자 또는 국제수지흑자를 말할때 대개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한다. 경상수지에 자본수지를 합한 것이 종합수지이며, 자본수지중 장기자본수지와 경상수지를 합한 것이 기초수지이다.

경상이익(經常利益) 한 사업년도(결산기)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이자·배당금·잡수익)과 비용(지불이자·할인료·잡손실)을 가감한 것. 기업실적이 양호한지의 여부를 아는데 가장 적합한 척도로 중요시된다. 고도성장기의 기업은 차입금이 많고 영업외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입금을 줄이거나 반대로 거액의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영업외수익을 올려 경상 이익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기업도 많다. 경상이익에 임시적인 특별손익을 가감하고 세금을 빼면 당기이익(최종이익)이 된다.

경상지출(經常支出, Current Expenditures) 경상비라고도 한다.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말한다. 매년 필요한 경비이므로 예산편성시 영속성 있는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공무원의 급여나 국채의 원리금 지급, 각종 보조금등이 포함된다.

경성뉴스(硬性뉴스, Hard News) 경성뉴스는 정부의 정책, 국제관계 등 매우 큰 비중을 갖는 뉴스 항목으로서,즉각적인 기쁨이나 흥미를 주지 않더라도 그 영향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나타나는 뉴스이다. 여기에는 시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경수로(輕水爐, Light Water Reactor) 감속재(減速材)와 냉각재로 경수(輕水)를 사용하는 원자로.처음에 미국에서 잠수함 동력로(動力爐)로 개발되었다. 연료인 우라늄 235가 핵분열하여 튀어나오는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재로 줄여 연쇄반응을 제어한다. 냉각재 사용방법의 차이에 따라 2가지 형(型)이 있다. 하나는 비등수형(沸騰水型)으로 노심(爐心)에서 비등하고 있는 물의 수증기를 그대로 발전용 터빈으로 보낸다. 또 하나는 가압수형(加壓水型)으로 노심의 물에 175기압의 고압을 가해 비등을 방지한 고온수를 증기발생기로 보낸다음 그곳에서 2차 냉각수를 비등시켜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린다. 세계에서 가동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80%가 경수로로 그 가운데 가압수형이 약 70%, 비등수형이 30%이다.

경전철(輕電鐵) ➡ p35하단

경제5단체(經濟五團體) 경제5단체란 ①대한상공회의소(大韓商工會議所), ②전국 경제인연합회(全國經濟人聯合會), ③한국 무역 협회(韓國貿易協會), ④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⑤한국 경영자 총협회(韓國經營者總協會)를 말한다.

경제수역(經濟水域) 1982년 5월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법으로서 연안국의 해안으로부터 2백해리(약 370㎞)까지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수역내의 자원은 어업·광물·석유를 막론하고 모두 연안국의 권리가 미치는 외에 해양오염방지, 외국선박에 의한 과학조사에 대해서도 특정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에 대한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入漁)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영해(領海)와 같이 완전배타적인 주권과는 달리 항해나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케이블·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등 공해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경제지표(經濟指標, economic indicator)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적인 통계를 말한다. 경제활동은 생산·소비·무역 등의 여러 가지 면을 지니며 따라서 경제통계도 여러종류가 있다. 각 면의 대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주요 경제지표로는 국민소득통계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등의 생산활동지표, 재정수지실적, 통화발행액 전국은행예금 대출 등의 금융지표, 수출입실적 수입승인 수출입신용장 외국환 등의 무역·국제수지지표, 고용지수 임금지수 등의 노동관계지수, 주가지

경전철(輕電鐵)

경량전철의 줄임말로 지하철과 버스의 단점을 보완한 일종의 철도차량, 주로 15~20㎞의 도시구간을 운행하며 수송능력이 우수하고 건설비와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수송능력은 시간당 4천~4만명으로 지하철 3만~7만명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버스의 2천~5천 명보다는 월등히 높다. 건설비용도 지하철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무인자동운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하철에 비해 인건비도 50% 이상 줄일 수 있다. 경전철의 종류는 리니어 모터카, 모노레일, 디젤엔진과 전기를 병용하는 이중동력궤도 정지버스로 나눌 수 있다. 또 전차와 같이 레일 위를 달리는 레일식과 버스와 같은 형태의 고무바퀴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강동역-하남'구간과 부산의 '하남역-김해'구간을 비롯, 서울, 부산, 대구, 부천, 용인 5개 시 12개 노선을 오는 2010년까지 민간자본 5조원을 끌어들여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수나 주식거래액 등의 주식지표 등이다. 그리고 몇 가지 경제지표를 합성하여 경기변동을 확인하고, 장래의 경기변동을 예측하는 지표를 경기지표라고 한다.

경제특구(經濟特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된 특별구역. 중국은 1979년 부터 광동성(廣東省)의 심수, 주해, 산두, 복건성 하문의 4개소 외에 88년 4월에 해남도가 성으로 승격되면서 5번째로 설치된 최대의 경제특구가 되었다. 특전으로서 ①기업소득세가 저렴하고 ②100%외자도 인정하며 ③기업 개인의 국외송금이 자유롭고 ④고용 등 기업의 자주권이 크고 ⑤이익재 투자의 경우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합작기한이 장기적인 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經濟活動人口) 만 15세 이상 인구중 조사기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나 취업능력이나 의사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현역군인·전투경찰·방위병·기결수 등은 제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경직성 경비(硬直性 經費) 세출예산중 법률이나 확정된 정책 방침에 따라 지출규모 등이 미리 정해짐으로써 감축의 여지가 없는 경비.우리나라의 경우 방위비, 지방재정교부금, 교육교부금, 행정사무비 등이 그 예이다. 경직성 경비는 신규사업 없이 종래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경찰위원회(警察委員會) 경찰청의 발족과 함께 출범한 새기구로 경찰의 인사·예산·인권보호 문제 등 주요정책 및 업무를 포괄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은 경찰·군인·공무원을 퇴직하고 3년이 지난 사람 2명, 법관 출신 2명, 학계·사회단체·언론계에서 각 1명씩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화(硬貨, Hard Currency) 국제금융상환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늘 바꿀수 있는 화폐. 원래는 주화(鑄貨), 즉 코인(coin)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국제 금융상 특수한 뜻을 포함한 용어로 쓰인다. 즉 어떤 국가가 엄중한 외환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해 그 국가의 통화가 실질적으로 금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거나 또는 금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외국통화와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 그 국가의 통화를 경화라 한다. 미국의 달러가 대표적인 예이다. 완전한 경화라고는 할수 없으나 외환관리의 정도가 경미하여 외화와 어느정도 교환되는 통화를 준경화라고 한다. 이에 대해 외환관리가 시행되고 금 또는 외국통화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없는 통화를 연화(軟貨,soft currency)라 한다.

계류(繫留) → 폐기

계면활성제(界面活性齊) 물에 녹아들면 표면 장력을 저하시켜 친수기(親水基)와 친유기(親油基)를 가지므로, 물과 기름 양쪽 모두에 스며든다. 물에 녹여서 이온으로 해리될 때 이온의 성질에 따라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 활성제로 나뉜다. 수용액의 PH에 의해 음양 어느 쪽이라도 되는 것은 양성 이온 계면활성제라고 하며, 이온에 해리되지 않는 것은 비이온 계면활성제라고 한다. 습기, 침투, 유화(乳化), 확산, 흡착, 포말성, 용성(溶性)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세제, 살균제, 유화제, 도료, 염료 등 폭넓게 이용된다.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여러 해에 걸쳐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국가 예산은 매회계연도마다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속비는 예외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나 수년간 계속되는 공사에 계속비가 사용되는데, 그 연한은 5년 이내이다.

계약보증금(契約保證金)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부토록 한 금전. 법정 상대방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계약서(契約書)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합치된 의사표시를 성문화한 문서. 계약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라는 설과 계약의 사실을 증명키 위한 증거방법이라는 설도 있으나 통설은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계정(計定) 부기(簿記)에서 동일 종류 또는 동일 명칭의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항목에 대하여 그 증감 변화를 계산하는 단위. 계정에다 구체적인 명칭을 붙인 것이 계정과목이다. 복식부기에서는 재산계산의 경우나 손익계산의 경우에도 계산하는 항목의 하나하나를 계정으로 표시하게 된다. 재산계정의 결과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되고 손익계산의 결과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므로 계정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부채계정·자본계정으로 나누고, 손익계산계정은 비용계정과 수익계정으로 나눈다.

계층제의 원리(階層制 原理) 계층제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 함으로써 상하조직단위 사이를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서게 하는 것. 어떤 조직에 있어서도 그 조직을 편성·운영하는 자 는 부하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게 되고, 그 부하는 자기의 권한보다 작은 권한을 바로 밑의 부하에게 위임하게 되는

등급화 과정을 거쳐서 각 계층사이의 명령, 복종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령이 조직의 정점으로부터 저변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관계를 확립한다. 따라서 권한의 위임은 계층제의 전제가 되며 이 원리는 통솔의 범위·직무의 결정, 명령의 통일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PUD) 계획단위개발이란 토지이용규제 대상단위를 개별 필지나 기존의 지구로 하지 않고 일단의 사업지로 하여, 하나의 단위로 계획설계하고 이에 따라 개발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단위의 개발지를 필지단위로 계획설계하여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 전체를 일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계획설계하여 개발하게 된다. PUD기법으로 개발하게 되는 지역은 일반용도지역제 혹은 획지분할 규제 등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건물 용도, 용적율, 건물의 형태, 건물 높이, 최소대지면적 등의 계획설계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건물형태와 자유로운 건물의 배치가 가능하고, 토지이용의 혼합이 허용되며, 전체적으로 동일한 밀도의 한도내에서 부분적으로 고밀도의 주택군을 계획하고 주차장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당부분의 토지를 자연상태로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단위개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동의 편익과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계획예산제(計劃豫算制, PPBS) 이 제도는 1942년 미국의 The Controled Materials Plan에서 비롯되며, 이것은 최소한의 자원을 필수불가결한 사업에만 배정함으로서 전쟁수행을 돕는 작업이었다.이 예산제도는 (J.F Kennedy) 행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R.McNamara)에 의하여 1961년에 국방예산에 처음 도입되었고, 1965년 존슨 (L.B Johnson)대통령에 의하여 전 연방정부에 도입되었으나, 1972년에 폐지되었다. 이 예산제도는 기본계획을 짜고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먼저 부처별로 기본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 다음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을 찾아내고 이른바 과학적 분석기법들을 동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이다.

고객만족경영(顧客滿足經營,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고객만족경영은 경영의 모든 부문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고객을 만족시켜 기업의 생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경영 조류의 하나로,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고객과의 거래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불만을 가지게 되면 주위의 모

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결국 1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을 잃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기에 대해 고객만족경영은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 것을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고 고객의 선호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해야 하고 고객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해 기업에 대한 사원만족이 필수적이므로 사원들의 복지향상, 일체감조성 등 사원만족도 아울러 뒤따라야 한다. 고객만족은 결국 상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획, 설계, 디자인, 제작, 애프터서비스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 제품에 내재된 기업문화 이미지와 더불어 상품 이미지, 이념 등 고차원적인 개념까지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만족경영은 시장점유율 확대나 원가절감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보다 고객만족을 궁극적 경영목표로 추구하는 것이다.

고령화사회(高齡化社會, aging society) 노령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가는 사회,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현재의 선진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으나 많이 낳고 일찍 죽는 '젊은 사회'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사회라는 반론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에는 장수사회(長壽社會)라는 용어를 쓰자는 의견도 있지만 노동력의 부족과 부양해야 할 노인의 증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고선명 텔레비전(HDTV, High Definition Television) 기존의 컬러텔레비젼보다 화질이 월등히 뛰어난 텔레비젼. HDTV는 주사선수가 기존 컬러TV의 525~625개 보다 2배 정도 많은 1125~1250개로 화면이 사진처럼 선명하며 화면의 가로 세로 비율도 기존 컬러TV가 16mm영화 화면과 같은 4대 3인 데 비해 35mm 영화 화면과 같은 16대9로 옆으로 길쭉해 시야각도가 30도로 넓어졌고, 또한 영상대역폭이 기존 컬러TV보다 5배 넓어져 현장감 있는 화면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영상대역 폭이 기존 컬러TV보다 5배 넓어진 20MHz에 달해 원색에 가까운 색상표현이 가능하다. HDTV는 현행 TV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영상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통신, 컴퓨터, 방위산업, 의료기기 등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미칠것으로 예상돼 일본, 미국, 유럽등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6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일본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을 합성한 뮤즈(MUSE)방식으로 91년 11월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컬러TV와의 호환성이 없고 정보처리의 불완전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보다 10년 정도 늦게 개발에 착수한 미국, 유럽은 그와 같은 문제가 없는 디지털방

식을 택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89년부터 개발계획이 정부에 의해 수립돼 업계와 정부출연 연구소가 공동 연구, 93년 세계에서 2번째로 HDTV용 브라운관 개발에 성공했다.

고속도로(高速道路) 특정한 유형의 차량통행만을 허용하는 도로. 도로나 그 부지 또는 건물입구에 직접 진입할 수 없는 접근성이 통제된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입체교차로를 갖는다. 따라서 교통이 정지없이 흐르므로 도로용량이 높다. 영어로는 도로설계의 기준에 따라 expressway, freeway, limited access highway, motorway, motorroad, throughway 등으로 표현된다 .

고수부지(高水敷地) 대부분의 하천은 하천수가 하천내에서 불규칙하게 흐르므로 하상을 넓게 점유하며, 따라서 큰 하천의 경우 많는 토지공간을 버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수가 흐를 수 있도록 깊게 정돈하여 양옆으로 성토를 하여 만든 부지로서 주로 운동공원으로 이용.

고엽제(枯葉濟)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미군이 정글 내의 전투에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삼림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화학 병기의 일종, 성분은 유기염소제 농약인 제초제, 2·4·5T이다. T는 트리클로로페놀의 약어, 이 제초제는 제조 공정에서 4염화 다이옥신을 주제로 하는 다이옥신류가 생성되어 피부 장해 및 유산을 일으키고, 최기형(催奇形) 독성이 강하다. 미 군대는 약 5년간, 고엽제 작전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베트남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인 참전군인은 아직도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보험제(雇用保險制, employment insurance) 국가가 실직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또한 근로자의 능력을 수시로 파악해 산업현장에 재배치하며 그 비용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분담하는 사회보험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에 시행되어, 1996년 7월부터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고용보험 하에서의 실업급여는 자기의 의사에 반해 불가피하게 해고된 경우, 그리고 실직하기 전 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로 한정된다. 그렇지만 임금체불이 일정기간 계속되거나 근로자가 신기술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간접적으로 퇴직을 강요당하고 형식상으로만 임의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업인정절차는 재취직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기본급여는 실직일 이전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해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경우 실적 전 임금의 50%를 개인별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30~210일 동안 지급되며,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2년까지 연장지급된다. 그리고 취직촉진수당은 실직자의 조속한 재취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본급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재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조기재취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일반 사회단체 및 종교·정치단체는 물론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30인 이상 사업체 모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다가 1998년 10월부터는 우리나라 전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또한 임시·시간직 근로자는 월 10일이상 14일 이하만 근무해도 3분의 2개월로 인정하여 시간급으로 산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IMF 사태로 급증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雇用許可制)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내기업은 규모별 고용상한선 범위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현지모집하거나 공공단체 등을 통해 채용, 1년 단위로 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게 된다.

고용촉진훈련(雇用促進訓練)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등의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비는 무료이며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며 훈련대상은 실업자(고용보험 미 적용자), 비진학청소년, 자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전업희망 농림어업인이며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년임. 훈련직종은 356개 직종이며 훈련자에게는 훈련수당으로 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해당자), 우선 직종수당 10만원(해당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2000년부터 고용촉진훈련에 맞춤훈련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직업훈련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훈련실시기관과 기업체간에 훈련직종 및 방법. 기술수준, 훈련수료 후 취업 등에 관한 약정을 훈련 실시 이전에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 맞게 실시하는 훈련임.

고유사무(固有事務) 공공사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목적이 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지방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각종 사무 또는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사무 및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 아래 실시해야 하는

본래적인 사무라는 의미에서 고유사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합목적적인가 아닌가를 사전에 판단하여 사업추진을 금지하는 예방적·합목적적 감독은 배제되고 사후교정이나 합법성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유사무의 대표적인 예로는 상·하수도 사업, 공원·운동장·가로등·녹지 등의 설치관리, 병원·공중욕탕·극장 등의 설치관리, 지방세 세외수입의징수사무 등이다.

고유재산(固有財産) 광의로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화폐적 가치 있는 일체의 물건과 권리를 의미하나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만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된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③공영사업 또는 그 시설에 공용된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⑥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등이다.

고정자산(固定資産) 1년이상 장기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자산.

고충처리(苦衷處理) 공무원의 근무조건, 직무생활관계에 관한 불만,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판단과 시정조치를 행하는 일련의 과정.

공공근로사업(公共勤勞事業)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 정부에서는 IMF경제체제로 일시에 대량실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1998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동 사업을 실시함

공공부문(公共部門) 도시계획분야에서 뜻하는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경제계획을 세울 때 쓰는 민간부문과의 구별을 위하여 쓰는 것보다는 훨씬 광범하다. 경제계획에서의 공공부문은 정부 또는 정부가 출자한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뜻하며 기타부문을 망라하여 민간부문으로 구별한다. 도시계획에서는 사업주체자나 투자자원의 성격에 관계없이 시설물이나 사업목적에 있어서 개인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그 사업은 모두 공공부문이라 한다. 예로써 유료공원을 개인이 건설하여 시민활용에 제공할 경우 투자비를 포함한 이윤을 입장료로 징수할 때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영업행위이지만 도시경제입장에서는 그 시설 자체가 공공의 편익에 이용됨으로써 공공사업으로 간주한다.

공공요금(公共料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 요금이나 상품가격. 즉, 철도요금·전기요금·전신전화료·담배값 등 이다.

이러한 공공요금은 시장의 가격 매카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경쟁상품가격과는 달리 국가가 그 수요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독점기업과 그 범주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점기업이 어디까지나 자기기업의 이해관계에 있는데 반해 국가는 채산성보다 공익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결정한다.

공공재(公共財) 공공이란 사회 일반이나 공적인 것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를 말한다. 공공재란 공공성이 높은 재산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로서 도로, 하천, 수로, 공원, 항만 등은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특징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 재활를 누군가가 이용하였다고 하여 그 밖의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비배제성과, 그 재산을 누군가가 이용하여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비경합성에 있다. 많은 주민이 그에 의해 비교적 평등하게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을 넓은 의미에서 공공성이라 한다. 대기, 바다, 호수, 강, 삼림, 토양 등의 환경에는 공공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재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토지에는 공공성이 있지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잡목림에는 경관 보전, 보수 능력의 유지, 기후 완화 등의 공공성이 있으나 골프장 개발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예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공주차장(公共駐車場) 제한된 개인용 주차장이 아닌것. 건축전까지 그 건물에 이용객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시 일정면적에 대한 승용차 주차시설을 갖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주차장을 공공주차장이라고 한다.

공권력(公權力)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며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본래의 공법(公法)관계이며 사법(私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법의 규율을 받는다. 공권력 개념은 대륙법계의 여러 나라들이 공법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공기업(公企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직접 사회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을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공동구(共同溝)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하므로서 도시의 미관및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소

통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공동규제수역(共同規制水域) 전관수역 (專管水域 : 연안에서 12해리까지의 연안국만이 어업권을 가지는 수역)밖에서 46해리까지를 규제한 '한일어업협정'의 수역이다. 이 수역에 있어서는 어족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어선 규모와 출어(出漁) 선박수 및 톤 수, 그리고 연간 총어획량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동변상책임(共同辨償責任) 손해가 2인이상의 회계관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가 공동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공모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회계직일 때는 본직자만 책임을 진다. 공동변상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각자에게 판정된 금액을 변상하면 변상책임은 그 자에 한하여 면한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분 판정한다.

가. 예정가격의 조사와 그 결정이 각각 잘못 되었을 때

나. 현금 또는 물품을 공동으로 망실 훼손하였을 때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1961년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목적세.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시설세는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임의세로서 현재 소방시설세만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처리방식(共同處理方式)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를 효율화하고 광역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 근년에 와서 종래의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는 광역행정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의 설치·지방자치단체조합·사무의 위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화 현상(空洞化 現象) 도시의 교외화에 따라 대도시 업무중심지구의 인구가 밤에는 텅비는 현상.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공기가 맑고 땅값이 싼 교외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지가가 높고 생활환경이 나쁜 중심업무지는 자연히 주거지로써 쓸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중심지는 대부분 재개발하여 새로운 업무지구로 활성화하였고, 또한 고층아파트로 야간인구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 '98. 2.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99. 1.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임.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법인에 반한 것이며 광의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최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공법인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내에서 행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법인은 국가의 특별한 감독, 공과금의 면제등과 같이 사법인과는 다른 실정법상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그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 것은 아니고,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실정법상의 규정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공보(公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홍보나 사보와는 구별되며 홍보보다는 좁은의미로 쓰여진다.

공사감리(工事監理)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

공소권(公訴權)없음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강간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고발취하 됐을 경우에만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들은 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고검에서도 불복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검에 '재항고' 를 할 수 있다. 재항고마저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공소시효(公訴時效) 어떤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①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것. ②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③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④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

인 심판을 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공시지가(公示地價) 행정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기준지가·과세시가 표준액·기준시가 등의 공적지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1989년 4월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고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현시가의 70~80%선을 반영한다.

공업단지(工業團地) 일단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산업시설을 수용하는 단지 공업단지의 특성은 도시안에서 산재하는 공장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파괴를 없애고 건전한 주거환경과 공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공업단지의 개발은 정부(특히 지방정부) 또는 민간이 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공업배치기본계획(工業配置基本計劃)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국토의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계획. 이 계획에는 ①공업을 연도별·업종별·지역별로 배치하는 사항 ②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지역에서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항 ③공장용지의 장기수요 ④업종별·지역별공해의 예방과 환경보전·정비에 관한사항등을 수록하며 국토건설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국토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수립하여야 한다.

공업센서스(工業 Census) 제조공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 우리나라는 1955년 광업 부문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여기에는 사업체수·종업원수·생산 및 출하액·부가가치액·연중 고정투자액·연말재고액 등 경제분석에 유용한 많은 통계가 수록된다.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저작권과 함께 지적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및 의장 등 4개 부문의 무형재산이 포함된다. 실용 신안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이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파리조약(1883년 체결)에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다.

공업유치지역(工業誘致地域) 전 국토에 걸친 공업의 적정한 배치를 기하기 위하여 공업의 집중적인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유치지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며 구비요건은 ①공업의 밀집도가 낮을 것 ②인구 및 공업의 수용효과가 클 것 ③기존산업과의 계열화를 기할 수 있을 것 ④공장용지·용수·전력 등 지원시설의 정비가 용이해야 한다.

공업지대(工業地帶) 한 지역에 제조업체가 모여서 그 지역이 공장들로 연담화되어 있는 지대. 집적의 정도, 지역의 넓이 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는 포항·울산·온산·부산·마산 등지를 묶어서 동남해안공업지대라 칭한다. 한편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공업지대는 길이 약 600마일, 폭 100~200마일로 결국 거대도시로 성장하였다.

공업지역(工業地域) 주로 공업과 주요산업시설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5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4개 용도지역 중의 하나. 이는 도시 안의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18세기 말경부터 영국을 비롯한 서구제국에서 이 지역지구제를 실시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그 지정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내의 일반건축행위는 제한을 받게 된다.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으로 토지이용을 구분한다.

공영개발(公營開發) 토지수용에 의해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택지 또는 주택을 건설 개발하여 임대공유화 또는 분양하는 토지개발행위. 따라서 사업시행의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되며 공영개발은 토지의 국공유화를 전제로 한다. 즉, 공영개발의 논리성 및 타당성은 토지소유의 공개념에 기초할 뿐 아니라 토지자원의 합리적 배분율에 둘 수 있다. 공영개발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은 입체적 도시계획이 가능하며, 공공시설 매매계획을 포함한 합리적인 토지활용계획 및 택지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비교적 단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공영주택(公營住宅) 정부가 주택건설비 일부를 부담함으로서 저렴한 주택을 소득이 낮은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이 사업은 주택이 시민생활의 기본적 시설이기 때문에 복지향상 차원에서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공공체가 직접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공원묘지(公園墓地)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것. 이 공원의 시설은 묘지공원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고 정숙한 장소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 공원의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이상으로 한다.

공원보호구역(公園保護區域)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때는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건축물·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목·토석·사력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하려고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公有水面) 바다·하천·호소(湖沼)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안의 공유수면은 해운항만청장이, 기타는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이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받은 것은 제외된다.

공익근무요원제도(公益勤務要員制度)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된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익기업(公益企業)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용역을 생성하고 사업상 자연적인 독점성이 강한 기업. 여기서 사업상 독점성이 강한 기업이란 경쟁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독점을 허용할 때 생산비가 저렴해지는 기업을 말한다. 공익기업으로는 전기·상하수도·철도·우편·전신전화·가스·지하철 및 대도시 시내교통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공익사업(公益事業) 공공의 이익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민간기업. 차별없이 이 사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와 공적 규제를 받고 있으나 독점적인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정당화되어 가고 있다. 예로 가스·전기·철도·전화·버스·도선 회사가 있다. 서비스 수준과 요금은 통상 공공서비스 위원회와 기타 정부관계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

공전 → 유회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 정식으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다. 시장구조에 있어서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는 경쟁질서 확립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체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공중권(Air Rights) 공중권이란 토지의 지표면과는 별도로 독립된 지표위의 상부공간(지상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물리적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지상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라 낯선 느낌이 들지만,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생각할 때 지표면에서 일정높이 이상의 공간에 대한 개발용량의 소유권으로서 그 공간을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이용할 수 있고 개발된 건축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건축물 등이 소멸되더라도 토지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公衆保健醫) 79년부터 실시된 '국민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 대신 3년동안 무의촌(無醫村)에 들어가 활동하는 의사. 의료인력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불균등한 의료배분구조를 시정하려는 고육책으로서 시행된 이 제도는 나름대로 농촌의료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의 자유방임형 보건의료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부분적 보완에 머물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①공중보건의가 의과대학 졸업후 임상수련 경험이 전혀 없거나 도립병원에서의 형식적인 실습만을 거쳤다는 자질의 문제 ②70%가 6개월 미만을 근무하는 잦은 근무지 이동이 주민과의 유대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③의료장비·보조요원이 부족하고 후송시설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④의료보장제도의 확대가 시급하다. ⑤공중보건의의 근무의욕이 미약하다는 점등이다.

공증(公證) 특정의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선거인 명부 기타 공부에의 등록, 인감증명 등이 그 예이다. 공증은 일응 다툼이 없는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공적·권위로써 형식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이에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다.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닌 점에서는 확인과 같지만 확인은 판단의 표시인데 대하여 공증은 인식의 표시이다.

공증인(公證人) 당사자가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는 사서(私署)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는자로서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공무원이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검찰청에 소속하며 그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을 직무집행구역으로 하여 공정증서작성·사서 증서작성의 직무를 수행한다.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 공직자의 재산등록 (4급 이상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재산공개 (1급 이상 공무원), 선물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에 의한 재산 취득금지, 비밀누설금지, 퇴직공직자의 유관 영리 사기업체에의 취업 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

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공채(公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화폐적 신용을 민간으로부터 얻을 때 발생하는 채무. 공채는 여러형태로 분류될수 있는데 ①기채국별로는 외채, 국내채 ②발행주체별로는 국채, 지방채 ③상환기간별로는 단기공채, 장기공채 ④소화방법별로는 강제공채, 임의공채 등으로 각각 나누어 진다.

공청회(公聽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일정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널리 이해관계자나 학식경험자의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듣는 제도로서 민의를 정치·행정에 반영시키는 한 수단이다. 공청회는 정책문제 및 대안을 전문가와 주민에게 제시하여 현장감 있는 정보와 의견,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보다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공청회의 중요한 성공요건이다. 공청회 시간대도 관심있는 전문가와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청회의 진행과정은 단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라 정책대안을 종합하는 실제적인 과정이 되도록 정책실무자가 노력해야 하며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정책대안을 선별·정리하여 2차 공청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도정에서는「경기2020:비전과 전략」,「제1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에 공청회를 활용한 바 있음

공해수출(公害輸出) 일반적으로 공업 선진국 기업이 공해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진출시켜 그 곳에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밖에 선진국 기업이 공장을 진출시키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인건비와 세금이 낮으며, 공해 반대의 주민운동도 약한 점 등이 있다. 현지 정부는 공장 전출에 의해 세수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대하며,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의 입국을 환영한다. 공해를 수출하는 측에서 보자면 자국에서는 환경정책에 앞장서고 자국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을 지키는 것이므로 기업 진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한다. 이제까지의 최대 공해 수출 사건은 1984년 인도에서 일어난 보팔 사건이다. 보팔 사건이란 보팔시에 있는 유니온 카바이드 인도 회사의 농약 공장으로부터 맹독성의 메틸이소시아네트 등이 유출된 사건이다. 주민 약 2천명이 사망하고, 20만명이 중독되었다. 공장 진출 이외에 선진국에 의한 열대림 채벌이나 골프장 등의 리조트 개발, 유해 폐기물을 후진국에 팔아넘기는 일, 독성이 강한 농약의 강제적 수출 등 다양한 형태의 공해 수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화국(共和國) 공화제를 채택한 나라를 일컫는 말. 여기서 공화제(도)란 복수의 주체가 되는 국가의 최고 기관인 정치 형태. 즉 군주라고 불리는 혈통에 근거한 세습적 특권적인 국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형태를 말한다. 그 주체가 일정한 특권계급인 것을 귀족제(貴族制), 한정된 소수인 것을 과두제(寡頭制), 국민 전체인 것이 민주제(民主制)이다.

과년도수입(過年度收入)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세입금을 그 세입금의 실수납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세입으로 편입하는 것. 즉 과년도에 수납할 것으로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를 한 세입금이 당해 연도의 출납정리기한내에 납입되지 못하고 그 후에 납입되었을때 그 수납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현년도의 세입예산외의 세입이 된다.

과년도지출(過年度支出)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채무는 당연히 그 채무가 확정된 회계년도의 출납정리기한 내에 당해 연도의 세출예산으로서 지출하여야 하나 채무자로부터의 지급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 등으로 출납폐쇄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엄격히 고수한다면 선의의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강요하게 되므로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과대도시(過大都市) 일반적으로 과대도시가 되면 될수록 과밀도시의 현상을 나타내는 경험적 사실 때문에 양자는 혼용되고 있으나 과대도시란 도시의 적정규모를 전제로 하고, 그 한도를 넘어선 도시의 규모나 상태를 말하고 주로 도시의 팽창과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과목해소(科目解疏) 세입·세출의 과목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산의 과목구조는 장·관·항·세항·세세항 및 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해소는 주로 세입·세출예산의 목에 대한 설명이다. 예산의 과목구조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예산기관은 과목해소를 매년 만들어야 한다. 예산실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담긴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책자에 편성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의 과목해소를 첨부하여 각 중앙관서에 시달하며, 또한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인쇄배부되는 세입·세출서의 말미에 과목해소를 첨부한다.

과밀도시(過密都市) 과밀도시란 도시에 있어야할 사회적 균형을 전제로 하며 용기와 내용물간의 상대적인 불균형, 구체적으로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집적에 대하여 도시시설 내지 도시적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여 밀집의 폐해가 집적의 이익보다 심한상태.

과밀부담금제(過密負擔金制) 수도권 등 특정 도시지역의 인구·시설 집중을 막기 위해 신규 시설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 즉, 특정 도시의 과밀억제구역내에 새로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 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7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수도권을 크게 3권역으로 구분하여, 그 중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건교부장관이 관련 절차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이 지역내에서는 인구집중을 억제키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 제한이 가해짐

- 대통령이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증설(용도변경을 포함)
- 공업지역의 지정

과세시가표준액(課稅時價標準額) 행정자치부가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부과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준으로 통상 '과표'라 칭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전국의 토지를 365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라 가격의 차이를 두고 있음.

과세적부심사제(課稅適否審査制) 세금고지에 앞서 세금부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제도. 형법상의 구속적부심과 유사하다. 종래에는 과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국고주의적, 보신주의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납세자와의 분쟁을 양산해 왔으나 이 같은 분쟁의 소지를 자체적으로 최대한 줄여보자는 뜻에서 1996년 4월에 도입됐다.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는 세정당국의 과세결정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과세내용을 사전에 통고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2주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나 지방국세청에 적부심을 요청하고, 여기서 납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2주이내에 국세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장 4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해 납세자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재심에도 불복할 경우 일단 고지서를 받은 다음 이의신청(세무소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심사청구(국세청장), 심판청구(국세심판소장), 행정소송(고등법원, 대법원)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과세불복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적부심 시청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심의 도중에는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는 시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하다.

과세특례제도(課稅特例制度)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들에게 좀더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대리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200만원) 미만 사업자가 과세특례자가 된다.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율이 부가가치의 10%(매출세액의 10%에서 매입시 부담한 세액을 뺀 금액)인 데 반해 과세특례자는 매출의 2%(대리중개 등은 3.5%)가 적용된다. 부가세납부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신고납부하는 데 비해 2번만 하고 나머지 2번은 세무서의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1994년 들어 과세특례제도가 무자료 거래를 유발, 과표양성화에 지장을 준다고 보고 면세점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뒤 5년 후에는 완전폐기하기로 했다.

과세표준(課稅標準, basis of assessment) 세액이나 세율의 대소를 결정할 때의 대상이 되는 값이나 수량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컨대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액이라든가, 법인세인 경우 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액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와 함께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과실송금(果實送金) 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외자도입법은 외국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송금(對外送金), 곧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과실송금의 이같은 보장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제공하는 여러가지 유인(誘因)과 특전중의 하나다. 자국의 무역사정이나 외환시세를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과실송금을 허용한다면 국제수지의 악화는 물론 국내물가체계에도 큰 동요를 가져오게 된다.

과오납금(過誤納金) 과납금 및 오납금을 합하여 과오납금이라 한다. 과납금이란 정당한 납입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납부한것. 과오납금의 반환은 지출의 수단에 의하지 않고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다만 당해년도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에 있어서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관거(管渠) 암거(暗渠, 상부를 개방하지 않은 수로) 및 개거(開渠, 상부를 개방한 수로)의 총칭.

관광도시(觀光都市) 관광이 주기능인 도시로서 휴양도시를 포함. 관광도시의 성립은 ①자연공원·온천·아름다운 풍경과 같은 자연적 관광자원이나 문화재와 같은 문화적 관광자원, ②관광을 할 만한 경제수준과 여가시간을 제도적으로 주는 인구집단의 접근, ③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시설을 만들수 있는 자본, ④안전하고 신

속한 교통서비스 시설등을 조건으로 한다.

관광특구(觀光特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함. 이 지역내에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부여함

관료제(官僚制) 관료제는 논자(論者)에 따라 합리적 관리의 이상적인 도구로 이해되기도 하며, 한편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해치는 권력적·독선적 의미로 파악되는 등 다각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관료제를 현대의 대규모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료제에 대한 전통적인 학설은 계층제형의 대규모조직설과 특권적 정치권력집단설이 있다. 전자의 학설에 의하면 관료제란 "계층적 형태를 가지면서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는 대규모조직" 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관료제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후자의 학설은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관료집단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면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만을 관료제로 보는 것으로서 기능적 측면 특히 권력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하여 관료제를 가장 전통적인 의미로 볼때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 관리의 집단이 사회에서 일정한 특권층을 형성하면서 국민을 지도하는 입장에 서서 정치권력의 담당자로서 통치구조에서 주체적 역할을 점하는 계층적 조직" 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관료제에 대한 현대적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을 구조적 기능적인 면에서 보완한 것으로서 "대중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행정기능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업적·기술적·전문적 및 공적관계에서 임명에 의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다수의 관료로서 통치구조의 인적 요소를 이루며 계층화한 합리적 조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관료제의 합리성(合理性)으로는 기능의 전문화, 업적의 표준화, 구성원의 몰주권화(沒主權化)를 들 수 있으며, 병리성(病理性)으로는 형식주의·기밀주의·권위주의·선례답습주의·획일주의·무사안일주의·계급주의·할거주의·법규만능사상·관존민비사상·책임회피·전문과대증(專門誇大症)·창의력결여·인격상실·불친절·태만·변화에 대한 저항 등을 들 수 있다.

관리무역(管理貿易) 1976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탱에 의해 새로운 세계무역방식으로서 종래의 자유무역에 대응되는 개념. 오일쇼크이후 서독과 일본 경제는 순조롭게 회복되었으나 미국의 경제부진이 세계경제 혼미의 원인이 되었다.거기다 세계의 상호의존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왕의 GATT와 같은 국제협력기구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협조를 관리가능한 범위로 한정하고 2차대전후의 자유·무역차별을 표방한 GATT체제를 재점검, 재조직된 자유무역을 실현하자는 것.

관리통화제도(管理通貨制度) 금본위제도와 같이 통화의 증감이 금 준비의 증감에 연동(連動)되지 않고 통화관리자(정부,중앙은행)의 자유재량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제도. 이 제도의 목적은 통화량 조절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있다. 통화량의 조절 수단으로는 발행고 조작,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조작, 금리정책 등이 있다.

관변단체(官邊團體)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접·간접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공익성(公益性)을 띤 단체를 말함.

관성효과(慣性效果) 소득이 높을 때의 소비행동은 소득이 다소 낮아져도 곧 변화가 어렵다. 이처럼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도 그 소득과 균형잡힌 상태로 소비가 곧 줄지 않는 현상. 래칫(ratchet)효과라고도 한다. 관성효과가 작용하면 소득이 감소국면에 들어가는 경기후퇴시에 소비성향이 일시에 상승한다.

관세율(關稅率)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되는 비율. 이 관세율은 조약 등 특별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에 의하며 이를 국정세율(國定稅率)이라 한다. 현행 관세율은 대부분이 종가(從價)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유·설탕·필름 등에는 종량(從量)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고저는 원료품 특히 중요수출품의 제조용 원료품·시설재·생활필수품·실용품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세율이 낮고 반제품·완성품·기호품·사치품 등의 순서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 이밖에 외국과의 조약 또는 행정협정에 의거해 결정된 세율로서 협정 세율이 있다.

관세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 정부가 지정한 특정제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무(無)관세 또는 저(低)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高)관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이 제도에 의해 일정수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제동을 걸거나 값싼 수입품의 이용자로부터 관세격차분을 조정금으로 흡수, 업계합리화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미리 저관세율 적용수량을 정해 그 수량을 사전에 할당하는 사전할당 방식과 저관세율 적용수당을 정해두고 선착순으로 저관세율을 적용하는 선착순 방식이 있다.

관용여권(官用旅券)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 은행 등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할 경우에 발급하는 복수형의 여권임.

광역교통계획(廣域交通計劃) 교통계획은 계획대상지역에 따라 도시교통계획, 지역교통계획, 전국교통계획 등으로 구분한다. 광역교통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하는 5년단위의 교통계획으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계획에는 광역교통시설인 광역도로와 광역전철의

건설과 개량,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광역적 차원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 광역교통시설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 분담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조만간 지방 대도시권도 계획대상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광역도로(廣域道路) 광역교통계획에서 지정된 500m 이내의 도로로서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해당된다. 단,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는 제외된다.

광역도시계획(廣域都市計劃) 도시계획을 행정구역보다 더 넓은 지역에 적용코자 하는 목적에 쓰이는 개념으로 계획범위를 지역주민의 실제생활권에 기초하여 마련하려는 도시계획방법.

광역버스(廣域BUS)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를 중간에 정차하는 횟수를 최소화하여 생활권역의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를 짧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광역버스의 운행조건을 개선시켜 주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게 된다.

광역철도(廣域鐵道)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광역교통계획에서 지정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구간이다.

광역행정(廣域行政) 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 다시말해 한 지역을 뛰어넘는 행정사무에 대해 행정의 민주성·능률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을 의미한다. 예컨대 종합병원의 설치, 여러 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교통노선의 결정, 쓰레기·분뇨처리장의 설치 등이 그러한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제10조에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2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제149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 내무부장관의 승인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우병(狂牛病) 소의 전염성 뇌질환의 일종. 4~5세의 다 자란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사성 신경질환으로,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거동불안·난동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폐사체의 뇌조

직이 스펀지 모양으로 변형된다고 해서 소 해면양뇌증(海綿樣腦症)이라고도 한다. 96년초 영국 경제의 엄청난 손실은 물론 전유럽에 공포를 몰고온 광우병은 86년 영국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으나 그 감염인자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뇌를 먹은 사람이 이 병에 걸린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영국에서 매년 50명 정도가 이 질환에 걸려 사망하고 있어 소와 인간의 해면양뇌질환이 병리조직학적으로 똑같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광천수(鑛泉水) 광물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샘이며, 보통 1ℓ중에 1g이상의 고형물이 들어 있는 물.

교차로(交叉路) 서로 직각 또는 이에 가까운 각도로 교차하는 도로의 연석측면을 연장하거나 혹은 연결된 선에 의해 둘러싸인 구역. 또한 직각이 아니라도 도로가 서로 교차함으로서 차량상호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구역.

교통계획(交通計劃) 현재의 인구·경제·토지이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인구·경제·토지이용을 예측하여 교통사업대안을 설정·평가하고, 집행계획 및 재정조달 등에 관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작업.

교통공해(交通公害) 광의로는 교통에 수반되어 생기는 환경의 오염에 의한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로는 도로교통 공해로 법률상에는 도로교통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대기의 오염·소음 및 진동이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걸쳐 피해가 생기는 것.

교통관제(交通管制)센터 일정한 지역의 교통제어 및 관리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건물, 시설 및 운영자의 총칭.

교통량 조사(交通量 調査) 도로의 어느단면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보행자와 차량의 수를 관찰하는 조사. 이 조사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방향별, 차종별로 관측하는 것도 있으며, 단위시간으로서 1시간, 1일 혹은 주간의 12시간등이 이용된다.

교통섬(交通 Island) 차량의 주행을 제어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선 사이에 설정한 구역. 보통 연석 등으로 둘러쌓여 높게 되어 있고 그 기능에 따라 유도섬·분리섬·안전섬의 3종류로 분류한다. 교차로내에 있어서는 중앙분리대 또는 외측분리대도 교통섬으로 볼 수 있다.

교통세(交通稅)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본세율은

휘발유 150%, 경유 20%이나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세 전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도로 지하철 고속철도 공항 건설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었던 종전의 특별소비세는 전액 도로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쓰여졌다.

교통영향평가(交通影響評價)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그 교통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것. 그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서의 내용에는 ①서론 ②사업의 개요 ③사업지 주변의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④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 ⑤교통수요예측 ⑥사업시행에 의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⑦개선방안 ⑧개선안 시행계획 ⑨결론 및 건의 ⑩참고자료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 부터 부과·징수하는 것.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이다.

교통체계종합관리(交通體系綜合管理, TSM,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종전 교통측면에서만 다루던 교통문제를 건설, 도시계획, 환경녹지등 각 분야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기법.대중교통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제를 신설하고 지하철과의 환승시스템을 확립하며 신호등은 모두 전자화하고 가변차선제 일방통행제를 확대, 도심의 주차장은 주차료를 차등적용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통혼잡비용(交通混雜費用) 교통혼잡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 및 도로의 교통혼잡 비용은 교통량이 어떤 한계를 넘는 도로에 있어서 추가된 한대의 자동차가 가지는 주행비용 및 시간비용의 증가.

교통환경지구(交通環境地區) 차량통행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교통공해로 부터 일정한 구역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이 지구내에서는 특정한 용무이외의 차량운행은 허용하지 않도록 도로망·접속도로·건물 배치·토지 이용 등의 요소가 합리적으로 기능을 작용하도록 하려는것. 교통계획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교통환경지구로 설정하여 지구내에서는 불필요한 교통을 발생시키지 않음으로써 환경의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지구내에서는 접근로·간선로·간선도로·환경도로 등 도로망을 계층별·기능별로 배치·정비함으로써 교통운행을 원활히 하는 한편 교통에 의한 환경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통환경지구는 인

구밀도·자동차 보유율·승차 습관 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데 통상저밀도 지역에서는 교통량과 교통에 의한 환경적 영향이 적으므로 교통환경지구가 간선도로에 의해서만 포위될 수 있게끔 설정되는 반면 고밀도 지역에서는 환경지구가 크면 차량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교통에 의한 환경적 영향이 커지므로 교통환경지구는 좁게 설정되는 한편 집산도로와 간선도로의 효율적인 연결이 고려되어야 한다.

구내교환기(構內交換機:Private Automatic Balance Exchange) 관공서, 기업, 법인 등과 같이 한 가입자에 속하면서 많은 전화기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전화기 상호간에 통화하기 위한 교환망이 필요하게 된다. 교환망을 구내망이라 하며 구내망을 구성하는 교환기를 구내교환기(PABX)라 한다. 구내교환기를 통하여 구축된 통신시스템을 구내통신 시스템이라 한다.

구상권(求償權) 쉽게 말하자면 빚진 사람 A대신 갚아준 돈을 A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연대(連帶)채무자·보증인·물상(物上)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제금융(救濟金融) 기업이 도산이 될 경우 국민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도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해 융자해주는 것. 여기에는 신규로 돈을 대주는 것뿐 아니라 받을 돈의 상환시기를 늦춰주는 것도 포함된다. 구제금융을 해준 은행으로선 기업이 회생하여 빌린 돈을 갚아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 역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다.

구조조정(構造調整)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단계·임금수준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같은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같은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대량실업 등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와 구조조정 정책을 의미한다.

구조조정기금(構造調整基金) ➡ p60 하단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지방세만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예산. 이와 같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를 처리함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까지도 지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의 정의는 국가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함),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것 제외)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 GDP) 국민총생산(GNP)이 '국민' 이라는 사람에 착안한 통계인데 대해 국내총생산은 국가라는 지역을 한정해서 경제 활동을 파악한다.

구조조정기금(構造調整基金)

국제기구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마련한 구조조정 재원, 부채구조조정기금(debt restructuring fund)와 (equity fund)이 양 축이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기업에 장기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단기 채무를 장기 채무로 전환해 주는 것을 말하고 주식투자기금은 기업의 주식을 기금으로 사들여 신규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기금의 투자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가 2,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또한 가능성이 있는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났거나 회의·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기금은 국제금융공사(IFC)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해 마련하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투자은행들로부터도 차입한다.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지원자금은 기금이 발행하는 재원을 외국인투자가들에게 팔아서 마련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일시적인 자금난만 덜어주면 이른 시일안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은 1~3년 만기로, 시설자금 등은 3~7년 만기로 조달금리에 일정 이자를 덧붙여 빌려준다.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장기 대출을 대신하기도 한다. 외화자금 대출은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넘는 기업에 한정된다.

주식투자기금도 주식매입을 통한 자금 공급으로 회생 가능성이 확실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배당과 투자수익을 얻는다. 주식 매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이를 중재할 수 있다. 특히 인수·합병에서는 회사의 직접 경영보다 일정기간 소유하면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시켜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기능, 즉 벌처펀드의 기능도 가진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을 했을 경우 한국의 GDP에는 계상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꾸로 한국인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한국의 GNP에는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내총생산의 계산은 GNP에서 해외로 부터의 요소소득취득(要素所得取得)을 공제하고 여기에 해외로의 요소소득 지불을 가산한다. 유럽제국의 경우 노동인구의 이동이 격심하여 GNP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GDP와의 차이도 크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 (IBRD)과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통계조사는 GDP를 채용하고 있다.

국민생활지표(國民生活指標)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사람들의 생활관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GNP등과 같은 경제지표만으로는 생활수준을 나타내기가 곤란하다. 이 때문에 생활을 둘러싼 여러가지 지표를 결합시켜 이용하려는 시도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사회지표(SI : Social Indicator)라고도 부른다.

국민소득(國民所得) Hicks, J. Richard교수의 사회계획이론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기간(연간)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합계. 그 국가의 화폐액으로 계상된다. 다만 이때의 소득액은 부가가치액을 뜻한다. 이 개념은 일정기간의 국민이 생산한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소득은 총 생산액에서 활동의 생산에 투입한 자본과 중간재 등의 비용을 제한 액수이다.

국민소환(國民召喚;recall) 공무원, 특히 국회의원의 비위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임기 전에 국민의 뜻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 대개 선거제 공무원에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제 공무원에 적용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택되고 있지 않은 제도로서, 미국의 일부 주(州)와 스위스·일본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국민해직(國民解職) 또는 국민파면(國民罷免)이라고도 말한다.

국민연금(國民年金)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됐다. 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 60세 이상이 돼야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며,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반환 일시금 등 4가지. 연금액은 하후상박 구조로 되어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낮으며, 평균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GNP) 한 국가가 일정기간 (보통 1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중간생산물을 뺀 최종생산물의 총액. 즉 중

간 생산물은 원료, 최종생산물은 제품으로서 제품만이 GNP에 계상된다.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이 GNP가 명목국민총생산인데, 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다른 연도와 비교하기 위해 GNP디플레이터(限價指數)로 수정한 것이 실질 국민 총생산이며 이 두가지의 성장률이 각각 명목경제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이다. GNP에서 고정자본재의 소모분(감가상각비 등)을 뺀 것이 국민순생산(NNP : Net National Products)이다.

국민총지출(國民總支出, GNE) 국민총생산(GNP)을 소비하는 제지출의 총계. 국민총생산을 생산면에서 파악한 것이 산업별 국민총생산이며, 분배면에서 파악한 것이 국민총생산비의 구성이고, 지출면에서 파악한 것은 국민총지출인 최종생산물의 수요구성, 즉 국민경제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합계로서 표시된다. 국민 총 지출이란 국민총생산이 지출되는 면에서 파악한 것이므로 개인·정부의 소비지출, 해외 경상잉여 등의 합계로 구성된다. 국민총지출은 자본감모분의 보전부분을 포함한 총 개념이므로 지출국민소득에 비해 자본감모 보전부분·간접세만큼 커져서 국민총생산과 동액이며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와 균등하다.

국민투자기금(國民投資基金) 특정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또는 공공기금에서 자금을 갹출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정책금융의 하나. 현재 정부는 국민투자기금으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비롯, 전자·자동차·조선공업 및 연불 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의 타율적 배분을 지양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 등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국세조사(國勢調査) 한 나라의 인구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 라틴어 'censere' 에서 온 말로 그 뜻은 징세(徵稅)나 징병(徵兵)을 위한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의미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구조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조사라고 하면 인구정태(人口靜態)의 전국적인 직접전체 조사를 뜻한다.

국영사업(國營事業) 국가가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사업. 즉 우편·전산·전화·철도·국립학교 및 그 부속병원·국립도서관·국립극장 등의 국영공기업 등. 국영사업에 있어서는 국가가 경제주체인 동시에 관리주체이다. 국가는 그 경제주체로서 특히,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업을 개시 경영할 수 있다. 그 예산은 일반회계일 때도 있으나 보통은 특별회계이다. 이 경우의 특별회계를 사업특별회계라 한다.

국정감사권(國政監査權)·조사권(調査權)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시행

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그 시기를 연장 할 수있다. 대상기관은 ①국가기관 ②특별시·광역시·도 ③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④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이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조사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위 의결로 국회 폐회중에도 활동 할 수 있다. 국정감사·조사의 장소는 국회나 현장, 기타 어느 곳이나 가능하며, 감사와 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국정감사권은 유신헌법 이후 폐지되었다가 '87년 개헌으로 부활되어 '88년 정기국회에서 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제개발금융기구 → MLA

국제관리통화(國際管理通貨) 국제적으로 관리·발행되는 통화. 현재 각국에는 국내의 관리통화제도가 보급되어 있으나 국제간에는 통일된 주권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통화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달러와 같은 일국의 관리통화가 국제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달러 불안이 발생한 이래 이에 대신하여 국제적으로 각국의 공동의사에 따라 관리되는 통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SDR(IMF 특별인출권)등도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 ILO

국제수지(國際收支)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와 행한 국제경제거래를 복식부기원리에 의하여 작성한 통계표. 즉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국외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과 국외에서 국내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을 사후적으로 대조시킨 것이 국제수지이다. 국제수지는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성된다. 경상계정은 상품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수지,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외 수지 및 증여의 주고 받음을 나타내는 이전수지로 구성되며, 자본계정은 자본의 수출·입을 기록한 것으로서 상환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수지와 장기자본 수지로 나눌수 있다. 이들 수지를 종합했을 때 수입이 지불보다 많은 경우 국제수지는 흑자가 되어 대외채권의 증가로 나타나며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가 되어 대외채무의 증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IMF표준양식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및 연간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국제자본시장(國際資本市場) 국제자본시장이란 차입자가 은행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채권(bond)이나 주식(equity) 등의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국제본드시장(International Bond Market)과 국제주식시장(International Equity Market)으로 분류됨.

국제지방자치체연합(國際地方自治體聯合, IULA) 지방자치의 진흥, 지방행정의 개선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1913년에 설립된 세계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조직.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연구 또는 연락·국제적인 시군읍친선의 확립, 정기적인 국제회의 및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특수 테마연구를 위한 위원회의 개최 등을 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를 위시한 세계 각국의 지방공공단체 및 그의 전국적 연합체·지방행정에 관계있는 연구소·협회·개인이 가맹하고 있다. 1913년에 창설되어 ① 지방자치의 촉진 ②지방행정의 개선 ③시정및 시민복지에 관한 연구 ④시정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총회는 2년마다, 이사회는 매년 열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 IMF

국제표준화기구(國際標準化機構) → ISO

국제화(國際化, Internationalization) ①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응, 살아남기 위해 배타적으로 국수주의적인 사고나 관행,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낙후된 제도나 법규, 관습등을 국제 수준으로 고쳐나가는 것을 말함. ②개별국가 의식이 바탕을 이루나 법규나 제도, 의식등에서 개발국가내부의 고착성(固着性)을 초월하는 국제교류를 가리킨다.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다국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170여개의 국제 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주요한 협약으로는 기후변화협약·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바젤협약·몬트리올 의정서·생물다양성 협약 등이 있음.

국제회의용역업(國際會議用役業)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 필요한 업무와 행사를 주관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지분산도로(局地分散道路) 근린주구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 근린주구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고 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갖는 도로·영국의 「Roads in urban Areas」란 계획지도서에 가로체계를 출입로, 국지분

산로 · 지구분산로 · 주요분산로 순서로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는 구획도로 · 국지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요간선도로로 구분하고 있다.

국지오염(局地汚染) 광역오염에 상대되는 용어로 국소오염이라고도 한다. 특정의 공장 등 어느 하나의 발생원에서 그 주위의 한정된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오염현상. 발생원이 명확하기 때문에 배기가스 · 배수 등의 피해도 구체적인 진정이 행해져서 행정지도도 하기 쉽다.

국채(國債) 협의로 해석할 때에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지방공공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군등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지방채도 포함된다. 국가가 군비조달 뿐만 아니라 평화시의 항구적인 자본축적정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거대한 경비도 국채에 힘입는 바가 많다. 국채는 주식이나 사채보다도 안전하고 확실하며 투자대상으로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것으로 되고 있다.

국토계획/국토건설종합계획(國土計劃/國土建設綜合計劃) 국토계획은 공공계획으로 우리나라는 1963년 제정공포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마련하는 국가의 장기발전계획. 동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및 보존하여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세우고 또한 제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도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계획은 계획대상에 따라 전국계획, 특정계획, 도계획 그리고 군건설종합계획 등의 공간규모를 기준으로 한 4개 종류로 계층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국토건설종합계획(또는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증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이 법에서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토지자원을 포함한 공간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함을 말한다.

국토조사(國土調査) 국토조사는 기본조사 · 토지분류조사 및 자원조사의 3종으로 한다. '기본조사' 라 함은 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초가 될 토지와 수면의 측량 및 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준설정을 위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토지분류조사' 라 함은 토지를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토성과 토양의 물리적 · 화학적 성질과 기타 주요한 자연적 요소 및 생산력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자원조사' 라 함은 자연자원의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 계량하기 위하여 그 질과 양 및 분포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국토종합개발(國土綜合開發) 국토개발의 실현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토지·물 등의 천연자원 이용, 재해의 방지, 도시 농촌의 규모와 배치의 조정, 교통신호시설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장기계획.

군립공원(郡立公園)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자연풍경지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지정한 공원.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①military demarcation line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7월 27일에 성립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속칭, 한국 휴전 협정)」 1조에서 규정된 휴전의 경계선을 말함. ②보통 휴전선(休戰線)이라고 부른다.

굴절차선(屈折車線)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려는 자동차를 위해 직진하는 자동차를 위한 차선과 구별되게 설치하는 차선.

권위(權威) 권위는 여러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즉 '권위자' 라고 하는것 처럼 사람과 관련시켜 이야기 되는 경우도 있고 '법의 권위' 라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것과 관련시켜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으며, '권위있는 사전' 처럼 어떤 사실과 관련시켜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권력의 종류의 하나인 '형식적 권력' 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권위는 원래 인간의 소질상의 차이를 그 전제로 하여 가치상의 상하관계에서만 작용하게 되므로 권위에 의한 통일은 자율적이며 내면적이며,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결합관계에 내재하는 자발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는 피치자의 동의를 획득하는 힘을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내린 지시나 명령이 아무런 비판적 검토없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질때 그 사람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권위라는 것은 지배·복종관계가 복종자의 내면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므로 이른바 위신(威信)이라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신 이라는 것은 권력관계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분의 귀천(貴賤)·힘의 강약·객관적 능력 등의 척도에 있어서 남보다 뛰어나고 있다는 이미지가 권력자에게 부여될 경우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한(權限) 국가·지방자치단체·각종의 법인 또는 개인의 기관이 법률상·규약상 주어진 직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능력 또는 능력의 한계·법률상 어느

기관이 "....을 할 수 있다" 고 한 경우는 거의 그 기관의 권한을 정한 것이다.

권한위임(權限委任)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토록 하는 것. 수임기관은 수임범위내에서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궤도(軌道) 시설 지상에 부설한 레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

귀속재산(歸屬財産) 1948년 9월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및재산에관한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모든 재산. 적산(敵産)이라고도 한다. 귀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해 처리되나 귀속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처리된다. 이것을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된다.

귀책사유(歸責事由)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한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 보통 고의·과실을 요하나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과실 및 신의측(信義則)상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원인행위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귀책사유의 판단은 공평하고 적정한 책임의 분담을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규모의 경제(規模의 經濟) 각종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을 많이 올리는것. 규모의 경제로는 대량생산에 의하여 1단위당 일반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특히 설비의 증강으로써 생산비를 낮추는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대규모 기업이 소규모 기업보다 유리한 것은 규모의 확대에 의해 경제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분업에 의한 전문화의 이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대량생산에 의한 코스트 체감작용의 발휘, 대외관계 (거래, 신용 등)의 확대에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에는 한계가 있어서 과도한 규모는 관리비용의 증대, 조직의 경직화에 의해 규모의 경제가 상쇄된다. 한편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익으로서 보통 기술혁신에 따라 '규모의 크기에 알맞는 수확체증'이 되는 것을 '규모의 이익(scale merit)'라 한다.

규정(規程) 법적으로 국가기관의 내부에 있어서 사무 집행상의 준칙. 일정의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일련의 조항의 총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사용하는 용어이며 제목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법령 종별에도 제한이 없다. 「정부공문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고 공무원 승진을 위한 「평정규정」은 총리령이며 「정부보관금취급규정」은 재정경제원령이다. 특별 권력관계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규정(規定) 작성해 놓은 표준 또는 규칙. 법령의 조문으로서 정해놓음. 또는 그 조문. 조례·규칙·규정(規程)과 달리 법령의 내용을 가리킨다.

규제법정주의(規制法定主義)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규제영향분석(Regulaton Impact Analysis)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방지, 합리적인 규제수단과 대안의 탐색 및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 유도에 목적이 있다.

규제일몰제(規制日沒制) 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규제행정(規制行政) 생활이 복잡다기한 시대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의 다방면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는 행정상 여러가지 규제. 주민생활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규제가 주민 자신에게 과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규제행정이 미치는 대상은 주민 및 단체의 보건·위생·상공·금융·도시계획·토목·건축·주택등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규칙(規則) 광의로는 명령의 일종이며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 중 규칙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 헌법에서 특별히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경우(대법원·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때 당해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하여 특별권력기관 내부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일 경우에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규칙은 그성질 또는 근거에 따라 법규적인 성질을 가진 규칙과 행정규제적 성질을 가진 규칙·위임규칙과 직권규칙으로 분류할수 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까지도 그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사항으로 지정된 것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제정해서는 아니된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사항은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하급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고유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균형성장이론(均衡成長理論) 넉시(Nurkse, R.)나 로젠스타인 로단(Rosenstein Rodan, P.)등에 의해 주창되었는데 이는 경제내의 모든 생산분야가 다 함께 고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정책을 세워야 하며 모든 사업이 상호의존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비로소 건전한 경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al User Interface) 사용자들이 모니터에 제시되어 있는 아이콘(그림기호)이나 메뉴항목의 목록을 지적하여 명령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며, 파일의 목록을 보고, 그외의 가능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방식이다. 선택은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된다.

그룹웨어(groupware)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같은 서류 작업을 하거나 스케줄에 맞춰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컴퓨터를 네트워킹 방식으로 연합군을 편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제대로 활용할 경우 업무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협동성을 높여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기업내 컴퓨터 사용자들이 LAN등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퍼스널컴퓨터를 통해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들과 함께 전자결재 등의 통신기능을 부가한 것이다. 최근 기업의 컴퓨터 사용환경이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환경으로 바뀌면서 그룹웨어는 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마련된 동·식물들의 생태공간. 환경부에서 벌이고 있는 그린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보면, 야생생물 이동통로를 통해 태백·광주·차령·소백·노령 등 5개 산맥 주변의 ①자연생태계 보전지역 ②국·공립공원 ③천연기념물 보호구역 ④천연 보호림 ⑤조수보호구역 등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하여 동·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지리산 성삼재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시범조성하고 5대 산맥과 한라산을 핵심축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그린라운드(GR, Green Round) 그린라운드의 목적은 지금까지 환경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무역규제를 WTO내로 끌어들여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규제규범을 만드는데 있다. 즉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는 WTO 각회원국의 무역관

련 환경조치들을 통일시키고, 국제호나경협약들(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에 나타나 있는 무역관련 조치들을 WTO내에서 실질적으로 포용하는데 그린라운드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린라운드는 높은 수준의 환경기술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라운드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제품자체의 환경적 특성을 물론이거니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해서도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 제품을 개발판매함에 있어 지구의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환경보호심리에 호소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

그린 벨트(Green Belt) 도시주변에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綠地)를 제공하기 위해 녹지지대로 설정한 지역. 정식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이라 한다. 이는 1580년 영국의 엘리자베드여왕 1세에 의하여 주거의 밀집과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밀도시를 제한하기 위한 칙령을 발한데서 기원하는 바, 그 후 하워드(E.Howard)에 의하여 녹지대로 둘러싸인 전원도시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주장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설치목적은 ①도시의 평면적 확산의 제한 ②농경지의 보호 ③도시쾌적성의 추구 ④수자원의 보호 ⑤국방상의 이유 등 이다. 이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허가권자(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린아파트(Green APT) ①무공해(無公害)아파트.②맑은물·저소음(低騷音)등 청정 환경을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보호도 완벽한 신형 아파트이다.

그린에너지(Green Energy) 석탄·석유·원자력 등과 달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태양·지열·풍력·파력(波力)·조류(潮流)등 자연에너지. 현재 세계 각국은 석유를 대신할 에너지원으로 그린 에너지 개발연구를 서두르고 있다.

그린GNP 환경문제가 세계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성장위주로 산출하는 종래의 GNP 개념에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이다.

그린카(Green Car, 무공해 차) ①무공해(無公害)의 차세대 자동차, ②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본격화되면 그린 카의 개발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어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현재 시험 단계에 있다.

그린 피스(Green Peace) 국제적인 자연보호단체.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에서의 프랑스의 핵실험에 항의하기 위한 선박을 출항시킨 운동을 계기로 1970년에 조직되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유럽 각국 외에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이 중심. 운동의 중심은 핵문제와 멸종의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보호. 핵문제에서는 원폭·수폭 반대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의 반대, 핵폐기물 처리관계 등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근거리통신망 → LAN

근로소득세(勤勞所得稅)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법상 갑종·을종으로 구분되는데, 갑종은 일반급여,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구분되며 전자는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 후자는 일(日)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근로소득액이 된다. 단, 상여소득이 있는 경우, 갑·을종 모두 상여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산출된 근로소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된 것이 근로소득세이다. 이것은 원천징수가 원칙이며 연말에 종합소득으로서 정산하지만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로자파견제(勤勞者派遣制) ➡ p72 하단

근린공원(近隣公園)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공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공원.

근린광장(近隣廣場) 도시계획시설 중 미관광장의 한 분야. 근린주구단위의 시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하며 시장, 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근접하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근린생활권(近隣生活圈) 도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지역사회로서 동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개념이 강조되는 사회단위. 근린생활권의 규모와 분류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론이 있어 왔으나,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도시지역을 보다 작고 관리가능한 단위로 구분함으로써 도시계획과 관리의 효율성과 주민의 긍지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되었다. 근린생활권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시계획에 도입한 사람은 페리(C.A.perry)로서 그는 1929년 「뉴욕시와 그 환경에 관한 지역조사」에서 6개의 기본적인 물적 시설을 중심으로 한 근린생활권 계획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구상은 근린생활권 규모를 인구 5,000~6,000인, 면적 160에이커(65ha)로 하고, 생활권내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과 쇼핑센터가 있어야 하며, 생활권 주위는 녹지공간으로 둘러 쌓이

고 간선도로는 우회하여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근린생활권 계획의 개념은 오늘날과 같이 개방된 도시사회(open society)에 그대로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으나, 그 목적과 개념은 도시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쓰여 왔다.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에서도 1980년 부터 도시생활권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한 부문계획이 되고 있으며, 농촌지역계획에서도 이 개념을 원용하여 농촌거주생활권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근린생활권의 개념을 확대 적용해온 이른바 생활권계획은 그 유용성과 한계를 재조명해야 할 것 같다.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파견제(勤勞者派遣制)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정해진 기간(보통 1년 미만) 동안 이용하는 제도로, 특정한 계절이나 시간에 몰리는 일시적인 일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사무자동화를 위해 컴퓨터를 구입하고 업무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컴퓨터 전문인력은 사무자동화가 완결되면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럴 때 초기작업이 완결될 동안에만 컴퓨터 전문인력 용역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공연히 불필요한 인원을 평생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보류되었으나 IMF사태 이후 입법화됐다.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파견 제도의 적용범위는 컴퓨터전문가 등 26개 업종으로 컴퓨터 전문가, 사업전문가, 사서를 제외한 기록보관원 및 관련정보전문가,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전신·전화통신기술공의 보조업무, 도안사, 컴퓨터 보조원, 녹화장비조작원 보조업무,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장비 조작원 보조업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 관리비서 및 관련준전문가,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자료입력기, 계산기조작원 제외),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원, 전화교환 사무원(해당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 제외), 여행안내요원, 조리사(호텔, 콘도미니엄 조리사 제외), 보모, 간병원(간호조무사 제외),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 자동차 운전원(대중교통수단 운전원 제외), 전화외판원(텔레마켓팅), 건물청소원, 수위, 녹화장비 조작원의 보조업무, 주유원 등

①슈퍼마켓, 일용품의 소매점으로 동일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②대중음식점, 다방, 다과점 ③이용,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④의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⑤정구장, 탁구장, 태권도장,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⑥금융업소, 소개업소, 사무소 ⑦방앗간 ⑧기원, 당구장 ⑨예체능계 강습소,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등

근린주구(Neighbourhood Unit) 근린주구란 1924년 미국의 페리(C.A. Perry)가 제안한 주거단지 계획 개념으로서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지 않고 길에서 통학할 수 있는 단지규모에서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주민들간의 사회적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물리적 환경. 이러한 근린주구 조성을 위하여 페리는 6가지 계획원칙을 제시. ① 규모 :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 규모를 가져야 하고 면적은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짐 ② 주구의 경계 : 주구내 통과교통을 방지하고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로 계획함 ③ 오픈스페이스 :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소공원과 레크레이션 체계를 구비함 ④ 공공시설 :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적절히 통합배치 ⑤ 상업시설 : 주구내 인구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적당한 상업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인접 근린주구와 면해 있는 주구외곽의 교통결절부에 배치 ⑥ 내부도로체계 :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통과교통을 배제하도록 일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 이러한 원칙에 따라 페리가 제시한 근린주구의 모델은 다음과 같음. 규모는 하나의 초등학교 학생 1,000~1,200명에 해당하는 거주인구 5,000~6,000명, 어린이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도록 주구의 반경은 400m, 면적은 약 64ha로 한다. 소공원과 레크레이션 용지는 약 10%를 확보하고, 커뮤니티시설과 학교 등은 중심부에, 상가는 1개소 내지 2개소를 주구 외곽에 배치함. 그리고 단지 내부의 교통체계는 쿨데삭(cul-de-sac)과 루프형 집분산 도로, 주구 외곽은 간선도로로 계획함

근저당(根抵當)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해 놓은 저당권. 당좌대월계약·어음할인 계약·상호계산 계약 등에서 생김. 장래의 채권이며 신용 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채권의 최고액은 정하여졌으나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Globalization) 경영 자유무역체제의 확산과 각국의 개방화 추세로 경제활동에서 국경의 개념이 중요성을 상실해가면서 경제활동무대를 특정국가에 한정시키지 않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체제를 말한다. 글로벌경영을 추구하는 목적은 두가지다. 하나는 사업의 영역을 전세계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제품을 어디서 만들었느냐에 관계없이 구매한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생산해내면 기업은 얼마든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자국시장에 한계를 느낀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활동무대를 넓히고자 글로벌 경영을 추구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사의 이익 및 시장확보를 위해 전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경쟁에 필요한 자본·기술·설비등 생산요소를 지역별 비교우위에 따라 전문화하고 흐름을 최적화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글로벌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간의 적절한 제휴와 지역시장에서의 토착화가 필요하다.

금융선물거래(金融先物去來) 3개월후라든지 6개월후와 같이 장래의 특정한 시일에 상품인수 인도와 대금 결제를 하기로 현시점에서 계약하는 거래를 선물거래라하며, 이를 통화나 금리 등 금융상품에 응용한 것.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실명제를 완결하는 후속조치로 도입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사채이자를 제외한 이자(금융소득)는 합산과세하지 않고 20% 정도의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나 1994년의 세법개정에 따라 1996년분 소득부터 종합과세됐다. 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이나 5년 미만 유지된 보험차익,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3억원, 부인명의로 2억원의 은행예금을 보유해 5,000만원의 이자소득을 받고 6,0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은 분리과세되어 16.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초과분 1,000만원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아 43% 세율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한 세금우대 금융상품이나 비과세 금융상품 등도 모두 세금우대나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1996년에는 15%, 1997년에는 10%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1997년 12월 3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폐지되고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무기한 연기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 종합소득세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명의로 해야 하며 가명 또는 무기명거래는 인정치 않는다는 것. 이 제도는 사금융 등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은 1992년말에 제정되었으나 전면실시에 앞서 차등과세제를 도입,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예금을 했을 경우 과세상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다. '93년 7월부터 실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 자산 소득에 대해 50%, '95년 1월부터는 100%의 가산세를 가하고, 실명일 경우는

10%의 이자소득세 (방위세 · 교육세 · 지방세를 합하면 16.75%)를 과하는 차등과세가 실시되고 있다.

금전신탁(金錢信託) 신탁은행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하거나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하여 일정기간 후에 금전으로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것. 여기에는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특정 금전신탁, 위탁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불특정 금전신탁만을 취급하고 있다. 종전에는 서울신탁은행이 유일한 신탁업무 취급기관이었으나 '84년 2월 이후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금치산자(禁治産者)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법률상의 무능력자를 말한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하면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그 선고를 취소한다.

급속여과(急速濾過) 여과법의 일종으로서 '응집'과 '침전'등의 전처리(前處理)를 거친 물을 여과재의 위에서 부터 아래로 통과시키는 방법. 여과재로는 흔히 모래, 앤트라사이트 등으로서 60~75㎝의 두께로 자갈층 위에 깔며 여과속도는 보통 100~150m/일이다.

급수관(給水管) 배수관(配水管)으로 부터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

급수전(給水栓) 급수관의 말단에 설치하는 수도꼭지.

기각(棄却) 「형사소송법」상 부적당한 소송 행위에 대하여 재판상으로 이를 무효로 선언하는일. 「민사소송법」상의 용어로서는 일반적 소송의 수속에 관하여는 적법하나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소 또는 상소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요건을 결하여 실체적 내용의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접수조차 하지 않는 각하와 구별된다. 이의 신청에 대하여 기각이라고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이 사용된다.

기간(期間) 일반적으로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 사법상 시효 · 연령등에 있어서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발생 · 변경 · 소멸 기타의 효과가 부여되는 일이 많으므로 「민법」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시(時)이하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고 일(日)이상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또한 역법적(歷法的)계산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또는 법원이 소송행위

를 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법원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을 말한다. 기간의 종류에는 행위기간과 중간기간·고유기간과 직무기간·법정기간과 재정기간·통상기간과 불변기간이 있다.

기간산업(基幹産業) 일국의 산업활동중 없어서는 안되는 측면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산업구조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을 의미하는 것. 기초산업이라고도 한다. 전력·석유 등의 에너지산업, 철강 등 범용(汎用)재료를 공급하는 하는 산업, 산업기계를 중심으로 한 조립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기관대립형(機關對立型)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두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에 분담되어 있는것. 즉 대통령중심제와같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결기능과 의결된 사항의 집행기능을 서로 다른기관에 분담시킴으로써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이 형태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결기능은 지방의회에서, 그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내각중심제와 같이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하나의 기관에 모두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기관통합형 또는 의회형이라 하는데 영국, 캐나다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따라 선거형과 임명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기관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권력남용의 우려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 반목이 빈번할시에는 지방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처리되는 사무는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기관위임사무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①기관위임사무는 단체 위임사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 위임되어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처리된다 ②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위임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예산을 얻는 외에 의회의 권한은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무의 관리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무방하다.

기금(基金)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나 공공단체가 설치한 자금. 경제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구분되는 자금을 조성,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주체에 따라 정부관리기금과 정부이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민간기금으로 나뉜다.

기내배양(器內培養)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식물의 조직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관이나 기구내에서 인공적으로 기르는 기술.

기본설계입찰(基本設計入札)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기사실명제(記事實名制) 언론보도에 있어서 기자 또는 필자의 이름을 기사에 명기하는 것으로서, 원래는 유명한 기고가의 글이나 칼럼 및 해설기사 등의 필자를 소개하는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기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

기소유예(起訴猶豫)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범인의 성행(性行)·연령·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죄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행한다.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Opportunitatsprinzip) 범죄가 성립하고 소송조건이 완비된 경우에도 검사가 반드시 기소를 강제당하지 않고 기소·불기소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제도. 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와 대응되는 개념. 기소법정주의에 있어서는 검사의 자의를 방지하며, 형사사법(刑事司法)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으나 범죄의 정상을 참작함이 없이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하므로 구체적 정의(正義)에도 반하고 형사정책상 타당치 않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 한 1심 판결 전이라면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기속처분(羈束處分)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처분(즉 기속행위) 및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는 것 같으면서도 법의 취지·원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취지·원리의 해석·판단의 여지 밖에 허용되지 않는 처분(기속적 재량행위). 기속처분이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기속행위(羈束行爲)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행정처분. 기속행위가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기술이전(技術移轉)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것. 1987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5회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에서 기술이전 코드의 도입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기술이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등에 기술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기술지향계획(技術指向計劃) 기술지향계획은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수단이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더 많은 인구가 도시에 살게되므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제창된 것. 도시계획의 기능은 복잡하고 대규모화되어 결과적으로 시설자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이같은 문제는 기계나 전자기술개발에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이는 도시의 조직을 마치 한 기계조직으로 보고 따라서 대도시 내부의 토지수요를 입체화 시킴으로써 토지의 평면적 확산을 해결할 수 있고 주택도 고층화시켜 모든 공급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함으로써 장소적 제약이나 시간적 흐름을 인간이 요구하는 범위내에서 공급하여서 생활을 지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아이디어에 많은 도시계획가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성의 배제때문이다.

기억장치(記憶裝置) 컴퓨터의 기억에는 주기억(main memory)즉, 내부기억(internal memory)과 보조기억(auxiliary memory)즉, 외부기억(external memory)이 있다. 주기억은 자료처리도중 빈번하게 쓰이는 정보를 보관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산호철로 만든 반지모양의 자기코어(magnetic core)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집적회로(I.C. : Intergrated Circuit)나 고밀도집적회로(LSI : Large Scale Intergrated Circuit)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조기억이란 사용빈도가 낮거나 자주 사용하는 것이라도 컴퓨터의 전원을 껏다가 켤때 필요한 정보를 되살릴 수 있도록 자기디스크(magnetic disk)나 자기테이프(magnetic tape) 장치에 보관해 두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용컴퓨터(P.C)의 보조기억장치로는 플로피디스크(floppy disk, diskette라 부르기도 한다)가 많이 쓰인다. 또 보조기억장치들은 모두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로도 쓰일수 있다. 즉, 컴퓨터가 가공 처리한 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보관하고자 수록할 경우에는 출력 장치가되고,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다시 읽어서 처리작업을 하려할 때에는 다시 입력장치가 되는 것이다.

기업결합(企業結合) 복수의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적 이익을 위해 결합관계를 형성하는 복합적 기업형태. 기업결합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 이윤의 증진에 있으며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기업내부의 합리화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것. 기업결합은 기업합동(트러스트), 기업연합(카르텔), 기업제휴(콘체른)의 3가지로 대별되며 최근에는 기업집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 결합형태도 다각화

되어 기업집단이라는 새로운 기업집중현상이 나타났는데, 산업형 콘체른의 특수형태인 콤비나트, 다각적 경영에 의한 거대기업군을 형성하는 종합기업, 즉 콩글로머리트 등이 이에 속한다.

기업내 벤처(企業內 Venture) 기업이 종래와는 다른 시장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을 목적으로 자사내에 설치하는 사업부 또는 그룹. '기업내의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존재. '사업부제'가 기존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데 비해 이것은 무(無)에서 출발하는 조직이어서 자율적 권한이 크다. 벤처 비즈니스(연구개발형 기업)의 정신을 대기업 내부에 불어넣음으로써 기업의 재생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내에 '벤처그룹'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이 사내벤처에 의해 개인용 컴퓨터의 개발·판매에 성공한바 있다.

기업인턴(Intern) 대학 졸업예정자 중 대학측 추천을 받은 일정한 인원의 사원후보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인턴(intern 실습사원)으로 수련케 한 다음, 적격자를 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원채용제도. 이 과정을 거쳐 선발된 사원은 입사후, 수련기간만큼 수습기간을 단축받게 된다. 이 제도는 입사 후 수습과정을 입사 전에 밟게 함으로써 기업으로서는 입사전에 사원 개개인의 적성·능력을 미리 파악, 사원의 배치에 효율적일 뿐 아니라 애사심을 미리 키울 수 있다.

기조연설(基調演說) 본래는 미국의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대회 임시위원장이 자당(自黨)의 기본정책을 설명하는 연설. 일반적으로 각 정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자당의 기본정책을 설명하고 또한 반대당의 실책 등을 비판하는 연설을 한다. 기조연설은 각 정당대표가 차례로 한다.

기준지가(基準地價) 지가의 부당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정부는 어느 지역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정기적으로 감정하여 가격을 일반에게 공시한다. 그 목적은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며 감정가격의 결정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지한다. 이 공시지가는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단체가 그 토지를 수용할 때 매수보상가가 된다. 고시대상지역은 지가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이다 ①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이 대상지역으로 공고한 당시보다 현저히 변경된 지역 ②해당지역의 최근 3년간의 지가상승률의 누계가 도매물가 상승률의 200% 이상인 지역 ③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기준지가고시제(基準地價告示制) 정부의 개발사업 즉 공업단지의 지정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투기적 토지수요와 지가의 등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지역에 지가기준을 책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그 범위내에서 토지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고시되는 지가기준은 토지평가사의 평가를 토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지가는 정부가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때 매수가액 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의 대상은 ①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 지역 ②공업개발 장려지구, 수출자유지역, 수출산업공업단지 및 기계 공업단지나 이들 지역의 예정지 ③국민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지역 ④개발사업이자 보건사업을 시행할 지역으로서 지가의 현저한 변동이 우려되는 지역등이다.

기폭(氣曝) 수(水)처리법의 일종으로 주로 공업용수 처리시 사용되는 용어. 폭기와 동의어로 수중에 공기를 불어 넣거나, 또는 공중에 물을 분산해서 물과 공기를 충분히 접촉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수중의 탄산가스·황화수소·그외 각종의 유기물·가스 등을 제거한다. 기폭을 유효하게 행하려면 수온의 상승·물의 표면적의 증가·기폭시간의 증가·물과 접촉하는 공기량의 증가·주위에 있는 대기중의 가스 농도의 저하등을 들 수 있다.

기획(企劃) 기획의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귤릭(Gulick)은 "기획이란 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일들과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괄적으로 짜내는 것"이라고 하였고, 사이몬(Simon)은 "기획이란 장래를 위한 제안, 제안된 대안들의 평가 및 이러한 제과정이 이루어 질수 있는 방법들과 관련된 활동이다.기획은 장래에 대해서 그리고 기획자 또는 그들의 참여하는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미칠 수 있는 제문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성적·적응적 사고"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기획은 행정환경이 언제나 불확실성과 변화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환경속에서 최소의 경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획의 본질로서 ①하나의 과정 ②준비과정 ③일단의 재결정 ④행동지향성 ⑤미래지향성 ⑥목표 지향성 ⑦최적의 수단제시 등을 들수 있다.

긴급수입제한(Safe Grard)·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 긴급수입제한이란 특정상품의 수입량이 전년도보다 급증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관련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이므로 발동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미국, EU등 선진국들은 발동요건이 까다로운 긴급수입 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

한 수단으로 수출자유규제 시장질서확립협정(OMA :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의 선별적인 수입제한조치를 빈번히 사용해 왔는데, 이를 회색지대조치라 한다.

긴급통화(緊急通貨) 긴급한 사태로 인한 통화부족을 메우기 위해 후일에 그것과 상환(償換)할 것을 약정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긴급한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대용화폐. 구체적으로 점령지구에서 발행되는 전쟁화폐, 또는 사적인 입장에서 발행되는 사적 화폐 같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소재의 가치는 낮으며 주화·지폐·증권표 등의 형태를 띤다. 군표(軍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ㄴ

나노(Nano) 10^{-9}(10억분의 1)에 해당하는 보조단위의 접두어. 나노미터는 10^{-9}m 나노초(秒)는 10^{-9}초가 된다. 10^{-6}에 해당하는 미크론과 10^{-3}에 해당하는 밀리미터(mm)를 합쳐서 밀리미크론을 써왔으나 1956년9월 리스본에서 열렸던 제15회 IUPAC(국제 순수 및 응용물리학 연합회)와 제2회 분석화학 국제회의에서 단위명의 접두어로 나노를 포함해 12가지를 결정했다.

나대지(裸垈地)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다음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 ①건축물의 부속토지 ②「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 ③「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별표 2의 시설용 토지 ④사도(私道)법에 의한 사도 및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⑤「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의 토지.

나이로비 선언 스톡홀롬에서 열렸던 국제연합 인간 환경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1982년에 나이로비에서 국제연합 환경계획의 관리이사회 특별회합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채택된 선언이 나이로비 선언이다. 이 선언에서는 환경, 개발, 인구, 자원의 상호 연관, 자원 낭비와 빈곤이 동시에 환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환경문제와 남북문제의 연관을 논의하는 기초가 되었다. 1989년에 국제연합 환경계획의 회합과 병행하여 열린 환경 NGO(비정부조직)의 국제회의에서 작성된 〈나이로비 성명〉 도 있다.

낙후지역(落後地域)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 경제수준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 지역계획은 이와 같이 그 나라의 일반적 수준보다 경제나 문화수준에서 떨어져 있어 자체능력으로는 지역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마련되며 이러한 경우 정부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개발전략을 세워 추진한다. 그 이유는, ①한 나라의 경제는 여러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으며, 그 지역들은 언제나 시장적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떨어진 지역은 계속적으로 성장에너지가 적기 때문이다 ②지역은 언제나 그 지역 자연조건이 같을 수 없으므로 자연히 시차를 두고 개발투자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③시장경제체제라 하여도 지역간 기능부여에 따라서는 독점적인 것과 경쟁적인 것이 있어서 독점적 기능을 많이 부여받는 지역이 성장에서 항상 유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역간에 소득격차가 나타나게 마련이며, 이때 소득이 높은 지역을 선진지역이라 하고 낮은지역을 낙후지역이라 한다.

남북협력기금(南北協力基金) 남북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1991년부터 설치운용한 기금,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국민성금 등 민간출연금, 채권발행, 타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 초기 단계인 현재까지는 주로 정부예산으로 충당해 1991년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1994년까지 매년 400억원씩 1,450억원이 조성됐으며 1995년 예산에는 550억원이 편성된 상태이다. 지원실적은 1991년 남북탁구 및 축구 단일팀 행사 지원(9억 5천만원), 쌀 5천톤 직교역에 따른 손실보조(12억 7천만원), 1992년 노부모방문단 교환행사 준비금(5억 5천만원) 등 27억 7천만원이다. 정부는 미국 북한간 핵협상타결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어 대북경험 및 지원이 추진될 경우, 정부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채발행, 민간출연, 남북교류협력 관련 수익사업 실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면화(內面化) 어떤 사상이나 생각등을 완전히 이해하고 습득하여 자기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내부위임(內部委任)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에,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외부에 표시없이 경미한 사항을 위임하는것. 권한의 소재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사무처리권만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조치에 불과하다.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국민생활환경 기준. 한 나라 전체국민의 생활복지상 불가결한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최소한도의 국민생활수준' 또는 '국민적 표준' 으로 번역된다. 즉 한 나라의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에 비추어 영양·주거·생활환경 등이 '최저' 또는 '표준' 으로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 현재 국민생활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것이 국민의 기대수준과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 어떤 정책이 취해져야 할 것인가 밝히는 것이 이 개념의 의의이며 목적이다.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환경이나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민의 기탁금으로 사들여 보존해 나가는 제도. 19세기에 이 운동이 시작된 영국에서는 현재 회원 약 105만명으로 서울 면적의 3배나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전후(戰後)에는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에도 번져 해안선 등을 매입, 법

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내용증명(內容證明) 우편물 특수취급제도의 하나로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통신관서에서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내용증명은 그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에 확정일부(確定日附)를 주는 효력이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은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을 열거하는 형식의 상품 품목표.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입은 제한·금지되지만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만을 열거한 상품 품목표가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이다.

네거티브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먼에 의해 제창된 최저생활 보장제도. 통상적인 소득세제에서는 소득액으로부터 기초공제, 부양공제 등을 빼고 남는 부분에 대해 누진적으로 과세하고, 소득액이 여러 공제액의 총계 이하일 경우에는 납세가 면제된다. 네거티브 소득세란 납세가 면제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비를 말한다. 과세공제액(면세점)을 경계로 소득이 그것을 상회하면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거꾸로 생활비를 지급받는다. 지급액은 '네거티브 소득세율'에 의해 정해지며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한의 생활이 보장되는데 다소라도 수입이 있으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프리드먼이 네거티브 소득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것은 현행의 복잡한 사회보장제도가 재정적자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당국의 자의적(諮意的)인 시책을 허용하게 되고 수익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네거티브 소득세는 고액소득층에서 징수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며 고액소득층에 의해 저축으로 돌려질 소득이 재배분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비로 돌려져 사회의 총수요를 높이게 된다.

네티즌(NETIZEN) Netizen은 Network(네트워크)와 Citizen(시민)의 합성어로 인터넷의 가상 공간을 일상생활과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용어로 전세계 사람들이 네트워크라는 가상공간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왕래하는 네트워크 시민이 될 수 있다.

노동권(勞動權)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노동이 보장되고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며,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국가에 의하여 생활이 보장되는 권리. 이 권리를 처음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포한 것은 프랑스의 1848년 2월 혁명으로 수립된 가정부(假政府)였으며, 이 정권은 공권력에 의하여 노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국민에게 선포하였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이를 헌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헌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직업안정법」과 「근로기준법」이 있다.

노동기본권(勞動基本權) 노동자가 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기본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은 노동권+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포괄하는 말.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 노동생산성을 표시하는 방법을 대별하면 물리적 노동생산성과 가치적 노동생산성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노동생산성이란 「생산량÷노동량」으로 표시되는 것이며, 분모의 노동량은 보통 노동시간이나 노동자수로 표시된다. 이것에 대하여 가치적 노동생산성의 분자 또는 분모의 한편 또는 전부를 금액으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이라고 하면, 종래에는 물리적 노동생산성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가치적 노동생산성 특히,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노동조합(勞動組合)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①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 하는 경우 ②그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③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조합원을 위한 단체교섭권이 있다.

노사정위원회(勞社政委員會) ➡ p86 하단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48호로 노사협의회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협의회법에는 노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노하우(Know-How) 기술의 사용 또는 응용방법에 관한 비밀지식 또는 경험. 이러한 지식이나 경험은 특허, 실용신안 등의 공업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기술 도입 등의 경우에 교섭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다.

녹색GNP(Green GNP) 국민총생산의 개념에 환경비용을 계상하는 것으로 GNP에서 마이너스적인 환경오염부분을 상쇄한 순 GNP의 개념임. 즉, 환경을 자유재로 보지않고 환경이 생산자본으로 간주되어, 다른 국내 생산요소와 더불어 생산에 참여하여 일정기간 만들어 낸 진정한 부가가치로 정의됨. 이 Green GNP의 핵심은 환경자산의 서비스를 국민계정체계내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점임.

녹색상품(綠色商品) 비교적 쓰레기 발생량이 적거나 없는 제품 등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상품, 또는 '환경적합성이 큰' 제품을 가리킨다. 이중 정부 또는 환경운동단체가 붙여주는 환경마크제도가 있으며, 이 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환경마크상품이라 부르는데 이를 대표적인 녹색상품으로 들 수 있다.

녹색혁명(綠色革命) 수확량이 많은 개량품종을 도입해서 식량의 증산을 꾀하는 농업정책.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지의 농업연구소에서 소맥·쌀·옥수수 등의 품종개량이 추진되었고 식량부족으로 허덕이던 개발도상국이 이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농업생산에 획기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필

노사정위원회(勞社政委員會)

위원장,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IMF사태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정치권과 정부가 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1998년 1월 15일에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매월 정기회를 갖고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고용안정, 노사협력, 경제위기 극복 등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심의·의결하며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위원회는 노사정의 대등한 참여와 협력, 국난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 경제회생과 고용안정의 병행 추진, 노사정 고통분담의 기본틀 마련, 독립적·중립적 운영을 통한 '국민화합의 장'으로 발전 등 5개 항목을 목표로 한다.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 법제화,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전교조 합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한 바 있다.

리핀에 있는 국제벼연구소(IRRI)를 중심으로 기적의 쌀(Miracle rice)이라고 불리는 벼의 고수확품종이 개발되어 아시아 각국의 식량자급체제 확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녹조류(綠藻類) 조류중의 1군으로서 영양체는 녹색의 색소를 가지며, 동화작용에 의하여 전분을 생성하여 저장한다. 유성(有性) 또는 무성의 생식이 있다. 그 종류는 많으며, 클로렐라와 같이 단세포로서 섬모가 없고 운동력도 없지만, 무수히 번식하여 물을 녹색으로 만든다. 하천이나 도수로, 여과지 등에서 번식하여 수로를 방해하고 착색·발취(發臭)·막힘등의 원인을 이룬다. 염소나 황산동 등의 살균제에 강한 종류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녹지지역(綠地地域) 토지용도지역 중의 하나. 집단사회에서 정서생활·문화생활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다. 녹지지역은 공간 녹지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쓰이며 풍치지구·자연보존지구·개발제한구역·절대농지지구, 「공원법」에 규정된 각종 공원 등이 사실상 여기에 해당된다.

농공단지(農工團地)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지방정부(시·군)가 개발 관리하는 공단.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공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된다.

농공지구(農工地區)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1~2만평)의 공업지역을 조성, 입주업체에 대해 금융·세제·기술지원을 해주는 '농어촌지역 공업개발 촉진지구' 의 약칭. 농공지구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농공지구는 1983년 말에 제정, '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며 '84년중에는 시범적으로 7개지역이 지정되었다. 농공지구의 입주절차는 각 시·도의 시장·군수에게 입주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주업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 입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농어민후계자(農漁民後繼者) 정부의 농민지원자금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 영농후계자라고도 한다. 청소년들의 도시지향적 이농(離農)을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을 직접 영위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청소년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정착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앞으로 농어촌 개발을 주도해 나갈 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어촌 특별세(農漁村特別稅) ①재정경제원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4년 7

월 1일 부터 10년간 연간 1조5천억원씩 모두 15조원을 징수하기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②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로써 조세 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경주·마권 세액 등에 일정률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개량조합(農地改良組合)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의 후신인 공공조합. 조합은 그 조합구역 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은 농지개량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유자격자 20인 이상이 발기하여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얻어야 하며 관할구역은 그들이 소유하는 토지를 포함한 일정한 지역으로 한다. 의결기관으로는 총회를 두고 조합원이 200인을 초과할 때는 이에 갈음한 대 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임원은 조합장 1인과 감사 2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다. 또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농지개발촉진지역(農地開發促進地域) 미간지 중 농지로 개발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즉 개발대상지역에서 농지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농지로 개발하기로 결정고시된 지역. 개발대상지의 선정과 조사는 농림장관이 실시하며 조사업무는 농업진흥공사가 대행할 수 있다.

뇌물(賂物) 공무원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이며 수뢰의 객체가 되거나 증뢰의 수단으로 되는 이익. '직무에 관하여' 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수행의 경우는 물론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이며 '이익' 이란 뇌물의 내용을 금품 기타 재산적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유형이거나 무형이거나를 불문하고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하는 일체의 이익으로서 예를 들면 공사의 직무 기타 유리한 지위, 유흥, 정교도 뇌물이 된다.

누진세(累進稅)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오늘날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소득세는 누진세이다 세율의 누진법에는 ①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누진 ②1개의 과세물건을 수 개의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로서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으로 삼는 초과 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 ③세율의 누진을 일정한도까지만 적용시키고 과세물건의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소득세에 초과누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 초과누진을 일정한도까지만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도 겸용하고 있다.

뉴 NICS 8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아시아의 뉴 NICS는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말하는데, 이 국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투자촉진정책·값싼 노동력·풍부한 자원 등을 배경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뉴 라운드(New Round) ①UR(Uruguay Round)가 타결되면서 새로 제기된 4개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의미함. ②이른바 GR(Green Round), BR(Blue Round), CR(Competition Round), TR(Tecgnology Round)을 일컫는다. ③'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일부 논의되었으며, 앞으로 세계 무역 확대에 큰 변화와 이슈(issue)가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④라운드(round)는 GATT 회원국들이 모여 진행하는 다자간 무역협상(多者間貿易協商)을 뜻하며 협상 대상, 협상 발언자나 첫 협상 개최지(국가)이름과 함께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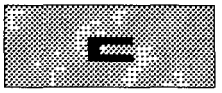
뉴 타운(new town) 새롭고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新都市). 기존의 대도시는 인구과밀, 산업집중과 도시환경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어 도시 재개발 또는 새로운 도시건설의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19세기 말 하워드의 전원도시론, 로버트 오언의 공동체, 푸리에의 공산자치촌(共産自治村)등에도 나타나 있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르 코르뷔지에가 중심이된 1928년 근대건축 국제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도시는 거주 생업 레크리에이션 교통의 네 기능을 조화있게 맡아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한편 뉴 타운은 직장과 거주지의 분리를 모색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뉴 타운 이념에 입각해 영국에서는 인구·산업의 분산책으로서 1946년 신도시법이 제정되고 12개의 작은 도시를 건설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비대화를 막는 방편으로 위성도시와 지방공업단지 조성이 모색되었다.

니치 마케팅(niche marketing) ➡ p90 하단

님비현상(NIMBY 現象) 'Not in my backyard' 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 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늘어나는 범죄자·마약중독자·AIDS환자·산업폐기물·핵폐기물을 수용 또는 처리하는 마약퇴치 센터나 방사능 오염쓰레기 처리장 등과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남의 뒷마당' 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 증상이다.

니치 마케팅(niche marketing)

마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니치'란 '빈틈' 또는 '틈새'로 해석되며 '남이 아직 모르는 좋은 낚시터'라는 은유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니치 마케팅은 특정한 성격을 가진 소규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남이 아직 모르고 있는 좋은 곳, 빈틈을 찾아 그곳을 공략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건강에 높은 관심을 지닌 여성이 건강음료를 기획, 대성공을 거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매스 마케팅(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판매)에 대립되는 마케팅 개념으로 최근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다.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전체층이 3층 이하이고 전체층의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이다. 2세대 이상에서 19세대 이하로 지을 수 있다.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보다 일조기준과 다른 건물과 거리규정이 약해 많은 사람들이 다가구주택을 짓고 있다. 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허용된다.

다국간 섬유협정(多國間 纖維協定) 섬유무역의 확대와 자유화를 도모하고 수출입시장에서의 교란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GATT가 1973년 12월 면직물장기협정(LAT)에 이어 마련한 다국간의 협정. 정식명칭은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 이협정은 2국간의 쌍무협정을 철폐하고, 섬유 수입으로 시장이 교란되었을 때에 관계 수출국과 협의하여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어있다 '78년 1월 부터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4년인데 '81년에 다시 연장되어 '86년7월에 만료되었다. 이 협정으로 섬유류 수출을 둘러싼 마찰이 많이 해소되었다.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세계기업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수개국에 걸쳐 영업내지 제조거점을 가지고 국가적·정치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적인 범위와 규모로 영업을 하는 기업. 이 기업에 있어서는 국내활동과 해외활동의 구별은 없으며 이익획득을 위한 장소와 기회만 있으면 어디로든지 진출한다. 2차세계대전 당시의 국제기업(international business)과의 구별은 국제기업이 본사와 세계각지 영업지점간에 제품수출 이나 자금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이익이나 이자 및 배당 등은 본사로 송금되지만, 다국적 기업의 경우 각 지점은 모두 독립적인 이익관리 단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익은 각 거점의 경영충실화를 위해 재투자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전체층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이다. 2세대 이상하의 주택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상업용 등 다른용도와 복합해 지을 경우 주거용만 4층 이하이면 된다. 일조기준 이격거리 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제한정도가 다가구주택보다 강하다.

다운사이징(Downsizing) 다운사이징은 다운(down)과 전혀 관계없는 용어에서 유래됐다. 이것은 IBM 왓슨연구소 직원인 헨리 다운사이징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그는 1980년대 초 메인프레임 보다 작으면서 보다 우수하고 유연하며 빠르고 더욱 신뢰성 있는 컴퓨터 개발을 주창한 사람이다. 다운사이징은 조직을 야위게(lean) 만드는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슬림(slim)화를 통해 능률의 증진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다운사이징과 정보시스템 다운사이징으로 나뉜다. ① 비즈니스 다운사이징은 기업체의 관료화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본사의 임원이나 지원부서가 축소되고 기업의 계층구조가 줄어들며 중간관리층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이를 위한 조직개편 수단이 팀제도이다. 비즈니스 다운사이징은 기구축소 또는 감원, 원가절감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원가절감과는 개념이 다르다. 단기적 비용절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전략으로서 수익성이 없거나 비생산적인 부서나 지점을 축소 내지는 제거, 기구를 단순화하여 관료주의적 경영체제를 지양, 의사소통을 원만·원활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② 정보시스템 다운사이징은 기업의 전산화 작업을 LAN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자료처리 플랫홈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생산시스템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바뀌는 등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는 현실속에서 메인프레이임이나 중형컴퓨터로 이루어지는 폐쇄형 정보시스템은 그 운영체계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순발력을 잃었고, 이에 따른 기업의 비능률적인 체제가 경영악화의 한 요인으로 등장했다. 정보시스템 다운사이징은 정보시스템을 일선에서 퍼스널컴퓨터(PC)를 직접 다루는 최종사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정보시스템의 보수유지, 안전, 보안 등만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앙집중 통제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를 PC에 분산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이옥신(Dioxine) 인간이 만든 물질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독극물. 다이옥신은 주로 석탄, 석유, 담배 등을 태우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데,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되어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중방송(多重放送) 현재의 TV방송에 덧붙여 스테레오 방송이나 문자정보, 정지화면방송 등을 하는 것. 방송기술의 발달로 혼신(混信) 방지용으로 남겨둔 전파의 간격이 필요없게 되어 그 간격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를 내보낸다. 음성다중 방송에는 스테레오 방송과 2개국어 방송 등이 가능하다. 문자다중방송은 뉴스나 일기예보, 운동경기의 결과 등을 TV프로그램과 겹쳐서 방송한다. 정지화면 방송은 사진이나 그래프 등 정지된 컬러 화상에 해설, 음성을 함께 방송한다.

다중프로그래밍(Multi-Programming) 처리속도가 아주 빠른 중앙처리 장치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1대의 컴퓨터에 2개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재하여 병행처리함으로써 주기억장치의 휴지시간을 줄이는 방법. 요즘의 대부분 컴퓨터는 멀티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자료를 처리한다.

다핵도시(多核都市) 단핵 중심도시와 반대되는 도시구성형태를 뜻하며, 역사적으로 오래 성장한 도시와 단일기능도시들이 대개 단핵형(모든 기능이 한곳에 모임) 도시인데 반하여 자동차 시대에 들어서 급성장한 도시들이 기능의 합리적 배치로 공간적으로 상호연결되면서 대도시권을 이루는 형태.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와 같은 학자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다핵도시의 경우 기능 분담면에서 너무나 많은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어 이상적인 대도시 성장을 위하여 규모의 경제성과 환경의 보전 등을 감안한 계획적 대도시 개발을 주장한 바 있다.

단가계약(單價契約) 서비스의 제공, 물품의 공급 등 계속적 급부를 조건으로 하고 단위당 단가만을 약정하는 계약방법. 단가계약은 총액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관청계약의 한 특례를 이룬다. 이방법은 계약금액이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초과계약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그 예정수량의 개수(槪數)는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또 계속적인 급부를 약정하고 있으므로 약정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단가의 변동에 따른 융통성을 계약서상에 반영시켜야 한다.

단기외채(短期外債) 국제금융시장에서 만기가 1년 이상이면 중장기 외채, 1년이내면 단기 외채로 구분한다. 단기외채 만기는 기간별로 3개월이 가장 많고 1개월과 6개월짜리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단기 외채는 중장기 외채에 비해 스프레드가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단말교통(端末交通) 복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하나의 목적통행을 행할 경우에 주교통수단으로 되는 수단통행에 부수한 2차적 통행. 예를들면, 철도이용의 경우 역까지의 버스와 자전거, 도보에 의한 통행과 같은 것으로서 2차 교통, 접근교통이라고도 한다.

단수여권(單數旅券) 1년기간중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한 여권

단식부기(單式簿記) 복식부기 이외의 불완전부기. 여기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은 ① 계산대상의 불비를 뜻한다. 휴그리(F.Hugli)는 재산계통만을 대상으로 하고 손익계산에 관한 계정이 결여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중국의 고유부기나 이탈리아식 단식부기는 손익계정 및 명목계정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단식부기가 되는 셈이다

② 자기완료적 조직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결산에 필요한 데이터의 일부를 부기이외의 자료로부터 구해야 한다. 실제조사를 가미한 자산부채표등이 바로 그예가 된다. ③ 거래대차복기 자검(自檢)작용이 결여되어 있다. 거래의 대차복기가 되지 않으므로 대차평균원리가 작용되지 못하고 시산표(試算表)와 같은 자검작용이 결여된다. 이와 같이 단식부기는 불완전한 계산자료밖에 얻을 수 없는 결점이 있어도 중소기업에서는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

단열콘크리트(斷熱 Concrete) 단열재로 사용할수 있도록 제조된 콘크리트 즉 콘크리트 타설시 공기운행제를 혼합하던가, 또는 경량골재를 이용하면 콘크리트 내부에 미세한 많은 공극이 발생하여 열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콘크리트.

단체수의계약제도(團體隨意契約制度)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한 제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로 중소기업들은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다. 그러나 물량 배정과정에서 특혜시비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품질개선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의 부작용과 외국기업의 참여제한 등의 통상마찰의 소지도 있다.

단체위임사무(團體委任事務) 지방자치단체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 단체위임사무의 예로는 조세 기타 공과금징수 위임사무 등이 있다. 사무의 위임은 일종의 부담인 까닭에 법적 근거를 요하며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이상 그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그 자주적 책임하에 처리되며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따라서 고유사무와 그 취급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으며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경비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단체자치(團體自治) 지방자치의 존립과 자치권은 국가 승인의 산물로서 국가로 부터 유래한다고 본다. 이는 원래 국가만이 가지는 통치권중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능(權能)으로 분배함으로써 자치권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학설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종속되어 국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단체협약(團體協約) 근로조건, 기타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체결되는 협정. 이 협정은 채무적 사항과 규범적 사항의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노사쌍방이 서로 구속되는 것이며, 후자는 임금, 노동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같이 근로자의 대우에 대하여 개개의 노동계약 기준이 되는 사항만 구속된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

용중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한다. 노동협약은 3년이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단핵도시(單核都市) 컴퍼니 타운(company town)이나 지방 행정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시구성 형태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다. 즉, 그 도시의 상업·업무·행정·교육 등의 기능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도시. 한편 역사적으로 도시국가나 또는 중앙집권제도 밑에서 발전한 도시구성 형태가 대개 단핵 기능도시 형태를 갖고 있다.

담당관(擔當官) 조직내부에서 일정한 계선기관에 종속하면서도 그 계선계층의 장의 인격의 연장으로서 그를 보좌하는 기관. 따라서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계획입안·조사연구·분석평가의 기능 등을 통해 행정개선을 도모하고 상사를 보좌하는 참모기관이다.

대결(代決) 행정관청 내부에서 결재권자가 출장·휴가·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신하여 결재하는 것. 대결한 문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대결은 법적으로 관청 자신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대리(代理)와 다르다.

대기오염물질(大氣汚染物質)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매연, 먼지, 가스 및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상 또는 재산상에 해를 미치거나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말하며, 가스상물질과 입자상물질로 대별할 수 있다. 가스상물질은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체상의 물질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오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 선별 등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이다. 대기중에 존재하는 먼지의 크기는 0.1미크론 정도로 태양 및 지구의 복사에너지를 분산시키거나 흡수하기도 하는데, 특히 0.1미크론 크기의 입자가 가시도에 영향을 미친다.

대기오염예보제(大氣汚染豫報制) 일기예보가 기온·강수량·풍향·풍속 등을 예보하듯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기의 오염도를 매일 예보하는 것이다. 대기오염예보는 대기오염이 현저해 질 지역을 미리 공표하여 그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에서 활동할 사람들에게 활동지침을 제공하고, 대기오염도가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단기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존농도가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여 공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95년부터 오존농도의 기준치를 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의보·경

보를 발령하는 오존경보제를 시행했다.

대기오염원(大氣汚染源) 대기오염의 발생원이 되는 장치나 시설, 예 : 보일러 · 증해솥 · 증발기 · 각종 로(爐) 및 킬른(Kiln) · 광공업 · 화학공업 · 식품공업 · 발전소 · 자동차 · 항공기 등.

대런던 계획(The Greater London Plan) 런던시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있는 인구 및 산업을 분산시킴으로써 런던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1944년에 수립한 계획. 대런던 계획의 특징은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하여 교통 · 산업 · 생활공간 · 그리고 도시개발 제도개선 등을 감안한 종합계획으로서 체계적으로 성안(成案) 되었다는 점에서 종래의 기능계획보다 높이 평가되고 있다. 즉 런던계획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분산 및 산업재배치에 역점을 둔 것이다. 이는 1943년의 런던구 계획을 확대 · 보강시킨 것인데 이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제2차 대전중에 런던이 폭격으로 인하여 많은 도시시설물이 파괴된 것과 한 곳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안보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었다. 즉, 런던의 경우 폭격으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에 처했던 경험을 감안하여 기능을 지방으로 적절히 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한 대런던 계획에서는 인구분산과 산업시설의 이전을 목표로 런던중심 30마일(48㎞)이상 지역을 런던 행정구 및 런던 중심지역 · 근교지역 · 그린벨트, 원교지역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근교 및 원교지역으로 인구분산, 산업 재배치를 추진하였다.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런던 중심 반경 15마일(24㎞) 밖에 8개의 신도시를 지정하였다.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45년에 「공업배치법」을, 1946년에 「신도시법」 등을 제정 · 공시 하였다.

대륙붕(大陸棚, Continental Shelf) 대륙의 가장자리에 이어지는 바다 밑의 완만한 경사를 이룬 부분으로 해안으로부터 수심 200m정도까지의 지역. 이곳을 넘어서면 통상적으로 급경사 부분이 이어지면서 깊은 바다로 연결된다. 1945년 9월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보존수역 선언과 함께 미국 연안에 인접한 공해의 대륙붕 자원이 미국에 속한다는 대륙붕 선언을 발표하였다. 잇따라 많은 나라가 이와 유사한 대륙붕 선언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58년 제1차 해양법 회의에서 대륙붕 조약이 이루어졌다. 이 조약은 대륙붕의 범위가 수심200m 가까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개발이 가능한 곳까지도 대륙붕으로 규정하는 2중의 규정을 채택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수심에 관계없이 해저를 지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남겼다. 그후 82년 국제연합 해양법조약은 대륙붕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200해리까지 대륙붕으로 규정하였다.

대선거구(大選擧區) 한 선거구에서 의원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구. 장점으로는 ①사표(死票)를 적게한다 ②소선거구에서 일어나는 선거구 연·매수 기타에 의한 부정투표의 효과를 감소시켜 심각한 선거투쟁 선거숙정의 이상을 달성한다 ③인물선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 국민 운 유식자의 선정을 가능케 한다는 것 등이다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출현을 촉진하여 정국의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많다 ②많은 선거비 ③의원과 선거민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대안(代案) 일반적으로 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 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하는 의안으로 발의하는 것으로서 정안의 성격을 띰), 유사한 2개이상의 안이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경우 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학교(代案學校 Alternative School) 학교 중도탈락자 등 부적응 다시한번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 리 전인교육과 체험학습 등에 중점을 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된 학교. 대안학교는 중·고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이에 맞는 학력을 며, 일반 학교에 재학중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1년 이내 단기과정 원래학교로 복위시킨다. 이러한 의미외에도 일반 학교에서 거의 배우지 의성 교육을 부모가 대신 시키자는 취지하에 주로 방학중에 운영하는 태의 대안학교도 있다. 이는 '창의적이고 주체적이며 더불어 살아갈 줄 로 자라게 하기 위해 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해 교육의 본질에 ㅊ 그릇된 경쟁의식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대위변제(代位辨濟)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 담보처분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나,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행위를 한다. 대신 변제한 보증인은 변제받는 채권자의 위치를 대신하여(代位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하게 한다.

대집행(代執行) 행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무자 대신에 그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실현케 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일종. 행정청은 직 지 않는 행정상 의무자에 대해 일정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있다. 만일 행정상 의무자가 이 명령에 복종치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령에 의해 이를 강제로 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일정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의 일괄표. 손익계산서가 경영성적을 표시하는 것인데 대하여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것. 대차대조표의 본질에 관하여는 그것을 평균표라고 보는 입장과 전액표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원래,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인 balance sheet, bilanz는 라틴어에서 두개의 접시(zwei Schalen)로 된 천칭(wage)을 어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평균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잔액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천칭의 두개의 접시에는 자산·부채·자본의 잔액만을 담는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기술(代替技術)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주로 선진국에서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적 고도거대기술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개념. 1960년대 후반부터 반전운동, 스튜던트 파워(student power), 반 공해투쟁 등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하나의 파고(波高)를 이루었다. 그러나 단순한 반대에 머무르는 한, 운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어 기성체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개념이 도입되었다. 풍력·태양열을 이용한 발전, 유기농법과 수공업의 활용 등, 혁신적인 과학기술로서 보다 기성의 기술적 생활양식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양식을 수립하기 위한 문화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형 쓰레기 일반폐기물 중에서 특히 부피가 크고 보통 쓰레기 수집차에 의한 운반이나 소각로에 넣기가 곤란한 TV, 냉장고, 세탁기, 가구류, 집기류 등의 쓰레기. 일본의 경우 대형 쓰레기의 수집 방식이나 수집 회수는 각 지방자치제의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대형 쓰레기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수거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대형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압축·파쇄시설, 적환장 등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덤핑 방지세. 부당염매관세라고도 한다. 덤핑상품을 수입한 나라가 큰 타격을 받을 경우 수입국의 정부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한다. 일반적으로 수입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만 덤핑 상품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 그 상품이 싼값으로 국내시장에 출하하지 못하게 한다. 덤핑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을경우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한다.

데드라인(Dead Line) 사선(死線), 마감시간, 신문·잡지 용어로서 원고마감 최종시간. 은행에서는 준비금 한계선을 말한다.

데스크(Desk) 신문사 편집국의 부장·차장을 가리킨다. 기자를 지휘하고 취재원고

를 검토·취사선택하는 취재상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다.

데시벨(Decibel)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dB로 표시.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소리는 10dB, 전화벨 소리는 60dB, 열차소리는 100dB이다. 10dB씩 올라갈 때마다 음의 강도는 10배로 늘어난다.

데이터 뱅크(Data Bank) 자료은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를 한 장소에 집중시킴으로써 정보의 입력 및 출력을 편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뱅크에는 단순한 데이터 파일도 있고 국가적인 정보센터의 경우도 있어 그 형식이 반드시 일정 하지는 않다. 기업내의 데이터 파일, 각 전문기관이나 행정관서 등의 비영리 정보센터 등을 데이터 뱅크라 할 수 있다. 또한 은행과 같이 정보의 수집·검색제공 등의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제공서비스 회사를 데이터 뱅크라 하기도 한다.

데이터베이스(Data Base)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같은 데이터가 여러 응용에 중복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다목적성에서 발전된 공용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란 어느 한 조직의 다수 응용 시스템들이 사용하기 위해 통합, 저장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다.

델파이(Delphi)방법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 이 방법은 올라프 헬머(Olaf Helmer)가 창안하였는데 관계 전문가를 모아 놓고 특정문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설문을 놓고, 세미나 등의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의 여러 요소에 대해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총의를 만들어 내는 방법. 오늘날 과학적인 방법론을 높이 평가하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의문의 여지가 많고 그로 인해 논란이 많지만 먼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이 방법을 이용하여 21세기 한국의 상을 예측해 본바 있다.

도급(都給) 당사자 일방(도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발주자)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논문작성·음악의 연주·물건의 운반처럼 사상적 또는 무형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다. 도급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일의 완성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노무를 제공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는 이행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결과만 발생하면 되므로 일은 반드시 도급인 자신의 노무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하도급을 주어도 무방하다. 하도급을 준다는 것은 본래의 수급인이 자기가 맡은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

에게 도급하는 것이며 이것은 건설공사에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

도로반사경(道路反射鏡) 도로의 굴곡부와 보기 어려운 교차로 등에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거울. 일반적으로 환형의 요면경이 사용된다.

도립공원(道立公園) 특별시·광역시·도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자연풍경지로서 자연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광역)시장·도지사가 시도종합건설계획심의를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지정한다.

도매물가지수(都賣物價指數) 기업간의 대량거래에서 형성되는 모든 상품(서비스제외)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수. 즉 국내생산품의 경우는 생산자 판매가격을,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업자 판매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거래단계인 대량도매상 또는 중간도매상의 판매가격을 이용한다. 도매물가지수는 그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목적지수라고 하며, 소비자 물가지수·농촌물가지수 등과 같은 특수목적지수에 비하여 그 포괄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물가수준 측정에 가장 대표성이 큰 물가지수이다. 1990년부터 생산자물가지수로 명칭이 바뀌었다.

도미노이론(Domino 理論) 어느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그 주변국이 잇달아 공산화된다는 이론, 미국의 인도차이나 개입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었다. 도미노는 구미에서 유행되는 실내게임으로 하나가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그 옆의 것들이 연달아 넘어지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도선업(渡船業) 도선 및 도선장 시설을 갖추고 하천·호수 또는 바다등에서 일반교통의 사용에 공(供)하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상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선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경찰서장·지방해운항만청장·도로관리청에 통지하게 되어 있다.

도시개발예정구역(都市開發豫定區域) 도시에 있어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그 적정한 배치로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도시 인근지역에 일정한 면적과 요건을 갖춘 지역. 개발예정지역이 지정되면 3년내에 그 지역 안에서 실시할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개발 예정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보고 다음

행위를 제한한다 ①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②건축물 기타공작물의 신설, 개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분류 등 이다. 이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며 허가없이 위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도시경관(都市景觀) 일반적 경관을 land scape라 하며 도시의 경우 city scape라 한다. 이는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경관과 거기에 건설한 제반 조형건축물 등이 조화를 이루게 되며 그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의 외관형태(external looking)를 도시미관 또는 경관이라고 한다.

도시경제권(都市經濟圈) 도시라고 하면 우선 일정한 범역(area)을 갖는다. 따라서 그 도시는 도시가 점유하고 있는 행정적 영역 또는 계획구역(boundary)을 동시에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기능의 특성으로 농촌지역과 다른 점은 인구가 많이 모여 있고 따라서 이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점이라 하겠다. 이들 제반활동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범역을 도시권이라 하며 특히 그 도시가 경제적 영향을 주는 권역을 도시경제권이라 한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을 주는 범역은 우리나라 전역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일일생활에 영향을 주는, 즉 통근권 또는 한달에 한번쯤 서비스를 받는 중심도시인 월 생활권등으로 그 영향권을 구별하기도 한다.

도시계획(都市計劃)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계획.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과 기업이 집중하여 각양각색의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이러한 도시에서의 생활이나 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충돌이나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여 도시전체의 토지이용이나 도시구조에 합리적·통일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훌륭한 도시환경을 갖춘 기능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 도시계획의 종류는 ①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도로·광장·주차장·공원·수도 등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③토지구획정비사업계획 ④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계획 ⑤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계획 ⑥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며 결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에 의한다.

도시계획구역의 지구지정(地區指定)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크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세분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의 달성을 위하여 도시내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환경조성시설·생활필수시설 등으로서 52개 시설이 이에 해당되며,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수용·사용권이 부여됨. 구체적인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劃委員會)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자문기관.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광역시·도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도 심의한다. 지방위원회와 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공원(都市公園)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도시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 도시공원은 서구에 있어 민주주의 여명과 더불어 발생하였다. 새로운 도시계획적 의도로서 최초로 만들어진 도시공원은 도쿄의 히비야 공원과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있다. 이 시대의 공원은 주로 도시미(美)의 창조에 목표를 두고 설계되어 휴양·산책·관상용으로 쓰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는 정적 공원이라 할 수 있고 그 후에 생긴 아동공원·운동공원 등이 동적 공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를 기능면에서 대별한다면 존재녹지와 이용녹지로 분류한다. 존재녹지라 함은 그 녹지가 존재함으로써 도시의 자연환경을 좋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하는 차단녹지 혹은 개발이 부적당한 북면경사지의 수림대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용녹지는 시민이 직접 그 공원녹지를 이용함으로써 심리적·보건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도시공원법」을 제정하고 도시공원의 종류를 기능에 따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하였다.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관리한다.

도시교통(都市交通) 인간과 재화의 유동이 집중되는 도시에서는 도시 내, 도시 주변 상호의 교통에 기인하는 거주 환경의 악화나 에너지 낭비가 일어나기 쉬워 거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어 도시 교통 문제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도시의 교통은 이

용자의 선호를 집적한 시장의 귀결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에너지, 환경,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억제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도시교통권(都市交通圈) 특정한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사람이나 화물이 이합집산하는 범위. 그 권(圈)은 교통의 목적, 교통기관의 종류등에 의하여 광·협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각 도시교통권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중심핵에 의하여 통합되고 통제있는 도시권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를 싸고 도는 권구조는 상권·역세권·생활권·통근권·통학권·행정권 등 여러 권이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의 권을 공간극복의 수단인 교통을 개입시켜 성립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교통권으로 바꾸어 직접 방사하는 교통 노선이 미치는 범위로서 절대적인 권을 구성하는 경우의 형태적 교통권과 사람이나 화물의 노선상의 유동 정도에 따라 모시(母市)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기능적 교통권으로 구별되나 전자는 모시에서 방사하고 교통기관의 종점을 연결한 절대적 교통권으로 버스교통권·교외철도교통권·정기화물차권 등이 있다.

도시국가(都市國家) 도시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독립한 국가. 이같은 형태의 국가는 중세까지 상당히 많았으며, 아테네를 비롯한 고대 여러도시가 이른바 Polis로 명성을 날리었다. 오늘날 말레이지아 반도에 있는 싱가폴이 그 예이다.

도시권(都市圈) 어느 특정의 도시의 힘(관계)이 미치는 범위를 그 도시의 세력권·관계권·의존권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것을 총칭. 이런 의미의 도시권은 물자의 의존관계에 중점을 둔 경제권과 주민의 일상의 행동범위에 중점을 둔 생활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경제권은 상권 또는 시장권이라고 하며 내용적으로는 소매상권·도매상권·공급권·출하권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주민의 일상적 움직임에는 생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도시권이라 할 때에는 생활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서의 통근·통학의 범위를 특히 통근권 또는 교통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이것은 생활권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대도시의 경우는 중소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범하고 복잡한 관계를 그 주변지역과 맺는 것이 통례인데 이것을 일반의 도시권과 구별하여 대도시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도시권행정협의회(都市圈行政協議會) 대도시와 주변 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행정사무를 서로 협력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의체.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그 근거조항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을 52개 도시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수도권·인천권·대구권·부산권·광주권·대전권의 6개 대도시권, 중심도시와 연담도시화된 6개도시권, 40개 단핵도시권으로 묶어 각각 도시권행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여 도시간 협의를 하도록 일률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다.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 도시기본계획은 다음 세가지 중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첫째,도시기본계획은 법정도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종합계획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성장과정을 장기적으로 유도해 주는 정책목표를 담아야 한다. 둘째,기본계획에서 채택하는 계획목표는 광범위 하고도 기본적인 과제이나 장래 변화에 신축성 있게 설정하여야 한다.즉 기본계획은 기본정책의 방향에 따른 물적계획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물적시설계획은 법정도시계획에서 반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세째, 기본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그 도시가 발전할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으로 보아 시정부의 정책 계획 또는 행정계획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도시계획법」제10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매10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20년간에 걸쳐 지향할 그 도시의 발전지침,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목표자체도 신축성과 융통성이 크게 요청된다.

도시미기후(都市微氣候) 대도시는 건물의 밀도·도로포장·각종산업·인구집중 등에 대한 지면상태의 변화·난방·인공열방출·대기오염 등이 원인이 되어 주변지역보다 평균기온이 높으며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은 등 국지적 미기후상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경우 그 건물로 인한 주변의 기상변화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특히 풍속변화와 온도변화 등이다.

도시병리(都市病理) 20세기 중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대 도시사회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뜻한다 ①합리주의에 의한 냉혹한 산업인들의 경쟁에서 비롯되는 낙후자나 패배자의 사회처리문제 ②도시사회에서만이 가능한 창조성에 의한 새로운 사회가치관과 기술개발에 따른 생활수단의 변화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의 갈등 ③고도화된 기계문명에 의한 인간성배제에서 나오는 비인간성 ④각종 공해에서 오는 도시생활환경의 악화, 즉 자연환경과의 격리에서 오는 인간성 상실 ⑤도시사회와 같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잘 보장되므로 자신의 사회적 도덕성을 망각하기 쉬워 파렴치 행위를 하는 것 등이다.

도시사막화(都市砂漠化) 대도시에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지면이 뒤덮여 빗물이 지하에 침투되지 못한다. 또한 지표로부터의 수분 증발량이 감소하고 여기에 인공적인 배기열이 덧붙여져 기온은 상승하고 습도는 떨어진다. 대기오염까지 가세하면 이끼나 지의류가 소실되고, 착생 식물의 사막화가 넓은 지역으로 퍼지게 된다.

도시산업(都市産業) 도시의 재개발이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때 도시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산업. 지금까지는 상하수도의 배관·도로·택지개발 등을 개별적으로

건설해 왔지만, 앞으로의 도시건설은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업종을 도시산업이라 부른다. 도시산업이 맡게 될 사업으로는 새로운 도시교통시스템·유선텔레비전과 컴퓨터를 결합시킨 영상시스템·쓰레기 처리시스템·지역냉난방 시스템 등이다.

도시선언(都市宣言) 도시선언이나 시민헌장은 다같이 도시헌장의 범위에 속해 있으며 이는 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가 행하는 선언의 총칭. 도시가 그 행정의 하나로 이상적인 실천목표를 선언한것으로 시민헌장과는 달리 단일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래 행하여진 도시선언을 보면 교통안전도시·평화안전도시·위생문화도시·건강도시·정신위생도시·폭력추방도시·친절도시 등이 있다. 선언설정의 효과는 시민의 자주적 협력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됨으로 성과를 올리게 된다. 선언이 설정되기까지는 시의회의 발안에 의할 때가 많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시민대표가 포함된 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민대회 등의 결의에 대부분 따르고 있다.

도시설계(都市設計) 도시계획이 도시의 기능과 그 물리적 발전에 질서를 부여하고 경제적·사회적 도시생활 전체의 조화와 합리성을 목표로 한다면 도시설계는 도시의 조형미를 높이기 위한 시설의 조화있는 배치, 혹은 개개시설물의 형태 등을 다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집중 또는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지나친 효율 위주의 관념은 인간부재의 기계적 생활환경을 만들게 되어 도시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시사회학자들은 심각히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빼 놓을수 없는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분수의 설치·공원의 배치·가로수의 보호·광로의 중간분리대에 화초를 가꾸는 것. 건물의 높이 제한·간선도로의 건물형태 통제·동상·탑 등의 건조·도시의 성격과 구조·역사성 등을 참작한 도시미의 창조 등 다양한 것을 요구한다.

도시재개발(都市再開發) 도시에 인구가 과도히 집중됨에 따라 공지와 공원 등의 부족이 나타나고 차량의 증가는 도로를 협소한 것으로 만들며, 전기·가스등의 보급으로 인하여 새로운 공급시설의 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시는 시대의 진전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은 죽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도시를 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를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로 개량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곧 도시재개발이다. 도시재개발은 지구재개발·지구수복 및 지구보존으로 나누어진다 ①지구재개발은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지역, 건축물

의 배치나 이용 및 지구 전체의 설계가 불량하여 좋은 생활환경으로서의 조건을 상실했거나 정상적 경제활동이 저해된 구역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시가지로 정리·경신하여 철거지역이나 그 주변지를 유효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지구수복이라 함은 부분적으로 도시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현저하거나 잠재하여 있는 지역 또는 보수유지가 필요한 건축물 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또는 도시 전체의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새로운 요구에 맞도록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 및 통제를 행정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지구보존이라 함은 현재로서는 그 기능면에서나 환경면에서 건전하나 방치할 경우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 및 도시 계획의 행정지도에 따라 악화예방조치를 해 두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인 이상의 시는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또 시장·군수는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안에 그 구역 안에서 시행될 재개발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다.

도시철도(都市鐵道)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도시형공업(都市型工業) 봉제·완구·식품가공업 등의 업종은 단순기능위주의 값싼 부녀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거·상업지역등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비공업지역에 난립되어 있으며, 사업규모의 영세성 및 기반미약으로 도시권 밖의 이전이 곤란하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업종은 1977년「공업배치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공업배치법상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 계속 존치가 불가피함으로 선별허용하여 공업배치법시행령에 36개업종을 선정하였다. 지금은 음식료품·섬유의복·나무제품·화학섬유·비금속광물·기계장비 등 다양하게 추가지정되어「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업종을 도시형공업이라 한다. 도시형공업은 중소기업형 우선 육성업종으로 수출기여도 및 부가가치가 높다.

도시화(都市化) 인구가 급속히 도시에 집중하여 시가지 주변이 확대하는 현상,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가지 지역적 변화. 그 요인으로서는 ①도시와 농촌에 있어서의 경제력또는 생활수준의 격차 ②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유출 ③출생력의 지역격차 ④도시에 있어서의 공업·유통·관리·문화 등의 제기능이 집중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금세기말 인구의 90%이상이 도시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개관하면 공업화된 지역일수록 도시화의 비율이 높다.

도심재개발사업(都心再開發事業)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 도로변의 기능이 쇠

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저층건물 밀집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내 건축물과 도로·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도시개발사업

※ 공장재개발 : 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도심지·부도심지(都心地·副都心地) 그 도시의 중심지역. 소도시의 경우 단일 도심지인데 반하여 대도시의 경우 중심지가 여러개 형성된다. 이같은 지역을 부도심이라 한다. 도심지의 특성은 정치·행정·예술·상업(단 전문상업) 등으로 고가의 서비스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토지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은 자연히 교외로 이전하게 된다.

도이 모이(Doi Moi)정책 ①베트남의 개방·개혁 정책(開放改革政策)을 말함. ②베트남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리어지고 있음. ③도이모이 정책은 86년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구엔 반 린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도장폐수(屠場廢水) 가축의 도살 해체로 인해서 생기는 폐수. 주로 혈액이 섞인 유기물을 말하며 일반적인 유기성 폐수에 비해 오염도는 상당히 높고 종합폐수는 BOD 700~1500PPM 정도이다. 또 미소화물 분변(糞便)성분 등 섬유질의 혼입으로 인한 부유물질도 500~1000ppm정도나 된다.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 공기업의 능률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에게 경제적 독립성과 자립성을 인정하는 제도. 즉 공기업을 일반행정조직으로 부터 분리된 독립법인 또는 특수법인으로 존치시켜 일반행정조직의 재정적 통제로 부터 독립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①수지적 합의 원칙 ②자본의 자주적 조달의 원칙 ③이익금의 자주적 처분의 원칙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대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분야별 분권적 관리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독회(讀會) 독회란 원래 국회에서 복잡한 내용이면서 분할 심의 하기가 곤란한 안건을 몇단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심의하는 의안심의의 한 방법. 즉 내용이 여러 조항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할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 사용하는데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경우 여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안이나 예산안및 결산안 심의시에, 일반단체의 경우엔 회칙안을 심의할 때 때때로 사용한다. 독

회는 보통 제1독회 · 제2독회 · 제3독회의 3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제1독회는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며 질의가 끝나면 대체적인 토론을 하는 단계다. 이를 통하여 의원들은 의안의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제2독회에 넘기느냐 아니면 의안을 부결하여 의안 자체를 없애 버리느냐를 결정한다. 제2독회는 제1독회에서 넘어온 의안의 각 조항들을 하나하나 축조 심의하는 단계인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항은 수정하고 수정된 모든 조항을 제3독회에 넘긴다. 마지막 제3독회에는 넘어온 의안전체에 대한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각 조항의 자구나 문장구성상의 잘못은 수정할 수 있으나 제2독회에서처럼 의안내용 자체의 수정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돈 세탁(돈 洗濯) '검은 돈' 의 출처를 감추고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다. 그 방법으로 ①여러 금융기관으로 돈을 옮기면서 잘게 쪼갠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은행계좌는 대부분 가명이다. ②무기명 양도성 정기 예금증서(CD)를 사거나 단자사, 투자신탁등에 가명으로 수표를 입금시킨 뒤 다음날 다른 수표로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동남아국가연합 → ASEAN

동선계획(動線計劃)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나 작업을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움직이는 자취를 나타내는 선으로서 평면에 있어서 사람, 차량등의 동선에 의한 계획. 주택의 동선계획은 독립성 · 가사노동의 위치 · 동선의 공간 등에 유의 해야 하며 동선의 3요소는 빈도 · 속도 · 하중 등임.

동선체계(動線體系) 작업을 위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의미로서 이는 작업자의 이동거리뿐 아니라, 손과 몸의 동작까지 포함하는 작업자 · 작업내용 · 시설환경등을 대상으로 동작연구를 통하여 작업시간을 간소화하며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소요되는 노력의 감소를 도모하여 숙련도의 제고로 능률향상과 시설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환경체계를 말함.

동심원이론(同心圓理論) 1923년 버제스(E.W. Burgess)가 시카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도시 토지이용의 형성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원리를 설명한 이론. 그의 이론은 도시 형성과정에서 토지이용원리가 시장원리와 생태학적 원리가 복합작용하면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가 5개의 동심원적 용도지역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중심부의 제1권은 쇼핑가 · 극장가 · 호텔 · 사무소 · 금융기관 · 기타 도심입지성의 업무들이 자리잡는다. 제1권의 주위에는 전통적 도매상 · 창고지구등 설립기능이 위치한다. 제2권은 전이지역으로서 그 특징은 토

지이용이 매우 다양성을 띄고 또 부단한 변화를 보인다. 주거지역은 이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고소득 시민의 저택·아파트군·고옥들이 혼재한다. 제2권과 제3권에 걸쳐서 공장 노동자·일반 노동자등의 근로자 주택지가 위치한다. 제4권은 대규모 주거지역으로서 이에는 '화이트 칼라' 계급과 중소득하의 주택들이 자리잡는다. 제5권은 일상 통근자 지대로서 이 지역에는 교통간선에 연하여 교외주택지가 형성되고 중류이상의 소득층이 거주한다.

동아시아 경제협의체 → EAEC

동의(同意) 다른 사람의 행위이나 발언에 대해 동조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등이 있음.

동의(動議) 의안이 발안 이외의 형식에 의해 회의의 의사결정을 구하여 행하는 의원의 제의. 동의는 주로 회의의 진행 또는 수속에 관한 것이 많은데 결의의 동의와 같이 이와 관계없는 동의도 있다. 또 요구라고 하는 말로 동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동의는 의사진행의 발언과는 달리 제출자 이외에 일정수 이상의 찬성자를 요하며 그 찬성이 있는 것을 동의의 성립이라고 한다.

동조과잉(同調過剩) 관료제에서 규칙준수의 강조가 결과적으로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게 만드는 현상. 이 현상하에서는 목표와 수단의 도치·법규만능사상·구태의연·선례답습주의·무사안일주의·책임회피·창의력의 결여 등이 조장되어 새로운 일, 옳은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고 상관의 지시나 선례가 옳든 그르든 이에 순종하여 소극적으로 처리하려는 풍조가 조성된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관료의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서 상관이 부하의 책임을 요구하고 사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업적을 중시하는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디마케팅(Demarketing) 자사의 상품에 대한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마케팅활동. 기업의 목적이 최대이윤이고 보면 자기 물건을 적게 사라고 종용하는 것이 퍽 의아스럽다. 그러나 알고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 셈이다. 디마케팅의 좋은 예로 세제시장이 있다. 거의 모든 세제생산업체가 소비자에게 적게 쓸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러나 깊은 의도를 보면 환경보전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어 장기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 최근 서비스 경쟁이 불붙은 가전업계의 경우에 어느 가전업체는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6개월이내에 아예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렇게 되면 교체수요가 줄어들어 기업으로 봐선 손해일텐데도 장기적인 포석으로 디마케팅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디마케팅은 환경보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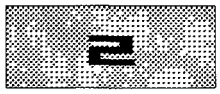
비자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최대한으로 부각한 작전상 후퇴인 것이다. 또다른 이유로 2위인 경쟁업체와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독과점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때 의도적으로 매출을 줄이기도 한다.

디지털 TV(digital television) 200~300개 이상의 TV회로 부품을 마이크로 컴퓨터를 중심으로 10개 정도의 VLSI(초대규모집적회로) 소자로 줄여 디지털 신호로 작동하게 설계한 TV, TV 1대에 가정용 컴퓨터, 음성 및 문자다중방송수신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내장되어 있어 ISDN(종합정보통신망) 시대의 대중화를 위한 매체로서 각광받고 있다.

디지털 전화(digital 電話 : Digital Telephone) 아날로그 형태의 음성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바꾸어 송신하고 수신측에서는 역의 방향으로 원래의 음성신호를 재생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화기이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되므로 전송로상에서 발생되는 잡음을 제거하여 양질의 통화를 할 수 있고, 전송로상에서 쉽게 도청할 수 없다는 이점이 있다.

디폴트 선언(宣言) declatation of default 일반적으로 공사채의 이자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말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을 잃게 된다. 즉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융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1979년 가을 미국의 상업은행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 선언을 표명했을 때는 미국은행에 맡겨진 이란의 예금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융자를 회수했다. 또한 하나의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부른다. → 모라토리엄

디플레이션(Deflation) 통화량의 축소에 의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인플레는 평범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태임에 비해 디플레는 광범한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상태. 디플레에는 호경기와 불경기의 교대와 더불어 일어나는 순환디플레와 인플레 억제를 위한 정책적 디플레가 있는데 후자는 금융 긴축이나 재정긴축 등에 의해 유발된다.



라멘 구조(Rahmen 構造) 기둥을 서로 연결하고 이를 건물의 기본골격으로 삼는 구조. 이 구조는 지진 등 재해에도 잘 견디는 비교적 튼튼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투입된 철근의 양과 그 배근상태에 의해 강도가 크게 좌우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철근의 투입과 배근만 제대로 하면 이 구조는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반면 부실시공 등으로 철근을 빼돌리거나 설계대로 넣더라도 배근을 잘못한 경우에는 구조자체의 균형이 허물어지고 벽체에 금이 가는 등 건물전체의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라멘구조는 상가나 업무용 건물과 같이 각 층별로 벽체의 구획이 다른 건물에 많이 적용된다.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①생물학 용어로 생활환(環). 수정란에서 새로운 개체가 생기고 이것이 다시 다음 생명을 낳을 때까지의 발육과정을 말한다. 또한 하나의 생활단계에서 다음 생활단계까지 일련의 생활과정(life history와 같은 뜻)을 가리키기도 한다. ②경제학 용어로는 상품의 수명. 어떤 상품이든 시장에 등장하여 판매가 신장되면 다음에 판매량이 감소되는 과정을 밟는다. 그 과정을 보통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포화기(飽和期), 쇠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여 상품계획에 반영한다.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po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1938년에 미공군의 원조로 설립된 미국 최초의 본격적인 싱크탱크(두뇌집단). 기술자·수학자·물리학자·프로그래머·기상학자·OR전문가·경제학자·인류학자·역사학자·심리학자·사회학자와 폭 넓은 분야의 스탭을 갖추고 국제문제·군사계획·국내문제의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58년에 쏘아올린 제1호 인공위성의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했다.

러쉬아워(Rush Hour, Peak Hour) 도시의 1일 교통 흐름에 있어서 교통이 가장 많은 시간. 이 혼잡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해서 볼 때 주말을 제외하고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교통량이 아침 5시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7시경부터 9시경까지 증가하다가 10시를 지나면서부터는 약간 한산해졌다가 다시 오후 5시경부터 점점 증가하여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다시 점점 줄어든다. 이와 같이 교통량이 많아 교통량이 혼잡을 이루는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을 전후한 두 시간을 러쉬시간 또는 피크 아워라고 한다.

런던 금시장(The London Gold Market) 취리히 시장(市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국제자유금시장. 금 시세는 그때 그때의 국제적인 수급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외에 국제통화 정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다. 거래는 로드차일드, 새뮤얼 몬타그, 모커트 골드 슈미트, 존슨 메세이 뱅커즈, 샤프스 픽슬레이등 5개사가 시장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 반과 오후 3시에 로드차일드에서 금 1온스의 값을 정한다.

런던형 스모그(London Type Smog) 로스엔젤레스형 스모그에 대한 단어이며, 예전부터 있던 스모그. 그 특징은 안개가 있고 비교적 온도가 높으며 기온이 낮은(-4~4℃)이른 아침이 피크이며 화학적 환원대기, 상승성이고 기관지를 자극한다. 오염물은 매연과 아황산가스이다.

레벨(Level) 음향, 진동관계의 강도를 표시하는 용어. 특정 기준량과의 비(比)를 데시벨로 표시한 값임. 소음레벨·음압레벨·음의 강도레벨·파워레벨·음의 크기레벨·레벨차·진동레벨 등의 용어가 있다.

레임 덕(Lame Duck) 임기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 특히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동안 국정 정체상태가 빚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우뚱 기우뚱 걷는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 2기째의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여당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경우에도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지도력이 저하되어 레임 덕이되는 수가 많다.

레포츠 공원(Reports 公園) 레저와 스포츠를 혼합한 용어로써 생활주변에 건전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전여가생활을 제공하는 공원

로열티(Royalty) 특허권,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사용료. 흔히 외국으로부터 기술에 관한 권리를 도입한 후 그 권리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 기술개발 촉진에 따라 외국으로 부터 선진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상표도입등이 늘어나면서 로열티 지급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기술도입 기간도 5년이상 장기화 되고 대가지급액도 순매출액의 5%이상, 고액지급이 늘어나는 경향이다. 한편, 이 개념은 저작권의 인세나 연극·예술작품의 상영료, 광산·광구의 사용료등에 쓰인다.

로타리 교차(Rotary 交叉) 교차로 유형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5지(枝)이상의 교차로에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통혼잡 부분이 많고 교통용량에 한계가 있으며, 유료도로에 적합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리노베이션 리노베이션은 개조, 전용, 복원, 보전, 보존, 재조립, 재축, 모사, 이전

등의 광의의 해석이다. 이를 법규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다. 현재 리노베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지하철 역세권 지역인데, 노후화되고 상권이 변화하는 지역이라면 앞으로도 리노베이션이 왕성하리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처럼 리노베이션이 인기를 끄는 것은 우선 지은지 10년 이상된 건물은 매입할 때 땅값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리노베이션 후에는 임대보증금의 인상이 가능, 공사비를 대체할 수 있어 초기 투자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신축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아 영업손실이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입자금 역시 적게 든다(투입자금은 신축의 20%가 적당하며, 50%를 넘지 않아야 효과적인 리노베이션이라 할 수 있다.) 리노베이션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해당지역의 상권분석을 통해 신규로 유치가 가능한 상점의 경쟁력을 계산하고 이들을 유인할만한 방안을 고려 집행시기 및 자재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외관은 관리가 쉬우면서도 눈에 띄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주변건물과의 조화, 예상업종, 소비층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시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좋다. 리노베이션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업자를 선정해서 설계 및 공사내역을 결정하고 비용산출을 한다. 그 다음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신고를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된다. 신고나 허가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능하다. 참고로 리모델링도 최근 많이 거론되는 용어인데, 이는 리노베이션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구조상 변경이나 증·개축의 개념은 해당되지 않고, 내장재나 용도상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해석이라 보면 될 것이다.

리눅스(Linux)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도'에 대항해서 나온 새로운 개방형 운영체제(OS)로 지난 91년 핀란드의 대학생이던 리누스 토르발드가 처음 개발했다.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해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자는 '오픈소스' 정신을 기초로 무료배포되는 운영체제(OS)를 말한다.

리사이클링 시스템(Recycling System) 자원을 인공적으로 순환시켜 재생이용을 꾀하는것. 즉 자원의 순환이용에 의해 공해방지 및 자원유효 이용의 두가지 목적을 수행하려는 것임.

리스(Lease)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를 장기간(5~7년) 빌려주는 제도. 물건(기계설비)의 종류·규격·가격들을 기업이 결정하면 리스회사는 기계설비 제조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금융을 해준다. 이 방식으로 설비를 조달한 기업은 1~6개월마다 설비사용료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납부한다. 리스를 이용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설비전체에 대한 100% 융자효과가 있으며 리스료는 전액 세법상 손비(損費)처리되어 비용절감을 가져오고 물건의 임대차방식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악화시키지 않고서도 설비를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리스업이 상륙.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위기관리(危機管理)또는 위험관리. 경영활동에 따르는 각종 리스크를 최소비용으로 억제하는 체계적 조치. 각종 리스크의 제거. 그 내용의 분석과 평가·리스크 처리의 제방법의 검토와 선택의 과정이 포함된다. 리스크에는 여러가지 파악방식이 있는데, 고용·생산·판매·투자·연구·개발 등의 업무활동에 따르는 동태적 투기적 리스크와, 지진·화재 등과 같은 정태적(靜態的) 순수 리스크로 나누는 방법외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심리적·물리적·법률적 리스크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리스크의 처리방법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컨트롤(risk control)과 리스크 파이넌스(risk finance)등 2가지로 나눈다. 전자는 리스크의 회피·경감·분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안전장치의 부착과 같은 기술적인 대응책과 정기검사·교육과 같은 인적 대응책이 있다. 리스크 파이넌스는 보험으로 대표되는 바와같이 리스크 발생시의 자금대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리얼오디오(Real Audio) 미국 프로그레시브 네트워크(Progressive Net- work)사가 개발한 리얼타임(실시간) 음성용의 클라이언트 서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웹 브라우저 Netscape의 플러그 인으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리얼오디오는 인터넷에서 오디오를 실시간에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인터넷 노래방이나 인기가요 웹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노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오디오 처리 기술을 사용한다.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 p115 하단

리우 환경협약(RIO環境協約)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 개발회의에서 정식 서명된 기후변화협약. 지구의 온실화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협약은 지구온실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를 주요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곧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제한하게 되며 산업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리조트(resort)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체류하면서 각종 스포츠나 놀이를 복합적으로 즐기는 여가활동, 단기간에 같은 종류의 스포츠나 놀이를 즐기는 레저와 구분된다. 또 레저가 다른 사람의 기획에 의해 즐기는 수동형 여가활동이라면 리조트는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장기 능동형 여가 활용법이다.

리콜제(Recall制) ① 이미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조·판매한 사업자가 제품을 수거하여 교환,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애프터 서비스가 단순히 소

비자의 요청에 의한 하자품을 수래해 주는 데 반해, 리콜제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모두 수거하여 보상하나,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상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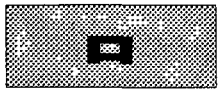
⇒ 리콜제도는 '96년 4월부터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공산품과 식품류, 아파트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99. 9월 30일 부터는 위해식품 리콜제가 본격 실시되었다. ② (노동) 경영사정이 호전됐을 때 우선적으로 해고 직원을 복직시키는 제도

리히터 진도(Richter 震度) ①리히터 지진계에 기록된 진동수치(振動數値) ②수치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진도는 10배 증가했음을 뜻함. ③3.5의 지진은 경미한 피해를 유발하나, 7은 대형지진, 8은 대지진으로 분류된다.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업무재구축'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은 인원삭감, 권한이양, 노동자의 재교육, 조직의 재편 등을 함축하는 말로서, 비용·품질·서비스와 같은 핵심적인 경영요소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영과정과 지원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기법이다. 한마디로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기업공정을 획기적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클 해머 박사가 1990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이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해 전세계 기업의 경영혁신운동에 새 장을 열었고, 용어자체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어 사용권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혹은 비즈니스 리디자인 등 우회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다. 초창기의 리엔지니어링은 주로 기능 위주로 분담되어 있는 기존의 업무방식을 프로세스별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연구개발이나 생산, 판매 등 기능별로 나눠진 업무를 '고객을 만족시키는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반면 최근의 리엔지니어링은 조직, 정보기술, 조직문화, 측정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제2단계 리엔지니어링'의 단계로 넘어서 있다. 많은 사람들이 리엔지니어링을 다운사이징과 혼동하여 이를 감원이나 공장폐쇄의 암시쯤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해머 박사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운사이징은 기본적으로 일의 공정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을 말하지만 리엔지니어링은 작업공정을 세밀하게 검토해 필요없는 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직원의 감원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다운사이징

링크(Link) 링크는 데이터 통신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해 주는 물리적, 논리적 연결계층을 의미한다. 웹사이트를 검색하면서 모니터에 나타나는 단어가운데 강조되어 있어거나 일반단어와는 다른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보통은 그곳에서 마우스포인터를 이동할 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뀜)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링크를 의미한다. 그 곳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지정된 곳으로 연결되어 해당단어와 관련있는 사진이나 그림 또는 동영상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다.



마이크로컴퓨터(Microcomputer) 초소형 컴퓨터라는 뜻으로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P·C)도 마이크로 컴퓨터의 하나. 컴퓨터의 발전은 그 크기는 줄이면서 기능을 늘리는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 중앙처리장치 기능을 1개의 칩(Chip)에 포함시켜 만든 One-Chip-System도 등장하고 있다.

마찰적 실업(摩擦的 失業) 취업정보 부족이나 학력간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생기는 실업. 일하기 싫어서 스스로 취업을 거부하는 '자발적 실업' 이나 경기부진으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비자발적 실업' 과는 달리 노동시장의 구조결함에 연유하는 구조적 실업의 일종. 특히 상업구조변화나 기술발전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모자라는 반면,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자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마찰적 실업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정보센터운영·취업기술재교육 및 산업현장에 맞는 학교교과 과정재편 등의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맞춤훈련 → 고용촉진훈련

매립처분(埋立處分) 폐기물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하역시킨 후, 흙을 덮어 놓은 것. 화재나 쥐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매일 하역시킨 수거물을 다진 후 그날로 흙을 덮어야만 위생적인 매립이 된다. 이 방법은 미국에 있어서 1930년대 뉴욕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위생매립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오염물이 계속나오고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생매립의 형태는 도랑식·지역식·경사식의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매연(煤煙) 연료 또는 기타 물질의 연소시에 발생하는 검댕·입자상 물질 또는 황산화물 등.

매장물(埋藏物) 토지 그 밖의 물건속에 매장되어 있어서 누구에게 속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물건. 매장이란 보통상황 아래서는 쉽게 발견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그 원인이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상관없다. 또한 매장기간의 길고 짧음에도 상관이 없다. 매장물은 보통 동산이지만 이론상 건물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과거 누구의 소유에 속한 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물건 또는 그 소유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물건은 무주물(無主物)이다. 이러한 매장물

의 발굴에 관한 사무는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기타의 물건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해운항만청장이 각각 이를 관장하고, 매장물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안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나 기관장이 그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매출원가(賣出原價) 영업수익(매출액)을 올리는 데 필요한 영업비용의 하나. 영업비용에는 매출원가·일반관리비·판매비 등이 있지만 매출원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매출원가는 상사의 경우는 기초(期初)의 상품재고액에다 당기의 상품매매액을 더하고, 기말(期末)의 상품재고액을 뺀 것이며, 메이커의 경우는 기초재고액에 당기중 노무비·원재료비·외주비(外注費)·감가상각비등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제품재고액을 뺀 것이 매출원가가 된다.

매칭 펀드(Matching Fund) 내·외국인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투자자금으로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에 동시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외국인에게는 국내증권 투자를, 내국인에게는 해외증권 투자를 동시에 허용하는 성격을 띤다. 증권시장의 육성과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90년 3월부터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매칭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허용했다. 이 펀드의 형태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되 일정기간 동안의 환매를 제한할 수 있는 단위형으로 국내 증권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투자를 병행함으로써 국내 통화증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트릭스(Matrix) 보통 2차원의 배열을 말하며, 같은 부품 여러개를 가로와 세로로 배열하고 이들을 도선을 사용하여 그물형으로 연결한 장치를 지칭한다. 전기적 방법으로 수학적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망으로 대부분의 매트릭스들은 단순한 수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소자의 조합이다. 행과 교차하는 열로 구성된 신호원과 통로의 직각회로망, 행이 열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각 교차점에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 신호원을 결합·사용하기 위해 행과 열로 구성된 신호통로 회로망을 말한다.

매트릭스조직(Matrix 組織) 매트릭스조직은 조직의 기능에 따라 수직적으로 편성된 직능조직에 수평적·측면적인 프로젝트 조직의 모형을 부가시킨 조직. 즉 전통적인 기능적 조직과 프로젝트조직을 합한 것이다. 예를들어 기능부서의 장은 수직적인 부서의 전문가에 대한 계선권한을 가지며 기능적 전문가는 수평적구조의 특수사업에 배열되어 특정한 임무를 맡게 된다. 이와같은 임무는 일반적으로 특수사업이 착수될 때 관련있는 기능부서의 관리자와 프로젝트부서의 관리자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배당된다. 따라서 매트릭스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나 계층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등 전통적인 조직이론들을 무시하게 된다.

매판자본(買辦資本) 식민지나 후진국에서 외국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부스러기 이윤을 착취하는 반민족적 토착자본. 예속자본이라는 말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비난의 성격이 더 강하고 산업자본이라기 보다 상인자본. 원래는 외국자본과 자국시장을 중개하는 무역상인 또는 외국상사의 대리자를 뜻하였으며 중국 청조(淸朝)말기 열강의 자본과 결탁하여 폭리를 취했던 중국의 토착상인들을 가리키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제3세계론에서는 그 개념이 보다 엄밀해져 '저개발 국가에서 정치적·경제적 지배력을 장악한 매판적 엘리트들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집단과 수직적으로 야합하여 분업 내지 교역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유지할 뿐만 아니라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착취를 조장하는 자본' 이라고 규정하였다.

맨 파워(Man Power) 한 개인이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

맨홀(Manhole) 하수도나 밀폐된 대형통 내부의 청소나 검사를 위한 출입구. 하수관인 경우 관지름(관경)이 120㎝ 이하인 경우는 100m 간격마다, 또 관의 경사·방향·관지름이 변하는 곳에 설치되며, 120㎝ 이상인 관지름에는 400~500m간격으로 축조됨.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마케팅활동의 하나로 상품화계획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수요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출한다는 것이 최근의 견해이다. 그런데 수요를 창출하려면 수요자의 행동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요를 자극해야 하며 생산원가등을 고려하여 수요자에 적합한 상품을 제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조사 → 상품화 계획 → 선전 → 판매촉진 등이 원활히 진전되어야 업적을 신장시킬 수 있다.

멀티미디어(Multimedia) 문자, 음성, 화상, 동화 등 여러 가지 다른 미디어를 한 대의 컴퓨터에 조합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 또는 그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새로운 고기능의 플랫폼들이 속속 등장, 급속한 발전과 확산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정보의 저장과 검색을 비롯한 홈뱅킹, 홈쇼핑 등의 PC통신기능, 화상과 영상을 녹화·재생할 수 있는 VCR기능, 게임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이름 그대로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십분발휘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음성·화상·영상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450~650MB의 디지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대용량 CD-ROM을 주로 사용한다.

명령통일의 원리(命令統一의 原理) 명령의 통일이란 누구나 한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하며 또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라밋형의 조직을 상징하는 것. 따라서 명령통일의 원리는 계층제의 원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조직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지나치게 고수할 경우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원리는 꼭 지켜야 한다기 보다는 가급적 이를 고려하면서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명목국민소득(名目國民所得) 국민소득을 산출하는데 있어 측정시점의 시장가치에 의해 표시한 것. 화폐국민소득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물가변동을 제거하여 나온 것이 실질 국민소득이다.

명목임금(名目賃金)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은 화폐액. 명목임금으로는 근로자의 보수가 낮은지 높은지를 알수 없어 이 화폐액을 그당시의 물가지수로 나누어 명목임금의 실제구매액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명목임금에 대해 실질임금이라 한다.

명시이월(明示移越) 예산편성시 이미 당해 회계년도 안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의결로써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지출할 것을 확정한 경비를 명시이월비라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지출하는 것. 그 이월절차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 같이 세출예산에 포함하여 지출하며 따로 독립하여 예산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명예퇴직제(名譽退職制) ➡ p121 하단

명의신탁(名義信託) ➡ p122 하단

모노컬쳐 경제(Monoculture 經濟) 한 나라의 경제가 몇 개의 1차상품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단작(單作)경제. 식민지침탈의 유산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브라질의 커피, 말레이지아의 고무와 주석, 인도네시아의 석유와 고무, 가나의 카카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1차산품은 대체로 수요의 소득탄력성·가격탄력성이 적어 선진국의 수요동향에 따라 가격이 대폭 변동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는 치명적인 대외의존성·취약성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들 상품에 대한 대체품도 등장하고 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어 온 점에 비추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모노컬쳐 경제의 탈피는 민족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모니터(Monitor) 어떤 시스템의 작동을 관찰·제어·확인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한다.

모뎀(MODEM, Modhlator and Demodulator) 변복조장치라고 하기도 한다. 컴퓨터의 데이터통신에 사용되는 장비인 모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끼리 통신선을 연결하여 자료를 주고 받을 때 효과적인 자료전송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컴퓨터로 자료처리를 하는 데 쓰이는 신호는 수치형신호(Digital Signal)지만, 이는 원거리까지 그 값을 제대로 전송하지 못하여 원거리통신에 부적합하므로 장거리전송에 편리한 상사형신호로 보내온 자료를 컴퓨터가 알아 볼 수 있는 수치형신호로 바꾸 어야 처리가 가능해 지는데 이와 같이 통신시의 신호를 바꾸는 장치가 모뎀(MODEM)인 것이다.

모라토리엄(moratorium) ➡ p123 하단

목적세(目的稅, Objective Tax, Special Purpose Tax) 특정한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세원별로 지출대상을 미리 지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목적세다. 목적세는 일단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본 예산에 흡수하는게 통례이다. 이에 따라 목적세는 대개 종료시점을 못박아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같은 예로는 1991년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교육세만 남아 있다.

명예퇴직제(名譽退職制)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정년이 되기 전에 직원을 퇴직시키는 제도. 강제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함께 정년까지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중에서 정기예금이자분(복리)을 공제한 금액이 일시불로 주어지는게 보통이다. 1974년 정부가 시행한 공무원 명예퇴직제가 처음으로, 이후 1985년 대한주택공사를 위시해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거의 모든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조흥은행을 시발로 은행과 보험, 증권, 투자신탁 등 금융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 1988년 대우중공업이 명예퇴직제를 시작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약 34%가 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다. 과거에는 '근속 20년 이상 정년 10년 이내' 또는 '정년을 2~3년 앞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해 기업으로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을 활성화시켜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명예퇴직자에게는 2~3년의 여유를 가지고 정년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등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속 연소화 추세를 보여 과거에 대체로 45세 이상이었던 대상자가 심지어 32세로 내려오는 경우까지 생겼다. 또 과거에는 일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한 공로보상형 제도였다면 현재는 정리해고제의 성격이 짙다.

목표관리(目標管理, management by objective:MBO) 종업원에게 업무목표만을 지시하고 그 달성방법은 종업원에게 맡기는 관리방법, 한걸음 더 나아가 목표설정까지도 종업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건 관리자는 명령하지 않고 종업원의 자주적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며 종업원 상호간의 조정을 하게 한다. 조직의 거대화에 따른 종업원의 무기력화를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관리방법이다.

명의신탁(名義信託)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 이는 일제시대 때 종중(宗中)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다. 현행 민법상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방후 법원관례로 굳어져 그동안 합법적으로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왔다. 정부는 지난 1990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 "탈세, 탈법, 투기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조)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난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 대표적인 명의신탁인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할 경우 매년 10%씩 과징금을 올려 오는 1999년에는 최고 60%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1995년 7월에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금지됐으나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 세금포탈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종단과 종교단체의 기존 명의신탁 등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양도담보'의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데, 이때는 반드시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만 양보담보임이 증명된다.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않는 한 범법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탈세, 재산은폐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등기할 때 실질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 실질주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부동산실명제, 양도담보

목표관리(目標管理)시스템(MBO action program;MAP) 목표관리시스템은 비전, 워크숍, 목표, 업적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와 질의 경영을 추구하는 내부경쟁 프로그램이다.MAP는 MBO를 우리나라 기업 실정에 맞게 개선한 종합적인 혁신 프로그램으로, 그 바탕은 '인간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기존의 MBO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톱다운식으로 진행되며, 수평적인 업무 흐름보다는 수직적 구조가 강조되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 즉 인간의 잠재력은 그에 대한 신뢰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알맞은 동기부여와 성취감 여부에 따라 구성원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신념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다. MAP에서는 전략적 관점이 강조되고 고객중심적이며 시스템 자체가 유연성을 지니며 톱다운보다는 보텀업이 강조되며 개인보다는 집단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MAP는 목표의 설정에서 실시, 평가 및 피드백의 전 과정에 조직구성원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숍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몬트리올議定書) 지구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염화불화탄소(CFC)·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제한 국제환경협약. 1974년 미국 과학자들이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CFC사용규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약10

모라토리엄(moratorium)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서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엄은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 다르다.

그러나 외채를 유예받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신용이 하락하여 대외거래에 갖가지 장애가 뒤따른다. 또한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은 채무국과 채무조정작업을 하게 된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또는 모라토리엄선언 이전에 상환연기나 금리 재협상, 원리금을 추가 대출금으로 돌리는 재융자, 원금삭감 등의 방법을 협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시정이 악화되자 국제채권단과 상환일자와 금리를 재협상하였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러시아가 1998년 8월 90일간의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루블화의 가치를 33.7% 평가절하시킨 바 있다. → 디폴트 선언

년간 환경전문가회의와 정부간 회의를 거친 끝에 1985년 3월 「오존층보호에 관한 빈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1987년9월 몬트리올의정서가 정식채택돼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은 CFC등 규제물질을 1986년을 기준으로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줄여 2000년에는 전면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1992년 5월부터는 비가입국에 대한 자동차, 냉장고 등 관련제품 수입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 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더라도 가해의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근대의 '과실책임주의'의 예외사항이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이 일으키는 재해에 있어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 주장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자는 그 수익활동에 의한 손해도 부담해야 한다는 '보상책임'과 위험을 만들어내는 자는 그 위험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무등록 공장(無登錄工場) 공장건축면적이 200㎡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불구하고'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공장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업종 및 환경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제약요인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등록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업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등의 차원에서 이들 무등록공장에 대해 적정한 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현지에서의 위법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무등록공장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금융(貿易金融) 수출업체에 지원해주는 각종 금융대출.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맺은 다음 수입업체의 거래은행으로 부터 신용장(L/C)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수출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자금을 거래은행이 저리의 이자로 대출해 준다.

무역외수지(貿易外收支) 서비스 수출입에 따른 수입과 대외지급의 차이를 말하는 것. 상품 수출입에 따른 수지, 즉 무역수지와 구별된다. 무역외수지의 주요구성 요소는 은행·보험·항공기·선박 등의 서비스 대금, 대외투자의 이윤·이자·주식배당·관광해외여행 경비·특허료 배상 등이며 한국의 경우 해외건설 수입도 큰 몫을

차지한다. 무역외수지 동향에는 국제금리수준과 해외건설경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역의존도(貿易依存度) 일국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 다시 말해서 무역의존도란 일정한 기간 (보통 1년)에 있어서 일국의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그 기간의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율로서 표시된다.

무임승차(無賃乘車) 무임승차는 글자 그대로 차를 공짜로 타는 행위. 그러나 공공경제학에서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향유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소위 배제원칙(Exclusion Principle)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 생기고 공공재가 이러한 속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외부경제효과도 무임승차의 한 예이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Uninter ruptible Power Supply) UPS란 통상적인 전원공급이 안되거나 정전이 될 때 정전과 상관없이 전력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또는 무정전전원장치라고도 한다. UPS는 정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하는 작동중의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류의 필수장치로서 전압이나 주파수의 변동 또는 순간정전에도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 컴퓨터의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소실되는 것을 방지 보호하거나 각종 제어장치의 제어기능 상실 및 오작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intangible property right)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사람의 정신적인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의 총칭으로서 물권(物權)과 대응하는 개념이다. 무체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과 문예·학술·음악 등에 관한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의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 상호권(商號權), 산지명(産地名) 사용권, 부정경쟁금지권 등도 포함된다. 무체재산권은 이전성(移轉性)을 가지며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타인이 침해하면 이를 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을 그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무체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보호동맹조약(1883), 문화·미술적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1986), 만국저작권조약(1952) 등의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産) 구체적 가시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재산권을 이루고 있는 무체재산. 이에는 법률상의 권리인 것과 사실상의 가치있는 것을 포함

한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 특허권·지상권·전세권·상표권·실용특허권·의장특허권·광업권·어업권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권리는 아니나 수익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치로서 추산이 가능한 영업권이 있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그 가치가 큰 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이 유형적인데 반하여 일정한 물적 형상이 없다고 하여 이렇게 부른다. 그 가운데 특정된 것은 문화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한다. 경남 충무시의 승전무(勝戰舞)를 비롯한 가야금산조·안동차전놀이·승무(僧舞)·봉산탈춤·서도소리 등이 그것이다.

문화재(文化財)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문화부장관이 지정한 것. 이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한다. ①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사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기타유형의 문화적 재산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며 ②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다. ③기념물은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기타 사적지와 경승지·동물·식물·광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또는 관광상 가치가 큰 것이며 ④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이다. 문화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의 문화재 중 중요도 등 가치의 정도에 따라 유형문화재 중에서는 보물·국보를, 무형문화재 중에서는 중요 무형문화재를, 기념물 중에서는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민속자료 중에서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를 소유 또는 점유한 자는 문화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물가지수(物價指數)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후의 물가의 변동을 백분비로 표시한 것. 도매물가는 생산자가 판매하는 단계에서 896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변동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발, 교통과 같은 서비스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소비자구입 단계에서 47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소비자물가는 사용빈도가 많은 식료품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작성되고 도매물가는 식료품 이외의 상품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소비자물가는 167개 식료품에 32.5%의 가중치를 두는 반면 도매물가는 식료품(141개 품목)에 17.63%의 비중만을 둔다.

물류(物流) 물적유통을 줄인 말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물건의 흐름. 일반적

으로 유통개념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전시키고 장소와 시간·소유의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물류는 소유의 효용을 만족시켜주는 거래를 제외한 장소와 시간의 효용을 창출하는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물류는 수송기초시설·통신기초시설 등 국가기간 산업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송·보관·하역·포장·유통·가공·정보기능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물적 행정행위(物的 行政行爲) 물건의 성질 또는 일반 공중에 의한 물건(도로와 같은 公物)의 이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행정행위. 물적 일반처분이라고도 한다. 물적 행정행위의 예로는 '주차금지 구역의 지정' 을 들 수 있다. 어떤 도로의 구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곳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누구나 주차하지 못하는 구속 (일반적 규율)을 받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물적 행정 행위를 일단 일반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뮤튜얼펀드(mutual fund) 오픈앤드형 투자신탁의 미국에서의 통칭이다. 주식회사(corperation)형과 트러스트(trust)형이 있다. 회사형은 투자신탁이 주식회사 조직으로 경영되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투자자가 매입한다. 트러스트형은 개개의 투자자와 경영자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경영자 자신이 수탁자로 되고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뮤튜얼펀드가 운용하는 자금은 1997년 말에 4조 5,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약 7,000개 이상의 뮤튜얼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미관지구(美觀地區)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며 대개 주요가로를 따라 설정하는 것.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건축위원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미관 지구별 건축물 (단독주택은 제외)의 용도제한을 하고 있으며 기타 건축물의 미관을 구성하는 여러요소들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미나마타병(Minamata Disease, 水俣病) 1953년 부터 1960년에 걸쳐 일본의 쿠마코토현 미나마타 지방에서 발생한 유기수은 중독. 많은 사람이 발병하여 지각과 언어·보행·시력·정신 등의 장애증상을 일으켰다. 1956년 쿠마모토대학 의학부의 연구반은 미나마타만의 어패류 섭취로 인한 중독임을 밝히고, 1968년에 이르러 어패오염의 원인이 공장폐액중의 메틸수은이라고 하는 정부의 공식 견해가 발표되었다. 또 1964년에는 니이가타현의 아가노강 하류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였지만 발병기구가 미나마타병과 같아서 제2 미나마타병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미시경제(微視經濟) 경제주체들과 시장의 형태를 분석하여 공통적인 경제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며 또 그렇게 얻어진 경제문제들의 해결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평가하는 것. 따라서 미시경제학의 주요대상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경제행위분석과 자원배분의 평가이고, 시장구조분석이 주요내용중의 하나이다.

민간위탁(民間委託)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

민원조사역(民怨調査役, The Ombudsman) 민원조사역제도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불평과 불만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직. 이 제도의 좋은 사례는 미국의 데이톤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의 민원조사역제도는 1971년 Joint Office of Citizen Complaints (JOCC)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JOCC의 역할은 ①지방정부에 대한 의미있는 불만의 해결 ②정보와 이관 서비스의 제공 ③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촉진 ④불만해결에 성공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지원 ⑤지급서비스의 융통등이다. JOCC는 조사과와 정보 및 이관에 관련된 과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일상적인 요청이나 불평을 빨리 처리하는 연구조사가 필요한 것을 별도로 처리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JOCC는 민원조사역의 활동과 불만의 유형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주요일간지의 일요칼럼을 활용하여 알리기도 한다.

민원 후견인제(民願 後見人制)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접수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장급 이상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제도. 1994년부터 충북 제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는데, 그 결과 민원처리가 빨라지고 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 1995년말 내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실시를 권장했다. 후견인이 지정되는 민원은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안이거나 10일 이상이 걸리는 인허가, 공장설립관계 등이다.

민자유치(民資留置) 민간자본의 유치는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 최근에 정착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대신 민간 부문에게 일정 범위내의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민자유치는 그 개념상 사업의 주체, 대상이나 사업방식 등에서 몇가지 특징을 지님. 첫째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라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전과정을 주도하며 민자유치시설의 관리, 감독권도 행사, 민간부문은 단지 민자유치사업을 통해 건설된 시설 등을 소유, 사용, 수익할 뿐임. 민자유치 사업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유형

에는 민간부문이 사업주체가 되어 계획입안, 재원 조달, 건설, 관리 운영 등 전체사업을 시행하는 직접참여, 민간부문이 재원조달만을 담당하는 간접참여, 공공부문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시행상의 일부 및 전부를 민간부문에게 위탁하는 위탁 참여, 단일 사업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담하여 시행하는 분담참여 그리고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3섹터 등이 있음. 둘째 민자유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 즉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셋째 민자유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은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고, 일정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 등을 가짐. 일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자유치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방식에는 영업권 허가(Franchise)방식과 BOT(Build-Operate- Transfer)방식 등이 있음. 영업권 허가방식은 시설물을 건설한 후에 시설물을 정부에 채납하고 그 대가로 운영권(영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BTO(Build-Transfer-Operate : 건설-기부채납-운영) 방식이라고도 함.

민자유치와 외자유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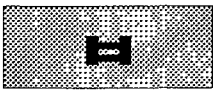
구 분	민 자 유 치	외 자 유 치
관 계 법	민간투자법(98.12) (개정으로 보장 제도의 개선)	외국인투자촉진법(98.11) (Incentive 중심)
대상사업	SOC 사업중심 (도로, 항만, 공항, 발전소, 상하수처리시설 등)	· 제조업 · 산업지원서비스 · 관광(종합 휴양업)
투 자 자	내국인 중심	외국인 중심
지원내용	· 수익률 보장(최대 18%) · 운영수익보장(추정치의 90%) · 환 Risk 보장(90%) · 기부채납시 영세율 적용 · 매수 청구권 보장	· 토지 : 임대 · 매각(국공유지) · 조세감면 · 재정지원 - 단지외 기반시설 : 최대 50% - 단지내 공공시설 : 최대 50% · 7가지 개발 부담금 면제
공사추진	주로 분담이행방식(Consortium)	공동이행방식(JVC)
사업투자	BOT방식	토지 임대/개발

민족자본(民族資本) 식민지 · 반식민지 · 종속국 등 후진국가에서 자주적 · 민주적으로 발전한 여러가지 형태의 토착자본. 보통 외국자본 · 매판자본 또는 독점자본 등의

개념과 대립되어 사용되는데 외국자본에 대하여 자국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또한 객관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자본을 말한다.

민통선(民統線) 민간인 출입통제선의 약칭. 1954년 2월 3일 군사상 필요에 따라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20㎞의 거리를 동서로 잇는 민간인 출입통제선이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통선 북방에 대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밀레니엄버그(Millennium Bug) 밀레니엄 버그는 1천년을 일컫는 밀레니엄과 컴퓨터의 오류(에러)를 뜻하는 버그를 합성한 말이다. 또 Y2K는 밀레니엄 버그의 별칭으로 「Y」는 연도(Year)의 첫 글자이고 마지막 「K」는 1000을 뜻하는 킬로(Kilo)에서 비롯됐다. 최근에는 이 모든 것이 주로 컴퓨터의 인식오류에서 시작된다고 해 「컴퓨터 모라토리엄」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표현이야 어쨌든 2000년 연도표기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하드웨어의 기억용량을 줄이기 위해 연도의 마지막 두자리만 사용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관행으로 인해 2000년이면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의 혼란을 말한다. 예컨대 1998년을 98로 표기하는 종래의 방식대로 할 경우 2000년을 00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1900년으로도 혼용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출발한다.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내장된 반도체칩이 2000년을 1900년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온갖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산구축 초기인 60년대부터 프로그래머나 기업가들이 비용절감과 간편함을 위해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나 반도체 칩에 연도표시를 본래의 4자리가 아닌 2자리 수로 표시함으로써 야기됐다.



바이러스(Virus) 생물의 세포나 세균에 기생하여 숙주의 단백질 합성이나 에너지를 이용, 자기 증식을 하는 생물. 단, 모든 바이러스가 병원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동물 바이러스에 의한 병에는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홍역, 백일해, 천연두, 소아마비, 트라코마, 광견병, 뉴캐슬병(닭) 등이 있다.

바이오 산업(Bio 産業) 바이오테크놀러지 (biotechnology)를 기업화하려는 새로운 산업분야. 유전자 치환(置換)이나 세포융합이용의 대량배양, 효소를 사용하여 물질을 합성하는 바이오리엑터(bioreactor)등 생체기능 자체를 응용한 기술에 의해 자연에는 극히 미량밖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는 것으로 이미 당뇨병 특효약 인슐린,제암제(制癌劑)인터페론 등이 상업화되고 있다. 의약품 뿐만 아니라 화학·식품·화학섬유 등의 업종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품종개량, 식량생산등 농업관계에도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이 분야의 벤처 비지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바이트(Byte) 컴퓨터에서 하나의 문자나 숫자 등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다. 8개의 bit가 모여서 1byte를 이룬다.

바 코드(Bar Code) 상품의 포장지에 여러개의 검은 줄(bar)로 그 상품의 정체를 표시한 것으로 이 코드는 제조 또는 유통업체가 제품 포장지에 8~16개의 줄로 생산국·제조업체·상품종류·유통경로등을 인쇄해 놓음으로써 판매될 때 계산기에 설치된 스캐너(감지기)를 통과하면 즉시 판매량·금액 등 판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집계할 수 있음. 이때문에 상품의 판매시점 정보관리, 즉 POS(Point of Sales)와 재고관리가 용이함. 바코드 체계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EAN(유럽상품번호)코드와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UPC(통일상품코드)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나라는 '88년부터 EAN으로 부터 국별코드인 KAN (한국상품번호)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다.

바터무역(Barter貿易) 구상무역(求償貿易) 무역용어로 '물자의 수출과 수입을 하나의 교환방법으로 상호 결부시키는 무역방식' 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방법은 ①거래하는 양자가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back to back ②먼저 수입한 측이 그 대금을 외환은행에 적립하고, 후에 수입하는 측은 그 계정금액으로 결제에 충당하

는 에스크로(escrow) ③한쪽이 수입신용장을 발부하는데 대해 상대방은 일정기간 내에 수입한다는 보증서류를 발부하는 토머스·역토머스의 3가지 방식이 있다.

반납금(返納金) 지출상의 과오(過誤) 또는 정산(精算)상의 잉여(剩餘)를 이유로 자치단체의 금고에 반환하는 현금. 반납금은 현년도 세입에 편입됨을 원칙으로 하나 그 지출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출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불입할 수도 있다.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사유는 정당한 채주 이외의 자에 대한 지출 및 정당한 채무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와 전도자금, 격지급자금 등의 잔액 및 출납공무원이 행한 개산급, 선급금의 정산상 잉여금 등인 바 이러한 반납금의 귀속조치는 당해 지출관이 세입징수관으로서 행한다.

반덤핑법(Anti-Dumping Law) 외국제품이 부당한 가격으로 싸게 팔림으로써 국내 관련산업이 타격받는 것을 방지하는 미국의 법률. 그절차는 국내업자의 제소에 의하여 상무성이 덤핑 여부를 조사, 덤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서 피해가 많다고 판정되면 재무성이 고율의 덤핑관세를 부과한다.

반도체(半導體) 전기의 저항이 중간 정도인 물질로 모래에서 나오는 실리콘이 많이 이용됨. 칩 재료로 쓰인다.

반복민원(反復民願)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시정요구 등에 관한 고충민원서류 (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기관에 3회이상 거듭하여 제출하는 민원. 반복민원이 제기되면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부터 접수되는 동일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반송(返送)슬러지 활성오니법에 있어서 최종침전지에서 침강한 활성오니의 일부를 빼내어 다시 폭기조로 반송하는 오니 반송율은 부유물질이 높은 하수에서 25%정도, 낮은 하수에서 5~10%, 보통은 10~15%정도이다.

밤비바캣 산불발생시 헬기에 부착물을 달아 물등을 운반, 발화지점에 투하하여 불을 끄는 진화도구.

방류수면(放流水面) 처리수 또는 하수를 방류하는 하해(河海), 호소(湖沼)등의 총칭.

방류처분(放流處分) 처리수 또는 미처리수를 수역에 방류하여 처분하는 방법. 폐수의 방류처분은 수생동식물, 하류의 이수(利水)상황, 환경위생상에 미치는 제 영향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폐수가 하천에 유입하면 희석·혼합하면서 하

류(下流)하나 전반적으로 혼합하여 평균화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천의 수량은 갈수량(渴水量)에서 홍수량까지 수량변화가 있으므로 갈수량을 하천수량의 기준으로하여 폐수의 희석농도를 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사선가로망(放射線街路網) 도시중심부를 기점으로 변두리지역과 방사선으로 연결시키는 형태. 역사적으로 지배자를 위한 도시형태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더우기 오늘날과 같이 대량 자동차교통시대에는 교차점이 많아 비효율적인 가로망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사성물질(放射性物質) 방사능을 가진 물질. 인공 핵 폭발 외에 원자로,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유물질이나 용해성 고형물, 용존기체로서 폐액중에 섞여 배출된다. 방사성물질이 소화기나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섭취되면 장기내에 축적되어 신체에 장애를 일으킨다. 그 한도는 1주에 100밀리렘이다.

방사환상형(放射環狀型) 도로망이나 녹지계획을 함에 있어서 도심부와 외곽지의 종적인 연락은 방사상으로, 횡적인 연락은 환상형으로 구성하는 것. 이 형태는 그 도시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점이며 지형에 따라 도로가 자연히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재지구(防災地區) 「재해방재지구법」에 의하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구.

방진시설(防塵施設)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에서 정하는 것.

방호벽(防護壁) 철근콘크리트제 높이 1m정도의 벽형의 방호책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설치된 벽. 주로 교량등에 많이 설치된다.

방호시설(防護施設) 차량의 도로이탈을 방지하고 보행자, 구조물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로의 측방에 설치된 도로 부속시설의 총칭.

방호책(防護柵) 통행하는 차량이 차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치된 책(柵).여기에 주로 쓰이는 재료로는 레일·케이블·파이프를 들 수 있다.

방화벽(Firewall) 파이어월은 내부의 전산망을 인터넷 등 외부망과 연결하거나, 기업내 사설망을 구축할 경우 외부 사용자 도는 기업간 사설망의 전자도청으로부터 내부의 중요한 기밀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하는 전자보안 시스템이다. 파이

어월이 없는 환경에서 네트워크 보안은 호스트시스템의 보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가 일정하게 역할을 분담한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커지면 보안통제가 어려워지며 잘못된 구성과 부적절한 패스워드 등이 원인이 되어 네트워크 보안이 허물어지게 된다. 따라서 보안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접근을 통제하는 파이어월(방화벽) 설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방화지구(防火地區) 도시의 집단적 방화계획상 고도의 방화규제를 받는 지구. 시장, 노선 상가지구 등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특수 방화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기가스(排氣GAS) 연소 혹은 각종 화학반응의 결과 발생되어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가스, 배기가스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통풍로(duct) 배기가스로 나눌 수 있다.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자동차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납 화합물,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태 물질을 자동차 배기가스라 한다. 또 통풍로 배기가스는 연료, 그밖의 물질 연소 및 화학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스 중에서 필요없는 가스로 통풍로를 통해 대기중에 배출되는 가스를 말한다.

배수(配水) 정수(淨水)를 급수 구역내의 모든 수요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급수 구역내의 공도(公道)하에 부설된 배수관에 필요한 수량을 보내는 것.

배수(排水)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수로로 유출시키는 것. 지표수 또는 지하수인가에 따라 지상배수와 지하배수로 나누며, 배수의 수단에 의하여 자연배수와 기계배수로 분류되고 있다. 또 장마비나 호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산수(山水)를 배제할 때와 상시 홍수를 배제할 때도 있다.

배수관(排水管) 배수(排水)를 위하여 땅속에 묻은 관. 도관(陶管)및 철근콘크리트관을 사용한다. 유공관(有孔管)과 도관은 주위의 흙속의 침투수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

배수관(配水管) 상수도에서 배수지,배수탑 또는 배수펌프장을 시점으로 하여 물을 배수구역 또는 급수구역에 공급하기 위하여 부설한 관.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공도(公道)하에 부설한다. 배수본관과 이로부터 분기되는 배수지관(配水支管)이 있고 지관(支管)은 다시 많은 급수관으로 갈라진다. 배수관의 배치방식에는 망목식(網目式 - 環上)과 수지상(樹枝狀 - 樹狀)이 있고, 재료상으로는 주철관·강관·석면시멘트관·흄관·염화비닐관 등으로 나누어 진다.

배수(排水)펌프장 유입구역내의 오수를 펌프장이나 하수처리장에 보내든가 우수를

부근의 하천에 직접 방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펌프장.

배출부과금제도(排出賦課金制度)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초과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개선명령 등의 실효성)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고 그간 수차례 제도가 개선되어 현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액부과하는 기준부과금과 기준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서(白書) 정부가 시정(施政)의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영국정부가 외교정책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의 표지를 흰색으로 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근래에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관계의 보고서를 경제백서(經濟白書)라 부르기도 한다.

뱅크 론(Bank Loan) 은행간의 차관. 보통의 차관은 정부나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정부나 기업에 대해 자금을 대출하지만, 뱅크론은 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은행에 대해 대출한다. 통상적인 대출과 달리 은행이 은행에 대해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많으며 개별 안건의 소액차관이 아니라 한번에 상당한 금액을 대출한다.

버블(Bubble)현상 투기적 버블현상(speculative bubble)이라고도 한다. 실체가 없는데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유발하여 가격은 더한층 상승일로를 치닫게 되지만 이윽고 거품(bubble)이 터지는 것처럼 급격히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 외국환 거래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고 주식 등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거품이 사라진 뒤에는 공황상태가 출현한다. 1984년~85년의 겨울에 미국의 금리는 대폭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시세가 급템포로 상승한 사실을 가리켜 국제결제은행의 연보(年報)는 투기적 버블현상이라고 불렀다.

버스 우선차선(Bus 優先車線) 노선버스 등이 타차량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선. 버스 우선통행대라고도 한다.

버스 전용차선(Bus 專用車線) 노선버스 등이 독점하여 사용하는 차선. 버스 전용통행대라고도 한다. 노선버스 이외의 자동차는 당해 차선을 통행해서는 안된다.

번안(飜案) → 수정안

벌쳐캐피탈(Vulture Capital) 부실화된 금융 자산 또는 부동산을 저가로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투자기금의 한 형태. 동 펀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지만 잠재적인 수익이 크다는 이점이 있음. 따라서 동 펀드의 운영 성과는 낮은 가치의 금융자산을 구입하여 수익성 있는 투자재원으로 이전시키는 펀드 매니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년 3월 26일 "벌쳐캐피탈 설립을 허용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달 중순 시행한다."고 밝힘. 금감위에 의하면 벌쳐캐피탈은 주식을 발행해 일반 투자가에게 매각하고, 그 돈을 운용.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일종의 뮤추얼 펀드 형태로서, 외국자본의 참여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함.

벌크시멘트(Bulk Cement) 포장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포대에 담지 않고 그대로 출하하는 시멘트. 수송은 특수한 시멘트 전용 화차 또는 트럭을 사용한다.

벌킹(Bulking) ①바위와 흙을 파거나 뒤섞음으로서 체적이 증가하는 현상 ②활성슬러지가 변조를 띄워서 그 용적을 현저하게 증대하고 밀도가 적은 플로크를 생성하여 침전하기 어려운 상태. 벌킹의 요인은 현재 완전히 규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활성 슬러지의 슬러지 용적지수는 50~100인데 벌킹을 일으켰을 때는 200또는 그 이상의 수치가 되는 일이 있다.

법률부조(法律扶助) 법률지식이나 소송 비용이 없어 억울한 손해를 당하고도 권리의 신장 및 옹호를 받기 곤란한 자를 돕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법률구조법(87년 7월 1일 시행)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부조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법인(法人)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법인은 사회거래의 필요상 거래의 주체가 되는 단체에 법상 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 다루는 법률적 기술이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특허주의·허가주의·준칙주의·자유설립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회사에 관하여는 준칙주의, 비영리법인에 관하여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활동은 그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바 대표기관이 그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한 행위의 효력은 그 법인에 귀속한다.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 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다.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 법인의 소득을 과세 객체로하여 부과하는 내국세의 일종.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 국내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비영리 국내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경우도 청산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이 있다.

법정관리(法定管理)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아졌을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법정관리 승인이 합당한가를 심의한다.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 재항고 기간중에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해 시간벌기 작전으로 파산위기를 넘기는데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법정관리가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은행에서 직원을 직접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

법정대리(法定代理) 공법상으로는 법정사실의 발생에 따라 피대리행정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그의 보조기관이나 다른 행정관청이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 대리인의 결정방법에 따라 보충대리와 지정대리로 구분되나 협의로는 보충대리를 뜻한다. 대리권은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며 대리권은 피대리행정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법정대리권은 대리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되며 피대리행정 관청은 대리인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베드 타운(Bed Town)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다. 즉 도심은 관리기능과 유통기능을 지향하고 생산기능과 주거는 도시의 주변부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도시주변에 개발된 주택도시는 통근자에 있어서 잠자는 장소밖에 되지 않으므로 흔히 베드 타운이라 한다. 베드 타운은 새로운 교통문제를 유발한다.

베세토 벨트(BESETO velt) 베세토벨트란 베이징, 서울, 도쿄를 연결하는 동북아 중심 도시 연결축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수도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묶는 초국경 경제권역으로 21세기에는 NAFTA, EU와 함께 세계 경제질서를 삼분하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벤처기업 ➡ p138 하단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 모험자본이라고 번역한다.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 어 장래성은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비지니스에 대해 주식취득 등의 형식으로 투자를 실시하는 기업 혹은 이러한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지칭. 대개 당해 기업이 성장한 후에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본이익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한국기술개발·한국개발투자·한국 기술진흥·한국기술금융 등 4개의 벤처 캐피털사가 설립되어 있다. 이밖에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도 부분적인 벤처 캐피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벤처 펀드(Venture Fund) 벤처 비지니스(모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투자신탁. 지금까지 소규모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4개의 벤처 캐피털사를 통해 이루어져 주로 은행과 같은 대출성격을 띠어 왔다. 벤처 펀드는 투자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 모은 돈으로 직접 모험기업의 주식에 투자한다. 외국과 다른 점은 국내 투자신탁회사가 모험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것. 미·일의 벤처 펀드는 주식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에 한해 투자한다.

벤처기업(企業) venture business

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화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창조적인 기술집약형 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은 High Technology Business, New Technology Based Firm, Risky Business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아직 벤처기업에 대한 명확히 확립된 개념은 없으나 나라별로 신사업자, 기술집약형 기업 또는 특정 중소기업자라는 표현으로 일반 중소기업과 지원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소기업투자법에 벤처기업을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역인 벤처 비즈니스 외에 의역인 연구개발형 기업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 등이 쓰이고 있으며 직역에 가까운 위험기업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러한 벤처 비즈니스의 주된 특성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 ②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기대이익 예상 ③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려는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도. 벤처기업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업을 뜻하지만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여러 형태의 벤처비즈니스가 발생하고 있다.

벤치마킹 ➡ p139 하단

벨로드롬(Velodrome) 바닥을 아스팔트나 특수목재로 포장한 트랙을 비탈지게 하여 코너를 돌 때 원심력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 사이클 전용경기장. 옥외경기장과 옥내경기장이 있다.

변복조기(CODEC;Coder Decoder) 음성 또는 영상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coder와 디지털 신호를 역으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하는 decoder의 합성어로서 변복조기 도는 부호·복호기를 말한다.

벤치마킹(Bench Marking)

벤치마킹은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으로 삼아 자기 기업과의 성과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경영기법이다. 즉 뛰어난 상대에게서 배울 것을 찾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벤치마킹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말에 비유되기도 한다. 벤치마킹은 원래 토목분야에서 사용되던 말이었다. 강물 등의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준점을 벤치마크(benchmark)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세우거나 활용하는 일을 벤치마킹이라고 불렀다. 그 후 컴퓨터 분야에서 각 분야의 성능을 비교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기업경영에 도입되었다. 경영분야에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82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열린 제록스사의 교육 및 조직개발 전문가 모임이었다. 제록스사는 일본의 캐논 등의 관련 회사에 뒤지는 이유를 단순히 복사기의 부품 문제뿐 아니라 디자인, 생산, 주문처리의 모든 면에서 분석해, 일본식 작업 방식을 배우는 벤치마킹을 시도, 벤치마킹의 꽃을 피웠다. 그리고 1989년 로버트 캠프박사의 「벤치마킹」이란 저서에서는 동종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의 경영기법도 비교분석하는 벤치마킹을 실시해 벤치마킹의 범위를 확대했다.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한 경영혁신의 추진은 일반적으로 ①벤치마킹 적용분야의 선정 ②벤치마킹 상대의 결정 ③정보수집 ④성과와 차이의 확인 및 분석 ⑤벤치마킹 결과의 전파 및 회사내 공감대 형성 ⑥혁신계획의 수립 ⑦실행 및 평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벤치마킹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의 적용분야, 벤치마킹 상대, 성과측정지표, 운영프로세스라는 벤치마킹의 4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변속구간(變速區間) 본선 교통과 합류하기 전의 가속 혹은 본선 교통에서 분리된 후의 감속이 될 수 있도록 통과차선에 접하여 설치되는 차도.

변형시간근로제(變形時間勤勞制)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바쁠 때는 법정시간이상으로 늘리고 한가할 때는 그 이하로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이하면 초과근로수당을 면제토록 하는 근로제도. 업종과 회사에 따라 업무가 밀릴 때와 한가한 때가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 효율성을 높이자는게 이 제도의 취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됐다가 1987년 근로기준법 개정때 없어졌다. 현재 하루에 8시간, 1주일 4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소 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초과임금률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1주에 44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변형시간근로제 하에서는 몇 달의 평균을 내어 주당근무시간이 44시간을 넘지 않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변형시간근로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에게는 손해이고 기업에는 이익이 된다.

별정직 공무원(別定職 公務員) 전문위원·상임위원·비서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것은 국회 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부산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 과학기술심의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병행수입제(竝行輸入制, parallel import) ➡ p141 하단

보고통제(報告統制) 각급 행정기관이 소관업무의 집행·소속기관의 지휘감독·기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함에 있어서 합리성·경제성 및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보고관계 업무의 사전심사·조정·승인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실시되는 보고의 신빙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 보고행정의 간소화를 기하여 인력·물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단. 보고의 종류는 ①지정보고 (정기보고) ②비지정 보고 ③1회 보고로 나눈다. 정기보고의 목록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

보도(報道) 대중매체인 신문·잡지·라디오·TV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홍보나 공보보다는 좁은 의미로서, 한마디로 대언론관계 활동을 말한다.

보류지(保留地)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칙·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에서의 정한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

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공사후의 일정한 토지를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정처분하는 토지.

보복관세(報復關稅)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해 부가하는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보복관세는 대개 자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관세법」 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는 보복관세란 용어는 없고, 보조금 상계관계와 긴급수입제한(safe guard)조치 두가지가 있다.

보세가공무역(保稅加工貿易) 가공무역 방식의 하나로 외국의 원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이 유보된 채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무역방식. 각기 적성이 다른 각 국가간에 양국산업의 새로운 전개를 위한 견지에서 국가협정을 맺고 충분한 자원·유리한 노동력 또는 특수한 환경이나 조건 등을 이용하여 상호간에 경제 공영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이 무역방식은 일정한 보세구역을 설치한 후 이 구역에서 외국물품이 있는 동안은 관세 등의 부과를 유예시키고 이 지역에서 보세화물을 가공하여

병행수입제(竝行輸入制, parallel import)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외에 다른 유통경로로 같은 상표의 정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과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9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따라서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을 보면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자본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 및 영업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가격파괴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과도한 유통마진을 축소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독점계약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수입업체가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수입시에 관세등의 부과가 유예되는 점이 일반가공무역과 다르다. 보세가공은 특히 노동력은 풍부하나 원자재나 중간 생산재의 생산기술이 저조한 경우 이를 수입가공함으로써 가공임(加工賃)에 해당하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무역형태이다.

보안림(保安林) 산림청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는 산림. 보안림 제도는 수원의 함유·재해방지·생활환경보존·휴양지 제공 등 공공의 이익 보존을 목적으로 한것으로 보안림의 구역 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①토사의 유출·붕괴 및 비사의 방비 ②수해·풍해·조해·또는 설해 등의 방비 ③수원의 함양 ④어류의 유치·증식 ⑤항해·항공목표의 보존 ⑥공중의 보건 ⑦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⑧낙석·화재의 방비 등이다. 그리고, 공익상 필요하고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보육시설(保育施設)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보전(保全) 2차대전후 전후도시를 재건하려고 할 때, 그와 대립되어 제기된 용어. 역사적 유적이나 천연자원을 원상태로 두기 위함이다. 여기서 보전은 개발하여 이용하되 인위적 파괴를 최소화함을 뜻한다.

보정적 재정정책(補正的 財政政策) 경기변동을 재정상의 적자 또는 흑자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재정정책. 근대정책의 기능은 '인플레' 나 '디플레' 를 재정지출의 억제 내지 증대를 통하여 수속하는 외에 재정상의 수입과 지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경기를 유도하는데 까지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경기 대책적 재정정책을 보정적 재정정책이라 한다.

보조공간(補助空間) 도시의 기능공간 중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공간. 즉 도로의 교통통신시설, 상·하수도, 오물등의 공급처리(시설), 공원·녹지등에 쓰이는 공간. 이 공간을 소비공간이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활동하는 생산공간에 대한 반대적 뜻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보조기관(補助機關) 자기 스스로 단체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할 권한은 없고, 다만 행정관청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

보존(保存) 보존이란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유지시키고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것. 황야(wilderness area)·원생자연의 보존·천연기념물 및 사적문화재의 보존 등의 예에서도 그 뜻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유사한 개념으로서 보전(conservation)이란 개발에의 대응적 의미로 사용되며 원칙적으로 보존을 기조로 삼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계곡에 댐을 건설하여 상수도와 동력을 얻는 것과 같이 자연자원의 적극적 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고려한 합목적적 행위의 개념이다.

보존재개발(保存再開發) 향후 노후·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사전에 노후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는 소극적 재개발. 적용대상으로는 역사경관의 보전, 문화적으로 보전할 지역이다. 건물의 수선 및 관리를 강화하고, 기반시설정비, 건물경관의 무단변경규제 등의 조치수단이 따른다. 노후 불량화를 미연에 예방하며 막대한 자원의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다.

보존재산(保存財産) 국유재산법(제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존하는 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함(법 20조)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법24조)

보존지구(保存地區)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때 지정하는 지구. 여기서 보존이란 원형보존이란 뜻으로 개량변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구역 안에서는「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 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 무역수지의 개선이나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 방법으로는 관세인상·수입할당제·수입과징금제·수입담보금제등이 있다. 수입제한 자체는 개발도상국이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경우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복수여권(復數旅券) 일반적으로 5년이내 회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발급일자을 기준하여 회수에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하나, 총 유효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는 여권임.

복식부기(複式簿記) 복식부기는 자본운용 과정의 집약적 성과인 손익을 자산측과 자본측의 양면계산을 하고 이것을 대조하여 자기 검산을 할 수 있는 부기형태. 복식부기의 본질은 복식기업이 계정 및 계정좌와 계산대상이 완전한 대응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 조건으로 하여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계정기입가치액은 총액이나 각 계정잔액의 합계에 있어서나 반드시 대차균형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계산의 정확성은 부기 자체가 지니는 구조로부터 유도되고 자동검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복식부기의 자기완료적 계산기구와 자검기능이라 한다.

복지(福祉) 복지(welfare)의 어원은 영어의 well과 fare의 복합어로서 '잘 지내는 상태' 로서 정적인 것이 아닌 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한자에서는 물질적인 측면의 복(福)과 정식적 측면의 지(祉)를 합한 것으로 '참 삶' 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란 말은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후생(厚生)이라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구휼·진휼·혜휼·제민→후생→복지의 순으로 사용하여 왔다.

복지국가(福祉國家)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힘을 모아 국민 누구나가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사회 즉 사회보장제도와 완전고용을 수반하는 혼합경제의 경제제도 및 민주주의의 장치제도를 지니는 국가.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서는 개인의 일상적 생활보장과 위험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와 평등을 포함한 복지상태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수준과 민간조직 수준에서 복지증진에 최우선적으로 정책의 목표를 지향하고 그의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복지부동(伏地不動)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93년 2월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새로운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사정바람이 불자 책임질 일을 회피하거나 사소한 일조차 꺼리며 일손을 놓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행태를 빗대어 일컫는 말이다. 93년 하반기 이후 유행어로 사회 전반에 널리 유포되어 쓰이고 있다. 복지부동에서 파생된 말로 복지안동(伏地眼動)이 있다. 땅에 업드려 눈알만 굴리고 있다는 뜻으로 역시 윗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복합관세(複合關稅) 종가세(從價稅)와 종량세(從量稅)를 서로 합하거나 빼는 식으로 종합한 관세. 수입가격이 내렸을 경우 관세부담을 무겁게 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높을 때에는 관세부담을 가볍게 하여 수요업계에의 영향을 경감한다.

복합민원(複合民願) 하나의 민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 또는 여러 부서로부터 허가·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처리되는 민원을 의미한다.

복합사회(複合社會) 일반적인 용어로는 다민족이 복합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 그러나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단순(또는 초기) 생산사회와 기능면에서 상대되는 말이다. 복합사회의 특성은 산업의 고도화와 사회구조의 다양성이다 (예 : 가치체계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직업의 다양성) 최근 미국의J.K Friedman교수의 저서 '선택의 자유 (Free to Choose)와 J. Galbraith교수의 '불확실성의 시대 (Uncertainty Age)' 나 '풍요사회(The Affluent Society)' 등에서 분명하게 거론 하고 있다. 복합사회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주의가 1960년대 미국의 계획가에 의하여 제창되었으며 P.Davidoff 교수의 Adovocacy Planning and Pluralism)등이 대표적인 논문이다.

복합영농(複合營農) 미곡중심의 단순영농에 대해 벼농사와 함께 참깨·땅콩 등 특용작물과 시설채소·과수·축산 등을 도입한 영농. 우리나라 농업은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쌀중심의 가족노동적 단순경영이 대부분이어서 전체 농가로 볼 때 쌀에 의한 수입이 전체 농업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쌀·보리 중심의 영농방식으로는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복합영농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복합영농은 위험부담을 분산시켜 경영의 안정을 기하고 경지이용률을 높이며 여러개의 작목도입으로 연간 노동일수를 늘려 자가노동 보수를 더욱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봉건도시(封建都市) 정치·경제적 의미에서 두가지로 쓰인다. 첫째, 지방영주들이 그 지방의 통치중심지에 성곽을 쌓고 권력층의 생활근거지로 이루어진 정치적으로 독립된 도시를 뜻한다. 둘째는 통일된 국가안에서 도시산업의 형태가 전근대적 구상을 벗어나지 못한 도시경제체제의 도시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附加價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함으로서 생산물에 새로이 부가한 가치. 즉, 기업이 새로 창조한 가치.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를 구성하는 전부의 가치중에서 외부에서 조달한 기존의 가치인 자료·구입부품·구입용역 등의 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생산물의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존가치와 생산과정에서 새로 창조된 가치의 부가부분인 부가가치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산물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외부에서 받아들인 재료비·구입부품비·연료비·소모품비 등이나 타기업으로 부터 구입하여 소비한 용역가치인 외주가공비·운반비·통신비 등은 기존가치의 소비분이므로 이것은 기업의 부가가치를 구성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마진' 에 대해 과하는 세금. 즉 영업세나 물품세처럼 기업이 판매한 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 에다 부가가치 세율을 곱한 것이 부가가치 세액이다. EU(유럽공동체) 각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77년부터 「부가가치세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부가가치통신망 → VAN

부관(附款) 법률행위로부터 보통 발생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표의자가 특별히 붙인 제한. 조건 및 기한이 그 주요한 것이지만, 그 밖에도 증여나 유증에 부가되는 부담도 이에 해당한다. 부관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며 전체에 대하여 부속적의 지위에 서지만 별개의 부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붙여지는 수가 있다. 그 부관에는 조건·기한·부담·취소권의 유보·법률 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그 행정행위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경우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붙일수 있고, 그 부관은 그 행정행위의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붙일 때에만 적법하다. 무효인 부관이 붙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없는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나, 그 부관이 중대하여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 행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그 행정행위 자체도 무효가 된다.

부담금(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납부 의무. 부담금에는 당해사업의 특혜자에게 그 수익의 한계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금(하천법),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 경영자에게 공익사업의 유지·수선·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손상자 부담금(도로법), 특정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공사를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 되는 행위의 비용부담자에 대하여 당해 특정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금(하천법)이 있다.

부당(不當) 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것. 예를들면 어떠한 행정처분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법규위반까지는 안되지만 제도창설의 목적이나 취지로 보아 타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대입찰제(附帶入札制)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 하도급 내용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30%, 5억원이상 공사는 전체공사 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금액만 맞추면 돼 형식적으로 운용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 1993년 8월부터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는 아예 입찰서에 하도급할 부분과 업체·금액 등을 기재토록 의무화시켰다. 중도에 하도급 업체나 금액을 변경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게 했다. 그러나 입찰 때부터 하도급 금액을 적게 기재하는 '덤핑전가'가 우려돼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부도방지협약(不渡防止協約) ➡ p148 하단

부동산신탁(不動産信託)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에다 신탁회사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 일반 금융기관이 돈(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 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동산실명제(不動産實名制) 1995년 7월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매매 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즉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는 등기를 남의 명의로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명의신탁의 금지를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명의신탁이 채무면탈이나 조세포탈, 각종 법령상의 규제회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어 그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1995년 7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 명의신탁은 금지·처벌되고(과징금 : 부동산 가액의 30%+이행강제금+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된다.

부동산투자신탁(REITS·릿츠) 릿츠는 기본적으로 뮤추얼펀드와 매우 유사하나 운영회사나 투자대상 주주 구성요건 등이 다름.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증권이나 채권에 분산 투자되고 있지만 릿츠는 부동산이나 주택 저당증권(MBS)에 투자하게 됨. 또 미국의 경우 릿츠는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 특히 뮤추얼 펀드나 연·기금 은행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대거 투자하고 있는게 특징. 반면 뮤추얼펀드는 국내의 경우, 증권회사나 투신사에서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름. 아울러 뮤추얼펀드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없고 하한만 정해져 있지만 릿츠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게 통례. 특히 국내의 경우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할 경우 또 다른 투기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도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부메랑(Boomerang)효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경제원조나 자본투자 결과 현지생산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그 생산제품이 현지시장 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선진국에 역수출됨으로써 선진국의 당해산업과 경합하는것. 부메랑(boomerang)은

부도방지협약(不渡防止協約)

본래 이름은 '부실 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 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 1997년 한보 사태 이후 특정기업에 불리한 루머가 돌면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이 대출금을 회수하여 진짜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1997년 4월 21일 금융기관들이 만든 협약이다. 일반적으로 부도방지협약 또는 부도유예협약이라 불린다. 정부는 당초 약칭을 방지협약으로 했다가 금융기관들이 대상기업에 대해 부도를 막아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유예협약으로 바꿨지만 방지협약이라는 말이 더욱 널리 쓰이고 있다. 부도방지협약이라 해도 적용대상기업의 어음이 교환회부될 경우 일반 부도처리를 한다. 다만 당좌거래 정지, 불량거래처 등록 등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적용대상 기업은 2개월동안 채권상환 부담이 유예되므로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해도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기관협의회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유예기간 동안 금융기관들이 대상 기업의 회생여부를 정확히 분석해 보자는 취지이다. 적용 대상기업은 은행여신 2,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며, 주식 또는 경영권 포기각서, 임금·인원 감축에 관한 노조 동의서, 자금관리단 파견 동의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협약은 제2금융권이 마구잡이로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부실기업체가 자금난에 빠지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오히려 다른 기업의 자금난을 압박, 부도를 촉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즉 부도방지협약이 발동되는 업체가 발생한 어음은 당분간 자금회수 압력과 대출연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용한 것으로 던지면 다시 되돌아오는 사냥도구이다. 2차대전후 서구 각국의 자본투자·기술원조를 받아 발전한 일본의 중화학 공업부문이 현재는 그 제품을 서구 각국에 역수출, 그 나라에 위협을 주고 있는 현상이 부메랑현상이다. 일본은 현재 한국에 대해 첨단기술 등의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는 부메랑효과를 경계하기 때문인 것이다.

부분감사(部分監査) 피 감사기관의 업무중 일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사와 기획감사를 포함한다.

부생식물(腐生植物) 동식물의 사체나 배출물 등의 유기물을 영양원으로 하여 생활하는 식물. 사물(死物)기생식물이라고도 한다. 세균이나 균류에 많지만, 혐기성 분해나 호기성 분해는 이들 부생식물의 활동의 결과로서 고사체 속의 유기물을 무기화한다.

부영양화(富營養化, Eutrophication) 호수나 연근해 등에 질소, 인 등의 영양분이 증가 하는 것. 원래 빈영양호(貧營養湖)였던 호수에 영양물이 유입됨에 따라 수초·조류(藻類)등이 증가하여 물이 탁해지고 호수바닥에 퇴적물이 쌓임에 따라 부영양호로 바뀌는 것을 부영양화라 한다. 자연현상으로서의 부영양화는 수천년이 걸리지만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등의 유입이 심하면 20~30년 정도의 기간에도 부영양화가 될 수 있다. 부영양화가 진행되면 호수 근처에서는 이 물을 상수원(上水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진해만·인천 앞바다 등에서도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赤潮)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유물질(浮遊物質) 물속에 부유하고 있는 미생물·실트·모래 등의 입자크기가 0.1미크론(1/10,000mm) 이상의 유기 및 무기물질. 크기가 5미크론 이상인 것은 잘 가라앉으므로 침전가능(settleable) 부유물질이라고 하며, 0.1~5미크론 범위의 것은 분산(dispersed)상태를 유지하므로 응집에 의해 침전시킬 수 있다.

부유분진(浮遊粉塵) 대기중에 떠다니는 고체나 액체의 입자상 물질. 거의 낙하하지 않고 부유상태에서 기류에 따라 움직이며, 미세하기 때문에 호흡시 폐에 들어가 인체에 해롭다.

부의, 상정 부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여 놓는다는 의미로서 부의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리고 상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심사)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뜻하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을 상정합니다."로 선포한

다. (지방의회)

부작위(不作爲)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부재자투표(不在者投票) 선거의 당일 투표소에 나가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것을 인정한 제도.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는 투표당일 선거인 자신이 투표소에 나가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가 ①선거구 밖에 장기 여행 중이거나 ②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③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 작성처에 신고하고 투표일전에 투표하여 우송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북마크(Bookmark) 책을 읽다가 중요한 곳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것과 같은 기능으로 인터넷을 방문할 때 자신이 방문했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호스트 및 사이트를 표시해 둔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특별히 기억하고 싶거나 자주 찾아가는 웨사이트를 표시해 두었다가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매번 그곳의 주소(도메인이름)을 입력하는 번거러움없이 단순히 클릭하는 것만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방대한 백과사전과 같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갈피인 셈이다.

분담금(分擔金) 분담금이란「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변(支辯)하기 위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공과금. 따라서 분담금은 조세와 사용료·수수료의 중간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수익자부담금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담금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에는 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원부담을 요하는 반면 그 지역의 일부 주민에게는 지가의 상승등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이 적지 않다. 주민 상호간 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그 지역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하여 분담금제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는데,이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分讓權 轉買)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미등기 전매가 '93년 8월부터 허용.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언제라도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주택전매도 기간 제한규정(국민주택은 입주후 6개월, 민영주택은 입주후 60일)이 폐

지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전매 허용요건은 분양받은 계약자가 실직이나 임금삭감·소득감소·임금체불·자녀진학·질병치료 등으로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가 어렵거나 생계유지, 채무상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분임출납원(分任出納員) 출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임출납원의 사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분임출납원을 임명할수 있다. 분장방법은 주임출납원의 수입·보관·지출사무 전반에 걸쳐 일정 한계를 그어 일부를 분장케 할 수도 있고 수입 또는 지출사무만을 분업적으로 분장시킬 수 있다. 도의 분임경리관은 전자의 방법이고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후자의 방법이다. 분임출납원제도의 필요성은 당해관서의 분청이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거나 주임출납원의 사무가 복잡하고 방대할 때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분임출납원의 현금 출납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고 그 사무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는 각각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불공정거래행위(不公正去來行爲) 현실의 경제사회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자본주의 경제사회는 현실적으로 본래의 자본주의 정신을 왜곡한 자유방임적 이윤추구 행위 또는 자유경쟁 과정중 자본이 집중된 결과 나타나는 거래주체간의 경제력 차이등으로 독과점 및 카르텔 규제 등 시장지배력 형성 방지만으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자유경쟁 확보를 위해서 각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규제하는 제도로 상표·상호제도의 확립,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등이 출현하게 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①가격과 품질의 바람직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 ②거래주체가 자주적인 판단하에 거래조건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 ③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여 시장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억제하는 것(독점 및 카르텔 금지의 보완)등이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일반지정으로 고시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①거래의 부당한 거절 ②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 ③집단적 배척 및 차별적 취급 ④차별대가(對價) ⑤부당염가 및 부당고가 매점 ⑥부당한 고객유인 ⑦부당표시 ⑧부당한 거래강제 ⑨우월한 지위 남용 ⑩부당배타조건부 거래 ⑪부당구속조건부 거래 ⑫허위과장광고 및 기만행위 등을, 특수지정의 대상으로 는 ①경품류 제공 ②유통업계의 할인 특별판매행위 ③하도급거래 등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불균형성장이론(不均衡成長理論) 허쉬먼(Hirschman, A.O) 등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경제발전이란 어떠한 선도산업의 발전이 타산업에 연쇄반응적인 효과를 미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선도산업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 그러나 불균형성장론에 의한 경제개발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어느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그리 쉽지 않은 데 있다.

불량주거지(不良住居地) 슬럼(slum), 노후화(deteriorated)되어 있거나 최저수준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본설비가 갖추지 못한 건물 또는 생활환경지구, 또 이와는 무관하게 조잡하고, 비위생적인 거주상태.

불량지구(不良地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과적으로 도시의 한 지구 또는 지역이 건전한 시민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불량화된 지구. 불량지구는 우선 주택의 노후화와 건물의 불량으로 주민생활에 부적합한 곳을 뜻하며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이 도시병(우범지대)의 발생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 도시 토지자원의 이용차원에서 볼 때 불량지구는 가장 비효율적인 이용을 하게 되므로 많은 도시들이 서둘러 재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불연성쓰레기 일반폐기물 중에 빈병, 빈깡통, 도자기 등을 통상 불연쓰레기라고 부르고 있다. 페플라스틱류와 같은 가연성인 것도 소각하면 염화수소 등의 유해가스를 발생하며, 고은으로 되어 지나면서 소각로의 노벽을 침해하는 것을 불연쓰레기로 분리수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수분이 많아, 소각에 보조연료가 필요하게 되는 쓰레기를 불연쓰레기에 분류하는 일도 있다. 따라서 가연, 불연쓰레기의 분류는 소각시설의 설비특성에 따라 주어지는 특성일 수 도 있다.

불쾌지수(不快指數) 기온이나 습도·풍속·일사등이 인체에 주는 쾌·불쾌의 정도를 수량화한 지수. 주로 기온과 습도만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 식은(기온+습구온도)×0.72+40.6으로 산출한다. 지수 70대는 상쾌함을 느끼고, 80이상이면 불쾌, 86이상이면 참기 어려운 불쾌를 느낀다. 미국의 보그에 의해 고안되고 발달된 것이다.

브라우저(Browser) 브라우저는 인터넷에서 웹을 항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web browser라고도 하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 브라우저에는 Explorer, mosaic, Netscape, lynx 등이 있다. Browser는 정보검색의 한가지 방법인 browsing(브라우징)을 제공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예를들면 CD-ROM 등과 같이 대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서는 CD-ROM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을 간략하게 빨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를 브라우저라고 한다.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 아이디어 창출방법의 하나. 한 가지 문제를 집단적으로 토의해 제각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온다는 것. 브레인 스토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①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으며 ②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③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서로 내놓아야 한다.

블루 라운드(Blue Round) 노동라운드.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협상으로, 1994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서 수출되는 상품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외교를 적극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노동부에서만 운영해온 블루 라운드 실무연구반을 범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 → ILO

블록경제(Bloc Economy) 몇 개의 국민경제를 하나의 블록(지역)으로 통합. 다른지역에 대해 봉쇄적인 무역정책을 취하는 것. 이는 광역경제와 같은 뜻으로 쓰이며, 그 본질은 자본주의의 판매시장, 원료·식료시장으로서의 식민지나 반식민지를 필요로 하고 그의 배타적 지배를 강화하자는 데 있다. 이 말은 1932년 오타와에서 열린 영국제국경제회의에서 세계공황후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각국간의 격렬한 시장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과 그 속령(屬領)과의 사이에 특혜 관계가 설정되면서 널리 사용되었다. 블록경제로는 영국블록, 범(汎)미국블록, 프랑스블록 등이 있다.

블루벨트(Blue Belt) 정부가 최근 한반도 연안의 무절제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 검토중인 '해안개발 보호지역' 으로, 육지의 그린벨트와 대칭되는 개념.

블루칩 (Blue Chips) 주식시장에서 대형 우량주를 통틀어 가리키는 용어. 미국주식시장에서 GM, IBM, AT&T 주식과 같이 재무내용이 건실하고 경기변동에 강한 대형 우량주를 말하는 것으로 포커게임에 사용되는 백, 적, 청색 칩 가운데 청색이 가장 높은 것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황소품평회를 할 때 우량등급으로 판정된 황소에게 파란천을 들러주는 관습이 있는데 황소(BULL)가 미국의 증권 중심가 월스트리트에서 강세장을 상징하는 심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을 대표하는 초우량기업 주식들을 말한다. 블루칩의 대부분은 자본금 규모가 크며,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면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로 구성된다. 때문에 블루칩은 외국인투자가 및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특히 선호하는 종목군으로 알려져 있다. 우량주의 경우 자본금이 대체로 커 투자수익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국 증권계에서는 소형주이면서 성장성이 높아 투자수익 면에서 매력적인 주식을 '글래머 주식' 이라고 한다. 우량주라는 안정성 개념에 소형주의 수익성 개념이 겸비된 전천후 주식이다.

비(非)메모리 반도체(半導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D램)와는 달리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반도체. 컴퓨터 주기억장치(CPU)처럼 특수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회로설계기술을 필요로 한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능이 단순한 반면 수요가 많아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대량생산방식이 가능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소량이지만 고부가가치형 기술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보다 적은 투자로 더욱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일본, 미국업체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가전기기 및 컴퓨터의 멀티미디어화 추세에 따라 이에 필요한 화면처리나 전송을 위해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386급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1996년 11월 삼성전자의 알파칩 시제품 개발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비공식적 조직(非公式的組織) 어떤 경영조직 내부에 잠재하는 것으로 심리적·감정적인 면의 공통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결합되는 조직. 경영조직의 목표와는 다른 규범력을 가지고 조직 구성원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경영목표에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소득(非課稅所得) 본래는 과세소득이면서 정책목적상 과세권이 포기되어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법인세법」에서의 비과세소득은 국민저축조합의 저축이자 및 공익신탁의 신탁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에서의 비과세소득은 이자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및 양도소득 중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으로 되어 있다.

비교우위(比較優位) 비교생산비가 유리한 것. 분업은 비교우위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국제적으로도 자유무역을 추진하면 비교우위가 작용하여 국제분업이 이루어진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에 의해 이익을 얻는 것은 비교우위에 근거에 두고 있다.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그들 정당의 득표수를 비례하여 당선수(當選數)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제도. 소수대표제는 다수파에 의원을 독점시키지는 않으나 공정한 비율로 대표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점을 보완, 공정하게 여론을 반영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비례대표제이다. 이 제도는 사표(死票)를 방지하여 소수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득표수와 당선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대선거구제를 직제로 한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과 명부식(名簿式)이 있다. 단기이양식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명부식은 정당중심의 선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다수파의 의석(議席)독점 방지와 여론의 공평한 반영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소당분립(小黨分立)으로 인한 정국불안정과 정당간부의 후보지정과 정상의 정폐(精弊)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석분배의 불공정성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 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대안의 집행에 필요로 하는 비용과 그것에서 얻어지는 편익을 화폐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안을 실시 해도 바람직한가를 검토하는 방법. 비용과 편익은 장래 시점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양자의 비율 또는 차를 가지고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자(Visa) 사증(査證)과 같은 말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이다. 즉,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이 현재 자기나라에 있거나 또는 체재국(滯在國)에 있는 여행목적국의 대사·공사·영사 등으로부터 여권을 검사받고 서명을 받는 것이다.

비자금(秘資金) 무역과 계약등의 거래에서 관계적으로 발생하는 리이트(사례금)와 커미션, 그리고 회계처리의 조작으로 인해 생겨난 부정한 돈을 세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관리해 둔 자금의 총칭. 따라서 비밀 적립금이라고도 불리는 비자금은 공식적인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에서도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

비지니스 인큐베이트(Business Incubator) 어떤 사람이 기업을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정부가 창업준비에서 부터 사무실과 공장을 마련해 주어 정상가동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제도. 물론 비지니스 인큐베이트에 들어가는 기업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른 곳에 공장과 사무실을 차려 독립해서 나오게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①개별기업 측면에서 보면 저렴한 지대(地代)·융통성 있는 사업장 면적의 활용·경영상담·기술훈련 및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이다. ②지역사회의 경제·사회발전 측면에서 볼때 불완전한 이용상태에 있는 지역자산을 생산성의 중심지로 변화시켜 주변지역을 활기있게 만

들 수 있는 점이다. 이는 산업기반을 다양화 시키면서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빅딜(big deal) 말 그대로 '큰 거래'로서 주로 기업간 대형 사업의 맞교환을 의미한다. 경영학적으로는 사업교환(Business swap)이라고 한다. 빅딜의 범위는 부실기업 정리뿐 아니라 주력 기업도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되며, 외국 기업에 넘기는 것도 빅딜로 본다. 빅딜의 형태는 A와 B라는 업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상대방에게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넘겨주고 다른 사업을 넘겨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업종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빅딜대상 사업체의 자산을 평가한 후 이 자산을 자본금으로 내놓은 다음 공동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법인을 만들기로 합의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빅딜대상 사업체에 대한 자산평가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업종 전문화를 위해 빅딜을 통한 독점을 허용한다면 독점규제에 배치될 수 있고 그 점을 이유로 외국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빈지(殯地)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ㅅ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동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및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移越)하는 것. 따라서 예산에만 계상되어 있고 구체적인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비는 사고이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고이월의 재사고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년도에의 사고이월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한편 예비비의 사고이월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사단법인(社團法人)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의 주체, 곧 법인으로 인정받은 사단.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영리 법인의 두가지가 있다.

사력(沙礫)댐 댐 본체를 석괴로 쌓아 구조적으로 안정을 얻은 댐. 종류로는 상류면에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철판·아스팔트 등으로 물을 가로막는 표면차수벽형(表面遮水壁型)과 제체내부(堤體內部)에 토질재료로 차수(遮水)하는 내부차수벽형이 있으며 이에는 경사차수벽과 중앙차수벽이 있다.

사린(Sarin)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개발한 유기인 계열의 신경가스로, 무색·무취이나 그 독성이 매우 강하다. 'G가스'라고도 불리며, 보통을 액체상태이나 휘발성이 매우 높으며, 독성은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5백배나 돼, 체중 70㎏의 건장한 사람이 0.7㎎만 들이마시면 사망한다. 피부로도 흡수되며, 일단 중독되면 동공이 수축되고 근육 전체가 마비, 질식사하게 된다. '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군이 사용하기도 했으며, '95년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에 사용된 바 있다.

사용료(使用料) 광의의 수수료의 일종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반대급부. 따라서 인적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협의의 수수료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는 사인 상호간에 일방이 타인의 토지·건물·장비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댓가로 지급하는 반대급부를 의미하나 공법상의 사용료라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과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댓가로서 이해된다.

사이버대학(大學, cyber university) 세계적인 통신망인 인터넷 상의 가상공간을 이용,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강의를 컴퓨터 화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학. 실제 교육과는 달리 컴퓨터 단말기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교수와 일대일 교육이 가능하며 전자우편을 통해 과제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의실과 연구실 등 별도의 시설과 강사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도 없으며 학생수도 대폭 늘릴 수 있어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등 10여 개 대학에서 사이버 대학을 설립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5개 정도의 기관을 선정, 오는 2000년까지 2년 동안 시범 운영하였다. 사이버 대학은 기존 대학이 단독으로 또는 여러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 일반 학생이나 시간제 등록학생, 사회교육원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증란 추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여권의 내지이며, 여권유효기간내 부족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동 사증을 추가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 Social Overhead Capital) 도로·항만·철도 등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면 교통체증 항만적체 등을 유발해 생산과 수출에 애로를 겪게 되며 따라서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도로·철도·항만·공항뿐만 아니라 환경시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1조)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도로 부속물
나. 철도법에 의한 철도
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라. 항만법에 의한 항만 시설
마. 항공법에 의한 공항 시설
바.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
사. 수도법에 의한 수도
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자. 하천법에 의한 하천 부속물
차. 어항법에 의한 어항 시설
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 설비
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 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 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시설
너.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산망
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버. 항만법에 의한 종합여객 시설
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어.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 시설
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생활체육 시설
허.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 시설

사회개발(社會開發) 사회문제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마련하는 개발정책을 뜻하며, 경제뿐이 아닌 정치·문화·교육등을 포함. 제2차대전 후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정치적 해방을 얻었으나 그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제도와 경제능력의 취약으로 수많은 사회혼란을 일으켰다. 선진공업국들이 앞장서서 이같은 후진국가들을 돕고자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시켰다. 여기에 경제문제가 바로 사회문제 전체중의 하나라는 차원에서 또한 사회발전 없이는 경제개발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사회개발론이 대두되었다. 이같은 점으로 보아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이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나 사실적으로는 구별이 어렵다고 보겠다. 다만 경제개발은 물질적 공급능력과 소비활동이란 인간활동의 한 부분을 다룬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구분이 가능하다.

사회보장(社會保障) 질병·출산·가족의 부양·심신상태·노령·유족·노동재해·직업병 및 실업 등의 사회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자와 기타 인구부문에 소득과 의료의 보장을 주며 또한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의 조치·고

용·노동의 보장을 줌으로써 국가가 모든 사람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사회보장이란 말은 1935년 미국의 연방사회보장법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고 1938년 뉴질랜드 사회보장법에 의해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의한 전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사회복지(社會福祉) 이는 세가지 측면에서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한정적 개념으로서는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 제공하는일"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 광역적 개념으로서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서 출현하는 어려움을 취급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시책 혹은 방법체계의 총화"라고 할 수 있으며, 세째, 복합적 개념으로서는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와 서비스 및 광역적 개념으로서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지표(社會指標, social indicator)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GNP가 개인소비나 민간설비투자등 경제활동을 화폐량으로 집계하는데 비해 사회지표는 GNP계산에 직접 산입되지 않는 항목, 즉 건강·교육·학습활동, 고용과 근로생활의 질, 여가, 물적 환경, 범죄와 법의 집행, 가족, 커뮤니티, 생활의 질, 계층과 사회이동 등 국민생활과 관계되는 통계로서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1979년 128개의 지표로 작성, 공표된 이래 1990년도 지표는 262개, 1991년도 지표는 275개로 확대작성 발표됐다.

삭도(索道)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항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

산림보전지구(山林保全地區)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목재의 생산이나 재해·공해방지 등을 위해 산림을 보전하기로 지정된 지역. 우리나라 전국토의 46.5%인 4만 6,169㎢가 산림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다.

산성비(Acid Rain) 산성비는 석탄, 석유 등의 화학연료가 연소할때 배출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이 대기중에 수소와 결합되어 복잡한 화학반응을 일으킨 후 최종적으로 황산이온·질산이온 등으로 변화하여 강한 산성을 띤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함. 산성의 강약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보통 수소이온농도(PH)가 사용되고 있으며 PH 5.6이하인 빗물을 산성비라고 함. 산성비는 빗물·서리·눈 등도 포함되며 건물·교량·구조물등을 부식시키고 토양수자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공동화(産業空洞化) 코스트가 싼 해외에 직접 공장을 세워 생산함으로써 국내의

생산능력이 떨어져 산업이 쇠퇴해 가는 현상. 미국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나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드는 일본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이 제품들의 국내로의 역수입이 성행, 실업률의 증가 등 공동화의 폐해가 빚어 지고 있다 . 예컨대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하이테크 제품이나 자동차를 비롯한 공업제품의 흑자도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84년 미국의 제조설비투자율을 보면, 1.2%밖에 신장되지 않았다. 그 이유은 설비투자를 하려해도 제조공장의 대부분이 이미 동남아시아등 개발도상국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화의 원인으로서는 1960년대에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의 직접 투자를 늘린 점과, '70년대에 들어와 기업경영을 위한 비즈니스 스쿨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업적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한 설비투자나 경영전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다 공동화를 더욱 촉진시킨 것이 80년대 전반의 고(高) 달러(dollar)로, 이는 미국 공업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저하시켰다. 일본에서도 산업의 공동화가 시작되고 있다. 1985년 9월 뉴욕에서의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래의 엔고(円高)로 제품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편이 코스트가 싸기 때문에 한국·대만·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에 생산거점을 옮기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産業技術研修生) 국내 3D업종등 제조업체의 부족한 노동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이 싼 후진개발도상국의 근로자를 일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기술연수생의 조건으로 정부에서 도입하여 국내 제조업체에 배치하는 외국인 근로자임.

산업도시(産業都市) 주민이 광산업·공업등의 산업을 주로 생업으로 하는 도시, 도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면 전산업시대의 도시기능은 주로 정치·행정(통치)의 중심이 되었으며 거기에 집단규모에 따라 생필품제조와 물품의 교역장소 즉 시장의 기능이 있었다. 그 후 산업혁명 이후에 제조업 (2차산업)이 급속히 발달함으로 도시의 경제기반이 제조업으로 기능변화를 가져왔다. 그후 교통 통신의 발달로 시민의 지역적 활동범역이 넓어졌고, 따라서 산업도 여러가지 전문 분야별로 분업·협업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위치적 산업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같은 규모의 도시라도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우위적 산업, 즉 경제·사회적 특성(예 : 정치 휴양 관광 company town등)에 따라 기능적 명칭을 달리한다.

산업재해(産業災害)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중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의해 사망·부상·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이에 관한 제반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

산업평화상(産業平和賞) 도내 기업체의 노사화합과 노사안정을 위해서 시행하는 시상제로 매년 1회 산업평화정책에 기여한 근로자, 노동단체, 기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시상부문 및 인원은 근로자 10명, 노동단체 10명, 기업체 10명이며, 시상종류로는 각 부문별 대상1, 금상2, 은상3, 장려4명에게 시상한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産學研共同技術開發地域 consortium)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내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을 말함.

산회 → 개회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 체계의 맥락에서, 그리고 그들의 목표, 기대, 기준 및 관심과 관련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라고 정의된다. 삶의 질은 각 개인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독립할 수 있는 수준, 사회적 관계, 개인의 신념 및 환경의 특징적 양상에 대한 관계등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광범한 개념이다.

삼림욕(森林浴) 숲속에서의 휴양. 삼림욕은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유럽·일본 등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다. 나무는 많은 산소를 배출하는 데다가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죽이는 살균효과를 지닌 피톤치트라는 물질을 발산한다. 이 피톤치트는 신체 각 부위에 활력을 주고 피부에 탄력을 주어 노화방지에 큰 효능이 있다.

상계관세(相計關稅)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때 부과되는 관세가 상계 관세 또는 상쇄관세이다.

상세계획(詳細計劃) 도시계획이 도시전체를 다룸에 비하여 부분적인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보다 상세하게 또 그 토지의 특성에 맞도록 수립코자 하는 도시와 건축사이의 중간단계의 계획.

상수도보호구역(上水道保護區域)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수질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

도록 지정하는 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오물, 진개 또는 동물의 시체류를 버리는 행위·가축의 방사·어렵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유영·목욕이나 세탁·기타 수질을 오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 죽목을 재배 또는 벌채하고자 할 때, 토지의 굴착 또는 성토 기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수처리(上水處理) 음용수로 하기 위한 처리. 상수처리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으며, 다음은 그중의 한 예임. 원수(原水)중의 부유물은 침사지에서 침전시키고 혼합조에서 응집제를 원수에 혼합, 응집반응조에서 응집된 것을 침전조에서 침강시키며, 침강물은 탈수기에서 탈수함. 침전조로부터 상등액(上澄液)은 여과시설에서 여과하여 정수지로 이끌어 배수함. 여과시설은 모래와 엔슐라사이트가 병용된 고속여과 장치임.

상업지역(商業地域) 상업과 위락·업무등 도시경제활동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 건축물을 고밀화할 수 있으나, 상업기능을 해치며 화재·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을 발산하는 가공·제조업 등의 기능을 가진 건축물 및 도시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은 타지역에 비해 완화하고 있으나 방화문제·주차장 등에 관한 규정은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제한은 법으로써 규제가 가능하나 상업업무지역의 기능상의 다양성 때문에 실무건축 행정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심의회 등을 구성, 건축물의 내용과 설계 등을 건축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허가를 한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常傭勤勞者와 臨時·日傭勤勞者) "상용근로자"란 고용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정규직원으로서 1일 고용이 아니고 상시 고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에서는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이상 고용된 자 까지를 상용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직업의 안정성 파악과 관련한 이용 계약기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 단순 업무보조원으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도 퇴직금 비수혜자 등이 해당된다. 한편 "일용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 및 임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매일 매일 고용되어 근로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생력산업(省力産業) 노동절약산업.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산업용 로보트· NC공작

기계 · 컨베이어 등의 운반기계를 생산하는 산업의 총칭.

생력화(省力化)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 산업의 오토메이션화, 무인화(無人化)를 촉진하는 것. 이를 위한 투자를 생력투자라 부른다. 생력화의 제1차 붐은 노동력 부족이 일반화되었던 '55년 후반에 일어났는데 오일쇼크 이후 '감량경영' 의 주요 수단으로 다시 클로즈업되고 있다. 최근의 생력기기(省力機器)시스템으로는 산업용 로보트 · NC공작기계 · 무인창고 · 그리고 이것들을 스템적으로 결합시킨 FMS, FA등이 있다. 또 생력화는 공장 뿐 아니라 사무실에도 보급되어 오피스 컴퓨터 · 워드프로세스 · 팩시밀리 등 사무자동화(OA화)가 진행되고 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BOD

생물학적 처리(生物學的 處理) 폐수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중에서 생물에 의하여 분해가능한 유기물을 조류(藻類) · 박테리아 · 원생동물 등의 미생물에 의하여 제거시키는 것. 즉, 살수여과법 · 활성슬러지법 · 소화(消化) · 산화지법 · 부패조(腐敗槽) · 임호프탱크 등이 이에 속하는데 호기성 · 혐기성 · 임의성 처리방법으로 나뉘어지며, 유기물질의 제거 이외에 탈질소화(脫窒素化)에 의한 질소제거방법도 생물학적 처리이다.

생산녹지지역(生産綠地地域)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 및 축산업용 건축물과 최소한의 생활시설만 건축을 허용하며 생산녹지를 타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농업생산 목적외의 토지이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는 도시토지의 기능적 이용을 위하여 지역, 지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태계(生態系) 생물과 그의 환경으로 결합된 자연의 체계. 자연은 생물과 무생물로 되어 있고, 생물은 생물상호간은 물론이고 무생물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을 영위해 간다. 생물은 그의 환경과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생활하고 번식한다. 생태계는 먹이사슬을 통해 유지되며, 시간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고 환경에 대한 자기조절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생태계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유지되어 가지만 인간에 의한 지나친 파괴와 오염으로 그 자정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질적 변화를 일으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며 이는 인간을 위시한 모든 생물에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생태계 연결지대(生態係連結地帶) ➡ p165 하단

생활보호대상자(生活保護對象者) 노령 ·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

지의 능력이 없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자. 대상자의 범위는 ①연령 65세이상의 노쇠자 ②연령 18세 미만의 아동 ③임산부 ④불구·폐질·상이·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⑤기타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의료보호·해산보호·교육보호·장제보호·자활보호 등이 있다.

생활오수(生活汚水) 일상생활과 더불어 배출되는 분뇨배수와 부엌, 목욕탕, 세탁, 세면 등의 잡배수를 모두 생활오수라 한다. 생활폐수에는 질소, 인, SS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하수처리장, 합병정화조 등에서 행해진다. 공장폐수 규제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생활폐수의 오염기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머타임(Summer Time) 낮 시간이 길어지는 봄부터 시계바늘을 1시간 앞당겼다가 낮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되돌리는 제도. 낮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주요 이점.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50여개국이 실시중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전후해 한때 이를 실시했다가 부정적인 면이 많아 폐지했다.

서버/클라이언트(Client Server) PC, 워크스테이션(WS) 등 주로 소형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접속하여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시스템의 방식을 말한다.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와 프린터를 네트워크상에서 공유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갖고 "클라이언트"는 이같은 기능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위한 단말기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서버에는 워크스테이션, 클라이언트에는 PC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공영(選擧公營)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의 공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계 연결지대(生態係連結地帶)

생태계 연결지대란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예를 들어 이 지역내에서는 산악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 등으로 인해 끊어진 동물 이동통로나 고도별 특이식물 개발 전의 상태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생태계 연결지대에는 개발이 이루어진 도로위에 터널이나 육교 등을 설치, 복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넓어져 활동이 자유로워지며, 또 식물분포도 고도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자연생태계를 개발이전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 환경부는 우선 지리산 성삼재와 오대산 진고개 주요능선에 생태계 연결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후보자에게 각종의 편의를 주고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보통선거의 실시로 광범한 선거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에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또 가난한 자는 입후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를 실시하여 부패를 방지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의 기회를 평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액의 기탁금을 받아 각 입후보자 선전벽보, 선거공보의 인쇄·첩부·선거인명부 사본작성, 합동연설회의 고지벽보 및 개최, 참관인 수당 등의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구제(選擧區制) 선거구란 독립하여 선거를 할 수 있는 단위구역을 말한다. 선거구제는 크게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나누어진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로 1인 1구제라고도 한다. 좁은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므로 선거인이 후보자를 잘 알 수 있으나 지역적 이익을 강하게 앞세우고 선거인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당선되기 쉽다. 사표가 많아 소수당에 불리하다.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선거 제도다. 그중 2~5명의 의원을 뽑는 제도를 중선거구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단위구역이 넓다. 때문에 사표 방지에 유리하나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선결처분(先決處分) 지방의회의 결의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를 대신하여 의결되어야 할 사건을 처분하는 것. 이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권한 조정을 위하거나,의회의 필요한 의결·결정을 얻지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선결처분의 권한을 준 것이므로 선결처분을 한경우는 의회의 의결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우리나라「지방자치법」에는 ①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②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선매권(先買權) 토지소유자가 매도하려 할 때 당국에서 시장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법적인 선택권. 매입의 우선권이 주어지며 행사할 때는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선매권 제도는 계획의 집행과정 또는 장래 필요로 하는 토지를 정당한 경로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며, 이 제도의 목적은 토지투기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이다.

선형도시(線型都市, Linear City) 간선 교통로를 중심으로 노선 양면을 따라 도시기능이 좁고 긴 띠모양으로 뻗어나간 도시. 길 앞쪽에 상가·업무 등 서비스 기능을 배치하고 그 뒤에 주거지를 배치해 양측의 횡단교차를 줄일 수 있고, 서비스지

구에 접근이 쉬워 자동차 교통처리에 능률적이다. 도시성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페테르부르크의 일부가 볼가강을 따라 선형도시로 형성되었지만 아직까지 도시 전체가 선형도시로 형성된 곳은 없다.

성과주의 예산제(成果主義 豫算制) 성과주의 예산제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활동 사업 계획을 기초로 하여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1913년 부터 1915년에 걸쳐 뉴욕시정연구회의 주관아래 뉴욕시 리치몬드구(區)에서 시도된 원가예산제(cost data budget)에 기원을 두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과 정부가 행하는 활동내지 산업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의 소요경비까지를 밝혀준다. 간단히 말하면 성과주의 예산은 주요사업을 몇개의 사업으로 나누고 각 사업을 다시 몇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눈 다음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즉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이다. 여기서 단위원가(單位原價)란 업무측정단위 하나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업무량(業務量)이란 달성하고자 하는 단위의 수(數)를 말한다. 이와같이 성과주의예산은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단위를 측정하여 양적으로 표시하며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분석·평가함으로써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성업공사(成業公社)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체 중 채권회수가 곤란한 기업체로서 계속 융자(투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한 산업은행의 채권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인수한 물건의 정리를 맡은 공법인. 1962년에 설립되었다. 성업공사의 주요업무는①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채권의 보전과 추심②산업은행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인수한 물건으로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③위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 산업은행 총재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이다.

성장거점전략(Growth Poles, Growth Centers)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나 지역의 중심지(nodal point)를 집중 투자, 개발하면 그 개발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전체의 발전을 유도하게 된다는 지역개발 전략.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으로 대도시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하고 농촌 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낙후가 가속되어 지역간 소득과 복지, 발전의 격차가 심화됨.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대도시 이외의 모든 지역개발에 고루 투자하는 것은 소규모 자원을 분산시키는 꼴이 되어 개발에 투자가 되지 못하고 소모되어 결국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됨. 성장거점 전략은 불균형 성장지역의 개발이라는 고전적인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됨. 이 개발전략의 이론적 배경은 1955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페로(F.Perroux)의 성장극이론(Growth Pole Theory)에 있으며 페로

에 따르면, 경제에 있어서 성장극이란 성장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발생하는 성장의 중심점 또는 시발점으로서, 성장을 유발할 능력을 지닌 선도기업이나 산업 또는 이들의 집단을 지칭한다. 성장의 시발점인 선도기업 등은 강한 성장 추진력을 갖고 있어서 연관부문의 성장을 촉진시키게 되며 이러한 성장은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어 결국 경제 전반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성장극 이론이다.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및 7조)에 의해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그중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 지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제한이 가해진다.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 등의 제한과 공업지역 지정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편 과밀억제권역의 인구 집중을 억제키 위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대지의 우선분양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성장산업(成長産業, growing industry)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으로 보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1990년대 이후에는 컴퓨터 관련산업, 정보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산업, 신소재산업 등 하이테크산업과 함께 레저산업, 해양개발산업 등이 성장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반대의 경우는 사양산업(斜陽産業)이라 하며 석탄이나 방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 WTO

세계은행(世界銀行) 정식명칭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44년 7월의 브레턴우즈 협정에 기초하여 46년 6월에 발족한 국제금융기관이 중심적 존재. 2차대전 후 각국의 전재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하고 있다. 이자가 5~6%로 융자조건이 엄격하며 융자대상은 선진국과 중진국이 많다. 본부는 워싱턴. 80년 5월 15일 중국의 가입으로 대만이 축출되었다. 우리나라는 55년에 가입하였고 70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제40차 총회는 IMF 총회와 합동으로 8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재정운용 결과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징수되거나 지출이 당초 세출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를 말한다. 즉 정부가 1년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며, 국회의 동의없이

집행된다.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집행될 수 있지만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서도 국채 원리금과 차입금을 상환할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화(世界化) UR협상을 전후해서 국제화,개방화라는 용어와 더불어 빈번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로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종족들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개인이나 국가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치·사회·문화·경제적 체제와 습관을 다른 나라들에게 전파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것들을 국제적 틀 (국제적 체제·질서·규제·습관·문화 등)에 맞추어 가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세금징수유예(稅金徵收猶豫) 세금징수유예는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과세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과세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징수유예는 일종의 특혜인 만큼 징수유예는 법으로 허가요인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현행 세법(국세징수법)에는 납세자가 '재해 및 도난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거나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어 납기내 세금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에 한해 징수유예를 허가하도록 돼있다. 세금징수유예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게 보통이다. 유예기간은 유예한날(납기일)로부터 9개월까지 가능하다. 징수유예 신청시엔 납세담보를 제시해야 한다.

세미나(Seminar) 묘상(苗床 : 못자리)의 뜻을 지닌 라틴어인 Seminarium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후 동물의 새끼 등을 사육하는 축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영국, 미국 등의 대학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 교수를 중심으로 짜여진 연구학생의 일단을 가리키게 되었음. 대학의 지도교수아래 소수의 학생(10~20명 내외)들이 특정주제에 대하여 연구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 전원의 공동토론을 거쳐 의문점에 대한 의결방안을 도출하고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연구집회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대학 혹은 학회의 학술연구회 등이 대표적인데, 공공기관에서는 세미나 형식의 정책토론회는 거의 없다.

세미텔(semitel)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다 더 작은 규모의 개인용 사무·주거공간으로 임대용 건축물이다. 세미텔은 컴퓨터, 디자인, 무역 등 각 전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배경으로 소자본으로 개인 창업을 한 소호족을 주요 고객으로 개발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2.5~5.0평의 작은 공간에 냉장고, 침대, 전화, 수납장, 책상, 의자 등과 개인조절이 가능한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업무편의를 위해 팩스

사용은 자유롭고 인터넷도 일정 요금을 부담하면 휴게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SOHO

세외수입(稅外收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 국가의 세외수입의 내역은 ①수익자 부담금(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②재산수입 (국유재산의 매각 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 정리수입과 각종 기금·자금의 이자수입) ③사용료·임대료 수입 ④수수료 수입(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 ⑤공기업 수입(공기업인 상공업·통신업·의료업 등의 기업이윤)등이 있다. 이밖에 기부금·몰수금·벌금·과료 등의 잡수익이 있다.

센서스(Census) 원래는 전수조사(全數調査)에 의한 인구정태조사(人口靜態調査), 즉 국세조사(國勢調査), 오늘날에는 농업 센서스, 공업센서스 등과 같이 집단을 구성하는 단위를 전수조사하여 그 크기와 구조를 관찰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기원은 로마시대에 5년마다 실시되던 센서스. 즉 시민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인구 및 재산의 일제 등록.

셰어웨어(Shareware)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지불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본 후 사용자가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비용을 지불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소득을 직접 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세(人稅)로서 광의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함께 말하지만 오늘날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가리키는 협의의 소득세를 의미한다. 과세되는 소득은 그 성격상 다음 10종류로 분류된다. ①예금 국채 등의 이자소득 ②주식 출자의 배당소득 ③상공업이나 농업 등의 사업소득 ④토지 건물등의 임대료인 부동산소득 ⑤급료·상여금·연금 등의 급여소득 ⑥퇴직수당 등 퇴직소득 ⑦토지·건물·자동차 등을 판도소득 ⑧산림의 나무를 판 산림소득 ⑨퀴즈의 상금 등 일시소득 ⑩영업이 아닌 대금(貸金)의 이자나 작가 이외의 사람이 쓴 아르바이트의 원고료 등의 잡소 득이 있다. 소득세의 기본적 특징은 개인에 귀속하는 이러한 소득을 결합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제도, 자산소득 및 불로소득에 중과(重課)하는 차별과세 제도, 소득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세부담이 가중되는 초과누진세율 제도 등이다.

소멸시효(消滅時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것.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효라고 불리운다.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담보물권 등은 소멸시효가 없다.

소비성향(消費性向)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 소비율이라고도 한다. 이 비율은 소득의 대소, 계층에 따라 소비에 대한 심리적 경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소비도 증대되는데 소비가 증대하는 비율은 소득이 커짐에 라서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消費者物價指數) 전국 도시의 일반소비자 가구에서 소비목적을 위하여 구입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그 전반적인 물가 수준동향을 측정하는.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구의 소비활동에서 필요한 비용이 물가변동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는가를 지수치로써 나타나게 된다. 재정경제부에서 매월 작성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1990년을 100으로하여 일반소비자 가계지출 가운데 중요도가 크고 빈도수가 높으며 연속성이 있는 상품·서비스 중 470개 품목을 선정하여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가격변동을 조사, 작성하고 있다.

소액주주운동(少額株主運動) ➡ p172 하단

소요량증명서(所要量證明書)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단위당 평균소모율을 더하여 산출한 기준량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준량을 확인하기 위한 소요량증명서는 필요한 원자재확보와 무역 금융수혜, 관세환급,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이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는 대부분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와 연계되어 있으며,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거래에 대해서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요량』은 곧 『돈』에 해당한다. 소요량증명서는 발급시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이 수출되기 전에 발급되는 사전발급 소요량증명서와 수출완료 후에 발급되는 사후발급 소요량증명서로 구분되는데, 무역금융용은 사전발급되고, 관세환급용은 사후발급된다. 그리고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거래외국환은행에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소요량이 고시되어 있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도나 단위소요량 책정기관에서 이를 발급한다. 소요량증명서는 용도별로 1통을 발급하나 업자용을 포함하여 5통 이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

소프트산업(Soft Industry) 물적인 산업에 대해 서비스 등 비물적(非物的)인 측면이 중심을 이루는 산업. 콜린클라크류(類)의 분류에서는 제3차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에서 자동차 생산 그 자체의 물적 투입에 대해 디자인이나 마케팅의 투입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처럼 제2차산업이나 또는 제3차산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서비스적인 산업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소프트산업의 소프트화율(率)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아직 정설은 없으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물적 투입과 인건비의 합계의 비율을 소프트화율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로 삼는다. 그것이 40% 이하인 산업을 '하드산업', 40~60%의 산업을 '중(中)소프트산업' 60%보다 높은 산업을 '고(高)소프트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Software) 하드웨어(hardware)에 대한 용어로서 전자계산기 시스템의 기계 그 자체를 하드 웨어라고 하는데 대하여 그 이용기술인 프로그램에 관한 것 전체에 대한 말. 구체적으로는 시스템의 계획, 분석, 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 검토 등을 포함한다. 컴퓨터는 단순히 하드웨어의 성능이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더 중요하다. 소프트웨어의 개발방법에 따라 비용이 가감될 수 있다. 최근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느 기종에도 사용되도록 설계상으로 노력하였고 프로그램 언어도 일상언어에 가까운 것이 이용되도록 제작되고 있다.

속개 → 정회

소액주주운동(少額株主運動)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알고 있는 소액주주 권익찾기운동.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본격적인 소액주주운동은 1997년 3월 삼성전자가 이건희 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삼성물산에서 각각 450억원, 150억원어치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해 주면서 촉발됐다. 이후 제일은행 이사진을 상대로 한보철강에 부실여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열렸던 당시의 주주총회 의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단 1주만 갖고 있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단독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동안 소액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 등에 힘입어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이 0.05%로 낮아졌고 장부열람권도 1%의 지분으로 가질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소액주주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손실배상(損失賠償) 국가배상이라고도 하며「헌법」에 근거한「국가배상법」이 그 근거법. 손실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의 집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②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 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해 별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있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을 갖는다) ③그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때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 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실배상책임을 진다. 이때에도 내부적으로는 구상권이 있다.「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배상하는 손실보상과는 구별된다.

손실보상(損失報償)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경제상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였을 경우 그 부담을 전체의 부담으로 전보(塡補)하여 주는 제도.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이 사유재산제를 취하고 있는 법제 아래서는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을 제도화한 것을 행정구제 제도라고 일컫는데 여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이 포함된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라고 함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 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전보를 말한다. 손실보상이 필요하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공공사업이나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토지등을 수용했을 경우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보상해 주는 경우다. 즉 도로 등의 확장을 위해 인근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러한 사업의 편익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는 반면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희생을 보게된 소유자에게 평등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침해된 재산권을 보상해 주는 정도에 관해서는 학설상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현행「헌법」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 침해재산의 시가, 거래가격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주는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시 신축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손실보상을 좀 더 넓게 보면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가가 크게 오르므로 토지소유자가 큰 이익을 볼 경우, 즉 '개발이익' 이 발생할 때 이를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개발이익환수제도도 이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행정상의 손해배상은「민법」상의 손해배상과 비슷한 맥락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작용으로 사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는「토지수용법」이 있고, 보상의 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경우와 행정기관의 재결에 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앞의 두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행정소송에 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재산권의 침해)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공법상의 손실배상(국가배상)과 구별된다.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매출액과 그 매출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 일치되는 점. 즉 투입된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것. 이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비로소 이익이 생긴다. 한편, 손익분기점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을 손익분기점 비용이라 하는데 그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손해배상(損害賠償) 위법행위 기타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타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하는것.「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보전하는 손해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때도있다. 또한 위법이라고 할만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 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지만 다시 그 범위를 상당인과관계설로써 제한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그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또한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도 포함한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실손 이상의 이익을 얻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국가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반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수경재배(水耕栽培, Hydroponics) 비료성분을 용해시킨 수용액에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영양액(營養液)재배라고도 한다. 식물영양학의 발달로 식물은 토양속에

있는 광물질 가운데 아주 적은 양만을 그것도 물에 녹아 있는 상태로 흡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 토마토 오이 등의 청정야채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수재배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수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발달된 화학공업의 도움이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首都圈整備計劃)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등의 정비,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됨.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 수도권에서는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이의 신·증설에 대해 총량규제를 실시 중이다.

수익자부담(受益者負擔)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 범위내의 토지에 이익의 증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증가의 일부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제도. 이러한 수익자부담에 관한 정의는 도시계획·토지정책·재정학·행정법·토지공법등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이나 제한범위에는 약간의 차가 있으나 서로 상통하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시계획법」제65조에서는 〃공공에게 이득과 비용의 한도내에 부과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익증권(受益證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신탁 받아 운용하고 그 성과를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투자신탁이라고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원본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을 수익증권이라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크게 주식형 수익증권과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주식형 수익증권은 주식의 편입비율이 높아 주식에 대한 간접투자 형식이며,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의 펀드로서 채권에 대한 간접투자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수입선 다변화(輸入先多邊化)제도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심각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수입초과국과 수출입균형을 이루기 위해 해당국가로부터의 수입품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지정, 이 품목에 대해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규제를 위한 것이다. 1999년 본 제도하의 수입규제가 철폐된다.

수정안, 대안, 번안 ① 수정안 : 제안된 원안의 목적 및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소속의원(위원)발의로 내용을 추가, 삭제,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완성된 안을 수정안이라 한다. 결산·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결처분승인의 건 등은 수정안을 낼 수 없다. ② 대안 : 일반적으로 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하는 의안으로 발의하는 것으로서(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띰), 유사한 2개이상의 안이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경우, 이를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③ 번안 :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서 의결후 객관적 사정변경이나 착오 발견시 등에 번안하며, 번안동의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심의의안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기전까지, 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사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까지 해야한다.(지방의회)

수질개선부담금(水質改善負擔金)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20%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1995년 5월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부담금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의 징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취수정에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세입이 되며 나머지 50%는 환경부에서 관리 집행한다.

수질기준(水質基準)

구 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PH	BOD (㎎/1)	SS (㎎/1)	DO (㎎/1)	대장균수 (100ml)
생활환경	Ⅰ	상수원 1급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Ⅱ	상수원 2급 수산용수1급	6.5~8.5	3이하	25이하	25이하	1,000이하
	Ⅲ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구 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PH	BOD (㎎/1)	SS (㎎/1)	DO (㎎/1)	대장균수 (100ml)
생활환경	Ⅳ	공업용수 2급 농 업 용 수	6.5~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Ⅴ	공업용수 3급	6.5~8.5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이상	-
사람의 건강보호	전 수 역	카드뮴(Cd : 0.01㎎/ℓ이하. 비소(As) : 0.05㎎/ℓ이하. 시안(CN)·수은(Hg)·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납(Pb) : 0.1㎎/ℓ이하, 6가 크롬(Cr^{6+}) : 0.05㎎/ℓ이하 폴리크로리네이티드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ℓ이하					

※ PH농도 : pH=7-중성 pH〈7-산성, pH〉7-알칼리성

수출드라이브(輸出 Drive) 국내경제의 불황으로 내수부진에 따른 판매위축을 커버하기 위해 수출신장에의 압력이 가중되는 것. 불황기에는 국내수요가 감퇴되고 공급이 과잉기미인데 기업은 가동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의도하지 않는 재고'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인하해서라도 수출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수출확대가 경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경우도 많다.

수출면장(輸出免狀) 화물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이 수출을 허가한 증서.

수출신용장(輸出信用狀)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증서가 수입신용장. 이것을 수출선인 상대국에서 받을 경우 수출신용장이라고 한다. 수출입계약에 기초한 대금결제를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으로 부터 지불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 (보통 수출업자가 있는 나라의 거래은행)은 신용장에 명기된 수출입계약에 관련된 서류와 상환(相換)하여 수출업자에 대금을 지불한다. 수출신용장 내도상황은 수출의 장래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며, 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전체의 70% 정도로 통관실적 통계 등과 그 절대액수가 다르다.

수출자유지역(輸出自由地域)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확정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서 관계법령(관세법·외환관리법등)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 이 지역의 특성은 ①중계무역을 제외한 제조·가공·포장·보관 등 수출에 관련된 기업활동을 가능케 하고 ②「관세법」「외환관리법」

및 조세상의 제한은 배제 내지 완화해 주고 ③무역센타등 모든 간접시설을 제공해 주는 혜택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 1월 1일 공포된「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해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서 실제금고가 수납한 총액에서 금고가 지급한 총액을 공제하여 출납폐쇄기한 현재로 금고에 현존하는 자금의 총액.

순환출자 ➡ p178 하단

슈퍼 301조(條) 미국 종합무역법안의 조항 중 하나. 1988년 8월, 1974년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를 강화하는 형태로 성립되었다. 주요 규정은 ①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특정하여 그 장벽의 폐지를 요구해 교섭 ②상대국이 3년 이내에 철폐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관세의 인상 등 보복조치를 발동한다는 내용이다.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가지는 국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교섭기한을 정해 미국무역대표부가 적극적으로 교섭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다가 부시행정부 아래서 폐기됐으나 1994년 3월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다시 부활했다. 그러나 슈퍼 301조는 쌍무적인 성격이 짙어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정신에 위배되며 자유무역의 토대인 가트의 기본 정신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모그(Smog)현상 연기, 안개란 뜻이나 원어는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이다. 안개는 습기를 가진 무거운 공기이기 때문에 대기속으로 비산되지 못한다. 이때 도시의 경우 지상의 자동차 매연·가스(gas)·연기·먼지등 여러가지 불순물이 안개속에 혼재하게 되며 이 현상을 스모그(smog)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지상에서 약 300m정도 높이에서 정체하는 경우가 많다.

순환출자(循環出資)

한 그룹내에서 자본금 1백억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숫자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이 경우 A사는 자본금 1백억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백10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10억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 입금된 돈은 아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는 주요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스캐너(Scanner) 화상정보를 광학적으로 인식해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장치. 소형화와 저가격화로, 컬러필름이나 원색사진. 그림을 색분해할 때 쓰이는 등 영상처리나 전자출판 등에 필수적인 도구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침체하의 인플레.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말한다. 1970년경부터 주요선진제국에서는 긴축정책으로 경기가 침체해도 물가의 상승은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73년말 아랍 산유국에 의한 원유금수조치를 계기로 심각화된 수입원유가격의 앙등을 포함한 에너지 위기에서 이 경향은 한층 더 강해졌다. 그 결과 OECD 가맹 7개국의 '74년도 경제정세는 실질 GNP의 신장이 평균 전년대비 마이너스 0.6%를 기록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에 달해 마이너스성장에서도 인플레가 진행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스톡 옵션제(Stock Option 制) 기업이 전문 경영인이나 핵심 기술자를 고용하면서 일정기간 후 채용할 때 약속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사후 기업성장으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차익을 챙길 수 있어 고급 인력을 초빙하는 데 유리하다. 미국의 경우 유력기업의 75%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합작법인인 대웅릴리사에 스톡옵션으로 입사한 직원들이 미국, 릴리사의 주가 상승에 따라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스프롤(sprawl)현상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대도시의 교외(郊外)지역이 무질서·무계획적으로 발전, 주택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계획과 무관하게 땅값이 싼 교외로 주택이 침식해 들어가므로 토지 이용면에서나 도시시설 정비에 극히 비경제적인 문제점을 유발한다.

슬러지(Sludge) 하수, 공장폐수 중의 부유물질이 침전되어 생긴 오니(汚泥)를 슬러지라고 하며, 하수처리장이나 정화조의 침전조에 남는다. 슬러지는 오니 상태로 다량의 수분을 품고 있으므로 펌프 등으로 끌어올려 프레서, 진공 여과기로 탈수시켜 수분이 적은 슬러지 케이크로 만든다. 이 케이크는 매립 혹은 소각되며, 태운 뒤에 응고시켜 토목, 건축재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도금, 금속가공 공장 등의 슬러지는 중금속, 특정유해물질 등이 들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무해화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슬럼(Slum) 보통 도시의 빈민지대. 어원은 slumber(잠자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에서 나온 말로서 교통비도 없고 직장도 없어 좁은 지역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역, 즉 노후불량주거가 과밀하게 형성되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집단이 있는 지역이다. 슬럼의 저자인 헌터에 의하면 슬럼의 일반적 특성중에서 혹인에 관한 부분을 빼고 열거해 보면 ①빈곤 ②노후불량주거 ③과밀거주 ④하층 계급주민의 집중 ⑤저학력 주민의 집중 ⑥사회보장 인구의 집중 ⑦지역내 이동률이 크다 ⑧범죄와 비행 ⑨가족해체 ⑩철거민 혹은 철거대상 ⑪생활환경의 열악 ⑫소란 ⑬고독과 소외 ⑭불결 ⑮재해의 위험 등이다.

승환시설(乘換施設)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정류소·자동차정류장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의실험. 실제와 같은 모델이나 상태를 만들어 모의실험을 하는 것. 선박, 항공기 등의 설계, 기업의 경영전략, 각종 경제예측 등에 이 수법이 이용된다. 또 매크로(macro) 경제모델에 의한 시뮬레이션은 현실 경제구조나 경제행동의 인과관계를 수학적·통계학적 수법에 의해 함수나 방정식으로 표시하고 이것으로 조합한 계량모델을 사용한다.

시방서(示方書) 구조물의 설계·제작·시공 등에 대하여 규준이 될 사항을 규정하는 것.

시삽(Sysop : system Operator) 시스템 운영자. 특정 시스템 내의 파일 등 자원과 가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가리킨다. 천리안, 하이텔과 같이 거대한 PC통신망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회사가 바로 시삽이다. PC통신 내의 취미나 전문 분야 동호회 주최자로서 관리와 운영을 맡은 사람 역시 시삽으로 불린다. 시삽은 보통 동호회에서 뽑힌 사람이 맡은데 허가받지 않은 불청객이 동호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동호회 가입 절차 관리 등을 담당한다.

시설원예(施設園藝 : Protected horticulture, horticulture under structure) 유리온실이나 프라스틱하우스에서 재배환경을 어느정도 조절 하면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주야(晝夜)의 기온, 습도, CO_2 농도, 지온, 관수시기와 그 양, 시비시기와 그 양 등의 제어가 가능하여 병충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생산에 이용되는 시설을 온실(greenhouse) 또는 원예용 시설이라고 하며 유리온실(glasshouse)과 프라스틱하우스로 대별 할 수 있으며 하우스의 95%는 프라스틱의 한 종류인 비닐필름으로 피복 된 것이 90% 정도이다. 그 중에도 P.E 필름이 가장 많으며 비닐하우스라고 부른다. 시설원예는 4계절을 통하여 다양한 원예작물을 공급하여 음식물이나 문화면에서도 인간의 생활에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있다.

시효(時效)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의 권리관

계와 합치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 이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정당한 권리를 잃게 되는 소멸시효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사실상태가 정당한 권리 관계로 추정받게 되는 취득시효가 있다.

시효중단(時效中斷)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시효는 거기서 중단하고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은 전부 효력을 상실하며 중단사유가 끝난 때에 처음부터 시효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것. 그러므로, 이는 일정한 사유로 그 기간만 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끝나면 다시 이미 경과된 시효기간에 계속하여 진행되는 시효의 정지와 다르다.

신경제 5개년 계획(新經濟5個年計劃) 실패로 끝난 김영삼 정부의 경제계획의 주요 골자는 ①계획기간은 1993년~1998년이고②연평균 경제 성장률 7%③98년도의 1인당 GNP는 14,506달러, 수출은 1,450억 달러, 수입은 1,212억 달러로 되어 있으며, 98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드롬(Syndrome) 증후군(症候群) 어떤 공통성이 있는 일련의 병적 징후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말. 증후로서는 일괄할 수 있으나 그에 특정한 병명을 붙이기에는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것. 과민성 대장증후군, 경견완(徑肩脘)증후군, 네프로제 증후군 등 예로부터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 말을 매스컴이 남용, 일종의 유행어가 되었다. 예컨대 피터팬 신드롬 등.

신디케이트(Syndicate) 공동판매 카르텔. 가장 고도화된 카르텔의 형태로 공동판매소를 두고 판매를 공동으로 한다. 공채·사채(公債·私債)등의 유가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연합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신삼고(新三高) ①국내 경기에서 그 동안의 신3저(低유가·低금리·低달러)의 기조가 물러나고, 고유가(高油價)·고금리(高金利)·고원자재가(高原資材價)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②아직은 신3저 현상이 지배적이나 신3고 역풍이 강해지면 국제수지와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신(新) 샌드위치 증후군 ①샐러리맨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도 환영은 커녕 버림 당하고 있다고 고민하는 증세. ②불안, 갈등을 안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신생아(新生兒) 출생후 28일미만의 영유아.

신(新) 슈퍼 301(條) 걸프전 이후 미국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법안의 하나. 범미 경제블록 형성을 위해 EC와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된다. 매년 분야별 총무역 적자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상대국 산업분야는 우선협상 대상분야로 지정하고, 총무역적자 15% 이상을 차지하는 상대국은 의무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역협정이행법안, 금융공정거래법과 함께 대외통상압력 수단의 하나이다.

신용보증(信用保證) 돈이 필요해도 담보가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나, 보증금이 없어 공사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해 줌으로써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하거나 공사를 계약하게 해주는 제도. 신용보증의 종류에는 내용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어음보증·지급보증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76년에 설립한 신용보증기금이 이 업무를 맡아 영세사업자들의 자금융통을 돕고 있으며 대한보증보험도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신용장 → L/C

신지식인(新知識人) 「제2의 건국」에서 말하는 '신지식인'이란 기존의 '지식인' 개념보다 폭넓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신지식인'이란 일하는 방법을 개선·개발하여 자신의 부가가치를 스스로 높여나가는 사람들. 사물지와 사실지 뿐만 아니라 방법지를 체득하고 지식의 공유·활용과정에 필요한 정신자세와 능력을 갖추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전통적 지식인에 비하여 실용적·실천적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어휘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도 단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개념 짓자면, 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일하는 방법을 개선, 개발, 혁신하는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는 사람 ② 경제적인 측면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 활성화하거나 사회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사람 ③ 21세기 지식의 무한경쟁시대에 조직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신지식인'이란 교육수준과 성별·연령 그리고 직종과 직위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승화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인간상'을 의미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모성은) → 신지식인

신지식공직자(新知識公職者) 지식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맡은 업무를 개선·개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공직자를 의미한다. 신지식공직자란 지식인→신지식인→신지식공직자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용어이다. 따라서 신지식공직자의 개념도 앞에서 살펴 본 신지식인의 개념과 동일한 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이 신지식공직자가 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인 것이다.

신지식공직자의 개념은 신지식인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신지식인 운동은 각 기관·단체별로 특성에 부합되는 신지식인 발굴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신지식인의 개념을 분야별로 구분, 신지식교사·신지식공직자·신지식기술자 등으로 나누고 있다. 신지식공직자는 21세기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불가피성에 기초하고 있다. 신지식공직자는 국가와 정부의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신지식공직자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배경을 갖고 있다. 하나는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요, 또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 경쟁력 저하이다.

〈신공직자의 조건〉

정신 자세	습 관	기본 소양
· 시간을 아끼는 자세	· 토의하는 습관(공유)	· 언어능력
·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	· 대인관리 습관	· 컴퓨터능력
· 겸허(외부의견 적극수렴)	· 정보수집·정리 습관	· 논리적 사고 능력
· 도전적 프로정신(최고)	· 자기계발 습관	· 해당분야의 전문성
· 새로워지려는 개방적 자세	· 메모 습관	· 지식 : 사물,사실,방법지

신축·증축·개축·재축(新築·增築·改築·再築)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축**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증축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짓거나 따로 짓는 것에 관계없이 증축이 된다. 또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증축을 할 때에는 방화·피난 또는 구조상의 문제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에 관한 법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가지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개축시에는 반드시 기존 건축물에 비해 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의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없어진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우리 흔히 듣는 "○○를 이전한다"는 것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디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신토불이(身土不二) ①최근 UR타결로 농산물 개방(農産物開放)이 불가피하게 되면

서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나온 캐치프레이즈 ②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해서 흙과 사람은 둘이 아니다. 즉, 따로일 수 없다는 뜻이다.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의 남동부지역에 완만하게 펼쳐져 있는 계곡지대. 인텔·NS(내셔널 세미컨덕터)등 미국의 유력한 반도체 메이커들이 집결되어 있다.

실버산업(Silver産業) 노령층을 위한 각종 상품·편의시설등을 생산 제공하는 산업. 은(銀)을 뜻하는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말이 갖는 마이너스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낸 이름이다. 실버산업은 노인 전용주택·노인병원 등 노인관련 서비스외에도 노인용 의료기기, 단순기능의 노인용 가전제품, 건강식품 및 노화방지용 화장품 등 노령층을 겨냥한 상품을 포함한다.

실버타운(Silver Town) 실버타운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계획된 유료시설로서 동일한 장소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혹은 의존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시설을 갖춘 주거단지. 실버 산업에는 주택관련사업, 의료관련사업, 금융관련사업, 혹은 건강기기, 식품, 의류 등의 복지기기관련사업, 각종 교양강좌와 오락활동을 제공하는 노인대학 등과 같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가정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음. 실버타운은 실버산업 중에서도 주택과 의료사업이 복합된 분야로 최근 노년층이 독립주거를 선호하는 추세와 더불어 각광 받고 있음. 실버타운은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원보다 규모가 크며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집단으로 혹은 단독으로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거시설, 의료시설, 레져나 스포츠와 같은 휴양시설 등 각종 필수시설과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노인 전용의 복합시설단지를 말함. 실버타운은 입지별 혹은 규모별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입지특성에 따라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지형이 있으며, 규모에 따라 노인타운, 노인마을(노인촌), 노인집합주택, 연속적 보호센터, 주거형태에 따라 단독주거형이나 공동주거형, 그리고 사업방식별로 임대형, 분양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 입지특성에 따라 초기에는 주로 전원휴양지형 실버타운이 건설되었으나 노년층의 고립된 커뮤니티가 생활의 활력과 생명력을 잃게하기 십상이므로 최근에는 취업과 문화 활동, 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 등을 즐길 수 있는 도시형 및 도시근교형을 선호하는 추세.

실버 프로그램(고령자 복지 계획) ①장기근속후의 정년 퇴직자 (停年退職者)들이 미지의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피거나, 그 직계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자녀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등의 인생 설계를 말함. ②최근 일부 기업에서 이러

한 제도가 도입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실비요양시설(實費療養施設)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치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시설계(實施設計) 미리 계획된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현지에서 실제로 공사를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 이를테면 구조·재질·형태·치수·수량·시행순서 등을 도면 기타의 방법으로 명시하는 일.

실시설계입찰(實施設計入札) 기본설계입찰에 의하여 실시설계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시공에 필요한 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실업률(失業率) "실업률"이란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로,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눠서 구한다. 실업률은 매월 통계청이 전국 3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동안 조사해 발표하며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상의 생산활동 가능인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방식을 채택, 1주일에 1시간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실업자(失業者) → 취업자

실질(實質)GNP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명목상의 GNP를 실질적인 가치로 고치기 위해 기준년도로부터의 물가상승을 참작한 디플레이터로 수정한 것. 국민경제의 성장률은 보통 이 실질 GNP의 증가율로 표시한다. 실질 GNP의 규모나 성장률은 국민경제 전체의 양상을 표시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GNP등의 경제전망을 토대로 하여 예산이나 경기정책, 재정금융정책을 결정한다.

심사보고(審査報告) → 제안설명

심사분석(審査分析) 정부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

심사청구(審査請求) 재조사 청구자가 재조사 결정기간(30일)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또는 재조사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 재조사 결정의 취소변경 등을 구하기 위하여 차상급 행정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 이는 일반행정상의 행정심판에 해당

하는 것이다. 청구기간은 재조사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결정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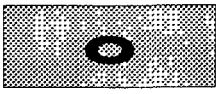
심의(審議)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말하며 본회의에서의 안건논의를 말함.

심포지엄(Symposium) 두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주제에 관하여 각각 다른 입장에서 고찰한 바를 강연한 후, 청중이나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공중토론의 한 형식. 원래 그리스어 심포시아(symposia : 함께 술을 마시는것), 심포시온(symposion : 향연)에서 비롯된 말이다. 학술 토론회, 신문 잡지 등에 발표되는 지상(紙上)토론 회의 뜻으로도 널리 쓰인다.

싱크 탱크(Think Tank) 두뇌집단 또는 두뇌회사. 모든 학문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을 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우리 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 대덕연구단지내에 있는 각종 연구소가 이에 속하며, 정부기관 또는 기업체 등으로 부터 의뢰받은 각종 과제에 대해 분석·예측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싱크 탱크로는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이 있다.

쌍무 투자협정 → BIT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 가정과 점포상가에서 배출하는 모든 폐기물에 종량제가 적용되나 종이류 등 재활용품과 연탄재는 제외되고, 병원 등 쓰레기 대량배출자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94년 4월부터 시범실시되고, 95년 1월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아노미(Anomie)현상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병리 현상의 하나로서 (흔히 대도시화로 인한 인간 소외등의 몰가치 상황) 도시에서의 인구 규모의 증가, 인구 밀도의 증대는 도시 사회의 이질성을 제고시키고 도시내 활동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도시 산업화에 따른 인간 주체성의 상실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은 심할 경우 도시민들의 도덕적 규범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을 영국의 Emile Durkheim이 1897년 처음으로 지적한 바 있다.

아동복리(兒童福利) 아동 복지라고도 하며, 아동의 생활을 보장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제도·실천을 말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우리 나라는 18세 미만의 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아동 복지 행정은 요보호 아동대책의 충실과 더불어 장래의 인구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모자보건 대책의 충실, 아동수당제도의 창설등 일반아동 또는 그의 생활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 대책이 요청될 것이다. 아동복리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취할 조치는 그 관할 구역내에서 요보호 아동 또는 요보호 임산부를 발견하였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아동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서약서를 제출시키는 것. ②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③보호자 또는 대리 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④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그 보호를 위탁하는 것. ⑤특수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하여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⑥성격과 행동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다른 선도 기관에 의뢰하는 것 등이다.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 AFT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각료회의 → APEC

아웃소싱 ➡ p188 하단

아크로폴리스(Acropolis) 높은 도시라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의 도시중심 또는 배후에 있는 언덕. 도시의 종교적·정치적 중심이 되는 광장. 그리스의 많은 아크로폴리스라하면 이것을 가리켰다. 서울 대학생들은 각종 학생 집회가 열리는 학생 본

부와 도서관 건물 사이의 넓은 공간을 민주주의의 광장이라는 뜻에서 아크로폴리스라 부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 LPG

액화천연가스 → LNG

야간인구(夜間人口) 상주 인구를 뜻한다. 대도시의 경우 도심지역은 생활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현대 도시교통의 발달로 업무활동 지역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아침에는 업무지구에 출근하였다가 야간에는 주거지역으로 퇴근하게 되어 도심지는 텅비게 된다.

야계사방 산간계곡 또는 산림내 흐르는 계천(溪川) 및 산림에 연접한 계천을 대상으로 하류의 침식방지 농경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업 토목상의 공사.

양액재배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재배로 생육이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공급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아웃소싱(outsourcing)

기업내부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 인소싱(insourcing)의 반대개념이다. 아웃소싱은 미국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작해 이제는 경리, 인사, 신제품 개발, 영업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업무까지 외부에 위탁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은 우선 회사 업무의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초다이어트'를 통해 인원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중효과를 노리고 있다. 급속한 시장변화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핵심사업에 집중,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는 외주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자사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팀을 이뤄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에 급진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위탁대상 기업과 정보네트워크가 연결된다면 이른바 가상기업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아웃소싱 전략이 기업조직을 부품화해 다시 조립하는 디지털적 발상이라고 설명하고 기업의 구조와 존재 형태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간 경쟁이 더 이상의 비용절감이 어려워질 정도로 치열해지고 하청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아웃소싱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 가상기업

양키본드(Yankee Bond) 외국채(foreign bond)의 일종으로 미국자본시장에서 비거주자(외국기채자)에 의해 미국내 투자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미국법에 의거 발행하여 판매되는 미국달러 표시 채권.

양키본드시장 양키본드의 발행(공모) 조건과 절차는 우선 ①Mondy's 또는 Standard & Poor's로부터 신용 등급을 평가 ②미국 SEC에 기채 취지서(Prospectus)와 부속 서류(Exhibit)등 등록 서류(Registration Statement) 제출 ③SEC의 심사(Review) 거쳐 유효판정(Declaration of Effectiveness) 를 받아야 하는 등 유로본드에 비해 발행절차가 까다롭고 발행 소요기간도 길다. 한편 SEC는 1990년 사모(私募)에 의한 본드 발행 및 유통거래를 촉진하는 "Rule 144A"를 채택함. 이에 따라 SEC 보고 및 등록요건이 면제되는 "Rule 144A"에 의한 사모 발행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양키본드를 공모(公募) 또는 사모(Rule 144A)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평가받아야 하는데(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보통 6개월 소요) 최소 BB 이상이어야 본드발행이 가능(보통 AA 및 A등급)하다. 양키본드의 금리는 동일 만기의 미재무성 채권 유통 수익률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결정된다.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사용되는 각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보다 한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본 계약서는 MOU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MOU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없이 어길 경우 도덕적 비난이 따른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어메니티(Amenity) 일반적으로 쾌적한 환경,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상쾌함 등으로 정의되며, 일상생활에서 보고·듣고·느끼고·맛보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인간과 인위적 구조물, 자연이 함께 하며 주민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행위제거, 범죄와 사고 예방 등의 안전성, 공해방지·건강관리·환경위생 등의 보건성 공공시설의 질과 접근성, 관광 레크레이션 시설 등의 편리성, 오픈 스페이스의 보전, 노후주택 및 불량미관의 개선, 역사적 풍토 보존, 경관 보존 등의 광범위하고 총괄적인 개념이다.

어음부도율(어음不渡率) 전체 어음교환 규모중 부도가 난 어음규모의 비율을 말하며 건수(장수) 및 금액의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된다. 어음부도율은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포함한 실물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는

데 통상적으로는 금액 기준 부도율이 널리 사용된다.

어음할인(어음割引) 은행융자의 한 형태로, 상품매매에 수반하여 생기는 상업어음을 어음의 수취인에게서 지불기일이 도달하기 전에 그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때 공제한 이자를 할인료라고 한다. 할인료는 어음의 종류나 금융시장의 상태에 따라 변동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장치로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는 동시에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업그레이드(Upgrade) 기존의 제품보다 기능이 뛰어난 최신 제품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구 기종에서 CPU 교환, 메모리 증설, 하드디스크를 대용량화하여 신기종에 상당하는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향상된 기능을 가진 새버전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업무지구(業務地區) 업무지구는 공공용 또는 사무실을 위주로 하는 업무용 건축물을 집중시켜 업무대행에 관한 상호편익을 도모하거나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한다. 토지이용의 고밀화, 건축물의 고층화가 이루어지며 도심의 핵의 역할을 하는 지구이다. 주·야간인구의 격차가 심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업무편람(業務便覽) 업무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지침서가 되는것. 조직의 방침과 기능, 사무처리의 절차와 방법, 준수하여야 할 제원칙, 기타 사무에 관련된 자료 등을 능률성과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여 이해하기 쉽고 업무처리에 편리하도록 작성한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에코브리지(Eco-Bridge;생태연결 통로) 도로나 철도의 개설, 택지의 개발에 의해서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여 생물서식공간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단절된 생물서식공간을 이어줌으로서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함. 독일의 동물학자 에른스트.H.헤켈(Ernst Heinrich Haeckel)의 조어. 1866년의 일이다. 헤켈은 진화론을 배경으로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을 제창하고, 그리스의 오이코스(oikos, 사는 곳, 거주지의 의미)라는 말을 채용하여 이를 생태환경을 연구하는 학문, 즉 에콜로기(ekologie)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태학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으나, 이것

은 일반적으로 생물들의, 혹은 생물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생물과학의 한 분야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에콜로지라는 원어를 그대로 쓸 경우,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를 찾아내고 그 실현을 향해 움직이는 사회운동, 생활자세, 사상, 학술 연구 등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에콜로지는 과학으로서의 생태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생태계의 구조에 관한 지식은 에콜로지운동의 사상이나 구체적 활동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에코폴리스(Eco-Polis) → 환경보전도시

엘니뇨 현상 ➡ p 191 하단

엘리엇 파동이론 ➡ p 192 하단

엘리뇨 현상(現象) El Niño

중미 에콰도르로부터 남미 페루에 이르는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세계 각지에서 홍수·가뭄·폭설 등의 기상 이변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신의 아들'이라는 뜻. 이 현상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일어난다. 특히 1998년은 금세기 최악의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일찍 더위가 찾아왔다. 대규모의 엘니뇨 현상은 '엘니뇨 이벤트'로 불리며 아열대의 강력한 고기압을 형성, 이것이 대기 순환에 큰 영향을 미쳐 커다란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엘니뇨와 반대로 태평양 중부와 동부의 적도 지역 해류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것을 라니냐 현상이라고 한다. 라니냐란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 엘니뇨가 페루 연안의 해수 온도가 높아져 초래되는 현상이라면, 라니냐는 반대로 해수 온도가 낮아져 생기는 기상 이변을 말한다. 통상 7~9월께 적도 인근 동태평양의 수온이 0.5도 이상 낮아지면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는 그만큼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바다·온도·대기의 순환고리에 이상이 생겨 기상 이변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규명되고 있지 않다. 97년 사상 최악의 엘니뇨에 이어 세계기상기구(WMO)는 엘니뇨가 5~6월께 소멸하는 대신 7월부터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해 중미에는 이상 한파가, 동남아에는 폭우가 엄습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는 실제로 98년 8월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집중호우로 나타났다.

엠바고(Embargo) (1)금수조치(禁輸措置) ①특정 국가에 대한 상업선(商業船)의 입·출항(入出港)및 무역을 금지토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함. ②일반적으로 상대국이 전쟁을 일으켰거나 국제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재정 지원 등 일체의 경제적 협력을 규제하는 조치가 동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①뉴스의 발표(보도)시간 제한, 기사 사용의 해금(解禁)시간 제한. ②신문 용어로 정부 발표의 성명이나 대통령·총리 등의 연설 등은 보도 자료를 사전에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공표시간을 제한하는 것.

엥겔계수(Engle 係數) 가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비로 나타낸 계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식료품관련 지출보다는 식료품이외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 착안, 생활수준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개발됐다. 예컨대 엥겔계수가 20이하는 상류, 50이상은 겨우 살아가는 생활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엘리엇 파동이론(波動理論)Elliott wave principle

엘리엇 파동이론은 1930년대 미국의 R.N.엘리엇(1871-1948)이 개발한 주가변동이론으로, 주가의 변화는 대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된다고 주장한다.

연구당시 과거 7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연간·월간·주간·일간·시간, 심지어 30분 단위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 만들었다. 이 이론은 1987년 미국 주식시장 사상 최악의 폭락을 맞은 블랙 먼데이 직전, 다른 모든 시장예측과는 달리 대폭락의 가능성을 예고한 토대이론으로 활용되면서 최상의 예측도구로 각광받게 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주가는 상승 5개 파동과 하락 3개 파동 등 모두 8개 파동이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한 후 또다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고 한다. 이때 상승 5개 파동은 1·3·5번의 충격파동과 2·4번의 조정파동으로 구성되며, 하락 3개 파동 역시 1번과 3번 충격파동과 2번 조정파동으로 구분된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 이론은 몇 개의 법칙과 준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파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미달형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예외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엘리엇 파동이론은 원래 뉴욕의 다우공업평균 같은 전체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1366」 요보호여성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여성고용할당제(女性雇傭割當制) 여성의 공직진출을 확대키 위해 채용시험에 앞서 여성 공무원 채용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라 합격시키는 제도. 이 제도에 따르면 여성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커트라인에서 3점(5급)이나 5점(7급)까지 낮게 여성 응시생을 성적순으로 목표치만큼 추가 합격시킨다.

여행증명서(旅行證明書) 여권의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거주지국으로 출국할 경우에 여권 대신 발급하는 증명서

역도시화(逆都市化) 도시화의 반대현상. 즉 도시의 인구가 농촌으로 역류 분산되는 과정을 뜻한다. 1970년대에 미국의 대도시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역도시화는 도시화의 말기단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역도시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대도시 생활에 따르는 비용증대, 산업의 지방분산 소도시 또는 농촌적 생활의 매력 증대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한 역도시화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나 서울시와 부산시 등의 성장의 한계, 광역화의 진전 등으로 멀지않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역도시화와 관련된 인구이동의 행태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턴(U-Turn), 제이턴(J-Turm), 아이턴(I-Turn)등이 있다. U턴은 농촌에서 살던 주민이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는 것을 말하고, J턴은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를 떠나 중소도시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이며, I턴은 원래의 대도시 주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역세권(驛勢圈) 철도역(전철역, 지하철역 포함)을 이용하는 여객 또는 화물수송 수요가 발생하는 권역. 다른 역의 역세권과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때도 있다. 지형, 버스교통의 편리성, 급행열차의 유무, 역의 분포밀도 등에 의해 지하철이나 전철의 역세권은 약 500m~600m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외금융(域外金融)off-shore financing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해외 거래처에 대출해 주는 금융방식. 예컨대 신용도가 높은 미국계 씨티은행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 인도네시아 등 신용도가 낮은 국가의 기업들에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역외금융은 대개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신디케이트 형태로 이루어진다. 규모는 보통 1~2억 달러 규모이나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우

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는 역외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편이었다.

역전층(逆轉層) 대기는 기운이 낮아지거나 반대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기온이 상공으로 올라 갈수록 높아지는 공간을 역전층이라고 한다. 그 생성원인의 종류와 특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지형적 역전 :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계곡과 분지의 사면을 따라 완만하게 저지로 흘러 들어와 상층에 따뜻한 대기층을 형성한다. ②전선형 역전 : 전선의 존재로 난기단은 상층에 한기단은 하층으로 오기 때문에 발생하고, 전선이 정체하면 대기오염은 심해진다. ③침강성 역전 : 고기압권 내에서는 공기가 주위로 유출되기 때문에 상공의 공기가 침강한다. 이 하강공기가 단열압축을 받아 그 아래쪽의 층보다도 따뜻한 공기의 층을 만든다.④방사성 역전 : 바람이 없는 맑은 날 밤 대지가 방사로 인해 냉각되어 그것에 접하는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고 상층의 난기가 그대로 잔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⑤이류성 역전 : 차가운 지표상에 따뜻한 공기가 흘러 들어왔을 때 하층에서 기온이 저하해서 발생한다. 종종 안개를 동반한다.

연금기금(年金基金)pension fund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을 말하며 보통 줄여서 연기금이라고 한다.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금은 그 운용 주체에 따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연기금은 증시에서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자금의 성격상 장기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거래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제도(年金制度) ①국민연금 :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98년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급여 수준은 가입기간 평균 임금의 70%에서 55%로 줄고, 보험료는 9%로 인상됐다. 또 연금 가입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수급연령은 60세부터이나, 2013년 이후에는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65세가 될 전망이다. ②개인연금 : 국민 스스로가 소득능력이 있을 때 노년기를 대비하여 저축하고, 정부가 세제면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연금 수혜범위를 확대시키는 제도. 평균 저축기간은 10년 이상, 수익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별 불입 한도액은 월1백만원 이하다. ③농어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업자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면 60세 이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담도시권(連擔都市圈) 여러 도시가 인접해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국 남부지역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도시권에서 많은 독립도시가 성장하게 되므로 그들이 모여서 광역도시 또는 조합도시 형태의 계약

협정을 맺는다.

연대변상책임(連帶辨償責任) 회계 관계 직원의 상급자로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회계관계 행위를 명령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당해 상급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 관계 행위를 명하여 따르지 아니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만 단독변상케 한다. 이를 변상책임의 전가라 한다. 연대변상책임은 전부가 변상되어야 각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보증실무나 공동변상과도 구별된다. 상급자가 상사로서 부당하고 위법하게 명령하여 회계질서를 그르치게 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립주택(聯立住宅) 전체층이 4층이하이면서 연면적이 200평(660㎡)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분양이 가능해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연면적(延面積)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총 바닥 면적을 연면적이라 한다. 예를 들어 총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20평이라면 연면적은 120×4=480평이 된다. 이것이 연면적이다. 연면적이라는 말그대로 (바닥)면적을 모두 연(합)하여 계산한 것이다. 건물을 매입하였을 경우나 신축하는 경우 이 연면적이 부동산 가치의 척도가 된다. 다만 연면적에는 공유 부분(계단이나 복도)과 벽의 일부가 함께 계산됨으로 보다 자세한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 도면과 맞추어 봐야 한다.

연석(緣石) 넓은 길거리에 찻길과 인도 또는 가로수 사이를 구분하여 놓아둔 돌.

연안어장(沿岸漁場) 당일 돌아올 수 있는 항해 거리내의 수역에서 형성되는 어장.

연착륙 ➡ p196 하단

열병합발전(cogeneration) 전기를 소비하는 공장 등에서 자가 발전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유효하게 이용하면 낭비가 없고 열 효율은 높아진다. 공장이나 가정에서는 전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나 열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열병합발전이라고 한다. 대규모 발전소(석유, 원자력 등)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지만 그 열 효율은 겨우 35%이다. 거의가 인구 과소지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므로 폐열은 이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버려지기 때문이다. 송전 거리도 길어서 오는 동안에 잃는 열도 10%나 된다. 이와 비교하여 열병합발전의 열 효율은 80~90%로 두 배 이상이 된다. 그 결과 연료비는 반으로 줄고, 배출되는 탄산가스도 역시 반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뛰어난 열병합발전이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는 추세이다.

엽관제(獵官制, Spoils System) 선거에 의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 이것은 민의(民意)에 충실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지자들로 공약을 실현한다는 민주적 성격을 가진 반면, 정실(情實)에 따라 관직이 좌우되어 공정하고 안정된 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그래서 정치적 임명을 하는 관직을 제한하고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위주에 따른다는 관행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1829년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잭슨이 의회에 제출한 교서(敎書)에서 엽관제를 국가의 정식 인사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한 데서 그를 흔히 엽관제의 시조(始祖)로 부르고 있다.

영기준예산(零基準豫算, ZBB) 예산 편성시 현년도(established base)를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이거나 증감적으로 예산액을 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예산제로서 1970년 미국 Texas Instrument사의 조사연구부 예산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 예산제가 정부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조지아주 지사였던 카터(J.Carter)에 의하여 조지아주정부의 1973년 회계년도부터이며, 연방정부에는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1979년 예산안부터이다.

연착륙(軟着陸)soft-landing

경기연착륙.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처럼 급강하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경기하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연착륙이란 용어는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말 조만간 다가올 불황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이 사용하기 시작, 경기진정책을 쓸 때 경기 후퇴의 정도가 심하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자리잡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상승과 하강 과정을 되풀이하며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경기가 활황에서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 때 기업매출이 줄어들고 투자심리가 위축, 결국 감원과 함께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연착륙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기하강이 시작되기 전부터 통화, 재정, 환율 등 정책수단을 적절히 조합,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연착륙이란 용어가 자칫 어쩔 수 없는 경기급강하를 애써 막는 듯한 느낌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연착륙이라는 용어 대신 '안정성장지속'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에 있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점증식예산제도와는 달리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막론하고 그 능률과 효과성, 사업의 존속·축소·확대여부를 새로이 분석·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심의 결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전년도예산을 근거로 하여 점증 또는 증감한 예산액을 책정해 주리라고 하는 예산담당자들의 일반적인 기대를 의미하며, 영기준(零基準)이란 零에서 새로 출발한다는 것' 즉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영기준 예산제의 장점으로는 ①저단위사업을 폐지·삭감할 수 있다. ②사업의 효과성을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다. ③한 기관 내에서 재원을 유통함으로써 고순위 업은 더 많은 자금을 얻을 수 있다. ④세금부담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⑤제일선의 직원 즉 계선으로 하여금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능한 대안을 발안하게 함으로써 평가와 사정의 기회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최고 관리자에 의한 의사결정과 권위를 집중시킴으로써 탄력성과 재량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①관료들이 자신의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된다. ②효과적인 행위·의사유통 그리고 분석업무에 관여하는 관리자들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③관리자들이 적절한 결정단위의 선정, 효과적인 분석을 위한 적합한 자료의 개발, 노력의 최소수준 결정 상이한 사업들의 순위결정, 그리고 많은 양의 결정항목의 처리 등에 곤란을 받는다. ④영기준 예산제가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종래 예산의 전후의 모든 과정을 합하여 비교하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을 것이다.

영상회의시스템(映像會議 system) 영상회의시스템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화면을 통해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영상회의는 출장에 따르는 제반 비용절감 및 사안 발생시 신속한 회의. 빠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준다. 시스템 구성 요소에는 영상, 음성, 데이터를 음성 입·출력용 마이크 및 스피커, 기타 회의용 제어기기부가 있다. 전형적인 그룹영성회의는 보통 이들 각 요소가 분리돼 공급되는 반면 pc영상회의나 비디오폰은 일부 기능이 일체화된 형태로 제공된다.

영유아(嬰幼兒)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영조물(營造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관리·경영하는 시설(예 : 학교·공원·철도·도서관등). 근자에 있어서는 보통 공공시설이라 한다. 실정법상으로는 물적시설 따라서 공물의 의미로 사용되는 일도 있다. 영조물은 정적으로 시설에 치중하여 본 경우이고, 이것을 동적으로 볼 때에는 공기업이다. 영조

물에서는 공용영조물과 공공영조물이 있다.

예규(例規)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나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이와 같은 예규의 일반적 성질은 ①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아니한다. ②행정 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③합리성,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예규의 요건으로서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發)해야 하고 반드시 문서로서 형식을 갖추고 그 내용이 법령, 자치법규 및 공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예규는 영달문서에 속한다 (정부공문서 규정)

예방적 통제(豫防的 統制) 사무처리 기타 업무수행이 잘못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 행해지는 통제로 사전적 통제라고도 한다.

예산 보정(豫算 補正) 당초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추가 또는 경정할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보충하거나 바로잡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예산의 보정이라 한다. 이는 예산 편성후의 변동에 따라 그 예산에 과부족이 생겨 부득이한 것이다. 주요 변동요인은 시책의 변동, 물가의 변동, 천재·지변 등을 들 수 있다. 예산보정의 종류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이 있다.

예산단가(豫算單價) 예산을 작성할 때 그 예산의 기초로 삼는 표준적인 인건비나 물건비의 단가. 예산을 작성할 때마다 물가의 수준이나 동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단가는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할 때 함께 시달한다.

예산의 이용(移用)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관·항 사이에서 상호금액을 융통하는 것.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의 변경이므로 먼저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이월(移越) 예산을 다음 년도로 넘겨서 다음 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이체(移替)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 예산의 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받을 중앙관서의 장이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전용(轉用) 전용이란 세항(細項)과 목(目)사이에서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

을 말한다.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상호융통이므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의 이유, 과목 및 금액을 기록한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봉급과 공공요금은 전용할 수 없다.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1회계로 통일하여 정리하는 주의. 예산단일주의, 회계통일의 원칙과도 같은 내용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수지를 결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예산총계주의는 재정의 통일을 기하고 의회의 재정감독권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원칙을 고수할 때 사업의 다양성과 재정 팽대의 경향에 따를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회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오수(汚水)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목욕탕·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汚染者 負擔의 原則) 공해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발생시킨 기업이나 공사자는 그 공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보통 PPP(Polluter Pays Principle)로 약기한다.

오존(Ozone, O_3) 산소의 동소체로 상온에서는 특유의 악취를 내는 기체. 산화력이 강해 공기의 정화·표백·음료수의 살균 등에 이용하지만 농도가 증가하면 위험하다. 약 0.25ppm 이상에서 호흡기를 파괴하고, 5~10ppm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대기중의 이산화질소에 자외선이 닿으면 원자상의 산소(O)를 발생해 대기 중의 산소(O_2)와 결합하여 오존이 된다. 광화학 옥시던트의 주체가 된다.

오존경보제 ➡ p200 하단

오존층(Ozone Layer) 대기중의 오존층은 15~50㎞의 성층권 범위에 있고 최대밀도는 20~30㎞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의 농도는 10ppm 정도이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상의 생물이 방사선 치사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자외선 가운데 장파 자외선은 오존 농도에 민감하여 농도변화에 따라 일부만이 흡수된다. 최근 프레온가스라 불리는 염화불화탄소가 가장 위협적인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져 있다.

오퍼(Offer, 물품매도확약서) 오퍼는 거래제의(인콰이어리-inquiry)가 받아들여져서 매도인(Seller)이 자기 상품에 대한 가격·규격·수량 등의 조건을 바이어

(Buyer)에게 제시하면서 판매 신청하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의 무역거래법에서는 오퍼를 받은 상대방(바이어)이 이를 수락하는 매도 확약서(Selling offer)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매매계약(Sales Contract)이 성립하게 됨. 따라서 오퍼상이라고 함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자, 즉 외국수출업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에이젼트)을 의미함. 오퍼의 종류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확정오퍼(Firm Offer)를 비롯하여 확인조건부 오퍼(Offer Subject to confirmation), 수정오퍼(Couter Offer)등이 있음.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보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자료나 정보 제공을 말한다. 다만 보도는 못하지만 이를 취재 계획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단 보도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을 경우 지켜지지만, 이것이 남용되면 보도 규제 또는 정보조작이라는 비판이 우려되므로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요 정보는 항상 그 금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일체 거론해서는 안된다.

온라인 시스템(On-Line System) 컴퓨터의 설치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발생 장소에 단말장치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통신회선을 통하여 직접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연산장치 · 기억장치 · 제어장치의 총칭)에 보내어 그 처리 결과를 필요한 장소

오존경보제(警報制)

오존 농도의 정도에 따라 생활 행동의 제한을 권고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등을 비롯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등 모두 14개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서울을 북서 · 북동 · 남서 · 남동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4~6개의 측정소를 설치, 측정소 1개 이상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면 다음과 같이 발령된다. ① 오존 농도가 0.12ppm을 기록하면 오존주의보가 발령, 실외 운동경기를 피하고 노약자 · 환자 · 유아등은 바깥활동을 자제하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된다. ②오존 농도가 0.3ppm을 넘어가면 오존경보를 발령, 각급 학교의 실외활동, 운동경기, 자동차 통행 자제 등이 권고된다. 그리고 ③오존 농도가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한편 1997년 7월부터는 매일의 기상상태, 온도,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 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해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일기예보를 통해 오존 농도를 시간대별로 미리 예측, 알려주는 '오존예보제'가 실시되었다.

에 돌려보내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단말장치와 중앙처리장치가 직접통신회선(라인)으로 연결되므로 이 방식을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한다. 은행 등의 각 지점 창구에서 예입·인출한 예금 상황이 본점의 중앙컴퓨터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 시스템의 예이다. 단말장치와 중앙처리장치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방식을 오프라인 시스템이라 한다.

온라인 처리(On-Line Processing)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통 자료 발생시마다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On-line real time processing이라 한다. 은행의 예금·인출, 비행기의 좌석 예약 등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온실효과(溫室效果) 대기중의 탄산가스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온도상승 효과. 탄산가스는 태양으로부터의 직사 에너지는 통과시키나 지표로부터의 복사열은 흡수하여 우주로 발산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서 지표부근의 기온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

옴부즈만 제도(Ombudsman 制度)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행정통제제도.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 옴부즈만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 위치와 높은 위신을 갖는 일종의 행정감찰관으로서 시민의 제소(提訴)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한다. 그 대상엔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해당된다. 조사는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성 신속성을 살리고 또 그것을 공개하여 여론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옴부즈만은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되고 있다. 이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입법화된 이래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 파급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옹벽(擁壁) 땅깎기 또는 흙쌓기를 한 비탈면이 흙의 압력으로 붕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벽체 구조물.

외교관여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전직 대통령,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소속 공무원 등에게 외교통상으로 국외 여행할 경우에 발급하는 여권.

용도구역(用途區域)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대 및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력으로써 설정한 구역. 특정시설 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네 가지가 있다.

용도지구(用途地區)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정한 구분이다. 즉 계획적으로 토지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 정한 토지이용구분. 국토전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과 도시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등 2종으로 분류된다.

용도지역(用途地域) 토지이용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도시지역 :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시행하여야 할 지역 ②농업지역 : 주로 농경, 원예, 축산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③산림지역 : 주로 영림 및 죽목의 집단적 생육과 그의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④공업지역 : 주로 공업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⑤자연 및 문화재 보전지역 : 자연경관, 문화재, 수산자원 등의 보전과 관광 및 휴양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⑥유보지역 : 전 각호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용적율(容積率) 건축물의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도시계획 구역내 지역 지구제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도시공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일조(日照)·채광·통풍이나 방화상 유효한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용존산소량(溶存酸素量, DO)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 통상적으로 공기속의 산소에 의해 공급되고 그 용해량은 온도나 기압이 좌우되며, 대기압 하에서는 20℃의 순수의 DO는 약9ppm이고 온도가 저하됨에 따라 상승하여 4℃에서 약 13ppm이 된다. 생물의 호흡이나 용해물질의 산화 등에 소모되기 때문에 더러워진 물일수록 DO는 감소한다. 반면에 조류(藻類)등이 번식하면 광합성작용으로 DO가 증가하여 과포화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의 활성오니법에서는 미생물의 활동을 조장하기 때문에 폭기를 하여 DO를 공급하지만, 보일러수에서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DO를 제거한다.

우루과이 라운드(UR,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ogotiation) 1987년부터 91년에 걸쳐 이루어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신라운드 (다자간 무역교섭)를 지칭. 이 라운드의 목적은 21세기를 향한 세계무역질서의 구축이다. '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가 신라운드 개시 선언을 한 이후, '87년 2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 교섭에 들어갔다. 교섭을 관리하는 무역교섭위원회 밑에 상품에 관한 교섭그룹(GNG)과 서비스에

관한 교섭그룹 (GNS)을 설치하고, GNG밑에 관세·비관세장벽, 농산물, 지적소유권, 투자, 가트기능 강화 등을 검토하는 그룹을 두고 있다. 특히 농산물 문제에 관해서는 각 국간의 대립이 심각하며 미국은 이 문제를 다른 항목보다 우선해서 협상을 조기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이나 EC 여러 나라는 세계적인 농산물 과잉경향을 반영하여, 보조금부과수출 등의 농산물 보호정책으로 값이 싼 개발도상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은 신라운드에서 농산물의 소득·가격지지보조금을 매년 10% 삭감하는 방안을 조기에 검토할 것을 제안하여 이것에 반대하는 EC 여러 나라와 대립하고 있다.

우선주(優先株) 우선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에 비해 더 많은 배당이 주어지는 주식이다. 회사가 망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도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대주주는 경영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한다. 우선주에는 구형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가 있다. 96년 상법 개정 전에 발행된 우선주가 구형 우선주로 보통주보다 배당을 1% 더해준다. 신형 우선주는 법개정 이후 발행된 우선주로 끝에 B자가 붙어 있다. 신형 우선주는 최저배당률이 정관에 명시되기 채권의 성격이 강하다. 신형 우선주 중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보통주로 통합되는 주식도 있다. 이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발행회사로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우회생산(迂廻生産) 토지나 노동과 같은 본원적인 생산요소를 모두 최종적인 목적인 소비재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일부를 생산재의 생산에 우회적으로 사용, 그 다음에 이 생산재를 써서 소비재를 보다 능률적으로 증산토록하는 생산방법. 독일 경제학자 로체는 맨손으로 1일 3마리의 고기를 잡는 어부가 3마리를 모두 그 날의 식량으로 쓰지 않고, 남긴 고기를 이튿날의 식량으로 충당함으로써 이튿날의 노동일부를 망이나 배를 만드는데 할당, 이들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1일 30마리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우화로 이 원리를 설명했다.

운동·휴양지구(運動·休養地區)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휴양시설과 자연경관·문화재 등을 탐방하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야할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 시설 등의 설치지구.

워치콘(Watch Condition) 대북 정보감시 태세를 가리키는 용어. 모두 4등급으로 되어 있다. 평시엔 4수준에 있다가 위기가 높아지면 3,2,1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워치콘의 격상은 한미 양국의 정보당국간 합의에 따라 이뤄지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찰기 등 첩보수집수단이 보강되며 정보분석요원도 늘어간다. 96년 4월 5일

하오 6시 25분에 발령된 적이 있는 워치콘2는 국가 이익에 현저한 위협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동되며 워치콘1은 적의 도발이 명백할 때 내려진다.

워크 아웃 ➡ p204 하단

원스톱/ 논스톱서비스(One-stop/ Non-Stop Service) 관공서를 일일이 찾아 다니지 않고 정보통신네트워크와 연결된 단일 창구에서 호적등본과 토지 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원스톱서비스이다.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의 업무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신청인이 편리한 시간에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논스톱서비스이다. 즉, 원스톱서비스는 공간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이고 논스톱서비스는 시간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이다.

원천징수(源泉徵收, collection of the source)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납세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 제도는납세의무자에게는 채무의 분할에 의한 부담경감의 이익을 주고 세무관서에는 세

워크 아웃 (work out)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말하는 것. 미국 월가의 구조조정 전문 용어로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장 폭넓고 핵심적인 용어다.

워크 아웃에 사용되는 수단은 단기 부채를 연장해 장기 부채로 통합하는 부채통합(consolidation)과 기업의 자금 사정과 회생 가능성에 따라 지급유예 기간을 두는 방법, 이자나 부채를 삭감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워크 아웃팀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 흐름, 사업전망 등을 정밀히 분석해 기업의 회생을 도모한다.

IMF 사태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워크 아웃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고합그룹, 신호그룹, 갑을그룹, 진도그룹, 거평그룹, 동아건설, (주)우방, 세풍, 강원산업그룹, 신원그룹 등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부실규모가 워낙 크고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간 고통 분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기업구조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포탈 방지를 담보하는 이점이 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크게 개인소득자와 법인으로 나뉜다.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①봉급, 상여금 등 갑종근로소득 ②퇴직급여 등 갑종퇴직소득 ③예금, 채권 등 이자소득 ④주식배당 등 배당소득 ⑤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소득 ⑥변호사, 연예인 등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유직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웹(web) 웹이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준말로서, 최근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정보연결 서비스이다. 인터넷상에 하이퍼텍스트(Hypertext)를 구축해 모든 정보를 매끄럽게 접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은 정보 검색 서비스로 그림, 동화상, 소리등을 지원하고 문자 부분도 기존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형태의 모양이 아닌 다양한 서체(font)와 스케일, 폰트 타입으로 구성되어 정보에 대한 가독성과 이해도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하이퍼 텍스트 개념을 도입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클라이언트 서버와의 통신프로토콜인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를 이용하고, 하이퍼텍스트의 구축에는 HTML이라는 기록언어를 이용한다. 링크 앞의 데이터 지정에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란 표기법을 이용하는데, 서버 자신이 가진 데이터 외에 다른 서버의 특정 페이지 등 네트워크상의 자원에 링크를 설치할 수 있다.

웹디자이너(Web Designer)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웹사이트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으로, 웹사이트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웹마스터와는 구별된다. 웹페이지를 검색할 때 사용자의 눈길을 끌고 쉽게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문자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화면안의 각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편집디자인과 프로그램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을 갖추고 웹사이트의 화면을 설계, 제작하는 사람이 웹디자이너이다.

웹 브라우저(Web Browser) 웹에 연결시켜 주는 멀티미디어 검색프로그램으로 각종 홈페이지를 쉽게 찾아가게 해준다. 현재는 넷스케이프가 가장 유명하다.

웹 사이트(Web Site)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이트 또는 호스트라고 하는데, 그 중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위생매립(衛生埋立) 쓰레기를 0.5~1.5m 정도로 고르게 깔고 당일에 전체를 15㎝ 이상 복토한다. 불도저로 압축하여 단단하게 하며 이것을 되풀이하는 매립 방법으로 불모의 토지나 늪 또는 못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개량에 사용된다. 냄새나 화기의 위험성과 해충과 작은 동물의 출현도 적지만, 쓰레기 안정에 1~2년

이 걸리므로 투기(投棄)처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

위성도시(衛星都市) 위성도시란 글자 그대로 대도시의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중소도시들을 말한다. 미국의 Taylor교수는 1920년대에 모도시와 소도시의 관계를 마치 항성과 위성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하여 붙인 명칭이다. 최근 신산업도시와 크게 구별되는 점은 위성도시는 원칙적으로 모도시의 경제기반 밑에서 성장하는 예속적인 것인데 반하여 신도시(또는 신산업도시)의 경우는 기능분담에 의해 그 도시가 자급자족 할 수 있게 계획된 도시라는 점이라 하겠다. 대도시의 경우 많은 위성도시를 가질 경우 교통 혼잡으로 모도시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는 나라가 많다.

윈윈 전략(winwin 戰略) 미국이 국지전에 대비해 93년에 세운 군사전략으로 세계의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두 지역 모두에서 동시에 승리를 도모한다는 전략. 미국은 당초 군사력 감축계획에 따라 세계의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느 한 쪽에서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다른 한쪽의 전쟁을 억제시킨다는 이른바 '승리억제승리'(winholdwin)전략을 채택했었다. 미국은 '승리승리'(winwin)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미육군장비의 해외비축, 스마트탄 등의 군수품구입비 증액, 수송력 증강 등의 군사력 강화조치를 취했다. 최근 미국방부는 2010년까지 이 전략을 계속 유지키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유러달러(Euro-dollar) 미국 이외의 은행, 주로 유럽의 은행에 예입되어 있는 달러자금을 말한다. 일반 예금과 달리 이 달러는 무국적이며, 어느 나라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예입 및 대부가 모두 국경을 넘어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유러달러는 유럽 각지의 금리차나 평가조정에 의한 환차익을 좇아 부동하는 핫머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유러달러 거래의 기원은 미국 은행에 미국 달러를 예금하고 있던 공산권 은행이 1950년대 초 미·소간의 냉전격화에 따라 이 예금을 미국 정부에서 동결 내지는 몰수할 것을 우려해 서유럽 은행에 맡긴데 있다고 하며, 그 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대량의 달러가 유럽에 누적됐다. 그 후 유러달러 시장은 급속히 발전, '투기자금의 거대한 풀'로서의 성격이 가해졌다. 이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는 유러달러를 규제해야 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러머니(Euro-money) 유럽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각 국의 금리차나 환율변동에 의한 차익을 노려 세계에 부동하는 핫머니의 일종. 유럽 각국의 은행, 회사가 단기자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유러달러이다. 이 밖에 유러스털링, 유러스위스프랑, 유러마르크, 유러프랑, 유러엔 등이 있다.

유러터널(Eurotunnel) ①영국과 프랑스간의 해저 터널로 채널(channel)이라고도 함. ②20세기말 최대의 역사(役事)로 일컬어졌던 해저 철도로 94년 5월 6일 개통되었다. ③영국의 채리턴과 프랑스의 프레튄 간 50.48㎞길이로 도버 해협 밑을 관통한다. ④영국과 유럽 대륙을 접속, 유럽 통합 운동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망중소기업(有望中小企業)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집중 지원하여 해당 기업은 물론 다른 업체까지 파급효과를 높혀 전체 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시키려는 정부시책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발굴대상업체는 기초소재 및 부품생산업체, 첨단기술보유업체, 수출 또는 수입대체의 획기적 증가 가능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 중 조금만 지원하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거나 생산성 향상 및 경영·기술취약 요인이 보강 될 수 있는 업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규 창업 업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통업무단지(流通業務團地) 국가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상품이 원료의 가공단계인 생산자의 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담당하는 독특한 서비스 활동조직을 형성할 것을 기대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획정한 일정구역을 말한다. 유통업무 기능은 상적기능과 물적기능으로 크게 구분되며, 상적기능은 최종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소매유통기능과 생산자와 소매유통간의 도매유통기능으로 구분한다. 물적 유통기능은 생산물의 시·공간적 위치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에는 운송, 보관 및 탁송 등의 기능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되는 물리적 시설물로는 도로, 항만, 콘테이너, 관련시설, 화물자동차주차장, 배송센타, 유통가공시설, 공산물 집배송단지, 공산물 도매단지, 농산물 도매단지 등을 들 수 있다.

유회(流會), 공전(空轉) 유회는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재적의원 1/3) 미달로 당일의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으로 개의 예정시간 1시간 경과 이후에 유회를 선포한다. 그리고 공전은 의원간에 이견으로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개 장기간 지속한다.(지방의회)

은행 지로제(Giro) 은행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취인과 지급인이 서로 만나지 않고 중앙집중처리센터를 통해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체(移替)제도. 우리나라는 1977년 2월 최초로 서울지역에서 당시 은행에서 수납대행하고 있던 전기요금 수납을 지로(GIRO 금융기관 영업점의 99번 창구)화한 후 그 실시지역과 대상업무를 확대해 왔으며 84년 말에는 30개 주요도시에서 각종 공과금, 보험료, 학자금 등의 수납을 지로화했다. 은행 지로거래의 유형으로는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자금을 송금할 때 이용하는 일반이체, 급여나 배당금등 정기적으로 자금을 송금할 때

이용하는 계좌이체. 전기·전화, 아파트관리비 등 각종 요금을 사전계약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납부해 주는 자동계좌 이체가 있다.

의결·결의, 부대결의 ①의결·결의 : 의결은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로서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는 의결을 가결의 개념으로 사용하며, 결의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형성 행위를 뜻한다. 의결과 결의는 다같이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②부대결의 : 안건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이나 건의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 이를 부대결의 또는 부대조건이라 한다.(지방의회)

의결권(議決權)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의결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그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하여 집행함으로써 비로소 자치단체의 행위로 대외적 효력을 발생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 Mdeical Insurance)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와 부상, 분만 또는 사망으로 인해 일시에 많이 발생하는 가계지출을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 독일 등 유럽에서 1880년대부터 사회보험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제도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 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았다. 그리고 87년 2월부터는 한방도 의료보험에 포함돼 한방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89년 10월부터는 약국의료보험도 실시되고 있다.

의료보호(醫療保護) 생활보호대상자의 발병시 국가에서 진료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해 주는 것.

의사일정(議事日程) 의회가 매일 회의에 붙일 안건과 그 순서를 정한 것. "의사일정 없는 곳에 회의 없다"고 말한다. 의사일정은 의사진행권을 가진 의장이 정하며 의원과 집행기관에 미리 알려서 필요한 준비를 하게 하고 질서있는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하여 배부된다. 의사운영에 관하여는 회의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의안(議案) 의회에 있어서 의결하여야 할 안건. 지방의회에서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과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회의체의 관행 등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구분·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①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예산의 심의·확정 ③결산승인 ④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가입금의·부과와

징수 ⑤기본재산·적립금의 설치·관리·처분 ⑥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공공시설의 설치·운영·처분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나열되어 있으며, 의회에 부의 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게 되어 있다.

의제 21(Agenda 21) 모범적인 리우선언에 따른 21세기를 향한 지구 환경보전의 실천지침 또는 행동 강령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국제경제와 환경, 빈곤 퇴치, 인구문제, 건강과 환경 등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 둘째, 개발 자원보호와 관리에 있어서 대기오염, 육상자원관리 및 계획, 산림 감소대책, 사막화와 가뭄방지 및 해양보호, 담수자원의 질 보호와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셋째, 주요 그룹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내용, 넷째, 이들의 실시 수단으로 재원 및 운영방법, 환경기술 이전, 교육, 연수, 홍보 등과 국제기관 설치 국제법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존재원·자주재원(依存財源·自主財源) 의존재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수입 중 국가(시·군·자치구는 도를 포함)로부터 교부된 재원을 말한다. 즉,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지방양여세·지방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권한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을 자주재원이라 한다. 즉 지방세 그밖에 사용료·수수료·분담금·부담금·재산수입·기부금 등을 말한다.

이동오염원(移動汚染源) 대기오염원이 되는 것 중에서 교통기관과 같이 장소를 이동하는 오염원. 주로 이동오염원은 자동차·항공기·선박 등이다.

이따이이따이 병 일본의 후지야마(富山) 현 유역의 일부 지역에 1956, 1957년을 최정점으로 발행하였던 만성 카드뮴 중독에 의한 공해병. 상류에 있던 미츠이(三井) 금속광업소의 공장 폐수에 들어있던 카드뮴이 진츠가와(神通川)의 제발이 무너질 때마다 전답을 오염시켰다. 이 카드뮴은 농작물과 식수를 통하여 주민의 체내에 축적되어 중독 환자를 낳았다. 이따이이따이 병은 중년의 다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났으며, 처음에는 요통 및 등줄기의 통증, 사지 근육통, 관절통을 호소하다 이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이윽고 뼈에 금이 가고 결국 전신의 뼈가 부러진 경우까지 있었다. "아프다, 아프다(이따이, 이따이)" 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이런 병명이 붙여졌다.

이벤트(Event)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건(事件)' 즉,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관심이나 주목거리가 되는 일. 이벤트가 발생되면 사람

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모종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벤트다운 이벤트일수록 그 열기가 뜨거우며 그 열기만큼이나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수준을 한 차원 높혀주게 된다. 그러나 event라는 용어는 실제생활에 있어서 '사건' 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보다는 'event' 라는 원어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쓰이는 용도가 '사건' 이라는 용어와 다르게 사용되어 지고 있다. 즉 뉴스거리가 되는 일은 사건' 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상업적인 의미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특별행사를 '이벤트(event)'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상기상(異常氣象) 평상의 상태와 매우 다르며, 드물게 나타나는 기상현상이나 기후로서 경제활동의 손실, 재해 등 사회 및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상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개 편의적, 실무적이다. 예를 들면 비교의 기준이 되는 30년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중에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기온이나 강수량이 측정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를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데 기온의 경우, 기준 기간의 평균기온의 차이가 표준 편차를 두 배 이상 초과할 때 이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기준 기간의 편성 방법에 있어 기후의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정해진 세계 기상기구(WMO)의 규약이 있다. 단기적으로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라해도, 자주 나타나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 냉해, 일조량 부족, 한발 등의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이상기상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송(移送) → 폐기

이슈(Issue) 일정시점에서 중요시되어 토론·논쟁이나 갈등의 요인이 되는 사회·문화·경제·정치적 관심이나 사고를 의미한다. 미디어는 이슈를 현재화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의제설정을 통하여 하나의 이슈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위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전가격(移轉價格) 다국적 기업의 경우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에 적용되는 가격. 다국적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관련회사간의 수출입 가격, 즉 이전가격을 조작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방법으로 간주돼 문제시된다.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 등의 세율이 높은 나라의 계열기업에 대해 이전가격을 상향조작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 계열기업에는 이전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납세액을 낮춘다. 이럴 경우 다국적 기업의 이윤은 세부담이 낮은 나라에 집중되어 전체적으로 계열사의 납세액을 낮춰 총이윤을 늘리는 이득을 얻게 된다.

이전소득(移轉所得) ①소득은 생산활동에 참가한 자가 그 대가로 받는 수입이다. 이

에 대해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의 정부·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은 단지 정부나 기업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므로 일반소득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이전소득이라 한다. 개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유족원호금과 회사에서 받는 치료비 등이 이에 속한다 ②국민소득 계정상 가계와 비영리단체계정의 이전소득은 법인기업으로부터 개인으로 이전, 정부로부터의 이전, 해외로부터의 이전 등 3요소로 되어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二重課稅防止協定,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①중복과세(重複課稅)를 막기 위한 장치로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 본국이나 외국중 한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 간의 협정 ②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 서로 세제(稅制)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 절차가 필요하다. ③대체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제정한 모범 조약을 따르고 있다.

이차보전(利差補塡) 금융기관 대출 금리 중 일정비율을 행정기관 등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 예)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시 금융기관 대출 금리가 연 9.75%일 경우 행정기관에서 2.75%를 부담하고 대출받는 중소업체는 연 7%의 이자만 납입하는 것.

인구의 역류현상(逆流現象) 산업혁명을 일찍 경험한 서구 여러 나라는 도시산업의 발달로 농촌인구를 점차 도시로 유인하였다. 그 후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도시가 아니고 도시와 도시간 이동현상으로 심하게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부터 많은 개발국들이 정치적 독립과 더불어 급속한 도시인구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이같은 도시인구 집중현상은 공업선진국의 경우 일자리가 있어 인구가 흡인되었으나 개도국의 경우 일자리는 없는데 농촌경제의 파탄과 과잉인구 또는 실업자가 밀려나는 유출현상이 강한 것이 서구 도시화와 내용면에서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이같이 도시·농촌간의 유출·유입현상과는 반대로 도시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인구이동의 TURN 또는 역흐름이라 한다.

인큐베이터(Incubator) 미숙한 신생아를 키우듯 갓 창업한 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업체. 이들은 사무실, 회의실 등을 빌려주고 사무기기의 이용, 전화를 대신받고 걸어주는 일, 비서의 파견, 경영 계획의 조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미국에 생겨난 새 업종.

인터넷(Internet) 지구전역에 산재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이 통일된 프로토콜을 사용해 자유롭게 통신을 주고 받을수 있는 세계 최대의 통신망. 인터넷의 기원은 미국 국방성에서 연구원들과 군납 업체, 관련 연구 기관간에 정보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탄생된 통신망인 ARPANET에서 시작돼 현재 수천 개의 다른 네트

워크들을 포함하고 있다. 83년 본격적으로 인터넷망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접속 컴퓨터망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95년 현재 인터넷에 등록된 호스트 컴퓨터만 72만개 이상으로 추산되며 20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흔히 '네트 워크의 네트워크' 로 불리는 인터넷은 정보고속도로의 실질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82년 서울대학교와 전자통신연구소의 전산인 KIET간에 TCP/IP를 사용해 SDN(System Kevlelopment Network)을 시작함으로써 처음 네트워크망을 가동했고, 그 후 83년 미국으로 UUCP(Unix-to-Unix Copy Program)를 이용해 다이얼업으로 연결됐으며, 90년 하나(HANA)망이 전용선을 이용해 연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인터체인지(Interchange)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근하는 곳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램프를 설치하여 입체적으로 접속시키는 시설. 입체교차로의 형식에는 트럼펫형·Y형·2분원형 크로바형·다이아몬드형·집분산도로를 설치한 4분원형·4분원형 크로바형·직접연결형 등이 있다.

인텔리전트 빌딩(Intelligent Building) 정보화 빌딩. 빌딩 소유자가 미리 입주자 공용의 정보통신시설을 완비시킨 임대용 사무실·빌딩을 말한다.

인트라넷 ➡ p213 하단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사회적 생산기반.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도로·하천·항만·농업기반·공항 등과 같은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자본을 가리키는데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 생활환경시설 등 사회자본도 포함시킨다. 흔히 인프라(INFRA)로 표기한다.

일몰법(日沒法, sunset laws) 한번 시작된 행정활동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재검토해 수명이 다한 활동은 중지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다시 제안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해가 뜨면 반드시 지듯 규제법도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시한을 가져야 한다는 발상이다. 적용범위는 사실상 모든 조직의 개혁·행정규정·행정절차나 양식·법률과 조례·서류절차·세율·행정기관의 제도나 정책 및 사업 등 어느 것에나 적용이 가능하다. 76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그 후 29개주에서 채택한 바 있다.

일반특혜관세제도 → GSP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년도 내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차입하는 금전. 일시차입금은 회계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연도내

인트라넷(intranet)

인터넷 속의 작은 인터넷. 지금까지 사내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하던 전용선을 인터넷으로 대체한 사내 정보전달 시스템을 말한다.

인트라넷은 사회의 인프라로 정착해 가는 인터넷 기술을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 단위조직에 적용해 통합된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그룹웨어 환경이다. 인터넷이 고객 및 거래선 등 주로 '외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면 인트라넷은 기업체 '내부'의 정보교환에 응용하는 이른바 인터넷 상의 LAN(근거리통신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전용 통신망이 전자메일의 운용에 매우 높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기종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역 간 데이터 교환시 장애가 일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인트라넷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시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며, 인터넷 표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인트라넷의 원리는 LAN을 기반으로 데이터 저장장치인 서버를 연결하고 PC에 설치된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월드와이드 웹(WWW) 표준기술을 사용하므로 동일한 문서는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읽을 수 있다. 인트라넷의 또 하나 장점은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마치 웹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한 기능을 갖춘 아이콘이나 하이퍼링크 기능을 포함한 텍스트, 그림 , 오디오 버튼 등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작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다. 인트라넷이 확산되면 대부분의 업무를 인터넷 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화선이나 네트워크 등이 기본환경으로 자리잡게 되고, 업무시간 중 계속 컴퓨터를 켜놓고 언제든지 PC를 사용할 수 있는 풍토가 정착, 종이없는 사무실이 훨씬 빨리 실현될 전망이다.

인트라넷은 1994년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가 처음으로 활용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미국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 항공화물사 페더럴 익스프레스, 세브론, 포드자동차, 휴렛패커드 등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인트라넷 경영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다. → 인터넷, 그룹웨어, LAN

의 자금사정 때문에 일시 차입하였다가 상환하는 것이므로 건전 재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일조권(日照權, Right of Light) 햇빛을 쪼일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과밀화와 고층건물의 증가에 따라 특히 주거지역내의 채광(採光)문제가 빈번하게 분쟁을 야기해 왔으나 그동안 일조권의 적극적인 법적 보호조치가 없었다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곧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正北)방향에 따른 인접대지(垈地)의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임금가이드라인(Guide Line)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바람직한 임금상승률을 민간 노사에게 제시함으로써 절도있는 임금 상승률을 실현하려는 정책. 법률에 의하지 않는 원만한 소득정책의 일종. 따라서 강제력은 없지만 위반한 기업에게는 국가가 정부조달 물자의 수주를 막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을 비롯, 구미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

임팩트 론(Impact Loan) 국내자금만으로는 합리적인 자금조달이 안되고 그 자금사용으로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차관을 도입함으로써 인플레에의 충격(impact)을 완화하여 국내경제를 안정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융자로 조건부가 아닌 외국차관.

입법예고제(立法豫告制)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 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제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법령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관 부서의 장(長)이 항목별로 관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하여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시에 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다. 1983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ㅈ

자기자본비율규제 ➡ p215 하단

자료(Data)와 정보(Information) 자료(data)란 어떤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가공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단순한 어휘와 수치이며, 정보(information)는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data)를 가공한 상태를 말하는데, 알기 쉽게 '벼'를 data로 비유한다면 '쌀' 이나 '밥'·'떡' 등은 정보(information)에 해당된다.

자바 ➡ p216 하단

자산재평가(資産再評價 asset revaluation) 물가상승으로 인해 기업 자산의 현실적

자기자본비율규제(自己資本比率規制)

자기자본비율규제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은 'BIS 기준'이라 부르는 자기자본비율규제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은행의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한 자기자본비율규제안으로,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이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8%의 자기자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급변으로 인해 은행보유 자산의 시장위험이 점점 커지자 BIS는 1995년 시장위험도 자기자본비율의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하에 은행의 신용위험뿐 아니라 시장위험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신 자기자본비율규제안'을 발표했다.

1993년 말부터 우리나라는 BIS기준으로 산출된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될 경우 은행감독원장이 경영합리화조치나 경영개선조치 등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배당 및 은행영업소 신설에 대한 은행간 차등화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 국내은행에도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그리고 1996년 5월 주가지수선물제도의 도입 등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1997년부터는 증권회사들에도 자기자본비율규제를 도입해 증권회사의 무분별한 자산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1997년 말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IMF측은 우리나라 은행의 자기자본의무비율을 8%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98년 퇴출은행 선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 BIS

가액이 장부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인플레이션 때는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기 때문에 기업재정의 안정유지를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자산재평가는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산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주주는 무상주(無償株)를 배정받게 된다.

자연녹지지역(自然綠地地域)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존·이용함으로써 주민의 휴식과 휴양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지역. 다른 용도지역과는 달리 건축물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을 강력하게 규정하여 토지이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자연녹지에 유기적인 관련이 있고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보호지역(自然生態系 保護地域) 환경부는 낙동강을 숙도(철새 도래지), 지리산 피아골(극상원시림),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고습지), 강원도 태백시 대성산·대덕산(야생동물 집단서식지), 전남 광양군 백운산(희귀식물 자생지), 경기도 가평·포천군 조종천상류 명지산·청계산(희귀곤충류 서식지·희귀식물 자생지) 등 6개 지역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개축, 토지형질변경, 동식물 포획·채취 등 생태계 파괴행위가 금지된다.

자연휴식년제(自然休息年制)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오염·중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염상태가 심각하거나 황폐화가 우려되는 국·공립 공원 및 유원지 등을 지정, 3년간씩 출입

자바 (Java)

썬 마이크로 시스템스에서 만든 컴퓨터 언어. 가정용 가전제품의 칩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설계과정에서 탄생된 언어이다. 원래는 개발팀의 사무실 창 밖에 있던 커다란 통나무에서 연유한 '오크(Oak)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나, 오크라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자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형태는 C++나 HTML과 비슷하지만 무엇보다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어 실행된다는 것이 강점이다. 그리고 HTML의 경우 고정된 모습의 페이지만 보낼 수 있는데 비해 자바는 실제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고 받아보는 쪽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잇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실행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정적인 것에서 탈피, 동적인 통신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넷스케이프 2.0부터는 자바를 지원해 HTML 소스에 포함되어 있는 자바 코드를 해석, 하이퍼텍스트 문서에 동영상이나 음성, 게임, 영상효과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졌다.

을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구역에서는 취사·야영이 금지된다.

자율경영팀 ➡ p 217 하단

자율권(自律權) 국가 기관의 독자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기관이 스스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자신들의 내부조직이나 회의 및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속의원의 신분이나 징계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데 이를 자율권이라 한다.

자전거도(自轉車道) 오로지 자전거만의 통행을 위해 연석선 또는 방책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어진 도로의 부분. 자동차가 통행하는 차도(車道)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步道)로부터 연석(緣石)이나 안전책, 식수대로 구획되어져 있어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도로. 보도의 일부로 설계하는 경우와 차도의 1차선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전거 이외의 차량은 자전거도를 통행할 수 없다.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으로 결정되어 있다.

자율경영팀 (empowered team)

자율경영팀이란 품질혁신,생산성 향상, 참여확대를 위한 자율작업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을 일컫는다. 이는 권한이양의 원리 아래 일선실무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현장 중심형 조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기업(특히 제조업의 공장부문)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조직 운영 방식이다.

자율경영팀의 개념은 ①작업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직무수행과 개선방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②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조직의 효율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며 ③팀이야말로 개별종업원에게 줄 수 없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세 가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율경영팀은 작업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공식적·영구적 조직구조라는 점에서 기존의 팀이나 팀워크와 다르다.

자율팀의 구성원들은 자기 일에 대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생산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며 리더쉽을 공유한다.

자전거 보행자도(自轉車 步行者道)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

자정능력(自淨能力) 자정작용의 한도. 자정능력 이상의 오수가 유입되는 경우 그 하천수·호소수(湖沼水)·해수는 오염된다. 자정능력은 그 물 속의 박테리아 수, 영양생물, 오존 산소량 등에 좌우된다.

자치권(自治權) 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의 권능.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에서 가지는 권능은 국가의 통치권과 같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국가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주어진 범위 안에서 행사한다는 설(전래설, 위임설)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설(고유설, 독립설)이다. 역사적·발생적으로는 고유설도 인정되지만 근대국가의 법률구조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전래하는 주어진 범위 한도 내에서 그 권능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까지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도 권력단체라기보다는 비권력적 관리작용을 중심으로 한정된 조례제정권과 과세권을 갖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확대에 따라 그 권능도 확충될 것이다.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들 수 있다.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조례·규칙 등의 제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자치재정권(自治財政權)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하나로 사무처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하고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권능. 자치행정권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분담금·사용료·가입금·수수료 등을 징수하며, 지방채를 기채하는 등의 권한이 인정되고, 지방세의 경우 주민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하기도 한다. 지방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립이 시급하지만 현재로서는 보조금 등을 통한 중앙의 지배가 문제이며 지방재정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자치조직권(自治組織權)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권의 하나로서 자기기관의 조직을 법령 등의 국법에 의해 규제받지 않고 자기의 조례·규칙 등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제118조)에 자치조직권이 보장되고 「지방자치법」에도 그 대강을 정해 놓았으며 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조례 등으로 자주적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행정(自治行政) 국가로부터 독립한 단체 즉,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말하며 관치행정과 반대되는 말이다. 자치단체는 행정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처럼 입법도하지만 자치단체의 모든 작용은 이것을 일괄하여 행정과 관련시키므로 통상자치 행정이라면 자치단체의 작용만을 뜻한다.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하나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권력을 발동하거나 그렇지 않거나하여 처리하는 권능.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자활보호(自活保護)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의 알선 등의 보호를 행하는 것.

작황지수(作況指數) 농작물이 자라는 도중,(예를 들어 벼에 있어서는 8월 15일에) 그 작황이 평년에 비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수. 이것으로 수확예상·실제수확량 조사에 앞서 수량을 예측할 수 있다. 풍흉계수(豊凶係數)라고도 한다.

잠재성장력(潛在成長力)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뜻한다. 말하자면 가용 생산요소의 완전고용 하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 설정치이다.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 가운데 하나는 물가, 국제수지 등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가 갖고 있는 잠재 성장력에 최대한 가깝게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있다.

잠재실업(潛在失業) 농촌이나 도시의 중소기업층 등에 있는 과잉인구. 보이지 않는 실업이라고도 하며 실업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취업된 것과 같이 가장된 실업이다. 저소득·비정상적인 노동시간·불안전한 고용관계 등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사회불안의 온상적 요인이 된다.

잡종재산(雜種財産) 국·공유재산 중 보통재산의 일종.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보통재산은 또 보존재산과 잡종 재산으로 분류한다. 잡종재산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그 경제적 가치에 따라 수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일명 수익재산 또는 재정재산이라고도 한다.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전제로 한 재산으로서 '국공유의 사물' 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주식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도가 가능하며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장인(匠人)메달 우수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저변확대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상제로서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99. 7. 19)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시상인원은 분기별 5명 내외이며 장인증서와 메달이 수여되며 자격은 중소제조업체 근무하는 근로자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중 국가기술자격취득자 7년, 기타 10년이상 근무자이어야 한다.

장제보호(葬祭保護)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

재개 → 정회

재개발사업(再開發事業) 재개발 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도심 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재결(裁決)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심판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 이에 판단을 주는 처분. 재결은 각하와 인정으로 나누어서 문서로 행하고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재량권일탈·재량권남용(裁量權逸脫·裁量權濫用) 재량권일탈이란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 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하고, 재량권남용이란 조리(條理)상의 제약(비례원칙·평등원칙·공익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한다. 행정기관은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제약과 일반 법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 제약에 위반한 때에는 재량의 위법을 초래하게 된다. 즉 재량권이 법이 정하는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때에는 그것을 위법인 재량권 행사가 되고, 또 법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재량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위법이 된다. 이와 같은 위법인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일탈이라고 한다. 한편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는 항상 행정목적에 따른 조리상의 제약이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행정청의 재량권은 공익 목적의 증진,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사되어야만 하며 조리(條理)에 반하는 처분을 행한 경우에 그 처분은 단순한 부당에 그치지 않고 위법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남용이라 한다. 재량권일탈이나 재량권남용이 있는 때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재량행위(裁量行爲) 광의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행정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처분을 말하고, 협의로는 재량행위 중에서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의 재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 즉 자유

재량행위(편의재량행위)만을 말한다.

재무제표(財務諸表, Financial Statements) 기업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하는 여러 가지 서류.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범위는 ①재산목록 ②대차대조표 ③영업보고서 ④손익계산서 ⑤준비금과 이익, 이자배당에 관한 의안 등 5가지. 기업회계원칙 또는 재무제표 규칙에서는 ①대차대조표 ②손익계산서 ③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④각 부속명세표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재산세(財産稅)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보유과세. 지방세인 재산세는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 건물에 부과하는 건물분 재산세로 나눠진다. 종토세는 89년에 입법돼 90년부터 과세됐다. 소유주별로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해 누진과세 한다. 정부는 공시지가의 60% 수준까지 과표를 현실화 할 계획이다.

재심의청구(再審議請求)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 징계처분 및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감사원의 판정 및 처분요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고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 재심의는 청구재심의와 직권재심의로 구분한다. 판정사항에 대한 재심의 청구권자는 피판정인과 그 판정의 집행요구를 받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며 이들은 변상판정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기타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재심의 청구권자는 그 처분요구를 받은 소속장관, 임명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며 그 재심의청구기간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이다. 이러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재의(再議) 일반적으로는 결정한 어떤 사항을 재차 같은 기관이 심의하는 것. 「지방자치법」상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사항에 관해 의견이 충돌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다시 심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회와 장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어, 양자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되어 있으나 양자간에 의견의 대립이 생길 경우도 있어 그 조정방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재의요구 제도이다.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에 재의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 ③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삭감 ④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한 경비의 삭감.

재정력지수(財政力指數) 재정력 지수란 지방교부세 산정상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기

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수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흔히 활용된다. 기준재정수입이란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세 중 보통세의 80/100에 해당하는 액이며 기준재정수요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측정단위별 항목에다 단위비용을 곱한 금액의 합계로 평균적인 수준의 행정에 필요한 재정 수요이며 모두 지방교부세 관계법령에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력 지수는 그 수치가 1이 넘거나 1에 가까울수록 재정력이 충실함을 뜻한다. 일본에서는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재정력 지수로 실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재정력을 대비함에 있어 재정력 지수가 활용되고 있는 바 국고보조의 차등률 적용 기준 등이 그 예이다.

재정투융자(財政投融資) 재정자금지출에 있어서 투자적 항목(공공사업, 정부기업에의 투자)에 지출된 것을 재정투자라고 하고, 금융적 항목(금융기관을 통하여 민간중요사업에 투자)에 지출된 것을 재정융자라 하여 이 두개의 항목을 합한 지출.

재택근무(在宅勤務, Telecommuting)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통신기술 등을 이용해 회사 일을 하는 것. 통근에 따르는 피로감이나 시간이 절약돼 실질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고, 회사에선 사무실의 공간절약과 출근할 수 없는 주부들의 잠재적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고기능 워크스테이션 등의 설비 비용이나 통신비용의 증대, 재택근무자의 소외감 발생 등의 문제점도 있다.

재택전자민원처리제(在宅電子民願處理制) 민원인이 집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된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우송 또는 배달하는 민원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PC통신 가입자의 경우 민원 수수료가 PC통신 요금에 포함 징수되며 미가입자는 지정된 수수료 납부계좌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민원서류를 발급 처리하게 됨.

적조현상(赤潮現狀) 해수 속에 플랑크톤이 급격하게 이상 증식하여 해수가 적갈색을 띠는 현상. 액수(厄水), 고조(苦潮), 부수조(腐水潮)라고도 한다. 하천의 유입이 많은 해역에 일어나기 쉽고, 어패류(魚貝類)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다. 도시폐수나 산업폐수에 의한 해수의 부영양화가 적조발생의 원인이다.

적출물(摘出物) 적출물이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물체로 우선 인체조직물로는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장기, 태반 등이 해당되고 그외에 탈지면, 폐합성수지류, 붕대, 거즈, 일회용주사기 등이 있고 병리계 폐지물로는 혈액병, 폐장갑이 있고 손상성폐기물에는 수술용 칼날이 해당된다.

전도자금(前渡資金)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전도 자금)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전세권(傳貰權) 전세금을 내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민법 303조) 전세권은 직접 목적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하여도 언제나 이를 대항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어 이를 양도·임대 또는 전전세(轉傳貰)할 수 있다.

전세등기(專貰登記)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자와 기타 채권자에 대해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민법 302조 1항)' 를 갖기 위해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전세등기 설정자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법원에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을 주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있고, 전세기간중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를 놓을 수도 있다. 이처럼 폭넓은 권한 때문에 전세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 첨부 등 동의가 필요하다. 전세 등기 때엔 보증금의 0.24%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교육세, 그리고 1%의 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전용회선(專用回線) 사용자 또는 한 그룹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공중통신회선(중앙부처~도~시·군 사업소간 행정전화회선)

전원도시(田園都市) 1902년 영국인 Ebenerzer Howard가 그의 저서 "Garden Cities of Tomorrow"에서 거대도시 또는 대도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서 도시와 전원을 일체로 하여 해결하는 전원도시의 수법을 제기하여 각 국이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전원도시의 조건으로 ①인구는 3~5만에 한정한다. ②주변에 넓은 농업지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자급자족의 충분한 공업을 유치해야 한다. ④공급처리시설의 독자적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⑤시중에 충분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⑥계획의 철저한 보존을 위하여 토지는 영구히 공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으로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Letchwath시와 Welwyn시가 전원 도시가 건립되었다.

전자게시판(BBS, Bulletin Board System) PC(퍼스널컴퓨터)통신에서 불특정 다수의 PC통신망 가입자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써넣을 수가 있으며 또 다른 가입자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꺼내 볼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BBS는 PC통신 가입자가 "어떤 테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알림이나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자게시판에 써넣음으로써 그 전자게시판

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알리게 되며 마찬가지로 다른 회원이 써넣은 메시지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

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해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상품거래와 함께 고객마케팅, 광고, 정부 제품조달, 서비스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인터넷의 홈페이지나 가상 상점을 개설해 판매활동을 하는 사이버 비즈니스를 협의의 전자상거래라고도 한다.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률과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판매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유통마진 및 점포유지비 등이 제외되어 가격이 보다 저렴해진 상품을 구할 수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IDC는 2000년에는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117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전자상거래는 매체의 특성상 시·공간적 제한이 없어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98년 6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해 마찰이 예상되지만 조만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계표준안이 마련되면 세계 무역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최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반장으로 한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협상대책반'을 가동시켰다.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전자서명은 문자 작성자를 규정하고, 문서에 표시된 내용이 본인에 의해 바르게 표시되었다는 것을 추인하는 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서명자 식별 및 변조방지 목적으로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이란, 컴퓨터를 통하여 소식을 주고받는 기능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우편은 기존의 편지에 비하여 빠르고, 전화보다 훨씬 저렴하며, 인터넷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인터넷에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받으려면 전자우편 주소(E-mail address)가 필요하다. 모든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의 고유한 전자우편 주소를 갖고 있는 데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계정(ID)@도메인"으로 구성된다.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전자정부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재설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 정보사회의 혁신적인 행정모형을 말한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부처이기주의와 체계적인 조정기능결여, 민원

업무 전산화 효과 확산지연,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제 미구축 등이 있다.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s)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며 유로본드를 예로 들어 알아보면, 발행 수수료는 대체로 2.5%이고, 만기는 보통 5-10년이며 이자는 고정 금리채보다 낮다. 전환조건은 전환 프리미엄이 발행당시 발행기업 주식의 시가에 대한 할증율로 보통 25% 이내에서 결정되며 전환가격은 발행당시 주가(1+전환 프레미엄)이다. 그리고 본드당 전환 주식수는 (본드 액면 금액 × 전환환율)/ 전환가격으로 결정된다.

절대농지(絶對農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지. 즉 공공투자에 의해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서 농수산부장관이 농지의 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그 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농지. 이는 농지 이외의 타용도 전용을 불허하고 있다. 한편 농지 중에서 이 절대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상대농지라 칭한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接境地域支援特別法) 분단으로 인한 상대적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통일 기반조성과 통일여건 마련 등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통일전 독일과 같은 접경지역을 지원토록 하는 법.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 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구역. 접도구역을 지정한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게 되어 있다. 접도구역 중 15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역 안에서는 ①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③죽목의 재식이나 벌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에 정한 구역 이외의 접도구역에서 위의 금지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기회(定期會) 어떤 회나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모임 또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한번씩 9월20일에 소집되는 회의. 지방의회에 있어서 회의 종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기회는 부의 안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년 1회 집회한다. 집회일은 시·도에 있어서는 11월 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1월 25일이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시·도의회의 경우 40일,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경우 35일로 한다.

정리해고제 ➡ p226 하단

정보공개제도(情報公開制度) 공공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행정기관의 게시 의무를 명시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6년에 정보공개법이 입안되었고 1974년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보다 확장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입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보접근, 유포, 인쇄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가 존재해 제도의 정착이 어려웠으나, 최근 정보통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산업(情報産業) 넓게는 정보를 생산·유통·판매·서비스하는 산업군, 좁게는 컴퓨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산업군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광의의 정보산업과 구별하여 정보처리산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광의와 협의의 구별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정보산업이라고 하면 대체로 광의의 산업군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해고제(整理解雇制)

정리해고란 경제적·기술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를 통해①사용자가 해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산업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구를 개편하거나 작업부서를 폐쇄했으나 근로자를 타부서로 전직시켜 사용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을 때에만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왔으나 1998년 2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다.

사측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감량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나 노동계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극단적인 생존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998년 여름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둘러싼 사용자와 노동자의 마찰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등 현실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인프라스트락처(Information Infrastructure)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가 결합해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infrastructure (사회·경제활동의 유지·발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반)를 말한다. 앞으로의 정보화사회에서는 현재의 수도나 전기 등 공업 인프라스트락처를 대신하여 이것이 중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일본 전신전화회사(NTT)가 개발하고 있는 INS(고정정보통신 시스템)가 그 대표적인 예.

정보 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①기존의 전산선처럼 광(光)케이블을 깔고 이를 통해 각종 정보를 고속 질주시키는 21세기 정보 사회의 기간망(基幹網). ②일명 '꿈의 정보 통신망'이라 불리우는 이 시스템은 세상을 바꾸는 신세기, 신세계 창출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③우리나라도 'Information Superhighway' 구축에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정보화 사회(情報化 社會) 유목사회·농경사회·산업사회에 비교되는 개념으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이용하는 사회. 즉,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컴퓨터로 가공·처리한 정보를 손쉽게 생활에 활용하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화책임관 → CIO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160호, '80. 9. 24)' 에 의거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이 임직원이 공무로 해외에 여행하는 경우 항공사에 항공권 발급을 의뢰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 이는 아국항공 산업을 보호하고 외화유출을 방지하며 원활한 항공권 발급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새로이 제정된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326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96.4.1일부터 GTR제도의 적용이 완화되었음.

정수지(淨水池)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송수하기 전에 저장해 두는 곳. 통상여과지 밑의 지하에 위치하며 살균을 위하여 염소가 주입되기도 한다.

정족수(定足數) 합의체기관이 활동하기 위해 합의체 구성원의 일정수가 회의에 출석해야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 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지방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⅓이상이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다.(지방자치법 제55조) 따라서 회의 중 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해야 하며, 정족수에 미달한 의사·의결 등은 무효이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정지시거(停止視距) 차선(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차도를 말한다)의 중심선상 1.0m 높이에서 당해 차선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15㎝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당해 차선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 운전자가 장애물을 보고 정지할 수 있는 시거.

정차대(停車帶) 주로 차량의 정차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차도부분.

정책 델파이(Policy Delphi) 델파이란 용어는 옛날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성지의 이름으로, 미국의 Rand연구소가 미래 예측을 위해서 처음 사용하였다. 즉 전문가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단적 토의를 하게 되면, 집단토의의 약점(전문가의 자존심에 따른 고집문제 등) 때문에 좋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집단토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도록 하고(서면으로 정책대안 제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각 전문가들에게 회람시켜 각자가 다시 자신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며(반복성과 환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가들간에 합의되는 정책대안을 도출해 냄으로서 작업이 완료된다.(합의)

정책분석(政策分析) 정책대안의 체계적인 탐색·평가와 대안의 선택에 관한 전략. 즉 정책분석은 정부의 장래 행동 지침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제에 있어서 당면하는 문제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자료·지식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이 선택될 수 있게 하는 창의적·쇄신적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정책분석은 정책결정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정책분석의 기본적 역할은 결정권자가 대안선택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정책분석은 정책의 사전적 검토로서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 대안(수단)의 논리적 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초점을 두고 있다. 목표달성이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데는 목표·수단의 연쇄관계가 명확히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체성(正體性) 사전적 의미로는 "본래의 성질" 혹은 "본래의 가치"를 말하며 학문적 용어로는 "세계관, 가치관이 정립된 주체의식" 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 의미로는 전통적 뿌리의식을 가지면서 사회 변도에 주체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뜻함.

정크본드(Junk Bond) 미국 속어로 '쓰레기, 폐물' 등을 가리키는 정크(junk)라는 말의 뜻처럼 투기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채권, 국내 신용평가 회사들의 경우 신용등급 BBB이상을 투자등급, BB이하를 투기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신용등급이 낮은 만큼 돈을 떼일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손님'을 끌기 위해 정상적인 투자등급의 채권에 비해 높은 금리로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 속개, 휴회, 재개(停會, 續開, 休會, 再開) **정회**는 개의된 회의를 진행 중 사정에 의하여 중단하는 것으로서 정회여부와 시점결정은 의장(위원장)이 직접하거나 의원(위원회)의 동의와 의결로써 하며, 정회 후 속개를 하지 못할 경우 24:00에 자동 산회된다. 그리고 **속개**는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요건상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필요하다. **휴회**는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 회의를 열지 않는 것으로서 휴회의 사유는 회기 중 위원회 활동, 각종행사 등이며 회기중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회 결의없이 당연 휴회된다. 또한 **재개**는 본 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재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

제동반응시간(制動反應時間) 운전자가 제동을 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하고 발을 브레이크페달에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

제로베이스 예산(Zero-Based Budget) → 영기준 예산

제4차산업/제5차산업(第4次産業/第5次産業) 산업구조 전환과 관련, 최근에 제3차산업이 주목되고 있다. 제3차산업이란 물적 생산에 관계되는 제1차산업·제2차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포함하며 성질이 매우 다른 산업을 일관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제3차산업을 몇 개로 재구분하는 것이 산업정책 등에서 효과적이라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제3차산업을 상업·금융·보험·수송 등에 한정하고 제4차산업으로서 정보·의료·교육서비스산업 등 지식집양형 사업을 묶고 제5차산업은 취미·오락·패션산업을 묶는다는 생각이다. 또 제2차산업과 밀착된 기기(器機)의 유지·보수 등의 산업을 2·5차산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확정된 개념은 아니다.

제3섹터(The Third Sector) 제3섹터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독립적으로 만든 합동법인 형태의 기구를 지칭하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함. 공공과 민간이 별도의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3섹터를 민관합동방식이라고도 함. 법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지자체나 공기업과 민간 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상법 혹은 민법상의 법인. 즉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로 구성된다고 해도 상법이나 민법상의 법인이 아니면 제3섹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함. 제3섹터는 제1섹터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이라

하고 제2섹터를 민간기업 등의 민간부문이라 하는 데에서 공공도 민간도 아닌 다른 부문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용어. 제3섹터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민자유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민간자본의 활용방안이 구체화되면서 도입된 여러 가지 방식중의 하나. 즉 제3섹터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민간 참여의 다양한 형태중의 하나이고 민자유치를 실현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유사한 선진국의 사례로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3섹터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공사 혼합기업, 일본의 제3섹터, 프랑스의 혼합경제회사, 미국의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한편 미국에서 제3섹터의 개념은 재단, 교회, 노조 등 비영리 또는 비정부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3섹터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 등이 있으며 모두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기업 방식임. 제3섹터의 방식은 대부분 BOT(건설-운영-기부 채납)방식으로 추진함.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 출자하여 법인을 건립하고 그 법인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자금조달과 건설시공 그리고 일정기간동안 사후 관리 운영하여 투자수익을 실현한 후에 정부에 그 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결국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사업전반을 공동으로 작업하게 됨. 제3섹터 방식은 공공 부문의 영향력과 행정력 그리고 민간 부문의 자본과 경영력, 기술력 등의 장점을 잘 살리고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방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보고 ①제안설명 :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의안을 심의할 때 의안심사 과정 중 처음에 행하는 것으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이유는 의안의 제안자가 의안에 대한 핵심과 취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효과적인 의안심사를 행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다음의 요령에 의해 하는 것이 좋다. 첫째, 자기가 제출한 의안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것인가, 즉 의안의 목적을 의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킨다. 둘째, 현재 상태로는 이러이러한 점이 불합리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간략히 설명한다. 셋째, 자기가 제출한 의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의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상태로 개선될 것이라는 비젼(vision)을 분명히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제출한 의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파생가능한 단점이나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고, 그러한 단점을 이러저러하게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제안설명이 될 것이다. ②검토보고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에 전문위원이 당해 의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는 것이다. ③심사보고 :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소관위원장이나 간사 등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서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 심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제2금융권(第二金融圈) 은행을 전형적 금융기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 밖의 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단자회사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 은행은 간접금융인 데 비해 제2금융은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인 경우가 많다.

제2의 산업혁명(産業革命) 20세기를 전후하여 산업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된 것. 이에 따라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달되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2차대전을 거치면서 군사기술·전자합성화학공업이 현저하게 발달되었다.

제품차별화(製品差別化) 종래의 제품과 다른 특이성을 추구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호를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 제품차별화는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어느 정도 보급되고 기본수요가 충족되었을 단계, 즉 제품의 라이프사이클로 보아 성장기 이후에 품종수요를 자극하는 선택적 추구를 통해 전개된다. 특정 품종에 수요자의 선호가 쏠릴 때 이론적으로는 일종의 독점적 시장지배를 기업에 보증하고 기업은 그에 의해서 경쟁에서 이탈하여 가격결정의 자주성을 발휘하며, 또 판매경로의 설정과 그 통제를 경쟁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자의 선호는 단지 경제적 요인에만 달린 것이 아니고 다분히 심리적·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제품차별화의 정책 유효성도 경제외적 제요인과의 대응관계에서만 파악된다.

조류(藻類) 일반적으로 수중에서 독립영양 생활을 하고 동화작용을 하는 하등 식물군. 조류에는 단세포에서 고착성의 분화된 종류에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으며, 연두벌레 식물·황색식물·남조식물·갈조식물·홍조식물 등이 포함되며, 생육하는 장소에 따라 해조와 담수조로 나눌 수 있다.

조리(條理) 조리는 사물의 성질·순서·도리·합리성 등의 본질적 법칙.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칙·공서양속(公序良俗)·사회통념·신의성실·사회질서·정의·형평·법의 체계적 조화·법의 일반원칙 등의 명칭으로 표현되는 일도 있다. 즉 완비된 성문법이라도 완전 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리는 이를 보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조세의 소멸시효(消滅時效) 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 역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지방세의 징수권의 시효에 있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없는 것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조직관리(組織管理) 조직체의 관리작용의 하나로서 조직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직을 형성하는 작용. 현대는 조직의 시대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 조직의 우열에 달려 있다. 조직은 전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의 기능 또는 부서를 배치하고 각자의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국가의 통치작용은 행정조직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능률적인 조직의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그 나라의 행정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행정운영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조정의 문제이다. 각 국에 있어서 행정개혁의 목표는 조정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조정은 한 집단의 노력을 질서있게 배치하여 행동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중요부분이다. 때로는 행정수요에 행정조직이 적응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행정조직의 일반원칙으로서는 ①조직통일의 원칙 ②지휘통일의 원칙 ③목적확립의 원칙이 있는데, 특히 행정조직은 사회 목적에 항상 적합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조직도 수차에 걸쳐 개편되어 왔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종가세(從價稅)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제도.

종량세(從量稅)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내국세 또는 관세. 종량세로 되어 있는 수입물품의 경우 세관검사직원은 수입물품의 수량·중량·길이 등을 확인하여 수입세율표 상에 표시된 해당 품목의 세액을 적용하게 된다.

종업원 지주제도(從業員 持株制度)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사주(株)의 보유를 권장하는 제도. 회사로서는 안정주주(安定株主)를 늘리게 되고 종업원의 저축을 회사의 자금원으로 할 수 있다. 종업원도 매월의 급여 등 일정액을 자금화하여 소액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고 회사의 실적과 경영 전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8년 11월에 제정, 공포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종업원에 대한 신주의 10%우선배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제도적으로 보급시키고 있다.

종주도시(宗主都市) 1950년대 미국 도시학자들에 의하여 쓰인 말. 한 나라의 많은 도시중에서 인구규모나 기능 등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여타 도시들을 지배하는 현상.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도시화과정 중에서 이같은 도시 불균형상태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며 특히 종주도시는 시민소득이나 소비성향, 정치활동의

집중, 그리고 고용기회 등이 이같은 도시에 편중되어 도시간의 이중구조 현상을 나타낸다. 특히 세계 제2차대전후 독립한 나라들의 수도는 기능면에서 독점하고 규모면에서 이상비대현상을 나타냈으며, 반면 지방도시는 전혀 발전을 못하고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것 등이라 하겠다.

종합병원(綜合病院)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주로 입원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며,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둔 의료기관을 말한다.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Taxation On Aggregate Income, Global income tax)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 특징은 개인의 담세력(擔稅力)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 장점은 ①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최저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다. ③국가의 공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단점은 ①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②세원(稅源)조사로 인하여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이다.

종합재산세(綜合財産稅) 현재 토지에 과세하는 재산세는 물건별로 되어 있어 동일인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물건별 과세 대상을 소유주별로 변경,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종합재산 세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어디에 어느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현재 내무부가 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종합재산세제는 특히 부동산 투기의 핵심적인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재산세가 누진율 구조로 되어 있으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 과세대상별 세율격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추진중인 종합재산세 세율의 범위는 과세표준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0.5%, 최고5%로 하되 개인이나 법인·단체별로 유휴토지를 합산, 총세액을 산출하여 이미 부과된 일반재산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한다는 것.

종합정보통신망 → ISDN

종합토지세(綜合土地稅)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 과세하는 지방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가 10월16일부터 다음해 3월1일 사이에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한다. 토지의 과다보유와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아 자기안정과 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89년 5월 신설돼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과표가 시가의 10~20%선에 불과해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어려워 과표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과세대상토지별 세율은 ①주거용 토지나 대지·법인 소유 농지·임야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2~5%까지10단계 ②백화점·병원·호텔상가 사무용빌딩 등 영업용 건축물이 딸린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0.3%~5%까지 9단계 ③논밭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주가수익비율 → PER

주가지수 선물거래 ➡ p235하단

주간보호시설(晝間保護施設)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주거전용지역(住居專用地域)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주거지의 기능을 한층 강화, 순화한 지역·단독주택·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근린시설·노약자 시설·종교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의 편익성을 증대시키며 일반 상업시설·위락시설·공업시설 등은 일체 건축이 금지된다. 또한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이 명문 규정되어 있다.

주거지역(住居地域) 거주의 안녕과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거기능을 해치는 화재·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을 발생하는 건축물은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용도지역제는 이보다 더 세분화되었고 더 강한 행위규제를 하고 있다. 예로서 주거전용지구에는 소아과의사의 개업을 금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환자의 교통발생으로 소음이 생겨 주거지역의 아늑한 생활환경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주거환경개선(住居環境改善) 주거환경개선은 불량주택의 정비, 도시 전체의 기능회복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거환경개선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따라 도시 전체로부터 지구 단위, 개개 주택 단위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으며 과거 주택의 물리개선에 초점이 두어졌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환경개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시적 차원 내지는 단지 전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개선은 1)지구재개발(redevelopment), 2)지구개선(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3)지구보전(con-

servation)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도시재개발국제회의의 토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

1)지구재개발(redevelopment) 가장 협의의 주거환경개선 개념으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2)지구개선(rehabilitation) 건물의 신축을 포함하여 점진적으로 지구 개선하는 것이다.

주가지수 선물거래(株價指數先物去來) stock index futures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전체 또는 일부 주식의 가격수준인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다수의 회사 주식을 하나로 묶어 가중평균해 산출한 주가지수를 매매하는 선물거래로, 주가지수선물 1단위당 거래금액이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전체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를 거래하는 경우 시장 전체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소수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거래하는 경우 그 종목들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통화선물 등 다른 선물거래와는 달리 거래할 현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종결제 시 실물의 입출고없이 결재가 모두 청산거래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선물거래제도는 주가변동성의 증대와 주식투자의 기관화 현상 심화 등으로 인해 주가위험을 회피할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1995년 5월부터 주가지수 선물거래시장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선물거래대상은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 200개 우량 종목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주가지수(KOSPI) 200'이며 결제시점에 따라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등 4종류가 거래되고 매매단위는 5,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9월에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KOSPI 200지수 9월물을 거래한다고 할 때, 현재 KOSPI 200지수가 110인데 9월에 120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현시점에서 120이나 그보다 싼 값에 KOSPI200지수를 매입하는 것이 바로 주가지수선물거래이다. 그러나 베어링은행을 파산시킨 닉 리슨도 닛케이225를 선물거래하다 투기로 빠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주가지수선물거래 가운데 약 80%가 투기거래이다.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개인이나 기업, 기관투자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3,000만원의 최초 개시증거금을 증권사에 예치하면 원하는 종목의 주가지수선물을 사고 팔 수 있고 투자 신탁사를 통해 간접투자도 할 수 있다.

3)지구보전(conservation)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과 현재는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는 악화될 염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역에 대해 적용하는 수법이다.

주당 순이익 → EPS

주력업종제(主力業種制) 3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2~3개업종 범위에서 주력업종을 결정한 뒤 주력업종에 포함되는 소수의 주력기업을 선정토록 해 여신관리·기술개발자금 및 공업용지 공급 등을 우대하는 제도.

주민간담회(住民懇談會) 정책문제 및 대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이해를 구하고,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과 견해를 청취하여 정책대안의 개발에 반영하는 쌍방향 행정이다.(Two-Way Administration) 도정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몇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부천시에서는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주민발안(住民發案) 직접민주제에 의한 직접청구의 하나로서 주민이 일정수의 연서로 지방의회에 대하여 조례제정·개폐의 청구를 하는 제도. 이것은 주민투표에 붙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최종결정을 내리거나 한다.

주민자치(住民自治) 단체자치와 함께 지방자치의 개념을 형성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지방자치는 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리로서 자치권을 가지는 것이지 그 권리가 국가의 승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그 지방의 주민 또는 대표자의 의사에 따라 행하는 것임. 주민자치는 주로 영국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주민의 자주·자율성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다.

주민투표(住民投票) 직접민주제의 하나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사항의 찬부(贊否)를 직접 주민들이 투표로써 결정하는 방법. 일반투표라고도 하며 미국에서 발전한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의회의 해산청구·의원 및 장·직원의 해직청구가 성립한 경우의 주민투표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의 제정에 관한 주민투표 등이 있다.

주민헌장(住民憲章) 주민이 향토를 사랑하고 자기들의 고장을 살기 좋고 행복한 지방으로 만들 것을 주민에게 요구하는 주민도덕이나 생활규범의 총칭. 우리나라에도 도민헌장, 시민헌장 등을 제정한 곳이 많다. 제정절차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호수 수질보전 환경기준 마련 환경처는 '90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14개 주요

호수에 대한 수질보전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고, 만수면적 10㎢이상의 대형호수를 대상으로 수질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었다.

①1등급 : 간이정수처리 후 식수로 쓸 수 있다. 팔당호·대청호·파로호·춘천호·소양호·청평호 등 6곳

②2등급 : 일반적 정수가 필요한 등급이다. 의암호·충주호·안동호·진양호·영산호 등 5곳

③3등급 : 고도의 정수 후에 식수로 사용되는 등급이다. 낙동강 하구둑 1곳

④4등급 : 식수원으로 쓸 수 없는 공·농업용수이다. 삽교호·아산호 등 2곳

주 전산기(主 電算機) 하나의 대형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작은 컴퓨터나 단말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소형기기나 단말기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작은 컴퓨터(mini 혹은 micro computer)와 단말기를 거느릴 수 있는 컴퓨터. 즉 main frame이라 부른다. 시·도청의 전산기에 산하 시·군·구의 개인용 컴퓨터가 단말기로 연결되어 있는바, 시·도청의 컴퓨터가 바로 주전산기인 것이다. 행정망용 주전산기는 미국 톨러런트(Tolerant)사에서 개발한 이터니티(Eternity)라는 컴퓨터로 톨러런트사의 기술이전을 받아 조립생산을 거쳐 한국형 독자모형으로 개발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성사·대우통신·삼성전자 및 현대전자 등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다.

주차(駐車) 차량이 연속하여 정지하는 상태. 차량이 승객기다리기·화물기다리기·화물의 적재·고장 그 이외의 이유에 의해 연속적으로 정지하는 것(화물의 적재를 위한 정지에서 5분을 넘지 않는 시간내의 것과 사람의 승강을 위한 정지를 제외). 또는 차량이 정지하고 차량운전자가 그 차량을 벗어나 곧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주거용 건물에 전세나 월세로 세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 3월 제정·공포된 법률. 이 법은 ①세든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며 ②임대 기간은 1년 미만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③임대기간이 없으면 입주 후 6개월이 넘은 다음에야 해약통고를 할 수 있고 ④임대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통고가 없으면 자연 연장되도록 하는 것 등이 골자. 이 법은 83년 말에 개정,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조항과 주택임대료의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84년부터 시행되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동 조항 가운데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는 서울·부산·대구·인천지역은 500만원, 기타 지역은 300만원을 한도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

료 인상은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이 경과했을 경우는 올릴 수 없고 1년 이상 2년미만 경과시에는 5%, 2년 경과했을 때에는 10%인상상한(引上上限)으로 하였다. 그러나 87년 대통령선거이후 나타난 집세 폭등 현상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89년 12월 30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공포되어 90년 2월 9일 그 보호법이 확정되었다. 개정법안의 주요골자는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의 절차에 있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②주택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것과 ③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도 특별·광역시는 1,200만원, 기타 지역은 800만원을 한다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Mortgage)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대출용 담보로 확보한 주택이나 부동산의 채권 또는 담보권을 전문 중개회사 또는 신탁회사를 통해 팔아 다시 대출자금을 확보하는 제도. 전문중개회사는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채권이나 저당권 담보로 증권(주택저당채권)을 발행, 일반 투자자나 투자기관에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즉 금융기관에는 장기대출에 대한 자금확보의 어려움을 담보채권의 매각으로 극복할 수 있고 주택 실수요자들은 주택구입자금을 저리·장기로 빌려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집 값의 20%만 있어도 집을 장만할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모기지(Morgage)는 금융기관이 주택관련 대출을 해준 뒤 담보로 잡은 저당권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 다시 자금을 조달해 대출재원으로 삼은 제도.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현재 은행이 한사람에게 대출하면 그 자금이 만기때까지 묶이는 것과 달리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게 된다.

주택할부금융제(住宅割賦金融制) 국민들이 주택자금을 쉽게 마련하고 주택업자들도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택을 살 때 할부금융회사에서 목돈을 빌린 뒤 몇년간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 갚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시행되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자동차나 가전제품 할부처럼 매입할 수 있으며, 은행보다 빨리 자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할부금융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35㎡(40.8평)이하의 완공된 주택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지원된다.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상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기 전에 자금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미납한 중도금의 일부도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소유자가 할부금융을 통해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에는 새로 산 주택 잔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법인임대사업자나 사원용 주택을 구입하는 법인사업자도 주택할부금융 이용이 가능하다.

주파수 공용통신 → TRS

주행세(走行稅) 승용차를 세워놓는 사람보다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비용을 더 물게 하는 방식. 교통혼잡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중인 주행세 시안은 휘발유특소세(교통세) 보험료 자동차세를 없애는 대신 주행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 휘발유에 부과하는 주행세 중 3분의 1은 교통세 명목으로 정부에 귀속되고 3분의 1은 자동차세 명목으로 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동차보험료로 충당되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시안. 이 시안대로 주행세가 도입되면 현재의 휘발유값은 약 107% 인상될 전망이며 휘발유를 구입하는 순간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된다. 따라서 승용차를 많이 사용할 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셈인데, 서울시는 주행세에 보험료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준농림지(準農林地)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 구체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의 농지와 준보전임지 등으로, 산림보전과 농림업 진흥을 위해 주로 이용하지만 기타 개발용 도로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국토이용관리법이 1994년부터 10개 용도지역, 7개 지구에서 5개 지역 5개 지구로 개편되면서 과거의 개발촉진 지역의 개간촉진지구, 경지지역의 비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의 준보전임지가 준농림지역의 용도에 새로이 포함됐다. 특히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금해야하는 행위를 토지형질변경과 대형 시설·건축물 건축, 폐수 과다 배출 등으로만 제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풀고, 1994년부터는 준농림지역에서 3만㎡(9,074평)범위에서 주택단지 건설을 허용해 과잉개발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준농림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27.2%인 27,021㎢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이 국토의 13.8%인 13,709㎢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되는 셈이다.

준비예금제도(準備預金制度) 지불준비제도라고도 한다. 은행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강제적으로 예치시키고 그 비율을 올리거나 내려 통화량을 조절하는 제도. 예금준비율을 조절하면 은행이 운용하는 자금량을 증감시킬 수 있으므로 금리정책, 공개시장 조작과 함께 금융의 유력한 양적조절수단이 된다.

준설(浚渫) 수저(水底)의 토사나 암석을 파올리는 일. 메인 개천을 파내는 일.

준예산(準豫算, Provisional Budget)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내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새 회계연도 예산을 법정기한까지 의

결해야 하는데 만약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비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등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집행된 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중금속(重金屬) 경금속에 상대되는 용어로 비중이 4이상의 금속. 카드뮴·납·크롬·동·아연·수은·비소·철·망간 등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금속과 산화물의 화합물로 존재한다. 생물체 내에도 미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축적 또는 다량의 섭취 등이 있으면 중독증상을 일으킨다. 경증인 경우라도 회복이 곤란하고 중증인 경우는 단시간에 사망할 수도 있다. 공장배수 또는 배기가스에 관해서는 배수기준·배출기준·환경기준 등에 의해 허용농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처리법으로는 침전법·이온교환법·흡착법 등이 이용된다.

중복민원(重複民願)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시정요구 등에 관한 고충민원서류 (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2개이상의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을 뜻함. 타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인의 서류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에 이첩되는 중복민원서류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때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반복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이미 2회이상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으면 내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중수도(中水道) 산업배수·생활배수·하수 등을 처리. 순환이용하는 시설.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 세척용수나 살수용수(撒水用水)등 신체에 직접 닿지 않는 잡용도에만 쓰이기 때문에 '잡용수' 라고도 한다. 인구과밀지대에서 상수도의 공급력이 한계에 이르거나, 하수도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물의 순환이용에 의해 상수의 소비와 하수의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

중심업무지구 → C.B.D

중앙집권(中央集權) 국가의 행정제도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권력이 중앙에 집중하는 것. 보통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통치의 권능이 중앙에 통일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상의 권한이 중앙관청에 통일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중앙집권에 반대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는 지방분권이 좋다고는 하지만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른 국가사무의 증대 및 그 신속한 처리 요구는 중앙집권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세계 각 국에 있어서의 공통된 현상이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역시 이의 한 표현이며 이를 신중앙집권주의(new centralization)라고도 한다.

지가검증제도(地價檢證制度) 지가검증제도는 94년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하는 절차이다. 지가검증은 당해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가격비준표 선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가 인근 토지의 지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계획(地區計劃) 도시전체의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 목표와 방향을 그 지구가 갖고 있는 국지적 여건에 적합하게 수용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도시내 각 지구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도시환경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계획.

지능(知能)아파트 ①현관에서 주방까지 전 자동화되어 있는 지능지수가 높은 첨단아파트. ②인텔리전트 아파트(intelligent apartment)라고도 한다. ③각 가구의 가정 자동화(HA)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살아 숨쉬는 아파트' 의 칭호를 받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 → GIS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법정사업은 수도사업(간이수도사업 제외)·공업용 수도사업·궤도사업·자동차운송사업·가스사업·기타 부대사업 등이다.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공사(地方公社)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그 행정운영에 협력케하기 위해 스스로 출자하여 설립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그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을 말함.

지방양여세(地方讓與稅) 지방양여세란 국세로서 징수하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양여하는 세. 국가가 국세로서 징수한 세를 지방에 배분하는 것에는 지방양여세와 지방교부세가 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행정에 필요 경비의 재원보장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간

의 재원조정제도이다. 따라서 재원부족단체에만 내국세의 일정비율 (현재 13.27%)을 교부하지만, 불교부단체에는 교부되지 않는다. 이것과는 달리 지방양여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과세의 편의, 기타 사정에서 징수사무를 국가가 대행하는데 불과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리고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재정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도로양여세 등 지방양여세제도의 도입을 기도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權限)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한계는 법령의 범위내의 사항이여야 하고, 집행기관에 속하는 사무가 아니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어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①의결권으로서 조례의 제정·개폐 ②예산심의·확정 ③결산의 승인 ④법정 이외의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가입금 등의 부과·징수 ⑤기본재산과 적립금의 설치·처분 ⑥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⑧예산 외의 의무부담과 권리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기타 법령에서 정한 권한에 있다. 그 밖의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정·부의장, 의원내부자체의 선거 등이 있으며 당해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결산 승인권 등이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 Local Government)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가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위.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영국에서 발전된 영미형과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형으로 대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으나 한국전쟁으로 52년에 이르러서야 지방총선을 거쳐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그 후 61년 5.16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어 그 흐름이 중단되었고, 89년 5월 24일의 여야 합의로 91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그리고 마침내 95년 6월 27일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과 광역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실시됐다.

지방자치단체조합(地方自治團體組合)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의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그 내부기관·조합비·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약(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동처리되는 사무가 행정사무냐, 기업경영 사무냐에 따라 행정사무조합과 기업사무조합으로 나눌 수 있고, 공동처리 되는 사무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인가에 따라 일부사무조합과 복합사무조

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재정자립도(地方財政自立度)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내역을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의 4가지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일반회계 세입총액 가운데서 차지하는 백분비. 이러한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부문에서 자주 통용되는 지표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채(地方債)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지방채는 일시적인 세입부족에 충당하고 그 회계년도 안에 상환하여야하는 일시 차입금과 구별된다. 지방채는 모집·매출·교부 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기채할 수 있고 할인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상환의 경우 추첨에 의할 수 있다.

지방행정(地方行政)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①국가행정으로서 국가가 설치하는 지방행정 관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행하는 국가행정 ②국가행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그의 기관 또는 공사의 단체 등에 위임하여 행하는 것(위임행정) ③지방자치단체가 자기기관에 의해 자기의 부담과 책임아래 행하는 행정(자치행정).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이라 할 때에는 이 자치행정을 의미할 때가 많다.

지방행정기관(地方行政機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에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

지방행정정보은행(LAIB) LAIB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민원인 사이에서 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어 행정낭비를 줄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대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개가능한 행정정보와 유관기관, 단체, 기업, 대학 등이 갖고 있는 공공정보, 산업정보, 생활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불준비제도(支拂準備制度)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케하는 제도. 중앙은행이 지불준비율을 인상, 혹은 인하함으로써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억제 혹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준비예금제도(準備預金制度)라고도 한다.

지상권(地上權) 건물 공작물 수목(樹木)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자 용익(用益)물권에 속한다. 타인의 토지를 빌어서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법률관계에는 지상권 설정 외에 임대차계약 (임차권)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후자에 의하는 경우가 많고(지주에게 유리)지상권 설정은 드물다. 지상권은 계약외에도 양도·상속에 의해 취득되기도 하며 양도성·임대성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엔 그 설정자는 언제나, 또 지상권자는 일정 조건하에 상대방에 대해 지 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상물을 유지하거나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지료(地料)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나 그 약정을 등기하면 지상권의 내용으로 되어 물권적 효력이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이 말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70년대 초 생태학자에 의해서라고 한다. 확실한 내력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 「성장의 한계」(1972년)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이 말이 등장한 배경을 간략히 밝힌 바 있다. 1974년의 국제연합과 UNCTAD 공동개최의 선언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용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환경관계자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었던 이 말은, 1980년의 세계 자연보전전략 IUCN(국제 자연보호연합), UNEP(국제연합 환경계획), WWF(세계 자연보호기금) 공동제작으로 공식 개념이 되었다. 여기서는 생태계, 생명계의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확보가 거론되었다. 그 후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ing) 등 유사한 단어들이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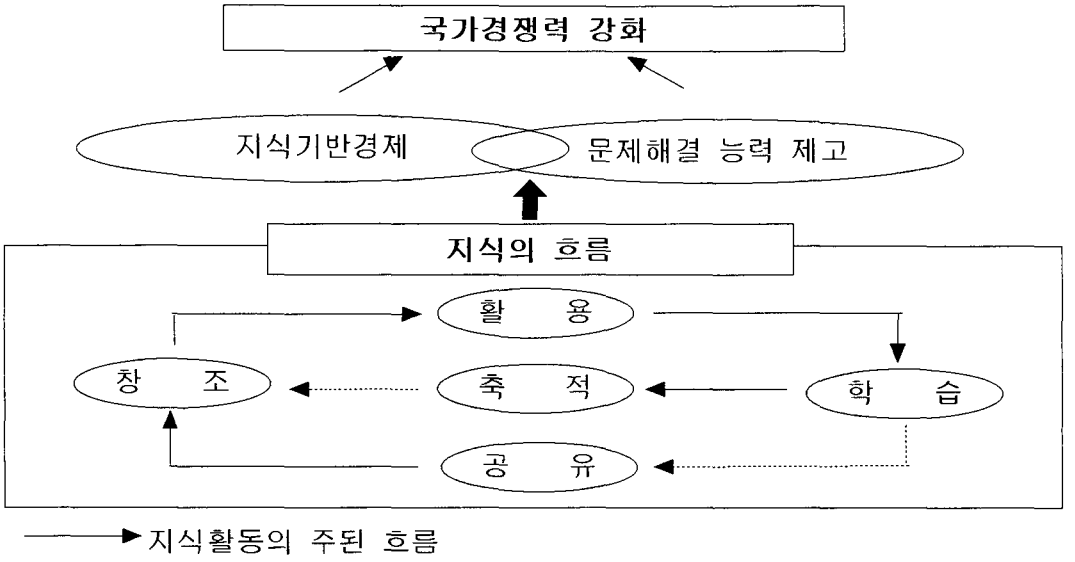
지식(知識) 「제2의 건국」 운동에서 주창하는 '지식'이란 어떤 의미일까. 학교강의나 책 그리고 정형의 학습을 통해 얻어진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각자의 분야에서 창의적 발상으로 업무를 개선·개발 또는 혁신시킴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제적 부가가치나 조직의 발전 또는 새로운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즉, 21세기 현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지식'과 「제2의 건국」 이념에서 채택한 '지식'은 이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편적인 '지식'의 개념이나 경제적 부가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폭넓은 '지식활동'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첫 번째로 사물의 존재 자체에 관한 지식(사물지), 사실적 명제에 관한 지식(사실지),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방법지) 등이다. 여기서 가장 큰 가치 창출을 해 내는 것은 방법지이고 이것은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흥망을 결

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두 번째로 지식을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도 구분할 수 있다. 암묵지(暗默知)란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지식을 의미하고, 형식지(形式知)란 암묵지가 문서나 매뉴얼처럼 외부로 표출되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즉, 현대가 요구하는 지식은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암묵지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형식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지식경영(知識經營) 지식경영에 대한 탐구노력이 단기간에 많은 각광을 받았지만 아직도 지식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 방법론, 전략, 성공요인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비록 향후의 노력에 따라 지식경영의 실체가 더 명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식경영은 실체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경영의 대상이 너무 많으므로 지식경영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신약을 개발하는 실험실, 공장의 원가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직원들, 기업의 여러 부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등이 지식경영의 대상이며 동시에 수단이 될 수 있다.(Stewart, 1997a). 즉, 지식은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에 관련된 모든 무형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도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같이 지식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식경영은 조직이 지니는 지적자산뿐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 내부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영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포스코 경영연구소, 1998a). 따라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니치 시장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거나 기술적인 진보를 활용하는 것도 지식경영이다. 능률적 운영을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도 지식경영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고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지식경영이다.(Prusak, 1997)

지식국가(知識國家) 지식국가란 구성주체들이 지식을 보유·활용하고, 학습·공유·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지식을 배양(knowledge culitivating)하는 국가이다. 즉,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시스템과 문제 해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산업, 기업, 개인 등 개별 주체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창조·활용하고 주체들의 지식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지식이 국가내에서 그리고 타 국가와의 상호작용하에 창조, 활용, 학습, 축적, 공유된다. 또한 축적된 지식이 풍부하고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제도, 가치, 문화 등)가 정비되어 있는 나라가 지식국가이다.

지식국가의 개념도



지식기반경제(知識基盤經濟) ➡ p247 하단

지식기반산업(知識基盤産業)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여기에서 지식이란 기술과 정보를 포함한 지적능력과 아이디어를 총칭한다. 따라서 첨단기술산업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1998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의 35% 정도를 지식기반산업에 의해 얻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식인(知識人) 지식인의 유형은 운동가적·전문적·지성적 지식인의 세가지가 있다. 현재 우리는 「운동가적 지식인」은 많은데 비해, 국가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문가적 지식인」과 「지성적 지식인」이 부족하다. 전문가적 지식인은 최근 언론에서 부각되는 「신지식인」에 해당된다. → 신지식인

지식인의 분류

구 분	내 용
운동가적 지식인	· 지적 비판가들로서 이념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재구성 · 현실 참여에 적극적이며 많은 경우 지적 권력을 지향
전문적 지식인	· 특정분야에 대한 해박하고 정밀한 지식 보유 · 지성적 지식인에 비해서는 사고의 범위, 경험의 폭이 상대적으로 협소 · 현실 참여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박약
지성적 지식인	· 전문적 지식을 포함하여 철학 및 역사에 대한 독자적 관점을 보유 · 폭넓은 사고, 경험을 통해 지식을 재해석하는 능력보유 · 현실문제에 대해 신중한 참여적 자세 견지

지식정부(知識政府) 국가사회시스템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이 창출·확산·응용될 수 있는 정부형태이며 지식정부의 조건과 종류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로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하면서 학습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직인 **학습정부**와 두 번째로 인력 및 예산의 제약 속에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내부

지식기반경제(知識基盤經濟)

지식기반경제란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식 자체의 상품성이 인정되어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제사회로서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첨단기술·지식집약 서비스의 비중이 증대되는 등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화 되는 과정이다.

90년대이후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경제활동이 글로벌화되고 지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네덜란드·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조속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OECD·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도 세계경제 흐름에 뒤지지 않고 21세기 선진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새로운 성장원천을 지식에서 찾는 한편 지식기반경제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주요정책과제** ◇

① 지식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과제 : 창의적인 인재양성체제 및 과학기술 시스템의 정립

② 지식의 유통·확산을 위한 과제 : 정보인프라의 구축

③ 지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제 :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지식경영의 확산 등

④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지식이 효율적으로 창출·유통·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유인체계가 정착된 **기업가적 정부**이며 끝으로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보의 공유와 활용, 조정과 통합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구비한 **전자 정부**이다.

지식집약형 산업(知識集約型産業) 고가공도산업이라고도 한다. 연구개발, 디자인, 전문적 판단 등 지적활동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 구체적으로는 ① 연구개발 집약산업(컴퓨터, 항공기, IC, 원자력관계 등) ② 고도 조립산업(공해방지기기, 교육기기, 공장 생산주택 등) ③ 패션산업(고급의류, 주택용 가구류 등) ④ 지식산업(정보처리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의 4개의 그룹이 있다.

지식행정(知識行政)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21세기 국가들의 최대 생존전략은 '지식국가의 건설'이다. 지식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지식정부 구현이 필요하고 지식정부는 또다시 지식행정의 실현을 통해 달성된다. 여기서 지식행정이란,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 등 지식활동을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행정은 정보기술기반이 바탕이 된다. 즉, 지식행정이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능적 정부가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행정관리기법과는 달리 행정공무원의 창조적 능력은 지식사회에서 경쟁력의 핵심이자 지식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유행되었던 혁신방법으로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과 구분된다. 리엔지니어링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프로세스를 단번에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식행정은 장래의 기회와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활동의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모성은) → 리엔지니어링

지역격차(地域隔差) 독립한 국가 안에서 국토공간의 조성은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지역과 지역들 사이에 시민의 소득이나 생활수준의 차이가 생길 경우 쓰이는 말. 지역계획에 있어서 그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이나 지역특성에 알맞는 산업과 자원이용계획을 세우게 되며, 따라서 자연히 지역간 분업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경제적 조건이 유리한 지역의 소득이 높게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의 소득이 낮게 된다. 이같은 현상을 비교할 경우 그 차이를 지역간 소득격차라고도 한다.

지역계획(地域計劃) 국토의 구성요소인 지역공간의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계획 단위인 지역의 물리적 구분은 나라의 자연적 조건과 행정체제 그리고 사회경제(기술포함) 수준에 따라 단위를 인위적으로 설정한다. 지역계획의 뜻은 그 지역의 당면 과제와 장래 문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말하며 그 작업 과정을 계획활동(planning activity)이라 한다. 이때 마련된 대안을 채택하였을 때 그 안을 계획(plan) 이라 한다. 이같은

계획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공공체(polity)가 담당하며, 따라서 지역계획은 공공계획이다. 공공계획으로 결정하는 데는 반드시 법적 절차·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 계획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정부가 세우는 지역 계획의 목적은 대개 세 가지로 요약·설명할 수 있다. ①그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efficeieny) ②지역 주민의 평등성(equity)유지 ③개발 정책의 효과성 제고(effectiveness).

지역사회(地域社會) 지역 사회 개발이 수행되는 기본 단위. 일반 대중 사회(mass society)와는 다른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Hillery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내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통의 유대감이 이룩되어 있는 인간집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Cook는 "공동생활의 배경이며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정의에는 학자들에 따라 정의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지역사회가 인간집단이며 이러한 인간집단이 형성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정신적 물질적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일치되고 있다.

지역지구제(地域地區制) 현대「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규정된 도시내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여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따르는 기능간의 상충을 미리 막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이용의 규제방법. 그 이유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기술(건축 및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도시지역의 평면적 면적개념이 크게 변한데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한 건축물이나 공장 등의 기능이 인접한 토지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미리 상충성(相沖性)을 없애고,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설계·배치함으로써 시민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또는 블럭단위별로 그 세부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최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거 지역 안에서 고밀도, 저밀도 건축형태 등 필지별 세부(細部)지역제를 채택한 시(市)도 많다. 그 이유는 도시의 구조가 기능면에서 그만큼 세분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마치 현대 경제구조가 더욱 더 전문적이고 기능적으로 분업화되어 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지역지구제의 발상은 1800년대 말 영국을 비롯한 구미 각 국에서 비롯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New York시에서 1916년에 용도지구 (zoning ordinance)에 대한 시 조례를 채택한 데서 시작하여 1925년에는 미국 연방정부(상무성)에 의하여 주표준지역제 법령(Stav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을 발표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는「도시계획법」제 17조에 의거하여 ①주거지역, ②상업지역, ③공업지역, ④녹지지역 등 4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역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 전국 단위로 집계되는 국내총생산(GDP)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 시도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생산측면에서 집계한 수치다.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국방부문, 수입관세 등은 지역단위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전국 합계치에서만 계산된다. GDP와는 이용기초자료,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4~5%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 GRDP는 생산측면에서의 집계이기 때문에 발생된 소득이 어느 주민에게 얼마만큼 돌아갔는가를 나타내주는 분배측면의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해당지역에서 생산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만을 나타낼 뿐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규모, 즉 1인당 분배소득을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도내총생산량의 비교가 곧바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1985년 이후 GRDP를 작성해 왔으나 지역감정 심화 등의 우려로 공개를 미루어 오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 RRC

지장물(支障物) 공공사업용지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공작물시설·입죽목·농작물 기타 물건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

지적공부(地籍公簿) 토지대장·임야대장·임야도·수치지적부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도면의 지적 전산파일 등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문화·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지주회사(持株會社)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생산 영업 등 자체 사업을 벌이면서 특정계열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사업지주회사'와 영업활동 등은 하지 않은 채 순수하게 계열사 경영권만을 지배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나뉜다. 미국의 시티코프(CITI CORP)가 은행과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대표적인 순수지주회사로 꼽힌다. 국내에선 재벌의 경제력 독점 등을 우려해 법률로 금지돼 있다가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4월부터 순수지주회사에 한해 설립이 허용됐다.

지체상금(遲滯償金) 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즉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이행기에 있어서 그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본래의 급부와 아울러서 청구하는 지연배상인 것. 따라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인 보전배상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보전배상의 성격을 가진 계약보증금과는 서로 경합하여 존립할 수 있는 것이

다. 「예산회계법시행령」은 계약서의 필요적 명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관례에 따라 지체상금은 매1일 마다 지체부분의 대가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약정하고 있다.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이를 지출부 담행위라는 말로도 표현. 지출원인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의 결정행위, 급여와 기타 급부의 지출 결정 등이 포함된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에서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때문에 법령·조례·법규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체의 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

지출확인관(支出確認官) 중앙관서 통합지출경비의 지출을 통합지출관에게 요구 및 관서운영경비의 지출과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고금 집행기관별로 설치된 회계관직이다.

지하경제(地下經濟) 세금을 비롯하여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회피, 보고되지 않는 경제. 그 중에는 범죄·마약·매춘·도박 등 위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등 2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으면 지하경제가 확대되어 간다. 지하경제는 보통 세무서의 체크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되는 부분이 많아 캐시 이코노미(cash-economy), 또는 위법성을 들어 블랙 이코노미(black-economy)등으로도 불린다. 최근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탈세의 확대로 보고 있는데 이 경제의 파악이 문제로 되고 있다.

지혜경영(知慧經營) 기업이 내부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업무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암묵지)을 기업성과와 연결시키기 위한 지식경영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기업운영에 있어 객관적 지식보다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바탕된 지혜(암묵지)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지혜경영은 새롭게 나타난 경영기법이 아니라 과거에도 개인 혹은 조직별로 다양하게 활용되어온 개념이며 그 사례를 들면 ① 2차 대전 후 일본과 독일의 재건 작업 : 빠른시간 안에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엔지니어, 경영자, 과학자들이 전국에서 각 분야의 우수 성공사례와 전문 인력들의 경험을 모음. ② 북유럽 기업들의 세대차 극복과 활용 : 은퇴한 경영자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③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별 혁신 내용 응용 : GE는 중국에서의 기업 진출 경험을 러시아 시장에도 응용 적용함

직무감찰(職務監察)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대인감찰활동을 말함.

직불카드(直拂카드, Debit Card) ①은행이 구좌 개설 고객에게 발행하는 직접 인출이 가능한 현금 카드(cash card). ②즉, 은행 거래자가 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 요금을 결재하면 즉시 본인의 예금 잔고에서 판매점의 계좌로 대금이 넘어간다. ③이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나라도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실현되게 된다.

직업공무원제(職業公務員制) 공직에 종사하는 것을 일생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하여 긍지와 명예심을 갖도록 조직·운영되는 인사제도.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①공개경쟁을 통한 채용과 능력을 토대로 한 승진,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등과 같은 실적주의 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 ②유능하고 젊은 사람을 공직에 끌어들이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공직의 위신과 그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횡적 전입을 가능한한 막아야 한다. ⑤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 ⑥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적절한 연금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직업안내사업(職業案內事業)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사업은 무료와 유료사업으로 구분하며 무료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노동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유료사업은 누구나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비 영리법인이 하는 사업을 제1종 직업안내사업, 유료사업을 제2종 직업 안내사업이라 한다.

직위해제(職位解除) 공무원이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휴직과는 달리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의를 가진 보직의 해제. 직위해제의 대상자는 ①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으나 즉시 면직하기가 부적당하거나 공무원으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②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④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게 되어있다. 그

러나, 위의 ①항 및 ④항의 자가 직위 해제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

직장폐쇄(職場閉鎖)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항수단으로 기업주가 취할 수 있는 실력행사로 기업주는 직장폐쇄기간동안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휴업과 다르다. 휴업시에는「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60%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노동조합법」에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 들어간 이후에는 기업주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진돗개 하나 진돗개는 북한의 무장간첩이나 특수부대원 등이 침투했을 경우 취해지는 정규전 대비 개념의 단계별 조치를 말한다. 대간첩작전의 최고 경계령으로 군뿐만 아니라 경찰도 동원된다. 평상시엔 '진돗개 셋'이 발령돼 있는 상태이고 무장간첩 침투의 가능성이 높을 때는 '진돗개 둘'이 발령돼 군경이 비상 경계에 임하게 된다. 무장간첩이 실제로 침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가장 강력한 경계조치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다.

질문(質問) 국정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으로 질문 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어 있으며 의사로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의사일정에 등재된 후 행할 수 있다.

※ 서면질문 :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과는 별도로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의(質疑) 의사진행 가운데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하여 제안자에게 문의하는 것. 이는 의제로 상정된 안건에만 국한시켜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은 가급적 질의하지 말아야 한다. 단 예산안의 중요안건은 그렇지 아니하다. 질의는 사전에 답변자를 지정한 발언 통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의 방식은 한 의원이 질의할 것을 전부 물은 후 답변을 청취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질의는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리고 의원의 질의종결 또는 의장의 제의로 질의종결이 가결된 때 종결된다. 참고로 질의와 질문을 비교해 보면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의 범위 내에서 제안자 또는 단체장과 그 보조 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인데 반해, 질문은 특정 의제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거나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집적이익(集積利益) 산업 입지론에 있어서 다수의 공업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을 '집적' 이라고 말하고 이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공업의 집적에 의하여 발생하는 집적이익이 보다 많은 지역의 공업을 끌어당기고 공업지역의 규모가 더욱 더 커져 가는데 따라 인구가 집중하고 도시화가 진행된다. 인구와 산업이 도시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적의 이익' 에는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집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뜻하는 소위 '수량이익' 과 복수의 경험이 국지적으로 집적되는데 따라서 얻어지는 소위 '접촉의 이익' 이 있다.

집적회로(集積回路, IC, Intergated Circuit) 반도체소자. 한 기판(基板)위에 부품에서 배선까지 일관해서 제조한 것으로 회로 자신이 집약된 하나의 부품이라 할 수 있다. 직접회로의 주류로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집적회로는 실리콘단결정(單結晶)을 기판으로 하고 그 위에 사진 기술을 사용, 회로를 찍어 넣고 약품 등으로 회로 이외의 부분을 깍아내는 방법(etching)으로 만들어지는데 보기에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같다. 크기는 사방 수mm정도. 이 안에 최대 1000개 가까운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는 셈. 집적회로의 특징은 ①접속점(接續點)의 수가적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②전자기기 제작에 사용하기가 쉽다. ③초소형화 (超小型化)할 수 있다. ④신호처리의 고속화에 유리하다는 점 등. IC는 회로의 집적도에 따라 소규모 집적회로(SSI), 중규모 집적회로(MSI), 대규모 집적회로(LSI) 초대규모 집적회로(VLSI)로 나뉜다. 2~100소자(素子)의 집적도를 가진 것이 MSI, 1000소자 이상의 LSI, 10만소자 이상의 것이 VLSI급이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64KD램이나 256KD램은 VLSI급에 속한다. 집적회로는 또 회로구성에 따라 비이폴라 IC와 MOSIC로 구분되는데 메모리(기억)용을 말하며 64KD램 256KD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집행기관(執行機關) 일반적으로 법인 등에 있어서 그의 업무를 관리·집행하며 대외적으로 그 법인 등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것. 「지방자치법」 상은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의결 등에 따르며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자기 명의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권한을 갖는 기관.

징계(懲戒) 국가(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위반·직무태만 또는 체면·위신의 손상(직무 내·외를 불문)행위에 대하여 그 경중을 따져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처분하는 것. 그중 파면은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시키는 것.(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이며 해임은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시키는 것(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이고, 정직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월+정직처분기한 승진 제한. 처분기간 동안 경력평정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감봉은 12월+감봉처분 기간 승진이 제한되며 견책은 6월

간 승진이 제한된다.

징수유예(徵收猶豫) 납기가 도래한 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조세채무의 이행을 일정한 기간 연기하는 것. 그 방법은 납세 고지서를 연기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도 있다. 징수유예의 요건은 ①풍수해·낙뢰 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해를 받은 때 ②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위 각 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이다.

ㅊ

차관(借款, Credit) 외국의 실물자본 또는 화폐자본을 일정기간 차용하거나 대금결재를 유예하면서 도입하는 것. 그 형태에 따라 실물차관과 현금차관으로 구분되어 실물차관은 다시 원자재 차관과 자본재 차관으로 나뉜다. 또 차관의 목적에 따라 재정차관과 상업차관, 차관의 주체에 따라 정부차관과 민간차관으로 구분된다. 차관은 통상적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공여되며 그 동기는 금리차에 의한 이자수입, 유휴자본의 운용, 선진국에서 발달한 중화학공업분야 등의 시장 확보 등이며, 후진국이 차관을 도입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국내에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광식재(遮光植栽) 차량의 헤드라이트 빛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식재. 차광식재에는 야간에 본선을 주행하는 운전자의 눈에 직접 들어오는 마주 오는 차의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빛을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것과 측도(側道)상에서 차의 헤드라이트로부터 본선의 주행차를 보호하기 위해 노측과 토지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과 본선 주행차의 헤드라이트로부터 연도(沿道)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등이 있다.

차단녹지(遮斷綠地) 도시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적 용도간의 마찰(conflict)을 완화시키고자 기능이 접촉되는 지역 사이에 녹지대를 설치하는 것. 완충녹지라고도 한다. 예로써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공장의 소음이나 기타 공해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50~100m 정도의 폭으로 녹지를 시설하는 경우가 많다. 그외에 고속도로, 철도연변 지대에도 이같은 시설을 한다.

차량총중량(車輛總重量) 주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자체 중량과 적재한 하중량의 합계. 운전자 및 동승자의 중량도 포함한다.

차별관세(差別關稅) 관세는 평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국의 물품과 특정국적의 선박에 의해 입하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차별관세는 보통 특정지역과의 무역촉진이나 통상조약을 적용하는 것. 차별관세는 보통 특정지역과의 무역촉진이나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교섭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또 부당한 무역규제 등을 못하게 하는 예방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차선(車線)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 모

양의 차도의 부분.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 ➡ p257 하단

철회(撤回)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철회는 취소와 비슷하나 취소처럼 일정한 원인에 따라 의사표시의 효과를 소급하여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래에 향하여서만 그 효과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공법상으로는 하자 없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할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하며, 행정행위의 폐지라고도 한다. 행정은 항상 공의에 적합해야 하므로 행정행위가 공익에 적합하게 행하여진 후에도 새로운 사정 발생으로 그것이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될 때에는 그 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행정행위의 공익성에 비추어 그 철회는 기속재량에 속하고 특히 확정력있는 행위의 철회는 할 수 없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첨단산업(尖端産業) 전자산업, 광전자산업, 신소재산업, 바이오테크놀리지 산업, 컴퓨터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적인 기술을 핵으로 하는 사업.

청문(聽聞) 일정한 행정상의 사안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을 상대로 행정청이 지명하는 공무원의 주재 아래 행정청의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과 당사자의 의견진술·주장·입증 및 증언·감정·검증·

참여연대(參與連帶)

1994년 9월 10일 발족한 시민운동 단체. 원 명칭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이다. 참여연대는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 실천적 시민행동을 통한 민주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 종교사회운동 분야 등 250여명의 인사들의 참여로 발족한 참여연대는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 공익소송센터, 내부비리 고발자 지원센터 등 54개의 전문센터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와 개인 및 단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가 있어 시민운동과 정책개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해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과 주주 중심의 새로운 기업구조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 소액주주운동

증거조사 등을 행하는 일종의 행정심판 절차.

청원(請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 비리(非理)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희망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청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누구도 청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타 집행기관에 대한 청원은 청원법에 의하고, 지방의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체비지(替費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대가로 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전 조정된 일정율(감보율)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 체비지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의 가격증대에 따른 대가로 지불되는 성격을 말하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켜 주는데 소요된 경비를 지불받는 것이라 하겠다.

초고속정보통신망(Information Highway) 정보고속도로, 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라는 의미로 정보의 아우토반이라고 불릴 만큼 통신의 속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 어떤 정보라도 신속하게 소통될 수 있는 통신망을 말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핵심은 광통신을 주축으로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전송, 처리하는 데 있는데 일반 사진은 물론 비디오와 오디오 정보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영상전화나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화상 회의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정보 고속도로 구축 작업이 진행되는데, 우선 97년까지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부산권, 대구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을 155Mbps급의 속도로 연결하게 되는데 연결 대상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등으로 영상 회의와 대형 이미지 전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관리경영론(秒管理經營論) 담배 한 개비, 커피 한 잔, 전화 한 통화 등을 모두 초(秒)단위로 환산하여 시간의 낭비를 제거하는 것으로 철저한 원가의식을 강조하는 의식개혁운동이며 전자 및 자동차용 스프링 제조업체인 삼원 전공의 문학부 사장이 펼치는 경영철학.

초상권(肖像權)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人格權)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 저널리즘과 관련, 신문사진, TV화면용 촬영때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촬영했을 때 분명히 보도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표(publicity)법이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되었다.

최고(催告)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그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일반적 의사의 통지이다.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최고는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와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최대전력(最大電力) 어느 기간 중에 부하가 가장 많이 걸렸을 때의 전력. 최대수요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최대전력 개념은 전 발전소에서 생산 공급한 전력량을 매시간별로 기록하여 이중 가장 큰 전력치를 말한다. 최대전력은 필요에 따라 일, 주간, 월, 연간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93년 말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의 하나. 식량안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굳게 닫아 놓았던 국가들이 관세화 개방 이행 때까지 도는 개방 초기 고율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소비량에 대한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 시간급 및 일급·월급으로 정한 후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이 이 금액이하로 임금을 줄 때는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畜産廢水共同處理施設) 가축을 밀집하여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畜産廢水淨化施設)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

출납원(出納員) 출납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며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물품을 출납·보관한다.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전도자금출납원·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나누며 필요한 경우 분임출납원을 둘 수 있다.

출력장치(出力裝置) 컴퓨터로 가공 처리한 자료(정보)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전환하거나, 사람은 알아볼 수 없지만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기록, 보관하는 장치.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출력장치로는 처리결과를 글자로 찍어내는 프린터(Printer)를 꼽을 수 있으며, TV 화면같은 영상출력(Video Display Terminal)도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요즘엔 음성출력장치로 A.R.S(Audio Response System)가 등장하여 시각적인 출력에서 청각적인 출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출연(出捐)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

출자총액 제한(出資總額制限)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출자총액 제한은 순자산의 40%가 상한선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출자총액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이 순자산의 40%이상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초과 보유액의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취락지역(聚落地域) 도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취소(取消) 행정법상, 광의로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별개의 행정행위의 총칭. 이에 협의로는 취소·무효선언·철회의 세 가지가 포함된다. 협의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무효선언은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임을 확인·선언하는 행위로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던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행위인 협의의 취소와는 다르다. 철회는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르러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하는 행위

로서, 협의의 취소와는 그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는 자(者)·원인·효과 등에 차이가 있다. 협의의 취소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법원이 그의 직권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며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한 법률 관계의 누적화를 고려하여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특히 기속재량에 의한 취소, 공공복리를 해치게될 취소, 확정력 있는 행위의 취소 등은 자유롭지 못하며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지만 하자가 당사자에게 책임있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소급하지 않는다고 함이 가하다.

취수댐(取水댐) 하천 등에서 수로에 물을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낮은 댐.

취업인증제(就業認證制) 실무수행능력을 인증해 주는 제도. 경영사무, 영어, 컴퓨터 등 일정 프로그램의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이 과정을 수료해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이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1995년에 이화여대가 처음으로 실시했다.

취업자(就業者)·실업자(失業者) "취업자"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 기간 중 ①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자 ②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협력한 가족종사자로 18시간 일했을 경우와 ③직업을 갖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휴직자를 말한다. 그리고 "실업자"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 기간 중 ①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고직업을 구하고 있는 자(구직실업자)와 ②직장대기, 구직결과 대기, 일기불순,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으로 구직활동을 실제로 못하는 자(비구직 실업자)를 말한다.

측구(側溝) 노면 혹은 경사면 등에 흘러내린 우수를 모아 배수하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시설. 콘크리트측구·돌측구·나무측구 등이 있다.

치매(痴呆) 한의학에서 흔히 매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으로 뇌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을 받아 기억력이나 이해력·판단력 등에 장애를 받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의 가장 주된 증상은 기억력 장애로 특징은 최근의 상황을 기억 못하고 병이 점점 진행되면서 과거의 일도 잊어버리는 것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일상 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지만 좀 더 진행되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해력 등 모든 정신기능이 4세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

친권(親權, Parental Authority) 부(父)또는 모(母)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교양(敎養)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 연혁적으로

는 가부(家父)의 절대적 지배권력의 제도에서 발달된 것이며, 문자의 뜻과 같이 부나 모의 권위·권리로서 신분관계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근대법은 미성년의 자를 보호·교양할 자(子)를 위한 친권 개념을 형성했다. 친권자는 ①자의보호·교양, 거소지정(居所指定),징계, 영업허락 등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와 ②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同意)·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의 사망, 자의 성년 도달로 소멸하고 분가(分家)·혼인·이혼·입양·파양(罷養)·인지(認知)또는 인지 취소 등이 원인으로 되어 종래의 친권자와 자의가(家), 즉 호적이 달라질 때도 소멸한다. 이밖에도 소멸원인으로는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 사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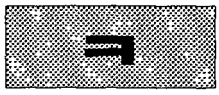
침사지(沈砂池) 일반적으로 물처리를 하기 전에 관거(管渠)내에서의 토사의 침적펌프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에 포함된 토사를 침전법에 의해 제거하는 콘크리트제의 못. 조정지의 역할도 하는데 보통 2개 이상을 설치하며, 적당한 유속과 체류시간을 필요로 한다.

침상도시(寢床都市) 현대 교통수단의 발달로 시민들은 직장과 주거시설을 분리하여 위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생활환경이 좋은 교외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기능 면에서 '집적이익' 을 받을 수 있는 관리, 업무, 유통, 상업 등은 도심에 모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인구가 수백만명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자연히 토지가 부족하게 되므로 주변 소도시로 기능의 일부가 이전하기 마련이다. 이때 대단지 주택사업으로 새로운 주거지가 개발되어 야간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야간인구 증가에 비하여 도시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고용시설이나 기타 서비스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모체 도시에 의존하게 된다. 이같은 도시를 침상도시라 한다.

침전지(沈澱池) 부유물을 포함하는 물 또는 폐수로부터 중력에 의하여 부유물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하여 체류시키는 지(池) 또는 탱크. 침전지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등으로 저부(底部)는 평저, 경사저, 원추저 등으로 만들어진다. 또 유수의 상태에 따라 수평유식(水平流式)과 수직유식(垂直流式)이 있으며 조작상으로는 간헐식과 연속식이 있다. 최초 침전지에서는 폭과 길이의 비가1:4~1:5, 깊이 약 3m, 체류시간 1~3시간, 유속 30㎝/분 정도가 표준이다.

침출수(浸出水) 매립된 쓰레기가 썩으면서 생기는 더러운 물.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는 쓰레기에 있는 부패성 유기물질로 인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값이 높으며 미량의 중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침출수의 BOD는 매립지 사용기간,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00~3만

ppm에 이른다. 또 침출수의 발생량은 매립된 쓰레기의 종류, 강우량, 매립장면적, 매립장의 투수(透水)계수 등 매립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강우량의 20~3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외국보다 유기성 성분이 높은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우리나라 쓰레기중 국물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비율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매립지에 소각 잔재물만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의 유기물질 농도가 우리나라 침출수 유기물질 농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위생매립지가 90년대 이후부터 설치되면서 매립지내에 침출수 처리장도 같이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침출수에 대한 연구와 침출수처리장 운용경험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일산업부문의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로,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카운셀링(Counselling) 신상상담을 조직화하고 제도화하여 실시하는 것. 개인의 학업·직업·대인관계·보건문제 등 기본적인 인격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특정한 영역에서 적응적 행동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카운셀링 활동은 각종 상담소가 활동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녀상담소, 아동상담소, 세무상담소, 민원상담소 등이다.

칼럼(Column) 시사문제·사회풍속 등을 논평하는 난으로, 사설이 집단적 산물이라면 칼럼은 사적인 개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컨베이어 시스템(Conveyor System) 재료 또는 화물을 일정한 거리만큼 자동적으로 연속해서 운반하는 컨베이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합리적인 반송(返送)체계. 전진하는 컨베이어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작업물을 옮기지 않고 컨베이어 위에서 가공하는 이동작업형 시스템과, 다른 작업대로 옮겨 가공하거나 컨베이어를 멈춘 후 가공하고 다시 가동하거나 컨베이어를 멈춘 후 가공하고 다시 가공시키는 정지작업형 시스템. 그리고 이 둘을 혼잡한 혼성형 컨베이어 시스템이 있다.

컨벤션 산업(Convention 産業) 대규모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는 산업. 환경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증대도 크다. 컨벤션 산업이 활성화되면 국제수지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 온 일반 관광객들이 평균 5일 동안 머물며 1400달러를 쓴 데 비해 회의 참석자들은 보통 1주일 체류하면서 3200달러를 지출하기 때문이다.

컨벤션(Convention) 컨벤션이란 산업, 학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집회, 회의, 연구회, 전시회, 문화 예술 공연, 체육 행사 등의 행위를 뜻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er)의 의미로서 대규모 집회나 회의, 전시 등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함. 컨벤션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개념으로 1950년대이래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엑스포(expo)와 페어(fair),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메세(messe)가 있음. 이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은 독일의 메세인데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 전시회(Trade Show)가 이루어지던 곳으로서 75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 유럽에서 발전된 엑스포, 페어, 메세 등은 주로 교역을 위한 전시 기능과 이벤트가 강조되고 부수적으로 회의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인데 반하여 컨벤션은 집회의 기능이 강조되고 전시기능이 부가되는 시설로서 엄밀히 말하자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통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컨벤션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첫째는 정보 교환을 위해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세미나와 집회. 회의 등이 기능이며, 둘째는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기능. 컨벤션은 대규모 회의나 집회를 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포괄적인 시설로 일반화되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회의 그 자체보다는 전시, 교역 및 이벤트 기능이 더 중요시되는 경향. 컨벤션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수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 도시에 국제 회의나 전시회 등 컨벤션을 유치 및 개최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첫째, 국가 홍보의 효과, 개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자국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둘째, 주변 지역 개발 및 정비의 효과, 컨벤션 개최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므로 지역 교통망과 각종 편익 시설의 확충 등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 컨벤션의 개최는 컨벤션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관광, 호텔, 유통 등 각종 연관 산업으로 엄청난 부대 수입을 올리게 되고, 고용의 증대, 각종 건설 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그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큼. 특히 컨벤션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에 비해 체재일수가 길고 소비액이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외화 획득과 지역 경제에 훨씬 유리하고 간접적으로는 교육 및 정보교환의 기회가 증가하여 기술력의 향상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되며 그밖에도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의식 수준이 향상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 특히 컨벤션의 최근 경향을 보면 체재일수가 긴 각종 회의나 집회가 증가하고 부부나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관광이나 레저 등을 즐기는 시간과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이나 리조트 등 연관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처럼 컨벤션은 그 시작과는 달리 그 규모나 내용 등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회의나 전시회, 이벤트 행사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 시설, 숙박시설, 문화와 위락시설, 업무시설 등이 대규모로 복합화하는 추세이며, 그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까닭에 도시공간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시설로서 지역 개발의 전략이 되고 있다. 최근 세계화,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컨벤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삼성동의 무역센터 등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규모의 회의, 전시, 이벤트 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복합기능을 갖춘 전문 컨벤션 시설이 없고 대부분 특급 호텔에 부속된 컨벤션 시설,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등이 필요에 따라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수준이어서 아시아 주변국보다도 취약한 실정이다. 유럽이나 구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국에서도 컨벤션을 성장 발전 산업으로 인식하여 국제 회의, 전시회, 박람회, 학술 세미나, 문화 예술 및 스포츠 행사 등의 유치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현대적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

컨설턴트(consultant) 기업경영에 대한 기술상의 상담(相談)에 응하는 전문가. 그가 제공하는 전문적 지식의 조언·협력을 컨설턴트 서비스라고 한다. 수출상품의 새로운 고안이나 수출 마케팅의 신개발 등, 국제무역 분야에까지 컨설턴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경영진단사제도를 채택하여 기업경영의 진단에 응하고 있다.

컨셉트(concept) '사고방식'이라는 의미의 광고 용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편리성이나 특성을 새로운 각도로 잡아내어 광고나 캠페인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의 기성개념을 무너뜨릴 만한 새로운 컨셉트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에 광고의 성패가 달려있다.

컨소시엄(consortium) ①공사채·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액이 지나치게 커 증권인수업자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울 때 이를 매수하기 위해 다수의 업자들이 공동으로 창설하는 인수조합을 일컫는다. 신디케이트와 혼용되는 컨소시엄은 일반적으로 공동구매카르텔, 또는 공동구매기관을 의미하는데 인수업자들의 발행증권 분담에 목적이 있다. ②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여러 개의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컨소시엄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컨소시엄의 구성방법은 주사업자를 주축으로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2이동통신 사업과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체 선정 등이 좋은 예이다. 보통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투자위험 분산, 부족한 기술의 상호보완, 개발이익의 평등분 등이 고려돼야 한다.

컴퓨터 마인드(Computer Mind) 정보마인드라고도 한다. 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고방식. 농업마인드, 공업마인드와 같은 계열의 용어.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나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지적 창조를 이룩하고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

로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해 가는 생활태도이다.

케이블 세대(Cable Generation) ①책·신문·잡지 등 활자 매체(活字媒體)보다는 유선 TV(cable television)같은 자극적인 영상 매체(映像媒體)를 더 많이 접하는 세대. ②유선TV에 대한 이들의 열정은 취미 차원을 넘어 중독증에까지 이르러 대화단절, 고립된 생활, 판단력 미비 현상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코리아 펀드(Korea Fund) 우리나라 증권회사에 투자할 것을 목적으로 미국에 설립된 투자회사 The Korea Fund Inc.의 약칭이며 그 투자자금을 가리킨다. 1974년 6월 26일 국내의 대우증권이 미국의 한 증권회사와 공동출자로 설립 발족한 것. 이 펀드의 규모는 6,000만 달러, 즉 미국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6,000만 달러의 자본금을 공모하여 우리 국내의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우리 증권시장이 미국에 진출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얻어진다.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의 운용은 한국의 투신사가 맡고 있으나 코리아 펀드는 미국측 관리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한국측은 자본시장 개발단계로서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허용, 외화자금 유입효과와 증권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투자고문회사 등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81년 자본시장 국제화 제1단계로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 3,000만달러 설정을 승인했으며 제2단계로 코리아 펀드가 추진된 것. 코리아 펀드 자금이 증권시장에 유입되면 소규모라도 투자자 심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장세가 활성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코리아 펀드는 폐쇄형으로 추가 설정이나 자금유출이 순조롭지 않아 한국측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닥 ➡ p268하단

콘너베이션(Conurbation) 게데스(또는 지테스, P.Geddes, 영국의 사회·생물학자, 1854~1932)가 제창한 용어. 이는 몇 개의 도시가 서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이들 도시가 기능적으로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군(group)으로 형성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따로따로 발생한 다른 도시가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공간적으로 결합되어 공통적인 시설, 예컨대 교통·수도·가스·전력·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콘너베이션(conurbation)현상이라 한다. 이들 도시 중 어느 한 도시가 성장경쟁에서 우위에 설 때까지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간 다른 현상이지만 마산·창원·진해 및 전주·이리·군산 등이 이와 유사한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콘너베이션의 관계에 있는 여러 시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도시가 우위성을 확보하게 되어 상대도시는 이에 종속되거나 교외화되어 버리는 수가 많다.

콘도미니엄(Condominium) 원어는 라틴어로 공동통치를 뜻한다. 숙박시설의 새로운 경영법의 하나로 유럽에서 비롯되었다. 기본패턴은 우선 호텔을 객실단위로 분양, 구입자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 중 관리회사에 객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임대료로서 수입의 일부를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 한국콘도미니엄이 설립된 후 명성·진안산업·선경·쌍용 등이 신규 참여, 한때 신종 레저산업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명성사건 이후 각종 규제조치로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다. 현재는 관광숙박업으로 취급되어 건설교통부에서 인허가를 다루고 있다.

콘테이너(Container)수송 운송 콘테이너라고 하는 상자 모양의 용기에 화물을 채워서 수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적하가 기계화되므로 하역이 간단해지고 시간이 단축되며 화물포장도 간단해진다. 화물을 제조공장에서 수요자의 마당까지 대량을 수송할 수 있어 육운·해운·철도로 일관작업을 할 수 있다. 콘테이너 상자가 알루미늄원판으로 되어 있어 화물의 도난·파손도 방지된다.

코스닥 KOSDAQ

상장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해 장외거래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스템. 1996년 7월 1일 코스닥증권이 개설, 단순히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였던 장외시장이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마당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장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증권회사의 중개로 영업창구에서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개별적으로 만나 거래하는 상대매매방식을 취해, 동일 종목이 동일시간에 거래되더라도 매매가격이 다른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코스닥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자의 참여라는 경쟁매매방식을 도입 기존의 장외시장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상장주식의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장외등록 주식은 코스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코스닥 증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장외거래 대상 종목으로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기업으로,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높은 하이테크 벤처기업까지 약 340여 개 기업들이 있다.

콜드 체인(Cold chain) 어류·채소·과물·육류 등의 신선 음료품을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에게 콜드 체인(냉동의 사슬)으로 연결한다는 유통기구. 신선한 음료품을 냉동해서 보관, 수송, 판매케 함으로써 부패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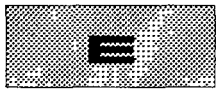
콤비나트(Kombinat) 기업집단, 일정한 지역에서 기초원료로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단계가 다른 각종 생산부문이 기술적으로 결부되어 집약적인 계열을 형성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유정제, 나프타분해 플랜트를 중심으로 하여 암모니아 공업, 올레핀 유도체, 방향족(芳香族)유도체 등의 제조공업 이 파이프로 연결되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소다공업 등이 인접해서 건설된 석유화학 콤비나트이다. 콤비나트화의 목적은 원재료의 확보, 생산의 집중화, 유통과정의 합리화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 석유화학의 경우 콤플렉스(complex)라고도 부른다.

클레임(Claim) 무역거래에서 수출, 수입상인이 매매계약조항에 대한 위반행위에서 생기는 불평과 불만 또는 의견차이를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것. 상사분쟁(商事紛爭)으로 인한 구상(求償)은 당사자간의 타협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과 제3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매매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무역조건 협정서에 클레임 약관을 밝혀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무역거래에서 파생되는 여러 뜻하지 않는 사태들 때문에 쌍방당사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도 약간의 클레임이 생길 수 있다. 클레임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 될 수 있는 정도의 것과 제3자인 상사중개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것 나아가서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또 마킷(market)클레임이라 하여 수입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계약당시의 가격대로 상품을 받아들이면 채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 상품 수입자가 사소한 결점을 구실로 삼아 고의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클린 산업(Clean Industry) 공기, 물 등을 정화하는 장치 및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 전자공업, 정밀공업,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진보, 각종 부품이 최소형화 되는데 따라 공기, 용수 가운데서 먼지나 세균의 존재가 품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어 클린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LSI산업에서는 초순수(超純水), 초(超)클린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64킬로바이트 RAM 제조공장의 공기청정도는 30㎤중에 0.3미크론 이상의 미립자가 100개 미만이며 이것은 성층권 상층의 청정도에 필적한다. 이같은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된다.

클린펀드(Clean Fund) 부실채권이 없는 펀드라는 뜻의 신조어다. 물론 경제학 용어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한국형 신조어다. 대우채권이 포함된 펀드의 환매가 제

한되면서 최근에는 대우 채권이 편입돼 있지 않은 펀드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클린펀드의 요체는 국공채와 신용등급 A이상의 우량회사채에만 투자해 펀드자산의 부실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펀드는 당연히 '클린'하게 운용돼야 한다. 그러나 이제야 깨끗함을 내세우며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클린펀드는 대우사태로 인해 펀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역이용한 일종의 상술이라고 할 수 있다. '감미료와 색소가 없는 조미료'라고 선전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클린펀드들은 대부분 신상품이 아니다.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지 않은 펀드 중 주력 상품을 정해 클린펀드란 이름으로 재포장해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상술이라고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기관마다 자기 회사의 수익률을 과시하기 위해 클린펀드의 수익률 관리에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클린펀드라도 원본의 손실은 발생할 수 있고 이 또한 투자자 책임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점은 가입할 때는 부실 채권이 전혀 없었지만 운용 중에 부실채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투자 적격이었던 업체의 채권을 사들였다가 이 업체가 투자 부적격 업체로 떨어지면서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투자자가 수시로 펀드 운용 내역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간접 투자라고 해서 돈만 맡기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탁도(濁度) 탁한 정도. 물1ℓ중에 청백규토 1㎎이 함유된 경우의 흐름을 탁도 1도(또는 1ppm)라고 한다. 그 측정에는 어두운 곳에서 표준탁도액과 검수를 비색관에 넣어 비색하는 방법, 흡광 광도법 등이 사용된다. 탁도의 성분을 탁질 이라고 하며, 표류수의 탁질에는 점토, 모래, 식물섬유, 미생물, 유기물, 입자 등이 있다. 폭우 후의 하천수의 탁도는 1,000~3,000도로 상승되며, 수질 오탁의 하나의 지표로 사용된다.

태스크 포스 시스템(task force system) 어떤 특정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수의 인재를 여러 부문에서 발탁하여 조직하는 임시적인 동태 조직이다. 이것은 군대용어에서 유래된 것이며, 태스크 그룹, 프로젝트 그룹, 프로젝트 팀이라고도 불린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宅地超過所有負擔金) 택지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고 소유의 집중을 막기 위해 가구당 200평 이상의 택지소유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고 초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물게 되는 부담금. 택지소유 상한법에 따라 90년 3월 2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초기에 초과택지의 처분 이용개발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실제 부담금 부과는 92년3월 2일부터 시작됐다. 부담금은 초과소유 택지면적의 땅값에 4~7%씩 매겨지다가 94년 3월 2일부터 7~11%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가구별 소유상한은 서울시 및 광역시 지역은 200평, 시지역은 300평, 군지역은 400평이나 현재 6대도시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

턴 키 베이스 방식(方式)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 등에서의 수주 방식 중 하나. 시공자가 설계부터 건설·시운전 등 모든 과정을 맡는 '일괄수주계약' 이다. 키(열쇠)만 돌리면 설비나 공장을 곧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유래됐다. 인력이 부족한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플랜트 상담이 대부분 턴 키 방식으로 이뤄진다.

테마파크(Theme Park) 넓은 지역에 특정한 주제를 정해 놓고 그에 맞는 오락시설을 배치하는 위락단지. 테마파크는 민속, 자연, 과학기술, 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위락과 레크레이션, 교육, 체험 등의 기능에 맞도록 시설화하고 놀이 프로그램. 캐릭터 등을 일체

성 있게 계획하여 조성한 창의적인 레저공간으로서,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산업 혹은 21세기형 첨단 문화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최초의 테마파크는 1971년 미국의 Walt Disney World로서 종래 단순한 형태의 공원을 혁신적인 레저시설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이후 동경 디즈니랜드, 유로디즈니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입지에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사업성 높은 레저 및 관광자원으로 부상함. 테마파크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원전체를 조성한다는 점과 첨단기술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종합한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원이나 관광시설과 다르며, 자연 지리적 조건에 의한 특정 입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 레저 시설과도 다르다. 우선 테마파크는 그 용어가 말해주듯이 특정한 주제(theme)를 선정하고 그 주제와 연속성을 가지는 주제군에 맞도록 전시관람시설, 위락놀이 시설, 식음료, 상품판매, 서비스 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성하게 됨. 이때 테마파크에 사용되는 주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이 채택되는 데, 세계의 민속, 건축, 우주, 환상, 역사, 만화, 동화, 산업(광산, 지역산업, 꽃, 식물 등), 지역문화자원(유적) 등이 주류를 형성. 또 다른 특징으로 테마파크는 디자인, 도시 계획, 환경 설계, 건축, 조경, 첨단공학, 음악, 미술, 무용,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동원되는 종합적인 장치산업이며 공연 산업임. 입지 특성으로 보면, 테마파크는 자연 조건에 따른 지리적 입지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프로젝트 규모나 구성에 따라 어떤 지역에도 가능. 스키장이나 마리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은 특정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리적 입지가 국한되지만, 테마파크의 입지 변수는 배후 시장의 크기에 있으며 이는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수단에 의한 접근성에 좌우된다. 테마파크는 상업성이 짙은 위락 시설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개발된다. 최근 테마파크의 개발 양상은 테마파크 자체만을 개발하는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에 호텔이나 상업시설, 그리고 영상 산업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지역의 거점 산업으로 추진 중이다.

테일러 시스템(Taylor System) 19세기말 미국의 테일러 목사(F.W.Taylor)가 주장한 공장 등의 과학적 경영관리법. 이는 종래의 불합리성이나 조직적인 태업(怠業)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작업요소·동작 및 시간을 연구하여 노동자의 1일 작업량을 합리적으로 결정,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관리방법으로서 차별적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를 채용함과 동시에 기능식 관리조직의 도입과 생산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생산능률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테크노마트 ➡ p273 하단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테크노폴리스는 기술(Technology)과 도시(Polis)의 합성어로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 테크노폴리스 개념의 기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950년 초부터 민간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실리콘 밸리(Sillicon Valley)인데, 이것이 테크노폴리스의 모델. 영국에서는 주로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 란 용어로 통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광주첨단 연구단지 등 "연구 단지" 하는 용어로 사용중이다. 물론 학자에 따라 테크놀로지 파크(Technology Park), 리써치 파크(Research Park), 과학연구도시, 과학기술도시, 첨단과학도시, 첨단기술연구도시 등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개발 규모나 자족성 여부에 따라 단지냐 도시냐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산-학-현의 협동 체계로 구성되는 기본개념은 모두 같음. 테크노폴리스 등은 그 도시가 담고 있는 기능적인 특성에 대한 표현인데, 테크노폴리스 등이 갖는 기능은 첫째, 학술 연구 기능. 둘째, 첨단산업기능. 셋째, 쾌적한 거주 환경 등임. 테크노폴리스 건설의 성패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얼마나 조화있게 연계하여 조성하느냐이며 따라서 생산 위주의 산업 기능만으로 조성되는 종래 공업도시나 학술이나 연구

테크노마트(technomart)

테크노마트란 기술이 일반 상품처럼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는 기술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전 메커니즘으로, 국가간·기업간에 필요한 기술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것은 technology market 또는 technology marketing의 줄임말인데 '테크노 마켓'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테크노마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기술이전 정보를 위한 상설 테크노마트이다. 즉 특정 기관이 판매자와 수요자, 기술에 대한 정보를 쌓아 놓고 수시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일본의 테크노마트 재단이나 중소기업단이 이런 형태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테크노마트의 효시는 1986년 산업기술정보원(당시 산업연구원 부속)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사회 이사회(ESCAP)와 함께 열었던 '국제 기술이전 워크숍' 이다. 그 후 1993년부터 '한미 테크노마트' 와 '한일 테크노마트'가 매년 산업기술정보원 주도로 열리고 있으며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APEC 각료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제1회 APEC 테크노마트가 1995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전에서 열렸다.

기능만으로 구성된 연구 단지와 같이 단일 기능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테크노폴리스라 할 수 없음. 테크노폴리스는 고부가가치형, 지식 집약형의 산업 기능이 연구 기능과 연계되고 주거 및 각종 도시 시설이 지원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를 띠며, 기존 공업 도시에 비해 인구 밀도도 낮고 자연 환경도 쾌적하게 조성되는 특성을 지님. 테크노폴리스는 기본적으로 첨단산업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지만,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발전의 여파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 개발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낙후 지역의 지역개발전략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텔넷(TELNET) tele network의 준말. 멀리 떨어진 컴퓨터에 연결해 이쪽 컴퓨터를 그 쪽에 연결된 터미널로 만들어 주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흔히 컴퓨터 통신을 할 때 쓰는 이야기 등과 같은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생각하면 된다. 다만 텔넷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점만이 다르다. 실제로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 PC통신도 인터넷에 연결하면 텔넷으로 들어갈 수 있다. 텔넷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통신 프로그램이나 텔넷 전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텔레뱅킹(Tele-Banking) 민원서비스 민원인이 집이나 직장에서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고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민원처리 수수료를 납부하며 발급된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우송 또는 배달하는 민원서비스의 일종으로서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는 '98년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텔리데모크라시(Teledemocracy) ①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②즉, 컴퓨터 통신 미디어를 통해 시민과 정치인들과의 의견 교환이 용이해지고 정치참여의 기회도 커졌으며, 의견 반영도 쉬워져 새로운 형태의 정치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토구(吐口) 하수 등을 방류하는 출구설비.

토론(討論) 어떤 논제를 둘러싸고 여러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좋은 결론을 얻으려고) 논의함

토양개량제(土壤改良劑) 불량토를 개량할 수 있는 재료 모두를 토양개량제라 부른다. 그런데 보통은 보수·보리력을 증가하고 토양의 입단화를 촉진하며 산도를 교정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는 재료를 말한다. 무기질 재료로는 규산과 알미늄을 주성분으로 한(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 펄라이트) 등이 있음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제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로 인식되

면서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도 변화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헌법」제123조도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는 모든 국민의 생활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소유권과는 달리 공공적 의의가 큼으로 여러 나라가 이와같이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사례로는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별토지가격 조사, 토지거래 규제가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로 도시 주변의 미개발된 지역을 대상으로 환지 수법을 통해 임야·전·답 등 토지의 형질과 구획을 변경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하나임

토지수용(土地收用) 「토지수용법」등에 의거,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 수용절차로는 보통절차와 약식절차가 있는데 보통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한 사업인정, 그 고시가 있은 후의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관계인과의 협의, 이것이 성립 안될 경우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재결(裁決)등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협의성립, 재결의 확정이 있은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수용시기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보상은 재결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 보상을 원칙으로 하나 지가의 고시가 행해지면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상당 보상의 원칙에 준한다. 피수용자에게는 보상청구권 외에 물건이전료 청구권, 수용 청구권, 환매권 등이 인정된다.

토지수익연계채권 특정 토지와 연계해 토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수익증권 형태의 채권.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자체 보유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수익연계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1999. 1. 13). 표면 금리 4%의 이 채권은 토공 보유 우량 토지들과 연계해 땅값이 오르면 토지를 매각, 그 차익을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동산 연계형 신종 금융상품이다. 토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표면이자는 보장이 되고 만기 전이라도 토지가격이 20%이상 급등하면 토지를 매각해 이자를 지급함. 만기 10년의 무기명식 쿠폰채로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100만원, 1,000원, 1억원권 3종이 발행됨. 표면 이자

는 채권 발행일부터 6개월마다 주고 땅값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는 3년 후 가격이 많이 오른 토지부터 단계적으로 매각, 차익을 지급함.

토초세(土超稅) ① '토초세' 란 토지초과이득세(土地超過利得稅)의 약자. ②이는 유휴지(遊休地) 등 장기간 놀리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땅 값의 상승으로 얻는 불로소득(不勞所得)의 50%를 국세(國稅)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최근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토초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 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솔범위의 원리(統率範圍의 原理) 통솔의 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이 몇 사람의 부하를 적절하게 직접 감독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상관이 부하를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도록 부하의 수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의 범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는 6명 또는 8~12명이 적당하다는 설이 있으나 통솔의 범위는 ①감독자의 능력 ②피감독자의 질 ③업무의 성질 ④지리적 분산의 정도 ⑤시간적 요인 ⑥관리 기술의 수준과 상태 등의 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솔의 범위는 계층제의 원리와 상반 관계에 있다. 즉 통솔의 범위를 좁게 하면 계층이 늘어나고 계층 수를 적게 하면 통솔의 범위는 늘어난다.

통합지출관(統合支出官) 국고의 자금집행체계를 현행, 도, 시, 군별 분산지출방식에서 중앙관서통합지출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출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관직이다.

투자보장협정(投資保障協定) 해외투자를 상호간에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 기업에 자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컨트리리스크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 기업을 대신하여 정부가 직접 상대국과 교섭, 손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협정.

투자분석(投資分析) 투자분석은 증권투자의 분석으로 증권의 구입에 따른 투자의 안정성·수익성, 기타의 특징을 분석·평가하는 것. 최근에는 이러한 주식·채권의 분석평가에다가 투자방침의 결정, 투자종목의 선택과 함께 일반경제의 분석까지도 포함하여 재무분석으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분석에는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①투자는 투기에 비하여 보수적이며 원금의 안전성을 중요시하고 ②투자가는 회사의 내부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재무안전성과 수익성을 중시한다. 이에 대하여 투기가는 증권의 매매거래·가격변화의 패턴·거래주수의 변동 등 증권시장과 그 기술조건을 중시한다.

투자심사(投資審査) 자본과 자원이 희소하고 재원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을 보장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전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예산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검토하는 것으로, 투자사업이 심사과정을 거침에 따라 ①비효율적 투자억제 및 투자사업 부실화 사전 예방 ②내용이 미비한 사업계획의 시행전 사전보완, ③투자사업 결정을 위한 자료의 체계적 분석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별교부금(特別交付金)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 지방재정교부금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획일적·기계적으로 산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금.

특별다수의결(特別多數議決) 합의체의 의사결정은 통상 과반수의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일정의 반수 이상의 다수결(가령 3분의 2이상, 또는 4분의 3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특별다수의결이라고 한다. 지방의회에 있어서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의, 의원의 제명 등이 있다.

특별대책지역(特別對策地域) ①환경부 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 상태 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 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 장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개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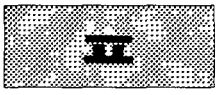
특별지방자치단체(特別地方自治團體) 별칭으로 단일목적 단체라고도 하며 그 구역 권능, 조직이 특수하고 그 존재가 보편적이 아닌 예외적 성격을 지닌 자치단체. 이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과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특별구, 스위스의 특별자치단체와 일본의 특별구는 전자에 속하고 영국의 조인트 보드, 프랑스의 시·읍·면조합과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후자에 속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特別地方行政機關) 중앙행정기관은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지청을 둘 수 있게 하였다(정부조직법) 예를 들면 ①지방세무관서 ②세관관서 ③영림관서 등이다.

특별청소지역(特別淸掃地域) 시의 도시계획구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의 오물은 시·군·자치구의장이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고 처리할 의무를 지는 구역이다. 다만 대통령령의 기준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특정폐기물(特定廢棄物)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폐유·폐산· 폐알 카리·폐고무·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 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특정폐기물처리시설(特定廢棄物處理施設) 소각·파쇄·중화·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파급효과(波及效果) 일정량의 투자는 관련된 생산 및 소비부문에 생산과 소득의 증가를 초래하는 과정이 파급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투자증가는 투자가 수요의 증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를 수주한 기업은 생산을 위하여 다른 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임금지불은 증가한다. 또한 이 기업은 다시 다른 기업으로부터 원재료 구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생산증가와 임금지불은 계속 파급하게 되며 또한 그와 같이 해서 발생한 소득 증가분은 소비와 저축의 증가를 초래하여 관련산업의 생산증대와 임금지불의 증가를 가져온다.

파킨슨(Parkinson)의 법칙 영국의 역사·정치학자 파킨슨(C.N.Parkinson)이 1957년에 왜 관사의 수가 많은가? 왜 회의의 운영은 원활하지 못한가? 등을 검토하여 발견한 사회생태학적 법칙. 일반적으로 관청이나 일반 대기업에서는 직무를 중심으로 각 부문마다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원은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확대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정원을 늘려서 1인당의 노동량을 경감시키려 하고 더욱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업무량을 생산해 내기 때문이다. 파킨슨은 공무원의 증가율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그의 연구결과 직원의 연평균증가율은 57.5%라고 발표하였다.

패널(Panel)토의 토론회의 형식으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며, 연수의 방식으로도 유효적절하여 공무원 교육원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토의 방식. 특정의 문제에 대하여 특히 관심이 있는 자나, 전문가·학자 등으로부터 각층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3명 내지 6명 정도의 패널 멤버를 선정하여 단상에 일렬로 앉게 하여 일반참가자 앞에서 당해 과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자기 견해를 발표케 하는 방식이다. 멤버 상호간에 토론을 하는 것이 심포지움과 다른 점이다. 통상 사회자는 의견의 발표와 토론의 진행을 통제하며 패널멤버 상호간에 토론이 끝나면 일반참가자의 질의 또는 의견발표를 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각적인 지식과 의견의 교류를 실시하여 참가자를 계발하는 것이다.

패러다임(Paradigm) 원래 의미는 사례(事例)라는 뜻. 어떤 요인으로부터 다양하면서도 일견 상호 무관한 듯한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 그 연쇄계열(連鎖系列)이 패러다임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다양한 관념을 상호 연관시켜 질서지우는 시스템 내지 구조를 일컫는 개념으로 쓰인다. 예컨대 근대 과학의 패러다임 등.

패리티 지수(Parity Index) 물가상승과 연동하여 농산물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이것은 기준 연도의 농가 총 구입가격을 100으로 하여 비교연도의 가격 등락률을 지수로 표시한 것. 이 지수를 기준 연도의 농산물 가격에 곱한 것이 패러티가격이다. 비료 농기구 의류 등 개별 품목의 가격 변동을 구하고 이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

패키지 투어(Package Tour) ①여행사(旅行社)에서 여행을 상품화하여 교통수단·숙식·여행코스·비용을 미리 정한 여행 예약 방식 및 여행 ②단체 여행이므로 해외 여행시 여행사의 안내원이 동행하기 때문에 출입국 절차나 언어의 애로점을 덜 수 있다.

페이징 시스템(Paging System) 위급 상황 발생시 휴대용 발신버튼을 누르면 119로 자동 신고되면서 상대방의 위치, 성명, 전화 번호등 병상기록이 각 소방서 지령실에 접수되어 구조대가 출동환자를 구조하는 장치.

폐기, 계류, 이송

①폐기(廢棄);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재적의원 1/3이상이 본 회의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폐기된다.

②계류(繫留);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 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대상으로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이송(移送);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하며, 조례안 등 의안뿐만 아니라 청원처리 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등을 송부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이송이라 한다. (지방의회)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제(廢棄物處理費用負擔金制) 일부 1회용품과 덩치가 큰 가전제품, 유독성 물질, 난분해성 물질 등 폐기물의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처리에 애로가 많은 제품의 생산업체에 대해 이들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예치토록 하는 제도. 92년 8월 28일 환경처가 입법 예고한 '자원절감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에 포함되어 10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93년 7월부터 시행.

폐치분합(廢置分合)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또는 신설에 따르는 구역의 변경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편입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반대로 일부가 분립하거나 2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폐치분합은 인격 그 자체의

변경이란 점에서 단순한 구역의 변경인 경계변경과 구별된다.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기초에 관계되는 것 일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구역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까닭에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다.

폐회 → 개회

포괄수가제 환자의 연령과 질병의 종류별로 진료비를 책정,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횟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제도. 수술·검사·입원·투약횟수 등 개별 의료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별 수가제보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적고, 과잉진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정상분만·제왕절개분만·백내장 수술·편도선 수술·맹장염 수술 등 5개 질병군이며, '99년 2월부터는 탈장·치질·축농증 등으로 확대된다.

포럼(Forum) 옛 로마에서 공적인 집회장소로 쓰이던 광장에서 유래된 용어로 공개장소에서 여론의 심판을 받는 토론 형식이며 사회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지명 토론자와 불특정 시청자가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 실무자는 정책대안도 도출하고, 아울러 다수의 청중 및 공중에게 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KBS 생방송 심야토론, 정책포럼이 있는데, 도정에서는 수도권정책 및 환경정책 등과 같이 중요한 정책에 한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털사이트(Potal Site) 관문이라는 의미. 인터넷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연결되는 사이트다.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포털사이트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세계적인 경쟁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로는 야후, 라이코스, 다음, 네띠앙, 심마니 등이 있다.

포트폴리오(portfolio) '포트폴리오' 란 원래 서류가방 또는 자료수집철이라는 뜻이었으나 증권투자에서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 일람표를 말한다.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분산투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식을 분산투자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을 분산가능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별기업의 경영상태, 재무상태와 같은 특수한 조건의 변동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위험으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도 불린다.

폭파해체공법(爆破解體工法) 건물의 하중을 받는 중요 기둥에만 폭약을 설치해 폭파할 때 가해지는 콘크리트 덩어리의 하중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공법. 건물의 설계도면을 분석한 뒤 화약의 양과 설치각도, 폭파시간을 조절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방향

과 순서는 물론 속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 건물 붕괴시의 폭파음, 파편,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공법의 핵심 기술이다. 이 공법은 건물을 반파할 수도 있고 대형 굴뚝의 상층부만 잘라내는 것도 가능하다.

표결(表決)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행위로 안건처리에 있어서의 최종단계이다. 토론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 단계이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주어진다(헌법 제45조).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고 이러한 표결선포 후에는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참가할 수 없으며(투표의 경우는 투표함 폐쇄시까지) 표결행위가 끝나면 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표준지 공시지가(標準地 公示地價)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이를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푸드뱅크(FOOD BANK)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의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서 식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식품 은행이며 「1377」은 일상(13)적으로 이웃에게 철철(77) 넘치는 사랑의 식품을 전하는 전화이다. 음식의 양과는 상관없이 적은 양이라도 국번없이 전화 1377에 기탁 의뢰가 가능하다

품질인증(品質認證)마크 ① 「KS」 마크 : 정부가 한국 공업표준규격에 맞는 제품임을 뜻하는 표시로서, 건축자재, 식료품 등에 사용된다. ② 「검」 마크 : 인명피해나 화재 등 안정성(安定性)이 문제되는 제품에 붙이는 마크로 자동차 용품, 유아용품 등은 반드시 이 표시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③ 「Q」 마크 : 제조업체가 부착을 원할 경우 해당 분야 민간 시험소에 신청해서 얻는 임의 표시사항으로 환불보상 제도가 적용된다. ④ 「품」 마크 : 정부가 「KS」 마크와는 별도로 품질관리가 우수한 공장에 부여하는 품질 보증 표시로 학용품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⑤ 「전」 마크 : 전기 사용 제품에 안전성 시험을 거쳐 합격했다는 표시이다. ⑥ 「열」 마크 : 에너지 관리공단이 열관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부여하는 마크로 이 표시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⑦ 「태극」 마크 : 한국 귀금

속 감정 센터가 일정 품질 이상의 귀금속이라고 평가하여, 우수공장에 주는 마크이다. ⑧「환경」마크 : 재활용품을 원료로 사용했거나 폐기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환경처가 부여한 녹색상품 제도이다. ⑨「EMI」마크 : 가전제품(家電製品)에서 발생하는 유해(有害) 전자파를 억제하는 장치가 부착됐다는 표시로 정보통신부가 심사를 주관한다. EMI는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전자파장해)의 약자이다. ⑩「ST」마크 : ST는 safety toy의 약자. 즉 안전 완구(安全玩具)표시로 한국 완구 공업 협동조합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풍치지구(風致地區 scenic area)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일종으로 도시내 및 근교에 위치하여 도시의 발전으로 파괴되기 쉬운 자연풍치를 유지·보전(保全)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이 지구 내에서는 공작물의 신축, 개축, 수목(樹木), 토석류의 채취, 기타 풍치의 보존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풍치지구에서는 건폐율 30%, 층고 3층 이하, 용적률 90%, 녹지율 30%의 건축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녹지를 낀 고급 주택가로 각광받지만, 토지 이용이 제한돼 재산증식 효과가 적은 단점이 있다. 서울시에는 수유 성북 등 공원 주변지역 14개 지구, 옥수 마포 등 한강변 경관지역 6개 지구, 오류 시흥 등 시계인접지역 4개 지구 등 현재, 24개 지구 4백94만평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서울시는 77년 풍치지구 재정비 이후 20년 만에 풍치지구 정비기준을 새롭게 마련, 19개항의 기준을 설정하여 7만여평의 풍치지구를 해제 완화키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도시발전으로 풍치지구 의미가 사라진 지역을 과감히 정리하고, 보전할 지역은 분명히 선을 그자는 의도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3~6개월이 소요될 이 안이 확정되면, 해제된 2만평 지역의 경우 주택 용적률이 90%에서 200%까지 가능하고, 완화지역의 경우 160%까지 허용돼 상당한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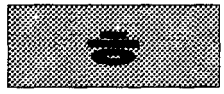
프라임타임(Prime Time) 방송시간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대개 오후 7시에서 10시 30분까지 사이이다. 골든아워(golden hour)라고도 한다.

프레온 가스(CFC : chloro fluoro carbon) 우리말로는 염화불화탄소로 화학 기호는 $CC1_2F_2$이다. 무색 무취의 가스로 불연성(不燃性)·불폭발성이며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금속을 부식하지 않으므로 냉매(冷媒), 에어졸 분무제, 소화제(消火劑) 등에 주로 쓰인다. 이 가스가 대기 중에 올라가면 자외선을 막는 오존층을 파괴함으로써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피부암을 일으키게 된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약국 회의에서 CFC는 '96년까지 전폐(全廢), 대체 프레온인 HCFC는 2020년까지 전폐키로 결정했다.

프로토콜(Protocol) 프로토콜은 컴퓨터끼리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사이에 상호통신할 때 데이터를 에러없이 원활하고 신뢰성있게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통신규약이라고도 한다. 프로토콜은 통신에 관한 갖가지 제어정보(커맨스 및 레스폰스)의 수수에 관해 정보의 표현형식이나 수수의 타이밍 등을 엄밀히 규정하며 그 규약은 일반적으로 호출의 확립과 연결, 메시지 블록킹과 그 형식, 컴퓨터 또는 단말기간의 문자등기, 인터럽트(interupt)와 단절, 의미변경, 에러메시지의 재전송, 회선반전절차 등에 관해 규정돼 있다.

플러그인(plug-in) 어떤 프로그램에 없던 새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끼워넣는' 부가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는 실행능력은 없지만 특정한 프로그램 속에서 함께 실행되어 기능을 발휘한다. 원래는 하드웨어 분야에서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족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장치란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요즘에는 부가 소프트웨어란 뜻으로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 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리얼오디오' 나 '엑티브X' 등을 사용하면 원래 넷스케이프에서 지원하지 않는 음성이나 동영상, 3차원 영상도 즐길 수 있다.

피드백(Feedback) 원래는 전기(電氣)관계 용어로 전기회로에 있어서 출력의 일부를 입력측에 되돌려 출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 생산은 자동화하는 경우 오토메이션 장치에는 이 원리가 유효하게 이용된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최초의 목적에 부합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행위가 되도록 작용하는 것. 행정용어로서는 환류이며 개인 집단 또는 조직이 그의 행동의 결과를 알아서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



하구언(河口堰) 바다로부터 염수(鹽水)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과 바다의 접경에 쌓은 댐.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강물 이용에도 기여한다. 종래 염해(鹽害)방지를 위해, 또는 하구(河口)유지·하천정화를 위해 필요로 했던 방류수량을 줄이고 헛되이 방류되던 물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서 주운(舟運)·취수(取水)를 위해 필요한 수위의 유지, 수산자원 보호 등의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므로 고정언이 아닌 가동언(可動堰)이 유리하다. 또한 낙동강 하구언 공사의 경우처럼 이것이 끼칠 생태계의 변화와 피해에 대해 엄밀한 조사 및 대책이 요구된다.

하도급(下都給) 경제적·기술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하여 그 지배·통제 아래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일. 하청(下請)이라고도 한다. 유럽에도 서브콘트랙트 시스템 (subcontract system)이라는 일종의 하도급제가 있으나 그 범위는 우리나라 만큼 넓지 않고 전문적 생산공장으로서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 하도급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경기변동의 안전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본절약, 자본설비의 고정화를 피하는 이점 등에 있다. 대기업과의 계열화의 혜택을 누리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엔 상대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전체적 경향은 비정한 자본간의 경쟁에 의해 분해·몰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하드 웨어(Hard Ware) 컴퓨터 시스템의 '기계 그 자체' 를 말한다. 즉, 금속물을 말한다. 하드웨어는 본체와 주변장치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본체는 연산장치, 주기억장치, 제어장치의 3부로 되어 있고, 주변장치는 입력장치, 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로 되어 있다. 본체를 중앙처리장치-CPU(central procession unit)라 총칭하며 주기억장치를 메인 메모리 유니트(main memory unit)라 한다. 주변장치를 페리페럴 유니트(peripheral unit)라고 한다.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웨어만으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soft ware)를 필요로 한다.

하이테크 공해(Hightech pollution) 반도체, 뉴 세라믹,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의 고도첨단 기술을 보통 하이테크라 부른다.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게임기, 퍼지 세탁기, 바이오 제품 등이 대표적인 하이테크 제품이다. 하이테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는 하이테크에 의한 공해라는 부작용을 빚는다. 예컨대, 반도체(IC)는 컴퓨터, TV, 자동차, 의료기기, 로봇, 장난감 등에 사용되며, 하이테크 산업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하이퍼 인플레(Hyper Inflation) 물가가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로 앙등하는 격심한 인플레. 전쟁이나 대재해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쟁이나 화재로 공장설비가 파괴되어 공급력이 축소되는 한편 억제되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통화의 유통량이 급격히 팽창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에 대해 원만한 인플레를 마일드 인플레(mild inflation)라 부른다.

하자(瑕疵) 흠 또는 허물의 법률용어이다. 하자있는 의사표시, 행정 행위의 하자 등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면 그 효과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한계기업(限界企業) 일반적으로 임금상승을 비롯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한계자원(限界資源) 한계자원은 이용도 및 경제적 효용이 적으며 개발기술이 전통적이고 현대 시장 메카니즘과 직결되어 있지 않으나 장차 재화로서 활용될 요지를 갖고 있는 자원이다. 이와 같은 한계자원은 인간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에 존재한다. 자원을 개발 또는 이용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고도의 이용성을 가진 자원으로부터 전혀 이용성이 없는 자원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배열될 수 있다. 이 용도가 높은 자원을 주자원이라 하고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을 무용자원이라고 한다면 한계자원은 주(主)자원과 무용(無用)자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韓國經營者總協會)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전국조직으로서의 사용자단체. 이 단체는 원래 근로조직의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공동처리, 정보교환, 업자간의 임금인상률 협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 정치적 공세에 있어서의 공동보조 등을 목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사관계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총' 은 단체교섭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으며 연합체로서 대표권만을 행사한다. 그 핵심적 기능은 인금인상률의 책정 등에 있다.

한국공업규격(韓國工業規格, KS) 공업표준화를 위한 제정된 공업규격을 보급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의 도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합격한 제품을 보증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KEDO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박약 또는 낭비자로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배우자·사촌이내의 친족·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합류관거(合流管渠) 오수 또는 우수를 동일한 하수관거로 배제하는 관거.

핫 뉴스(Hot News), 스폿 뉴스(Spot News) 핫 뉴스는 최신의 소식 또는 기사로서, 방송의 경우 현장에서 기자가 직접 보도하는 뉴스를 가리킨다. 스폿뉴스는 토막뉴스로서, 방송 프로와 프로사이에 짧고 기동성 있게 내보낸다.

핫 라인(Hot Line) 63년 8월 워싱턴의 백악관과 모스크바의 크렘린 사이에 개통된 직통 텔레타이프에 의한 통신선(通信線). '사고 오산 또는 통신의 실패에 의한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63년 6월 미·소간에 체결된 '직통통신연락선 설치에 관한 협정' 에 기초하여 동년 8월 설치되었다. 71년 9월에는 '핫라인 개설협정'으로 인공위성조직이 도입되었다. 66년 6월에는 프랑스·소련간에 같은 형태의 통신선 [그린라인(green line)이라 불림] 이 설치되었고 67년 2월에는 영국·소련간에도 설치되었다. 71년엔 남북한간에, 72년엔 미·중국간, 인도·파키스탄간, 동·서독간에도 설치되었다. 이외에 동맹간의 직통 통신선도 핫라인이라고 불린다.

핫 머니(Hot Money)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자금. 각 국의 단기금리의 차이, 환율의 차이에 의한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국내 통화 불안을 피하기 위한 자본도피 등 2가지가 있다. 핫 머니의 특징은 ①자금이동이 일시에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점 ②자금이 유동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핫 머니는 외환의 수급관계를 크게 동요시키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 최근에는 유러달러 (Euro-dollars)가 전형적인 핫머니의 성격을 띠고 거액의 투기자금으로 국제금리 및 통화안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뿐 아니라 투기적 이익을 노리고 국내시장을 이동하는 단기자금도 핫 머니라 부른다.

핫 미디어(Hot Media), 쿨 미디어(Cool Media) 마셜 맥루한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서, 정보의 정밀도와 수용자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핫 미디어는 정보의 정밀도가 높아서 수용자의 낮은 참여도를 요구하는 매체로서 라디오·영화·인쇄물·사진 등이 포함된다. 쿨미디어는 정보의 정밀도가 낮아서 수용자의 높은 참여도를 요구하는 매체로서 전화·TV·만화 등을 가리킨다.

해상도(Resolution) 해상도란 텔레비전이나 팩시밀리 등의 해상표현 능력의 척도를 말한다. 해상도는 화면의 정세성을 나타내는 척도 즉 화상의 섬세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세밀하게 재현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기본적으로는 화소수가 많을수록 해

상도가 높아진다. 텔레비전 화면에 균일 간격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흑백의 수평 방향선을 화면 높이 속에 몇 개까지 나타낼 수 있는지로 수직 해상도를 나타내며 화면높이와 같은 길이로 된 흑백의 수직 방향선을 가로폭 속에 번갈아 몇 개가 재현되는지로 수평 해상도를 나타낸다.

해직청구(解職請求) 직접 청구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공무원의 해직을 요구하는 제도. 리콜(recall)이라고도 말한다.

해커(Hacker) 컴퓨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광.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몰래 침입하여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빼내는 사람. 이들은 국가 기관 및 연구소 등의 무분별한 통신망 침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커들은 자신들에 의해 컴퓨터 시스템 및 인터넷의 보안과 기술분야 발전에 일부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행정과목(行政科目) 세입예산의 과목 중 세항과목. 행정과목은 매 회계년마다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기본 지침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다. 이 과목은 구체적인 경비지출의 기본이 되는 과목인 동시에 입법과목을 적산하는 기초가 되므로 부당하게 유용할 수 없다.

행정규제(行政規制)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는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의 고객인 도민과 민원인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구체적 기준과 목표를 정하여 소속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이를 실천토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서비스 이용자인 도민과 민원인들에 대한 약속이자 업무 지침임.

행정재산(行政財産) 국유재산법(제4조)에 의해 규정된 재산으로 우선 **공용재산**은 국

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기업용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함.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가능하다.

행정처분(行政處分)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행위(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위 가운데 사실행위·통치행위·입법행위·사법행위·관리행위·법행위 제외)를 가리키는 것이다. 영업면허·공기업의 특허·조세 부과가 그 예이다. 행정처분은 법규와 행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법규에 위반하면 위법처분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면 부당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의 부관(附權) 행정관청이 행정행위(행정처분)를 할때 그 효력 또는 법률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의 부관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 및 행정처분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행정통제(行政統制) 행정의 적법타당성의 보장과 국민의 권리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로서 행정통제는 정치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로 나누어진다. (①정치적 통제로서는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 예산심의, 각종 동의권 및 승인, 해임건의, 탄핵 기타의 행정부 감시통제권, 여론, 선거 등에 의한 유권자의 통제가 있으며 ②사법적 통제로서는 공무원의 형사책임과 행정구제제도가 있으며 ③행정적 통제로는 행정감독제도(감사권, 인허가권, 취소권, 정지권, 훈령권, 감사, 공무원징계 등)를 들 수 있다. 행정통제는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사전에 보장하려는 제도인 점에서 국민의 권리가 행정권 발동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권리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구제제도와 다르다.

행정협의회(行政協議會)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협의회.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규약에는 협의회의 명칭, 가입 자치단체의 명칭, 처리사무,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경비부담 및 협의결정 사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다. 협의회의 안건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정요청에 의하여 시·도는 내무부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조정한다.

허가(許可)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실정법상으로는 허가라는 용어 이외에 면허인가·특허·등록·지정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허가는 법령상의 제한·금지를 제거하여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이므로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타인의 행위의 법률적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다르다. 그러나 실정법상으로는 이 말은 반드시 정밀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한 때에는 처벌 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있지만 반드시 그 행위의 법률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헤지펀드(hedge fund) 개인모집 투자신탁.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뒤, 카리브 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유명하다.

호프만식 계산법(Hoffmann Method)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 등에 쓰이고 있는 방식. 독일의 경제학자 D. Hoffmann이 아직 기한이 이르지 않은 무이자 채권의 현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고안한 것인데 오늘날에는 주로 사고 등의 피해배상액 계산방법으로 일반화되었다. 즉 호프만 방식은 피해자가 장래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수입은 다음과 같다.

총수입=일할 수 있었을 연수 ×(연평균 근로소득-생활비·세금 등)

호환성(Compatibility) 호환성은 어떤 컴퓨터, 부속장치, 데이터 파일, 또는 프로그램이 다른 것들과 똑같은 명령, 포맷, 언어를 어느 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는 가하는 정도를 말한다. 컴퓨터 사용자들은 호환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컴퓨터 업계에서도 어떤 제품인가와는 상관없이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며 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혼잡비용(混雜費用) 교통혼잡에 의해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 도로의 혼잡 비용은 교통량이 어느 한계를 넘는 도로에 있어서 추가되는 1대의 자동차가 수반하는 주행비용 및 시간비용의 증가를 말한다.

혼잡세(混雜稅) 도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체로서의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비용. 교통혼잡을 방치할 경우 추가로 이용하는 통행자가 일으키는 사회비용(시간지체, 차량운영비 증가 등)을 사회적 한계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혼잡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보아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혼잡비용(사회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입부담금 등에 의한 혼잡세를 부과하여 교통혼잡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교통체제의 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

홈 페이지(Home Page) 웹 사용자가 각각의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페이지를 말한다. 보통 홈페이지는 그 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서비스하고 있는 정보 리스트를 담고 있다.

홍보(Public Relation) 공사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말하며 홍보는 가장 넓은 의미의 '널리 알리는' 활동으로서 정부홍보, 기업홍보, 단체홍보, 개인홍보 등이 모두 이에 망라된다.

화상회의(畵像會議 Video Conference)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여러 회의실에서 각각 텔레비전 카메라,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등을 갖추고 이들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한 곳의 상황이 영상 및 음향 정보로 다른 회의실로 전달되는 회의 방식.

화학적 산소요구량 → COD

환경개선부담금제(環境改善負擔金制) 6대도시를 비롯한 전국 74개 시(市)지역과 팔당 및 대청호 주변 등 특별대책지역, 동해안 해안지역 등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있는 각종 업무용 빌딩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해당 빌딩별로 연료 및 용수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것으로 매 분기별로 부담금액이 산정된다. 한편 환경처는 '94년 3월 5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처음 부과했으며 부담금은 대당 기본부과액·오염유발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다.

환경권(環境權, Environmental Rights)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환경의 침해를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 우리 헌법33조는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환경권의 법리(法理)는 우선 환경오염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UN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된 이후, 환경권의 이념이 세계 각 국의 법체계에 흡수되었고 종래의 사후(事後)피해방지나 단순한 위생법적·공해법적인 성격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적정관리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법적 근거를 환경공유(共有)의 원리와 환경법규의 사회법적용에서 구하며 실정 법적 경향은 헌법 및 기본정책법과 개별법으로 입법화되고 있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실체법으로서는 환경보전법을 비롯, 해양오염방지법, 오물 청소법과 건축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도 환경권의 이념이 환경보전 우선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것이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려면 환경권에 대한 침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청구, 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주민운동의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환경보전도시(環境保全都市, Ecopolis) Ecological과 Polis가 합성된 용어로서 환경과 조화하는 도시의 체계를 가지고 풍부한 자연이 확보되어 사람과 환경이 공생하는 도시. 즉 환경의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면서 생태계의 측면에서 보아 다양하고 자립적이며 안전적인 순환구조를 갖는 도시를 의미한다. 국가의 발전목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설정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추세에 따라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개념이 환경보존시범도시 혹은 환경도시의 개념이다. 환경보전도시에서 다루는 환경의 범위는 단순히 공해만이 아닌 자연환경과 경관까지도 포함한 광범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환경보전도시는 ①자연, 환경, 사람이 친화된 쾌적한 도시 ②물, 에너지, 자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재활용되는 오염없는 도시 ③환경보전기능을 갖는 각종 도시 시스템과 생활양식을 가지며 ④환경오염의 발생원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제(環境影響評價制)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공업단지, 체육시설, 간척지 등을 건설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9년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77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다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증대되면서 92년에 별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됐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전에 하는 일종의 요식절차로 사실상 환경파괴에 대한 면죄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의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의 정도를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게 돼 환경파괴를 최소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환경오염유발부담금제(環境汚染誘發負擔金制) '오염자 부담'을 원칙으로 환경부가 환경투자 재원(財源) 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제도이다. 시행대상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상업시설과 자동차이며 그 중 대기 및 수질오염의 발생계수(이산화황 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있는 도소매업·음식 및 숙박업·운송 및 보관업 등 3개 업종과 업무용 대형 빌딩, 골프장 등이 선정되었다. 환경오염유발부담금제는 현재 프랑스·독일 등 1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배출부담금제를 강화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호르몬(環境 hormone) 정식 명칭은 외인성 내분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er). 동물이나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서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물질을 총칭하는 말이다. 특히 남성의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성장억제·생식이상 및 면역기능 저해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서 여성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한다. 유기염소계 합성물질의 대표격인 다이옥신, 스티렌다이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환매(還賣)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샀다는 말은 은행에 예금을 넣었다는 말과 비슷하다. 수익증권은 돈을 주고 사야 한다. 반대로 돈을 찾으려면 수익증권을 다시 투신사에 주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 수익증권을 투신사에 되파는 형식을 환매라고 한다. 수익증권을 환매했다는 말을 은행식으로 표현하면 예금을 찾았다는 뜻이 된다.

환승시설(換乘施設)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환지(換地) 일단의 토지를 그 소유자의 권리에 관계없이 전부 통합하여 도로의 신설, 개량, 지형의 변경, 공용지의 확보를 통하여 정연한 시가지를 형성케 하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 구획정리사업에 있어 정리전의 택지의 위치, 지목 지적 등의,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리후의 택지를 환지라고 한다. 환지를 결정하는데는 우선 환지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환지설계를 하며 다시 환지처분을 하며 비로소 환지가 확정된다. 환지처분을 하는데로는 가로, 공원 등 공공시설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환지처분을 마칠 때까지 정리전의 토지권리자에게 토지상의 권리행사를 일체 못하게 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 이와 같은 불편을 덜게 하기 위하여 환지 예정지를 정하고 그 예정지에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데 이를 보통 가환지라고도 한다. 환

지계획을 세우는데는 가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확장, 신설에 요하는 용지를 전 구역에서 공제한다. 즉 공공복지를 위하여 각 택지면적을 감하여 환지를 정하는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활성(活性)슬러지 하수를 폭기하여 얻어지는 흡착성이나 침전성이 우수한 슬러지를 말한다. 유기물을 영양원으로하여 번식하는 호기성 세균, 원생동물, 윤충(輪蟲)등의 생물 및 무기의 비생성 슬러지의 집합체로 하수에 대한 정화능력이 높다. 또 활성슬러지법은 활성슬러지를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한 방법을 말한다.

활성오니법(活性汚泥法) 호기성 소화의 일종으로 활성오니를 만들어 하수처리를 하는 방법. 오수를 폭기조에 넣고 공기를 불어넣거나 교반,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생성한 활성오니를 응집과 침전을 되풀이하여 투명한 처리수를 얻는다. 침전분리한 활성오니는 꺼내져서 처리되지만 일부는 접종으로 폭기조에 반송된다. 표준활성오니법의 변법으로 스텝 에어레이션법, 스태빌리제이션법, 고속에어레이션 침전지, 모디피디 에어레이션법, 디프 에어레이션법 등이 있다.

활성탄 다공질로 흡착성이 강한 탄소질의 재. 목재, 갈탄 이탄(泥炭) 등을 활성화제(염화 아연, 인산 등)와 함께 건류시키거나 목탄을 수증기로 활성화시켜 만든다. 야자나무 열매껍질로 만드는 야자껍질 활성탄은 유명하다. 분말상태와 입자상태가 있다. 탈취, 탈색 외에 오염물질의 흡착 제거에도 쓰인다.

회기(會期) 의회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기간을 회기하고 하는데, 대개 의회 집회 후 제1차 본 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의회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회 집회전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결정된다.(지방의회)

회기계속(會期繼續)의 원칙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이 의결되지 않아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회기에 계속된다. 우리나라 지방 의회는 이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회기불계속(會期不繼續)의 원칙 회기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다음 회기에 계속하지 않는다는 원칙. 의회는 회기마다 독립되어 활동하는 것이므로 그 의견은 회기마다 독립하고 어떤 회기에서 완료되지 않는 의안이나 동의는 회기의 종료와 동시에 모두 소멸하고 다음 회기에 이를 인계하여 심의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회기에서 그 의안 또는 동의를 심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제안 기타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 회기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 등은 심의 미결로 되어 제안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며 의안으로서의 효과는 일체 소멸하고 폐안된다.

회보(會報)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행정기관 단위로 회보사항을 일괄 수록하여 문서 담당 부서에서 발행한다.

후순위채권 ➡ p295 하단

후순위채권(後順位債券)

채권 발행기업이 도산할 경우 사채의 변제순위에 있어 담보부사채나 무담보사채, 기타 은행대출채권 등의 일반사채보다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식보다는 우선 하지만 다른 여타 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늦은 것으로 신용이 극히 좋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특히 중간에 변제를 요청할 수 없고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계산해 준다.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은행의 자기자본 충실화를 위해 장기성 후순위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으로 산입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최근 이 채권의 발행이 늘고 있다.

또 이들 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은행, 금융기관 이외의 제조업자들도 자금조달수단으로 후순위채권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후순위채는 발행기업의 자산과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약한 대신 투자자에게 높은 표면금리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신용평가 및 기채조건의 악화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외금융기관들은 일반 무담보채권과 후순위채의 발행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감독 규정은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자기자본의 50% 범위에서 채권발행액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후순위채 발행은 곧바로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게 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8%이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대출을 회수하던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후순위채 발행액의 12.5배만큼 늘어나게 된다. 은행들은 금융채 발행이 지난 97년 7월 이미 허용됐음에도 회사채 등 시중금리 폭등으로 매수세가 없어 고민해 왔으나 최근 정부가 연·기금 및 보험사 등의 기관투자가들로 하여금 은행 발행 후순위채를 적극 인수토록 조치함으로써 이의 발행을 발행작업에 들어갔다.

훈령(訓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 직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법령(法令)해석에 통일을 기할 목적으로 발한다. 원칙적으로 법규와 같은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하급행정청을 구속할 뿐 직접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실정법상의 근거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기관장이 통할권 및 지휘·감독권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겠다. 훈령은 직무명령의 일부분으로 행정의 예방적 감독 수단의 하나이다.

휴회(休會) → 정회

희석법(稀釋法) 처리 또는 미처리 하수와 오수를 최종 처분법으로 강이나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하해수(河海水)의 자정작용으로 정화되지만 하해의 수량에 비해 하수량이 너무 많으면 하해는 오염되어 공해문제를 일으킨다. 방류 수역의 수질은 BOD 5ppm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 1965년 3월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열린 제21차 에카페 총회에서 ADB설립을 결의하고, 동년 12월 마닐라에서 열린 ADB설립에 관한 전체회의에서 동 설립협정문에 서명한 후 1966년 8월 22일 발효를 보게 되었는데, 동년 12월 19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국제적 융자기관이다. 이 은행의 설립목적은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역내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①역내의 정부 및 민간자본의 투자촉진과 ②개발계획의 입안 실시와 그 계획에 대한 융자에 따른 기술원조 제공 등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 및 총재가 있다. 회원국은 역내의 22개국과 14개국 도합 36개국인데, 우리나라는 창설초부터 참여하여 현재 이사국이다.

AFTA(ASEAN Free Trande Are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을 앞으로 15년 이내에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가맹 6개국은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원칙에 합의,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중이다. 이들의 목표는 오는 2008년까지 역내 공산품의 관세율을 5% 이내로 인하한다는 것. 이를 위해 마닐라 각료회의에서 1993년부터 시행되는 공통특혜관세의 적용범위 등 실무문제에 합의했다. 1993년 10월 싱가포르에서 경제장관회담을 갖고 1994년 1월 출범을 재확인하였으며, EAEC와 APEC과의 관계정립이 핵심의제였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 1989년 11월 한국, 미국, 일본, ASEAN 6개국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참가, 역내 경제협력을 목표로 창설했다. 1992년 11월 한국에서 제3차 회의가 열렸으며, 중국·대만·홍콩이 가맹했다. APEC는 출범 당시만 해도 지역 경제문제나 소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국한된 느슨한 협의기구의 성격에 머물렀으나 1993년 2월 싱가포르에 상설 사무국이 설치되고 회의국 공동기금 설립에 합의하면서 역내 자유무역화 및 공동사업 협력추진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ARS(Audio Response System 음성자동응답시스템) 사람의 손에 의해 음성정보

를 제공하던 것을 기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음성응답 하도록 함으로써 대폭적인 성력화가 가능해져 최근엔 음성자동응답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제국연합)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정한 지역협력기구.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최근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가 가입해 모두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SEAN은 앞으로 캄보디아까지 끌어들여 10개국으로 '동남아공동체' 추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목적은 ①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촉진 ②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역내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 ③경제·사회·기술·문화 각 분야에서의 상호원조 등이다. 1976년 2월에 발리섬에서 개최된 수뇌회의는 정치적 단결과 중립화를 꾀하는 '일체화 선언'과 우호협력조약'에 조인했다. 1977년 8월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협력 문제를 중심으로 한 코뮤니케를 채택했으며, 1978년부터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확대 외상회의를 연1회 열고 있다. 상설 기관으로는 자카르타에 중앙사무국이 있다.

ASEM ➡ p298 하단

ASEM (Asia-Europe Meeting)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개국과 동남아시아 ASEAN 회원국,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아시아와 유럽간 정상회의.

1994년 고촉통 싱가포르 수상이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제안해 발족했다. 제2차대전 이후 식민지적 지배관계가 단절된 이래 아무런 연결고리를 갖지 못한 아시아와 유럽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럽-북미-동아시아 3각 지역협력체제의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회의는 격년제로 열리며 제1회는 1996년 3월 1일 태국의 방콕에서 열렸으며, 제2회는 1998년 영국, 제3회는 2000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의 의제는 미리 정해지지 않고 정세에 따라 가변적인데 제1회 방콕 회의에서는 양 지역간 정치대회 촉진과 경제교류 강화가 주의제였다. ASEM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넓게는 ASEM을 통해 신국제경제질서 개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아시아 지역 및 유럽연합과 정치·경제적협력 기반을 다지며 좁게는 동북아 안보환경 개선 및 한반도 정세안정의 유지, 양 지역간 다양한 협력 사업 전개를 통한 실질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비동기(非同期) 전송 모드) 비동기 전송이란 한 글자를 나타내는 부호의 전후에 시작과 정지신호를 넣어 송·수신하는 전송방식 으로, 모뎀을 이용한 PC통신도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의 데이터 전송수단인 패킷 교환은 패킷의 크기가 가변적인데다 각 패킷이 고유의 번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번지들을 읽고 각 패킷의 길이를 결정하는 데 따른 처리부하로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비동기식 전송모드는 셀 교환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동일한 고정길이의 셀로 변환시켜 전송하기 때문에 패킷방식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효율도 높다. 기존의 통신망에서는 64Kbps의 전송을 최대로 하고 있으나 ATM교환기가 설치될 경우 2기가 bps로 통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교환기는 저속의 음성정보만 교환하는 데 그쳤으나 ATM교환기는 지속에서 초고속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ISDN)에 피루적으로, 멀티미디어 통신에 적합하다. → ISDN

B

BBS → 전자게시판

BESETO → 베세토 벨트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30년 미국, 유럽국가 등 12개국이 공동출자해 설립. 지금은 주로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간 거래의 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멕시코·브라질 등 채무누적 국가의 금융위기에 대해 단기 연계자금의 융자를 실시했으며, 국제적인 신용질서유지를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BIS의 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7월 전세계적으로 진행돼 온 금융혁신 및 경쟁심화에 따른 은행들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과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BIS의 주요 업무는 각국 중앙은행의 외화보유액에 대한 관리와 운용이다. 예금액이 많을 때는 전세계 외화보유액의 10%를 넘어선 적도 있었다. 그러나 유럽통화 통합이 완료될 경우 BIS 예금액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랑스 중앙은행은 독일 마르크를 외화로 보유하고 있어 유럽통화가 통합되면 마르크가 외화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BIS는 1996년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등 총 9개 개발도상국들의 중앙은행을 회원국으로 참여시켰다. 이 밖에 유럽통화 통합 이후 유럽 중앙은행이 발족될 경우 그 관리와 운용이 BIS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원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BIS는 판단하고 있다. BIS의 회원국 확대는 수십 년간 세계금융시장을 지배했고 아직도 금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 도전한다는 의미도 있다. → 자기자본비율규제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쌍무투자협정 또는 양자간 투자협정)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간에 체결된 협정을 의미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30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원칙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함.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보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 따른 안전판을 마련해 주는 것임.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 투자 자유화 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반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관세나 물량제한 등 무역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국가간 합의임. 투자협정 단계를 넘어선 완전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동 경제권에 놓임을 뜻함. 현재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BK(Brain Korea)21 21세기의 두뇌한국) 교육부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 핵심인력을 중점 양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체제를 고쳐 고질적인 입시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골자의 BK21을 내놓았다. 그동안 관행화된 나눠 먹기식의 지원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고사하고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밖에 될 수 없어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춘 대학과 학문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학문분야로는 정보기술, 생명, 기계, 디자인, 한의학, 영상 등이 선정됐다. 지원 대상 학교는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선정되는 대학이다. 지원대상 인력은 교수가 아닌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 이들의 연구능력 향상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임.

BLT(Build-Lease-Transfer) BOT기법의 변형으로 완공후 제3자에 일정기간 임대 후 양도하는 기법.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건설하고 완공한 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양한 뒤 임대계약을 통해 시설의 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 및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는 ①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 호기성(好氣性) 박테리아가 일정 기간(보통 섭씨 20에서 5일간) 동안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 ②물이 많이 오염될수록 유기물이 많으므로 그만큼 박테리아 분해에 필요한 산소량도 증가하므로, BOD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한 물이다. ③1ℓ의 물에 1㎎의 산소가 필요한 경우가 1ppm인데 보통 하천의 경우 5ppm이 되면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10ppm이 넘으면 악취가 난다.

BOO(Build-Own-Operate) BOT 기법의 변형으로 사업주가 개발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조달하며 시공 및 운영도 담당하는 등 턴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변형된 BOO 기법의 일종.

BOT(Build-Operate-Transfer) 프로젝트 사업주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자본설비를 완공(build)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당해 프로젝트를 운영(operate)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 상환 및 지분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발주자에게 양도(transfer)하는 프로젝트 개발기법. BOT 기법은 금융 패

키지안에 프로젝트의 개발, 운용, 이익 회수 등 모든 단계에서의 자금소요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념.

bps(bit per second 초당비트수) 1초 동안에 몇 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단위. 1초간에 1비트를 전송하면 1bps로 표시한다. 이것은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데이터 전송의 빠르기를 평가하는 단위로 사용된다. 보통 전화선을 사용한 데이터 전송은 14,400 ~ 36,600bps 정도이다.

BR(Blue Round 그린라운드) 추진 목적은 한 국가가 노동권에 대한 기준을 낮게 책정하게 되면 저렴한 노동비용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등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낮은 노동기준은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무역규제를 통해서라도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린라운드는 개도국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행위를 사회적 덤핑 행위를 통한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규정하여 시정하려는 선진국측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BTO(Build-Transfer-Operate) 인프라 시설의 완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민간 사업자는 정부와 체결한 협약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부여받으며, 사용료 수입으로서 투자비 및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

C

CALS ➡ p303 하단

CATV(community antenna television 공동청취 안테나 TV) TV의 방송프로그램을 동축케이블로 보내는 것으로 도시 빌딩이나 산간 벽지 등 전파가 닿기 어려

CALS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

최근 기업이나 국가에 큰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일종의 정보화 운동. 각종 장비와 제품의 설계, 조립, 생산공정을 단축하고 비용절감과 생산성향상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공학적 활동. 흔히 '정보유통의 고속도로', '산업의 인터넷'이라고 비유된다.

원래는 1980년대초 미국 국방성이 군사조달 시스템에서 '서류에 의한 불필요한 업무의 증가와 열악한 통신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LS 개념을 개발·적용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민간업체에 연결 사용되면서 CALS가 지닌 엄청난 원가절감 위력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제품의 설계, 제작 과정과 보급, 조달 등의 운용과정의 컴퓨터 정보통합 자동화'(computer aided acqusition and logistic support)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갈수록 개념이 확대되어 최근에는 '광속교역'(commerce at light speed)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CALS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동화되고 통합된 상호교환환경으로 변환시키는 경영전략이다. 다시말해 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과정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자동화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원가의 혁신적 절감, 종합품질경영(TQM) 능력의 향상 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CALS(전자교역)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 유럽,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등 세계 30여 국가에서 CALS에 대한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영학자들은 CALS의 위력에 대해 "산업혁명 이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보의 표준화와 상호교류가 기업의 막대한 비용을 삭감시키는 것은 물론 아예 산업구조와 회사조직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운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겨났다. CATV를 이용할 경우 전파와는 달리 양질의 채널을 여러개 확보할 수 있어 지역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방영, 이를 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범 방재 · 원격검침 · 비디오텍스 · 홈뱅킹 · 홈쇼핑 · 교육정보서비스 등 여러 영역에 폭넓게 활용된다. CATV는 기업에서 사내 정보전달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각종 정보와 사내 소식은 물론 교양 및 어학 프로그램을 방영, 직원들의 자질향상 및 연수에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8월 '매일경제TV' 등 20개의 CATV가 설립인가되었으며, 1995년 1월 5일부터 방송되었다.

CB(convertible bonds) → 전환사채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업무지구) 도시의 주요한 업무지구. 주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도시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된다. 백화점 · 상점 등의 상업기능 회사 · 은행등의 업무기능 · 관공서 등이 위치한다. 도시의 업무 · 경제, 행정활동의 중심지로서 도시전체의 중개관리기능이 밀집되어진 지구를 말한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특정 건축물 또는 특정 시설 등에서 유선 텔레비전을 이용해 영상을 전달하는 장치. 은행 등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 이용하고 있다.

CDMA ➡ p305 하단

CD(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 은행의 정기예금 중에서 해당 증서의 양도를 가능케 하는 무기명 상품으로 은행에서 발행되고 증권사와 종금사를 통해 유통된다. 1961년 미국의 씨티은행이 처음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는 1974년 1차 도입되었다가 폐지되고 1984년 6월 재도입되어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CD는 최소 1,000만원부터 최소 30일 이상 270일까지 발행이 가능해 규모가 큰 자금의 단기투자에 적합하며 발행 시장보다 유통시장의 수익률이 높아 유통시장을 통한 투자가 유리하다. 한편 CD는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줄 때 대출금의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강제시키는 '꺾기'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CD-ROM 컴팩트디스크를 이용한 판독전용 메모리. 컴퓨터의 외부기억매체로 사용한다. CD시스템은 원래 오디오 장치로서 개발되었다.

CEO(chief executive officer 기업의 최고경영자) 미국에서는 회장이 그 기업의 제1인자이므로 회장이 CEO를 겸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CEO는 이사회를 주재

함과 동시에 기업그룹의 방침을 결정하거나 장기계획을 책정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 보통의 경우에 사장이 겸무하는 최고업무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 COO)는 회장의 정책방침 밑에서 일상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결정을 행한다. 우리나라의 일반기업에 있어서는 사장이 CEO, 수석부사장이 COO의 역할을 맡는다.

CIO(chief information officier 정보분야 담당최고임원) CIO는 기업의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중역으로, 기업의 경영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보기술을 감독하고 정보전략을 세우는 것을 주임무로 한다. CIO는 기업경영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정보기술을 기업 구석까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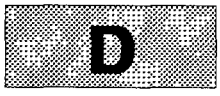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다중접속)

하나의 채널로 한 번에 한 통화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방식 휴대폰의 한 방식.
아날로그 형태인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전환한 후 여기에 난수를 부가, 여러 개의 디지털 코드로 변환해 통신을 하는 것으로 휴대폰이 통화자의 채널에 고유하게 부여된 코드만을 인식, 통화품질이 좋고 통신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CDMA의 원리는 공통 공간에서 우리말 사용자가 영어 사용자나 불어 사용자와 섞여 이야기해도 대화에 지장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편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 시분할 다중접속)는 주파수를 시간대별로 나눠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통화자 개인의 음성마다 코드를 부여하는 CDMA와 차이가 있으나, 아날로그 방식보다 약 3배쯤 채널 수를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유럽 등지에서 사용화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TDMA에 비해 CDMA가 10배 이상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기술적 어려움으로 실용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은 TDMA와 CDMA 둘다 잠정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CDMA를 표준으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TDMA 방식을 범유럽 공동규격으로 개발, 1992년부터 실용화하고 있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시스템은 현재 유럽에서는 물론 중국, 동남아, 남미 등지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한편 일본은 TDMA방식인 PDC(personal digital cellular)를 개발, 1993년부터 도쿄 일원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CDMA 서비스를 의식해 1996년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CIP(Corporate Image Identity Program 이미지 형성계획 기업) 또는 공공단체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하거나 단일화하려는 작업.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을 좋은 이미지로 인식시켜 주고 기업의 모든 디자인 활동을 조절·조직화 함으로써 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경영전략으로 IBM등에서 도입 시행하여 좋은 효과를 얻었으며 우리 나라에는 70년대부터 대기업과 은행등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수중의 피산화성 물질, 주로 유기물에 의해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 세가지의 측정법이 있지만, 배수기준 및 환경기준에서 COD값 측정은 100℃에서 과망간산 칼륨에 의한 산소 소비량 측정법이 지정되어 있다. 그 측정법은 검수에 과망간산 칼륨의 일정 과잉량을 가해 일정시간 가열 반응시킨 후 소비된 과망간산 칼륨에서 산소의 양을 구한다. 수질 오탁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값이 작은 만큼 수질 오탁은 적다. BOD에 비교해서 측정은 단시간에 끝나지만, 공장폐수와 같이 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도 파악할 수 있다.

CPX(Command Post Exercise 전투지휘소) 각급 부대의 지휘소 요원에 대해 실시되는 작전연습. CP는 '전투지휘소' 라는 뜻이다. 작전계획을 비롯한 각종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시험하거나 부대 지휘관과 참모들간의 협동 작업을 발전시키고 개인적인 전술운영 능력을 배양,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CPX의 규모는 전군이 함께 하는 것부터 사단급에 이르는 여러 크기의 것이 있으나 보통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계획되고 실시된다. 연습부대의 지휘소를 일정한 지역에 집결시키는 경우와 각각 작전계획상의 위치에 이동하고 유무선(有無線) 통신망을 갖추어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각급 부대의 지휘소만이 참가하므로 연습을 주도하기 위해서 상황을 조정하고 적의 행동 및 연습에 참가하지 않는 부대의 가상(假想)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통제단이 편성되며 실시부대의 군사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심판단이 구성된다. 이것은 심판단에 의해 강평으로 종료되고 그 결과에 보완하게 된다.



DI(dffusion index) → 경기동향지수

DID(Direct Inward Dialing 자동착신방식) 국선으로부터 자동 구내교환기의 가입자 전화에 오는 착신호가 중계대를 거치지 않고 지정된 내선 전화기에 자동접속되는 서비스.

DM광고(direct mail advertising) 우편에 의해서 직접 예상고객에게 송달되는 광고로 직접광고(direct advertising)의 일종. DM광고의 특성은 광고물을 예상고객에게 직접 우송하는 점에서 시장의 세분화 전략에 적당하다. 따라서 DM의 가장 중요한 점은 메일 리스트의 작성이다.

DO(dissolved oxygen) → 용존산소량

DR(Depositary Receipts 주식예탁증서) 주로 국제간에 주식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국외수송이나 언어 관습, 표시통화 등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 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 원주식의 보관과 주주권 행사에 이르는 예탁계약을 표시한 증서가 DR이다. 발행 지역에 따라 미국의 경우 ADR(American),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GDR(Global)이라고 한다.

DRG(Diagnosis Related Group) 상병내용 및 진료내용이 유사한 하나의 환자군에 대하여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일괄 지급하는 포괄수가 제도이다. 현재 시범실시중인 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 아데노이드 적출물, 충수돌기절 제술 제왕절개술, 정산분만이다.

DVD ➡ p308 하단

DVD(digital video disk 차세대 영상매체)

디지털 방식으로 입출력이 가능한 차세대 영상매체. DVD는 직경 12㎝의 광디스크에 영화 한편 분량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억매체로 TV에 접속시켜 영상을 재생하는 외에 PC용 기억장치, 게임 등에 폭넓게 이용될 수 있어 20세기 최대의 상품으로 지목된다.

현재의 CD가 74분 정도의 정보 저장시간을 갖고 있는데 비해 DVD는 고화질, 고음질로 최대 270분간 재생할 수 있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매체보다 뛰어난 매체이다. 그리고 일반 비디오와는 달리 아날로그 신호가 아닌 디지털 코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복사해도 화질이 감소되지 않는다. 또한 복제하는 비용이 VHS테이프에 비해 약 3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으며, 음질이나 화질의 손상 없이 몇 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

E

EAEC(East Asia Economic Caucus 동아시아경제협의체) EC통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추진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해 동아시아 지역도 뭉치자는 것이다. 1992년 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제창했다. 취지는 역내(域內) 무역, 투자에 있어 정책협조를 꾀하자는 것이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수·발주 장부 및 지불청구서 등 기업 서류를 컴퓨터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제정된 기준. 이는 기존의 서류를 통한 업무처리와는 달리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문서 교환을 통해 사무실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전자우편(e-mail)과 유사하나 컴퓨터간의 통신이라는 점에서 사람간에 이뤄지는 전자우편과는 다른다.

E-Mail → 전자우편

EPS(Earning Per Share, 주당순이익) 1주당 세후순이익을 말한다.
(EPS=세후 순이익/주식수) 순이익이 높으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같이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기업의 EPS 증가는 향후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볼 수 있음. EPS 상승과 상관 관계가 높은 종목은 주로 성숙기로 접어든 업종이라 할 수 있으며, 내재 가치의 증가가 주가 움직임을 좌우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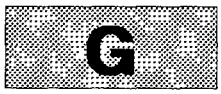
EQ(emotional intelligence) → 감성지수

Escrow 복수의 계약자들 사이에 계약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을 잠시 보관해 놓는 것. 갑이 을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 등의 제3자에게 갑은 계약금을 맡기고 을은 토지 소유권을 맡긴 후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이를 다시 갑과 을에 토지 소유권과 계약금을 다시 이양하게 됨.

ESSD(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자원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한다는 뜻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번역되나 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로 줄여 쓴다. 1972년 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에서 제기되었으며 '90년 제45차 UN총회에서 정식개념으로 채택되었다.

F

FRB(Federal Reserve Board 미국의 중앙은행) 1918년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해 발족된 미국의 중앙은행을 말한다.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이다. FRS(연방준비제도)의 운영기관이며 의장 포함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재할인율, 공정할인율, 예금 준비율의 변경, 연방준비권의 발행과 회수, 공개시장 조작 등을 감독한다. FRB의 금리인상 여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FRB의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치리라 예상되고 있다.



GD마크(Good Design mark 우수디자인 마크) GD제도란 상품의 디자인, 기능, 안정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우수상품 상표를 붙여 팔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48개 상품에 대해 1985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한 번 GD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은 이 마크를 2년동안 부착해 팔 수 있다. GD마크 증지의 색깔표시는 해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 KS표시 상품이 아니면 GD상품 선정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품질, 성능면에서도 신용도가 높다.

GDP(gross domesfic product) → 국내 총생산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이란 지도 및 도면을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컴퓨터에 입력하고, 지상과 지하의 시설물, 도로 부존자존 등과 관련된 속성 정보를 추가하여 토지 및 시설물관리, 도로의 설계와 보수, 자원활용, 환경보존 등에 활용하는 공간정보관리시스템.

GNE(gross national expenditures) → 국민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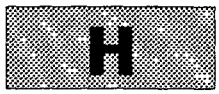
GNP(gross national product) → 국민총생산

GR(green round) → 그린 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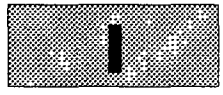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지역 총생산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最惠國稅率)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대우를 하는 제도. 이 제도는 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약칭 GSP)를 채택함으로써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GTR → 정부항공운송 의뢰제도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하이퍼텍스트의 구조를 서술하는 일종의 컴퓨터 언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에 사용되는 C나 PASCAL과 달리 웹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된다. 넷스케이프 등과 같은 웹 브라우저는 이 HTML 파일(HTML이 기술되어 있는 텍스트파일)을 받아다 하이퍼 텍스트를 구성해 내는 것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홈페이지들은 기본적으로 HTML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된 것이다.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1957년 7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이 기구의 주요 활동 내용은 전세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 개발 실용화를 위한 각종 물자 서비스 설비 제공, 과학기술 정보교환, 핵의 군사적 사용금지와 그 확산방지 등이다. 모두 35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집행을 맡고 있으며, 이사국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이사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국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IAEA헌장은 회원국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원자력기술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세계은행

IC카드(Integrated Circuit Card) 플라스틱카드에 IC를 넣은 것으로 스파트카드로 불리면서 제4세대 카드로 평가받고 있다. 대용량의 메모리, 쌍방향통신, 정보안전보호기능을 갖고 있어 출근시에는 신분증으로 은행에서는 현금카드로 둔갑하며 병원에서는 자신이 앓아왔던 내용을 의사에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응용분야가 다양하다. 종래의 자기카드와 크기, 두께가 거의 비슷하나 기억할 수 있는 정보량은 자기카드의 100배 이상(IC카드 8,000문자, 자기카드 72문자)이다. 또 기밀보전면에서도 자기카드에 비해 우수하고 고도정보사회에서 새로운 휴대미디어로도 기대되고 있다.

ID카드(Identity Card 신분증명서) 원래는 미군이 기지내에 출입하는 군관계자에게 휴대를 의무화시켜 출입구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첨부 증명서이다. 미국에서는 그밖에 기밀사항을 취급하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기업의 공장 등에서도 같은 모양의 ID카드 방식을 일찍부터 채용해왔다.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1919년 창설된 국제노동기구, 사회복지의 향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한 유엔의 전문기관이다. 각국의 정부,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입법과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보건·위생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그 지도에 임하기도 한다.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 우리나라는 가입여건 미비로 가입하지 못하다 1993년 정식 가입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이것을 각국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각국의 외화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3월에 설립됐다. 브레튼우즈협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이다. 세계은행(IBRD)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축으로 꼽힌다. 가맹국은 각각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국제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1956년과 1965년에 출자금을 각각 증액했으며, 1968년 4월에는 IMF협약을 개정하여 '제3의 통화'로 불리는 특별인출권(SDR)을 만들었다. 원래 기능은 국제수지가 일시적인 불균형에 처한 나라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 등을 통해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으나 1973년 변동환율제 이행으로 그 기능이 상당히 변질되어 개도국 및 구 사회주의권에 대한 구제금융에 치중해 왔다. 가맹국은 크게 '14조국'과 '8조국'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14조국에 가입, 1988년 11월 8조국으로 옮겼다. 최근 아시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50여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개편 여론이 일고 있는가 하면 IMF의 처방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1998년에 열린 53차 IMF-IBRD 연차 총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건전한 금융시스템 확보와 민간 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등 IMF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IP ➡ p314 하단

IP(Information Provider)

IP란 PC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PC통신망에 들어가면 증권 뉴스 등 각종 정보가 있는데, 이것들은 통신업체가 모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각 IP들이 통신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PC통신이 활성화된 선진국에서는 PC 통신망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IP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뉴스나 잡지 등은 물론 부동산, 물가, 세무, 도서, 법률, 게임, 퀴즈, 운명감정 등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면 어떤 정보든 가리지 않고 제공하고 있다. 정보가 PC 통신망의 꽃이라면 IP는 정보의 메이커이자 전달자인 것이다. 국내에서도 PC통신 설립과 함께 현재 1,000여 IP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인터넷상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주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모두 자신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223.125.123.15와 같이 마침표로 나눠진 네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IR ➡ p315 하단

ISDN(Inter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종합정보통신망)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기존의 전화회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돼 종합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도 정보통신 시스템이다. 현재 공중전화망, 팩시밀리망 등 각기 별개로 운영되는 통신수단을 일원화된 체제로 제공하는 것이다. PC에 ISDN선을 연결하면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선의 28.8k bps보다 약 5배정도 빠른 128k bps로 송수신할 수 있다. 또 ISDN선 하나로 대화를 나누면서 팩스를 수신하고 있는 문서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ISDN은 ①설치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ISDN선을 PC에 연결하려면 모든 기존의 모뎀 대신 특수한 어뎁터를 부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기존의 아날로그 구리 전화선보다 신뢰도가 낮다. ISDN 시스템의 전원이 차단되면 외부에서 아무도 전화로 연락을 할 수가

IR(Investor Relation 투자자관계, 보통 기업설명활동)

기업이 경영내용과 미래 전망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주식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PR(public relation)이 있는데, PR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홍보를 펼치는데 비해 IR은 주로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홍보를 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점이 있다. 또한 PR은 대중들에게 회사나 상품의 장점만을 전달하고나 하는 반면 IR은 반드시 좋은 정보뿐만 아니라 나쁜 정보까지도 포함한 종합적 정보를 전달한다. 최근에는 IR도 결국은 일종의 경영활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많은 기업들이 IR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매일경제신문사에서는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국내 증권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한 '매경 다이아몬드 클럽'을 1995년 5월에 결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신문지면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는 등 기업설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없게 된다. 그래서 ISDN을 설치한 많은 기업들이 밧데리로 된 예비 전원을 준비해 놓고 그것도 안심이 안되어 보통 전화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통신이 1993년 7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일반 전화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국제 표준화 기구를 말한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둔 ISO는 나라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조정 통일하고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쉽게 하기 위하여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각 분야마다 전문위원회(TC:Technical committee)를 설치해 현재 170이상의 TC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가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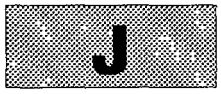
ISO 9000(국제품질보증제도) ISO 9000 시리즈는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국제규격을 제정한 소비자 중심의 품질보증제도이다. 1976년 영국의 품질인증기관인 영국표준협회(BSI)의 발의로 1987년 전산업에서 인정을 받았다. 국내제품의 해외 수출시 이것의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업진흥청은 ISO 9000시리즈를 KS규격에 채택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해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ISO 9000는 단순히 제품의 품질규격 합격 여부만을 확인하는 일반 품질인증과는 달리 해당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에서부터 생산시설 시험검사 애프터서비스 등 전반에 걸쳐 규격준수 여부를 확인해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ISO 9000 규격은 4개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9001은 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과 생산,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광범한 적용범위를 가진 규격이다. ②9002는 디자인 개발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공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③9003은 디자인·설치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극히 단순한 제품의 경우에 적용되고, ④9004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일반지침이다. 그리고 9000은 이들 4개 규격의 안내서다.

ISO 14000(국제 환경표준화 인증규격) 국제적으로 환경관련규격을 통일해 제품 및 이를 생산하는 기업에 환경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그린 라운드의 환경표준규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목받고 있다. 원래는 ISO 18000으로 통용되었으나 1994년에 열린 호주회의에서 ISO 14000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작업은 1991년 9월 '환경전략자문그룹'(SAGE)이 조직, 1993년 6월 TC 207이 발족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공업진흥청이 중심이 돼 TC 207에 정식 가입했다. ISO 9000이 제품의 품질을 따진다면 ISO 14000은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기업경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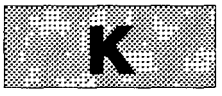
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따라서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과 조직에 대한 인증으로 나뉜다. 제품에 대한 표준화규격으로는 환경성능평가, 환경라벨링, 라이프사이클 평가 등이 있으며 조직에 대한 규격으로는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감사가 있다. 환경인증제도는 무역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ISO 14000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환경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무역에서의 수입규제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무역규제효과가 있다. → 그린 라운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와 기관을 말한다.

IULA → 국제 지방자치제연합



J턴 현상(現象) 지방에서 대도시로 취직한 노동자가 다시 출신지로 역류하는 현상을 U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대해 그 출신지가 아니라 가까운 지방도시, 즉 대도시와 출신지 사이의 지역으로 취직하는 것을 말한다. 출신지까지 돌아가지는 않지만 출신지의 가까운 지역까지 돌아가는 것이다. 출신지에서의 고용기회가 적은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KEDO ➡ p319 하단

KOSPI 200(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00 한국주가지수 200) 특정시점에서 200개 종목의 주식의 시가 총액이 1990년 1월 3일에 비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를 나타낸다.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시가 총액식으로 산출되는데, 200개 종목 중 시가 총액비중이 큰 종목들이 오르면 KOSPI 200도 상승하며 반대로 시가 총액비중이 큰 종목이 내리면 KOSPI 200은 하락한다.

KRRC(Kyonggi Regional Research Center)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집중육성산업을 선정하여 연구 개발토록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대학 및 기업체가 재원을 지원·운영한다.

KT마크(Korea good Technology mark 국산신기술인정마크) 국내에서 제조되는 상품중 기술이나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 시행 첫해인 1993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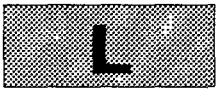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북한의 경수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컨소시엄의 명칭으로 1995년 3월 9일 정식으로 발족했다. 일종의 국제차관단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본부는 뉴욕에 있다.

1994년 10월 북한·미국간 준고위급 회담에서 경수로 협상이 타결되어 노형(爐型)과 주계약자 선정권 등 거의 모든 권한이 KEDO에 맡겨짐으로써 명목적인 기구에서 실질적인 결정기구로 부상했다. KEDO의 설립 목적은 약 1,000MW 용량의 한국 표준형 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대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재원조달과 공급, 그리고 대북한 대체에너지 공급 등이며,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 2기가 한국표준형임을 협약에 명시하고 있다.

KEDO의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집행 이사회를 비롯해 총회,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회원국은 현재 한국, 일본, 미국 등 3개국이지만 재정적인 부담을 전제로 어느 국가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일부 중동 국가를 포함해서 대략 15~17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1건이 선정되었으며, 2~3년 동안 이 마크를 부착한다. 대상은 ①IR52 장영실상 수상제품 ②국내외의 시장 진출, 외국 제품의 수입 대체 및 침투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시장초기제품에 적용된 기술 ③공업화 시험완료단계 또는 시범 제작단계의 기술로 국내 타 산업에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것 등이다. 이 제도는 KS 등 우수상품제도와는 구별된다. KT마크를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등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보완해 주고 보호해 주게 된다. → 수입선다변화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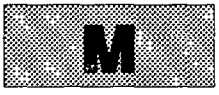


LAN(Local area Network 근거리통신망) 한 건물 안에서나 제한된 지역내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등을 연결하여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한편 1993년 초에는 미국, 일본 등에서 배선 연결이 필요없는 무선 LAN이 개발돼 기존 LAN의 단점을 해결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은행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기간·범위 안에서의 금액으로 자기 은행이나 자기가 지정한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증장, 이에는 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과 해외여행자가 그 행선지에서 필요한 외화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행신용장이 있다. 상업신용장의 경우 수출업자는 신용장의 도착으로써 안심하고 화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신용장에 근거를 둔 어음이므로 할인이 용이하다. 우리 나라는 수출장려 시책의 하나로 신용장의 도착으로 수출선대금(輸出先貸金)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장에는 취소가능·불능 신용장, 확인·무확인 신용장, 표시·무효시 신용장, 회전(回轉)신용장 등이 있다.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를 냉각, 가압시켜 액체로 한 것으로 주성분은 메탄, 에탄, 프로판 등이다. 기체시의 1/600의 용적이 되어 수송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높다. -162℃ 초저온이므로 특수한 냉장탱커가 필요하다.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일반적으로는 프로판가스로 불리나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총칭해서 LPG라 ㅂ른다. 우리나라의 LPG는 ①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가스 ②석유 화학 공장에서 나프타를 분해할 때 나오는 가스 등에 프로판, 프로필렌, 부탄, 부틸렌 등을 냉각 또는 고압(7~10기압)에 의해 액화한 것이다.



M&A ➡ p322 하단

MBO(Management By Out 경영자매수) 기업이 내부의 사업부나 계열사를 매각할 경우 해당 사업부나 회사내에 근무하고 있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중심이 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구조조정, 고용안정, 경영능력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각 기업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된다.

해당 임직원은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기존 경영자가 그대로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영의 지속성이 가능하다. 영국은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미국은 불황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자매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종합경영정보시스템) 기업의 경영진이나 조직의 관리진에게 투자·생산·판매·경리·인사 등 경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M&A(Merger and Acquisitions 기업인수합병)

기업의 외적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M&A의 발전 배경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의 절감, 경영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확보 등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을 비롯, 일본에서도 이미 본격화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1994년 증권거래법 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 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에 즈음해 많은 기업들이 M&A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200조는 그 동안 기업주가 소유권 침해에 대한 걱정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게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일반 투자자의 주식매매 자유를 제한하고 대주주의 방만한 기업 운영과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유발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외자 유치를 위해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내국인간의 적대적 인수합병은 물론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매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최근에는 SIS(전략정보시스템) 등 MIS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경영관련 정보시스템이 널리 도입되고 있다.

MLA(Multilateral Agency 국제개발금융기구)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지원하는 국제개발금융기구는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있음. 이들은 지분출자(equity), 대출(loan) 또는 보증의 형식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를 지원, 국제개발금융기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있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전시(展示)역할과 상업금융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 역할을 함. 또한 국제개발금융기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정치적 위험이 적게 되며 프로젝트 신인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누리게 됨. 이것은 국제개발금융기구가 국제기구로서의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업 소재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소재국의 정치, 경제사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의 출자는 곧 상업금융기관이 안심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조달비용도 사업금융과 비슷한 수준임. 국제개발금융기구는 지분 출자를 하더라도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음

MMF(Money Market Funds) 고객의 돈을 모아 금리가 높은 CP. CD,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 주는 실적배당상품, 고수익상품에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보다 돌아오는 수익이 높은게 보통이다.
미국 최대의 증권사인 메릴 린치가 1971년 개발해 금리 자유화가 본격화됐던 19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금융상품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공사채형 상품이다. 미국에서는 투자신탁의 33%, 일본에서는 25%의 점유비를 차지하고 있다. MMF는 CD(양도성예금증서)나 CP(기업어음), 콜론 등 수익률이 높은 단기상품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주식은 편입하지 않는다. 만기가 짧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실세 금리가 오를 때에는 펀드 수익률도 함께 상승한다. CD나 CP에는 투자금액이 1,000만원이상, CMA(어음관리계좌)에는 4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 제한이 있지만 MMF는 가입금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으나 29일 이전에 찾을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내게 되므로 30일 이상의 자금운용에 유리하다. MMF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거나 투자기간이 6개월 이하일 때 유리한 단기상품이다. 또 펀드 수익률이 실세금리 동향을 신속히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를 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

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6년 10월부터 투신사에서 발매되기 시작, 단기성 자금과 더불어 기존에 투신사에 묶여 있던 단기공사채와 자기공사채 상품이 MMF로 크게 몰렸다.

MP3 MP3는 MPEG1에서 규정한 고음질 오디오 압축 기술의 하나로 CD음반에 가까운 음질을 유지하면서 일반 CD의 50배로 압축, 양질다수의 음악을 복제해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음반 CD를 PC의 CD롬 드라이브에 넣고 수록곡들을 추출해 낸 다음 한번에 1백30~1백50곡까지 MP3기술로 압축시킨 후 PC 통신을 통해 전송하면 이용자들은 많은 곡을 다운로딩할 수 있다. 이같은 특징으로 인해 컴퓨터 이용자들이 음악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MP3기술을 이용해 다수의 음악곡을 인코딩, PC통신의 공개자료방 및 동호회를 통해 배포함으로써 음악 저작물의 불법복제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97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PC통신망을 통한 음악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제정,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MP3을 이용한 PC통신 유료 서비스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즉, 이 기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MP3를 이용한 음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MS-DOS(Microsoft Disk Operating System)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IBM 및 IBM 호환 컴퓨터의 표준 단일사용자 운영체계, MS-DOS의 지원은 1970년대 후반 8비트 컴퓨터 운영체계로 널리 사용되던 CP/M이다. 여기에 시애틀의 작은 회사가 시험적인 목적으로 개발·제작한 것이 원래 버전으로 이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구입·발전시켜 현재 버전 6.2까지 나와 있다. MS-DOS는 명령어와 변수, 구문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명령어 라인 운영 체계이다.

MS-WINDOWS(Micorsoft Windows)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IBM 호환 컴퓨터 환경에 매킨토시의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도입한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령어 메뉴·윈도·대화상자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그래픽 환경으로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하반기에 발표된 윈도98은 내장된 익스플로러를 통한 쉽고 편한 인터넷 접속 및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었다.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 NAFTA는 EC(유럽공동체)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대규모 경제통합운동으로 1992년 10월11일 체결돼 인구 3억 6,300만명, 국내총생산이 모두 6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 시장이 탄생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3개국 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NAFTA에 대한 협상은 199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쟁점사항이었던 자동차의 현지 부품조달비율, 멕시코 에너지 산업에 대한민국의 참여 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마침내 타결을 본 것이다. NAFTA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여러 수출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전미증권협회(全美證券協會 ; NASD) 관리 아래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에 의한 미국 장외시장의 시세보도 시스템. 1971년 2월에 개설해 25년만에 세계 제2의 증권시장으로 성장, 미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증권회사 등의 마켓 메이커가 자기가 취급하는 증권 종목에 대해 매매호가(賣買呼價)를 컴퓨터에 입력해 단말기의 화면에 나타내면, 투자자는 그것을 보고 가장 유리한 마켓 메이커에게 매매주문을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 채용으로 장외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에 대해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7월 1일 장외시장 전문 중개기관인 코스닥증권이 문을 열었다. → 코스닥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조직, 본래 유엔 헌장 제17조에 있는 말로 경제사회이사회에 참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현재는 NGO가 민간단체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는 '국제적으로 연대 제휴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전개하는 CBO(community based organization)와는 구분된다. NGO는 1991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NGO 포럼이 개최된 이후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급부상했고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네이루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와 함께 개최되었던 글로벌 포럼 이후 민간환경단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NI(National Inocome) → 국민소득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NMS는 전사적으로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가 장애없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만일 네트워크에 부하가 걸려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역폭의 사용은 무리가 없는지 등 네트워크 운영전반에 관한 내용을 감독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능형 관리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NMS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운영상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세그먼트 단위로 구축된 네트워크 분석에 가장 효율적인 장비이다.

O

OA기기(OA器機) OA는 Office Automation의 머리 문자로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것. OA를 위한 기기로서는 대형컴퓨터에 연결된 단말기, 인텔리전트 단말기, 오피스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이 있다.

OECD ➡ p327 하단

OHP(Over Head Projector) 시청각교육기구의 일종. 교사가 학습자와 대면할 때의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제2차대전 직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마셜플랜에 따라 1948년에 결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CD)를 모태로 개발도상국 문제 등 새로운 세계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9월30일 발족했다.

설립 당시 18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했고 그 후 일본과 호주를 비롯해 최근에는 멕시코, 폴란드 등 8개국이 가입했는데, 우리나라는 1996년 7월 6일 심사를 통과, 10월19일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회원국 전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18%에 불과하나 GNP는 전 세계의 85%, 수출입액은 70%이상을 차지하며, 1인당 GNP는 평균 2만달러 정도이다. 1960년대 비관세장벽 철폐 및 반덤핑 과세 인정, 1970년대 일반특혜관세, 서비스·금융부문 자유화 등의 기념을 주창하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국제규약 제정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두 기구 사이의 역할 조정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관계 및 최근 확산되는 지역주의가 배타적인 경제블록의 양상을 띠지 않도록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OECD의 주요 조직으로는 이사회를 비롯한 집행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및 26개의 각종 전문위원회 그리고 이들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로 구성되는데, 각료이사회는 선진 7개국 회담전에 열려 회원국의 입장을 미리 조정하며 상주대표이사회는 기구 활동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상태로 교재 내용을 스크린에 비추는 슬라이드 형식의 기구, 기업내 연수 등에 쓰이고 있다.

OJT(On the Job Training) 직장훈련, 현장훈련, 직무상 훈련 등으로 불리는데,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임자로부터 대면 지도, 개별 지도, 훈련 지도를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OJT는 실무상의 교육훈련으로서 기회교육이며, 체험교육이다.

OPEC(Organization of Per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1960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 5개국이 결성한 '자원 카르텔' 본부와 사무국은 빈에 있다. 그후 카타르, 리비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가봉 등 가맹 13국으로 구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OPEC 산유국의 석유생산량이 급증하여 OPEC의 카르텔 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O-157 대장균은 그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번호가 붙여지며 O형 대장균의 경우 O-1, O-18, O-26 등 10여 종이 있다. 이중 식중독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이 O-157이다. O-157은 인체에 들어갈 경우 독소를 만들어 내며 잠복기간은 4~9일이고, 심한 복통설사와 내출혈을 일으킨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음식을 70도 이상 고온에서 수분간 가열하면 O-157 살균이 가능하다.

P

PCS ➡ p329 하단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휴대정보단말기) PDA는 손바닥 위에 놓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장치안에서 펜입력과 문자인식기능을 통해 문서 작성은 물론 휴대전화, 무선 데이터 송수신, 각종 금융거래, 상품거래, 대금결재, 예약, 개인비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애플컴퓨터가 1993년초에 '뉴튼'이라는 PDA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PER(Price-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 PER은 특정 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배가 되는 가를 나타낸다. 어떤 기업의 주식가격이 66,000원이라 하고 1주당 수익이 12,000원이라면 PER는 5.5가된다. 여기에서 PER가 높다는 것은 주당 이익에 비해 주식 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PER가 낮다는 것은 주당 이익에 비해 주식 가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PER가 낮은 주식은 앞으로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영국의 민자유치 정책을 일컫는 말, 1992년 영국의 재무성장관이던 라몽(Norman Lamont)이 의회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PFI라고 불리는 민자유치제도를 선언한 이후 영국의 민자유치제도를 나타내는

PCS(Personal Communcation Services)

개인휴대통신, 발신전용 휴대전화(CT-2)를 한단계 발전시킨 개인휴대 통신기기. 이제까지의 셀룰러 이동 전화에 비해 전송용량(13kbps)이 커 통화품질이 1.6배정도 깨끗하다. 또한 1.7~1.8GHz대의 높은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음성이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 하지만 고주파수가 갖는 직진성 때문에 셀룰러에 비해 더 많은 기지국(안테나)을 설치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7년 10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PCS는 2005년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고 시장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를 최대의 승부처로 여기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말로 통용되고 있음.PFI는 위탁(Contracting Out)과 민영화(Privatization)의 중간 개념으로서 민영화에 더욱 가까운 개념임. 즉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성격 규정은 정부가, 시설의 건설과 서비스 제공은 민간 사업자가, 그리고 시설의 소유는 민간 사업자 또는 정부가 하는 형태임. 따라서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성격규정 및 시설의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영화와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 PFI의 기본 정신은 자금의 유용성 검증(VFM:Value for Money)과 위험의 분담(Risk Sharing)에 두고 있음. 즉 정부는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한푼도 정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모든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파트너쉽에 입각하여 위험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위험을 관리하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음

PIMBY 현상 'Please in My Back yard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과 정반대되는 의미,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투자해 달라'며 대기업들의 투자를 다퉈 유치하려는 현상에서 나온 말이다.

POS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유통업체 매장에서 판매와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 유통 정보를 입력시켜 컴퓨터를 이용, 각종 자료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 판매정보 입력을 쉽게 하기 위해 상품 포장지에 고유 마크(바코드)를 인쇄하거나 부착시켜 판독기(스캐너)를 통과하면 해당 상품의 각종 정보가 자동적으로 메인컴퓨터에 들어가게 된다. 유통 업체는 이 정보를 활용해 수시로 매출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잘 팔리는 상품의 진열을 확대하는 등 상품관리 · 업무자동화를 추진한다.

PP카드(선불카드) ①PP카드(Prepaid card)란 사용 대금을 미리 내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②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중전화 카드나 지하철 정액권 등이 선불(先拂)카드 성격을 가지고 있다.

PPM(Parts per million) 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1g의 시료(試料)중에 100만분의 1g, 물 1t중의 1g, 공기 1㎥중의 1cc가 1ppm이다.

PUD(Planned Unit Development) → 계획단위개발



QC(Quality Control) 소비자가 진실로 원하고 있는 품질의 제품을 가장 경제적·합리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 미국에서 도입한 QC를 최고 경영진에서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포함한 전원 참가의 품질 관리로 발전시켜 일본 공업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QC는 과학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일정한 원자재로 만들어지는 제품의 품질이 변동되는 원인을 통계분석해서 평균치 또는 경향을 찾아내고 각 제품의 품질에 나타나는 변동원인의 조사필요성 여부를 검증, 미비점을 보완하고 품질을 개선한다.

R

RAM(Random Access Memory) 디스크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처리하기 위해 임시로 갖다 놓는 장소로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이다. 전에는 무순(無順) 도달기억장치 또는 임의도달 기억장치라고 했으나 이제는 간단히 RAM(램)이라고 부른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로지 읽기만 할 수 있는 기억장치인 ROM과 구별된다. 즉 컴퓨터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작성한 소프트웨어를 임시로 저장하는 곳이다. 램은 전기가 흐르는 동안에 정보를 갖고 있지만 전원이 끊기면 그 안에 저장된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 따라서 휘발성 기억장치라고도 부른다 → ROM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엄밀히 말하면 research는 기초연구와 그 응용화 연구, development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초로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 업무를 가리킨다. R&D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양자의 영역을 확실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ROM(Read Only Memory) 형식이 결정된 정보, 특히 컴퓨터 동작 순서 등이 미리 기억되어 있는 기억 장치, 한번 입력된 기억은 지워지지 않으나 바꾸어 넣을 수 있는 것도 있다. → RAM

RRC(Regional Research Center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도출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관련 산업의 연구 수행 및 산업체 이전을 목표로 한국과학재단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S

SI(Social Indicator) → 사회지표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작은 사무실 혹은 가정을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개념, 본래 SOHO는 마케팅 용어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과 사무용품 시장에서 특정 소비자층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 보다 새로운 미래의 사업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대됐다. SOHO가 갑작스럽게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인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웹이 등장한 이래 현실 세계에 있던 수많은 분야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자리를 잡아, 안방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전 세계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별다른 자본없이도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 세계 기업계에 불고 있는 감원 열풍은 결과적으로 많은 소규모 사업자와 재택 근무자를 낳았고 기업으로서도 직원에게 들어가는 각종 연금과 복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SOHO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는 SOHO가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미국의 경우 매년 75만개의 SOHO가 새로 생겨나고 있으며 증가율 또한 20%씩 늘어나고 있다.

T

TCP/IP ➡ p334 하단

TDR(Transfer Development Right) → 개발권 이양제도

TQC(Total Quality Control) 전사적 종합품질관리, 회사의 전원이 QC를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료에서 상품까지의 유통하나를 보아도 그것에는 '설계, 제조, 판매, 고객'의 루트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각 단계가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전체의 의사 통일이 취해지지 않고 고객의 의향을 무시한 상품이 생산되거나 판매된다. TQC는 설계, 제조, 판매 등의 각 부문은 물론 총무나 인사 등 직접 제품에 관계하지 않는 부문까지 포함해서 제품을 잘 만들어 보려는 전사적 운동이다. → Q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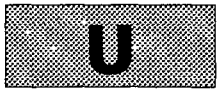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TCP/IP란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로,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쓰는 컴퓨터간에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인터넷에서 정보전송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로 쓰이고 있다. TCP는 전송 데이터를 일정 단위로 나누고 포장하는 것에 관한 규약이고, IP는 직접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에 관한 규약이다. 인터넷에 물려있는 모든 컴퓨터는 인터넷 표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약을 따르고 있는데,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 TCP/IP이다. 프로토콜이란 쉽게 말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완전하게 보내기 위한 장치이다.

TCP/IP에서 먼저 IP는 출발과 도착 주소를 가지는 헤더를 참조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목적지에 전달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못 전달되거나 파손될 수도 있고, 보내진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TCP이다. 즉 IP가 데이터 패킷을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TCP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데이터를 알맞게 재전송하는 임무를 갖는다. TCP가 에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흐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수신하는 호스트에서는 언제나 에러없이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TQM(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은 전사적 품질경영 또는 종합적 품질경영으로 번역되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경영과 업무, 직장환경, 조직 구성원의 자질까지도 품질 개념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QM은 1960년대 이후 크게 발전한 전사적 품질관리(TQM ; total quality control)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그러나 TQC에서는 통계학적인 것이 주방법론을 차지했다면 TQM은 통계학적인 것은 물론 조직적이며 관리론적인 방법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일본식 품질관리 원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했다. TQM은 경영·기술차원에서 실천되던 고객지향 품질관리 활동을 품질관리 책임자 뿐아니라 마케팅, 엔지니어링, 생산, 노사관계 등 기업의 모든 분야에 확대하여 생산 부문의 품질관리만으로는 기업이 성공할 수 없고 기업의 조직 및 구성원 모두가 품질관리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TQM은 기본적인 정신이나 사고방식을 소홀히 한 채 단순히 지엽적인 제도나 기법에만 매달려서는 품질 경영의 진정한 효과를 얻기 어렵고, 오로지 품질 위주의 기업 문화를 창조하여 조직 구성원의 의식을 개혁해야만 궁극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에서도 1992년부터 정부가 신산업정책의 일환으로 TQM을 강조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 TQC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 공용통신)은 무선 데이터 통신의 한 방법이며 하나의 주파수를 여러명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가입자간의 그룹 통화, 개별 통화와 같은 다양한 통신 방법이 가능하나 통화시간의 제한이 있고 같은 망의 가입자 이외의 불특정 다수와는 통신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참고로 무선 데이터통신에는 전용 패켓망을 이용하는 방법, 셀룰러망을 이용하는 방법, 주파수 공용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위성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UPS(Uninter 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또는 무정전전원장치)란 통상적인 전원 공급이 안되거나 정전이 될 때 정전과 상관없이 전력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UPS는 정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하는 작동중의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류의 필수 장치로서 전압이나 주파수의 변동 또는 순간정전에도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 컴퓨터의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소실되는 것을 방지 보호하거나 각종 제어장치의 제어기능 상실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UR(Uruguay Round) → 우루과이라운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 상의 각종 자원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명령체계로 web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정보가 위치하는 장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입력하는 방법인 URL에 의해 결정된다.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 부가가치통신망이란 공중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성, 정보의 축적·처리·가공을 하는 통신 서비스 또는 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VAN에 가입·이용하는 목적으로는 ① VAN을 이용함으로서 이 기종 호스트 컴퓨터간 접속이나 단말기와의 접속 프로토콜 변환을 네트워크내에서 호스트 컴퓨터의 부하 경감과 ② 이업종, 이기업간의 접속에 의한 뉴비즈니스의 발굴 ③ 데이터통신의 효율향상과 통신코스트의 절감 ④ 회선의 확장 변경 및 오퍼레이션 등의 운용 관리를 VAN에 맡김으로써 얻어지는 부하와 코스트의 경감화 등을 들 수 있다. VAN의 금후 동향을 보면 회선의 효율적 이용과 회선의 리세일(resale), 불특정 다수 또는 국제간 통신에의 패킷 교환 채용, 업계 또는 업종 VAN의 출현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는 "VAN to VAN"이 실현될 것이 예상된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 대표가 7년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말을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 정식 출범, 1947년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WTO 비준안 및 이행 방안이 1994년 12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WTO는 지금까지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게 된다.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를 담당한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참고문헌

〔단 행 본〕

매일경제신문사 「경제신어사전」 1999
무역용어집(경기도) 1999
행정용어해설집(경기도) 1997
외국인투자유치실무용어집(경기지방공사) 1999
'99뉴월드 시사일반상식(시사문화사) 1999
경기환경의 이해(경기도) 1999

〔인터넷 사이트〕

국토연구원
동아일보(현대시사용어사전)
전자신문

지식행정 용어해설집

1999년 11월 일 수정판 발행

발 행 처 : 경 기 도
편 집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대표전화 0331-249-2804
F A X 0331-249-2119
인 쇄 처 : 경기도 종합발간실

〈비 매 품〉



KYONGGI PROVINCE®

21세기 도전·창조·희망의 경기

Kyonggi,A Land of Challenge, Creativity and Hope in the 21st Century

표지디자인: 해성디자이너실